



SDG16 달성을 위한 KOICA 이행방안 연구

2018. 8

SDG16달성을 위한 KOICA 이행방안

2018. 8.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부원장 (현)
- 국제개발협력학회 SDG 16 + 분과 위원장 (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현)
- IDB, ADB 컨설턴트 (전)

주요 연구 실적

- ▷ 2017. 『KOICA 사업의 취약계층 포용적 접근 현황평가』.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7. 『KSP 평가제도 개선방안』.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 2016. 『국제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공동연구원

이성훈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현)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전)

주요 연구 실적

- ▷ 2017. 『KOICA 사업의 취약계층 포용적 접근 현황평가』.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4호: 3-38.

홍문숙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현)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전공강사 (현)
-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교육개발협력분과 위원장 (현)
- 국제개발협력학회 SDG 16 + 분과 위원 (현)
- 서울대학교 동남아시아언어문화학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출강

주요 연구 실적

- ▷ 2018. “전환기 미얀마 정치사회변화와 신(新)고등교육 개혁: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018(2).
- ▷ 2017. 『KOICA 사업의 취약계층 포용적 접근 현황평가』.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7. “인권기반접근법에 따른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수행 체계연구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4호: 85-124.
- ▷ 2017. 『교육평가 및 교육과정 국제교육개발협력 실행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2016. 『우리나라 연수사업(CIAT) 종합평가』.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윤지영

- 피스모모 정책팀장 (현)
- 교육연대체 씨앗(CIATE Korea) 사무국장 (현)
-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전)

주요 연구 실적

- ▷ 2018. 『한반도의 자기결정권,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 서울: 피스모모.
- ▷ 2013. “원조투명성 왜 중요한가” 『KoFID 이슈브리프』. 서울: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 ▷ 2013.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ODA 백서방향』.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3.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김수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 (현)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현)

주요 연구 실적

- ▷ 2018.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 수준 분석: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8-2호: 109-70.
- ▷ 2017. 『KOICA의 효과적인 취약국 지원을 위한 성과프레임워크 지표풀 개발: 공공행정분야』.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7. “선진공여기관의 분쟁 취약국 지원전략 및 성과관리” 『국제개발협력』 2017-2호: 23-74.
- ▷ 2016. 『개도국 정부경쟁력 지표의 ODA전략 적용방안: 베트남,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6.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6-2호: 79-114.

송수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전략기획실 과장 (현)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국제관계학 석사

주요 연구 실적

- ▷ 2018. 『SDG16 Plus, 통합적 SDG 이행을 위한 연결고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8.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7. 『국내재원동원(DRM)과 국제 조세 이니셔티브』.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보조연구원

- 김은영 (경희국제개발컨설팅 책임컨설턴트)
장아영 (경희국제개발컨설팅 컨설턴트)
정원선 (경희국제개발컨설팅 프로젝트애널리스트)
박진아 (경희국제개발컨설팅 프로젝트애널리스트)

이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위탁하고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약 어 표 】

| | |
|--------|---|
| AAAA | Addis Ababa Action Agenda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 ADA | Asia Development Alliance (아시아개발연대) |
| ADN | Asia Democracy Network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
| AGA | African Governance Architecture (아프리카 거버넌스 구조) |
| AGDF | Aktionsgemeinschaft Dienst fur den Frieden, Action Committee Service for Peace (평화를 위한 행동위원회) |
| AGEH | Arbeitsgemeinschaft für Entwicklungshilfe, Association of Development Service (개발 원조 협회) |
| AIHR | Arab Institute for Human Rights (아랍인권연구소) |
| APOPO | Anti-Persoonsmijnen Ontmijnende Product Ontwikkeling, Anti-Personnel Landmines Removal Product Development (대인지뢰 제거제품 개발) |
| AU |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
| AusAid |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호주국제개발청) |
| BMZ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독일연방개발협력개발부) |
|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 |
| BuDF | Busan Democracy Forum (부산민주주의포럼) |
|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 |
| 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
|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
|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제네비군축회의) |
|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 CESCR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 CIDA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개발청) |
| CoD | Community of Democracies (민주주의 공동체) |
| 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
| 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 |
| CRCOP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무력충돌에 아동의 개입에 대한 아동 권리 협약의 선택 의정서) |
| 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
| CRS | Creditor Reporting System (공여국 보고 체계) |

| | |
|----------|--|
| CSC | Civil Service Commission (공무원위원회) |
| CSO |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
|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
|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
| DANIDA |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국제개발원조청) |
| DDR | Course on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군축, 동원해제 재건을 위한 과정) |
| DEG | Deutsche Investitions -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독일개발회사) |
| DFID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부) |
| DIMR |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독일인권연구소) |
| DPNA | Development for People and Nature Association (사람과 자연을 위한 개발 협회) |
| DRG |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전략) |
| DRI |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 (국제민주보고) |
| EC |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 |
| e-NID | Electronic National Identification (전자주민카드) |
| ESDP |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유럽안보방위정책) |
| EU | European Union (유럽연합) |
| EU CSDP | European Union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Mission (유럽연합 공동안보 국방정책) |
| FBA | Folke Bernadotte Academy (풀세 베르나도테 아카데미) |
| forumZFD | Forum Ziviler Friedensdienst, Forum Civil Peace Service (시민 평화봉사 포럼) |
| FSCD | Fire Service and Civil Defence (소방방재청) |
| GDP |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 생산) |
| GFDRR |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재해 감소와 복구를 위한 글로벌 시설) |
| GIZ |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erman Corpor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독일국제협력기구) |
| GKS |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 장학생) |
| GPPAC |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 HDR | Human Development Report (인간발전보고서) |
| HIV/AIDS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and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면역결핍증후군) |

| | |
|-----------|---|
| HLPF | High Level Political Forum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
| HRBA | Human Rights Based-Approach (인권기반접근) |
| HRC | Human Rights Commission (국가인권위원회) |
|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 IAEG-SDGs |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SDGs지표 전문가그룹) |
| 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 ICNDRD |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w or Restored Democracies (신생재건민주주의국제회의) |
| ICPO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형사경찰기구) |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
| ICTJ |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전환기적 정의 실현 국제 센터) |
| ICTY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
| IDEA | International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기구) |
| IDLO |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국제개발법기구) |
| IDP | Internally Displaced Person (국내실향민) |
| IEP |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경제 및 평화 연구기관) |
| IFEX |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xchange (정보 교환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구) |
| IFSD |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
| IGO |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 국제기구) |
| IIEDA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민주주의 선거지원 국제연구소) |
|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
|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 INCAF |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분쟁 및 취약성에 관한 국제네트워크) |
| INC-SIAD | Sustainable Integrated Area Development (지속가능한 지역 통합 개발) |
| ISS |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안보 연구소) |
| InWEnt | 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독일국제협력단) |
| 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
| IPU |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
| 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
| KAIDEC |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학회) |
| KCOC |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 | |
|--|--|
| KfW |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Reconstruction Credit Institute (독일재건은행) |
| KIPA | Kurdistan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쿠르드자치정부) |
| KoFID |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
| 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
| KRG |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쿠르드지역정부) |
| LGBTI |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Transsexual and Intersexed 성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간성) |
| M&E | Monitoring and Evaluation (모니터링 및 평가) |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 |
| 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
| MENA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
| MIMP | Ministry of Women and Vulnerable Populations, Peru (여성 및 취약계층부) |
|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
| 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
|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확산방지조약) |
| OAS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지구) |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 ODI |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
|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 OHCHR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
| 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 정부 파트너십) |
| PCA | Peace and Conflict Assessment (평화를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
| PCD |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 PCP | Project Concept Paper (사업 제안서) |
| PDM |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 |
| PGD |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스웨덴의 세계 개발 정책) |
| PHD | Peace, Human Rights, Democratic Governance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
| PLANET | Participation, Links to Human Rights, 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 Empowerment, Transparency (참여, 인권과의 연계, 책임성, 비차별, 역량강화, 투명성) |
| PSGs |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평화 구축 및 국가 형성 목표) |
| QDDR |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종기외교개발보고서) |
| RBA | Rights Based Approach (권리기반접근) |
| RD | Record of Discussion (협의의사록) |
| SALW |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소형무기) |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
| Sida |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

| | |
|-------------|---|
| SIMCARRD | Sustainable Integrated Area Development Mindanao Convergence for Asset Reform and Regional Development (지속가능한 지역 통합 개발, 자산개혁 및 지역개발을 위한 민다나오 융합) |
| SP | Scholarship Program (KOICA 장기석사학위과정) |
| TAP Network |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Network (투명성, 책임, 참여 네트워크) |
| TF | Task Force (대책 위원회) |
| TOSSD |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총 공적개발지원) |
| TPO | 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상황) |
| UN | United Nations (국제연합) |
| UNCAC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엔반부패협약) |
| UNDEF |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유엔민주주의기금) |
| 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
| UNDPA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유엔개발지원체제) |
| 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 UNFPA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 |
| UNHCR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유엔난민기구) |
| UNHRC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유엔인권이사회) |
| UNICEF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 s Emergency Fund (유엔아동기금) |
| UNOCHA |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
| UXO | Unexploded Ordnance (불발탄) |
| UNODC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 |
| UNPBC | United Nations Peace Building Commission (유엔평화구축위원회) |
| UNPK |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유엔평화유지군) |
| UNTOC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유엔조직범죄방지협약) |
| UNWOMEN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유엔여성기구) |
| USAID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처) |
| WB | World Bank (세계은행) |
| WFD | Weltfriedensdienst, World Peace Service (세계 평화 봉사) |
| WFUNA |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유엔협회 세계연맹) |
| WILPF | Women' 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 |
|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 ZIF | Zentrum fur Internationale Friedenseinsatze, Center for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국제 평화 운영 센터) |

목 차

| | |
|--|-----------|
| 국문요약 | ix |
| Abstract | xxvi |
| I . 서론 | 1 |
| 제1절 연구개요 | 1 |
| 1. 연구의 배경 | 1 |
| 2. 연구의 필요성 | 2 |
|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
| 제2절 연구방법 | 4 |
| 1. [트랙 I] SDG16 관련 주요 개념 및 동향 연구 | 5 |
| 2. [트랙 II] 타공여기관 SDG16 이행환경 및 현황 연구 | 6 |
| 3. [트랙 III] KOICA SDG16 이행환경 및 현황 진단 | 8 |
| 제3절 주요 개념 정의 | 8 |
| 1. SDG16 | 8 |
| 2. SDG16+ | 9 |
| 3. 평화(Peace), 인권(Human Rights),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 | 10 |
| II. SDG16 이행을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과 논의 동향 | 12 |
| 제1절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 12 |
| 1. SDG16 개념과 최근 동향 | 12 |
| 가. SDG16의 개념 | 12 |
| 나. SDG16의 5대 가치(5Ps) | 12 |
| 2. 국제사회의 SDG16 목표 및 지표 관련 논의 | 14 |
| 3. SDG16 국제 이니셔티브 동향 | 18 |

| | |
|--|-----------|
| 4. 국제사회의 PHD 논의 동향 | 23 |
| 가. 평화(Peace) | 23 |
| 나. 인권(Human Rights) | 27 |
| 다.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 30 |
| 5. SDG16과 PHD 접근의 재구성 | 32 |
| 제2절 국내 주요 논의 현황 | 42 |
| 1. 정책방향 | 42 |
| 가. SDGs 정책 방향 | 42 |
| 나. PHD관련 정책 방향 | 43 |
| 2. 100대 국정과제 | 45 |
| 3.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의 SDG16 | 46 |
| III. 주요 공여국의 SDG16 이행 현황 사례 | 49 |
| 제1절 들어가며 | 49 |
| 제2절 스웨덴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 | 52 |
| 1. 스웨덴의 SDG16 정책과 전략 | 52 |
| 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 | 52 |
| 나. 국제개발에서의 PHD 정책 및 전략 | 54 |
| 2. 스웨덴의 SDG16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 62 |
| 가. 일반적 사업수행체계 | 62 |
| 나. 평화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 62 |
| 다.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 70 |
| 제3절 독일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 | 75 |
| 1. 독일의 SDG16 정책과 전략 | 75 |
| 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 | 75 |
| 나. 국제개발에서의 PHD 정책 및 전략 | 75 |
| 2. 독일의 SDG16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 81 |
| 가. 평화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 81 |

| | |
|--|------------|
| 나. 인권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 90 |
| 다.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 96 |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04 |
| IV. KOICA의 SDG16 이행 현황과 이행강화 방안 | 113 |
| 제1절 KOICA의 SDG16 관련 전략과 지침 수립 현황 | 113 |
| 제2절 KOICA의 SDG16 세부 분야별(PHD) 사업 운영 현황 | 115 |
| 1. ‘SDG16’ 주제별 KOICA 사업 분류 기준 및 정의서 도출 방법론 | 116 |
| 가. 도출목표 | 116 |
| 나. 활용대상 | 117 |
| 다. 분류 방법론 | 118 |
| 2. 분류기준 | 136 |
| 가. 평화 | 136 |
| 나. 인권 | 137 |
| 다. 민주적 거버넌스 | 138 |
| 3. 분석 결과 | 140 |
| 제3절 KOICA의 SDG16 대상화 이행강화 방안 | 153 |
| 1. SDG16 대상화 전략 | 153 |
| 가. 영역별 사업에서 다중적 융합형 사업으로 | 153 |
| 나. 분야나 대상에서 권리와 목적으로 | 155 |
| 다. 안정국에서 취약국으로 | 156 |
| 2. SDG16 대상화 영역별 장단기 사업 전략 | 157 |
| 제4절 KOICA의 SDG16 주류화 이행강화 방안 | 163 |
| 1. 제도개선을 통한 주류화 | 163 |
| 2. KOICA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인지제고를 통한 주류화 | 164 |
| 3. 사업 시행 절차의 주류화 | 167 |
| 가. 인권 민주주의 주류화(안) | 168 |
| 나.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안) | 172 |

| | | |
|---|-------|-----|
| V. 결론 | | 177 |
| 1. 가치지향적 접근 Value Proposition | | 177 |
| 2. 정치 외교적 지원 Politico-Diplomatic Support | | 178 |
| 3. <u>프로그램형</u> 접근 Programming | | 179 |
| 4. 지역중심 접근 Area Centered Approach | | 180 |
| 5. 시민사회와의 연대 Civil Society | | 181 |
| 참고문헌 | | 183 |
| 부록 | | 198 |
| 1. 현지조사 결과: 스웨덴 | | 198 |
| 2. 현지조사 결과: 독일 | | 206 |
| 3. SDG16의 PHD 대상화(Targeting) 방안 | | 242 |
| 4. SDG16의 PHD 주류화(Mainstreaming) 방안 | | 251 |
| 5. 국제인권도구 | | 270 |
| 6. UN의 SDGs와 인권 주요 논의 관련 자료 | | 271 |
| 7. GIZ-독일연구소 공동연구자료 목록 | | 273 |
| 8. 독일 GIZ의 인권개발협력 <u>프로그램/프로젝트</u> 목록 | | 275 |
| 9. 평화(Peace) 분류기준 및 정의서 | | 276 |
| 10. 인권(Human Rights) 분류기준 및 정의서 | | 280 |
| 11.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분류 기준 및 정의서 | | 283 |
| 12. SDG16+ 해당 세부목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구축을 위한 세부목표) 종합본 | | 288 |

표 목차

| | |
|--|-----|
| [표 1] 3단계X3트랙 연구수행 전략 | 4 |
| [표 2] KOICA SDG16 전략분석 프레임워크 | 6 |
| [표 3] PHD 접근에 따른 SDG16 세부목표 재구조화 | 10 |
| [표 4] SDGs 구조 - 5Ps를 중심으로 | 13 |
| [표 5] SDG16 세부목표의 내용 | 15 |
| [표 6] SDG16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 18 |
| [표 7] Pathfinders 전략 로드맵의 기본 프레임워크 (Framework) | 20 |
| [표 8] 개발의 촉진제로서 SDG16의 3대 분야 (Catalyst for Development Progress) | 20 |
| [표 9] 목표16 주요 카테고리별 세부목표의 재구성 | 34 |
| [표 10] SDG16+ 연계 목표 및 세부 내용 | 34 |
| [표 11] SDG16 세부목표에 대한 PHD 접근의 재구성 | 38 |
| [표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 42 |
| [표 13] 주요 공여기관별 SDG 16 대응 전략 비교 | 51 |
| [표 14] 스웨덴의 평화관련 정책 및 전략 목록 | 55 |
| [표 15] Sida의 갈등 민감성 접근법 적용 단계 | 64 |
| [표 16] Sida의 갈등감수성 통합 역량 구축 및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65 |
| [표 17]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대표 사업(1) 개요 | 67 |
| [표 18]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대표 사업(2) 개요 | 67 |
| [표 19]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시민사회 통한 지원 대표 사업 개요 | 69 |
| [표 20] 스웨덴 Sida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대표 사업(1) 개요 | 73 |
| [표 21] 스웨덴 Sida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대표 사업(2) 개요 | 74 |
| [표 22] 독일 BMZ 평화 분야 대표 사업(다자사업) 개요 | 84 |
| [표 23] 독일의 BMZ 평화분야 대표 사업(정부 간 주제/섹터사업) 개요 | 85 |
| [표 24] 독일 BMZ 평화 분야 대표 사업(시민사회 프로그램) 개요 | 86 |
| [표 25] 독일 시민사회 단체의 평화 분야 대표 사업의 예 | 88 |
| [표 26] BMZ 인권/젠더기반접근 가이드라인 상 ODA사업 인권 위험요소 | 92 |
| [표 27] 독일 인권사업(주제/섹터와의 융합)의 예 | 94 |
| [표 28] 독일 인권사업(권리보유자의 보호 및 인권증진)의 예 | 97 |
| [표 29] 독일 GIZ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대표 사업 개요 | 101 |

| | |
|---|-----|
| [표 30] 독일 시민사회 단체,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DRI) 민주주의 대표사업 | 103 |
| [표 31] 스웨덴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 104 |
| [표 32] 독일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 106 |
| [표 33] KOICA 공공분야 중기전략 전략목표 | 113 |
| [표 34] KOICA 혁신 10대 중점과제 | 114 |
| [표 35] 3대 보편적 가치 기준 중기전략 목표 분류 | 115 |
| [표 36] 1단계 세부 작업 순서 | 118 |
| [표 37]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주제별 SDG16+ 세부목표(40개) 분류안 | 120 |
| [표 38] SDG16 주제별 정의서 목표, 핵심용어, 세부범위 도출 결과 | 127 |
| [표 39] 2단계 세부 작업 순서 | 129 |
| [표 40] OECD CRS원조목적코드별 SDG16관련 코드 분류 기준 | 130 |
| [표 41]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주제 관련 OECD 원조목적코드별 CRS 분류(안) | 130 |
| [표 42] ‘평화’ 관련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CRS코드 분류 결과(예시) | 132 |
| [표 43] KOICA SDG16 관련 운영사업 수 | 140 |
| [표 44] 카테고리 별 분류된 사업 목록 | 141 |
| [표 45] 단기적 PHD 대상화 사업 | 154 |
| [표 46] 우리정부의 취약국 지원 중점 분야 | 157 |
| [표 47] KOICA의 시기별 평화 분야 사업 가능 영역 | 158 |
| [표 48] KOICA의 시기별 인권 분야 사업 가능 영역 | 160 |
| [표 49] KOICA의 시기별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사업 가능 영역 | 161 |
| [표 50] SDG16 주류화 원칙(EC) | 165 |
| [표 51] BMZ 인권/젠더기반접근 가이드라인 상 ODA사업 인권 위험요소 | 221 |
| [표 52] SDG16 세부목표의 내용 | 242 |
| SDG16 주류화 추진 방안 | 251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
| [그림 2] SDG16 관련 주요 개념 정리 | 10 |
| [그림 3] 5Ps의 개념도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및 파트너십 (Partnership) | 13 |
| [그림 4] SDG16 개념—목표—분야별목표의 재구성 | 21 |
| [그림 5] SDG16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 | 32 |
| [그림 6]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43 |
| [그림 7] 스웨덴 개발협력정책의 목적: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 53 |
| [그림 8] 스웨덴 개발 협력에 통합된 시각 | 54 |
| [그림 9] 2016년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하위분야별 지출 | 58 |
| [그림 10] 2016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10가지 장기적 정책 방향 | 60 |
| [그림 11] 2012–2016 Sida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하위분야별 지출 | 61 |
| [그림 12] Sida의 사업 지원 관리 9단계 | 62 |
| [그림 13] 갈등 민감성과 평화구축: Working in Conflict와 Working on Conflict | 64 |
| [그림 14] 독일 개발협력의 PHD 개념화 | 76 |
| [그림 15] BMZ/GIZ의 평화와 분쟁, 거버넌스 프로그램 도구 | 81 |
| [그림 16] PCA 4가지 주요 요소 | 82 |
| [그림 17] 선진공여국 사례의 시사점 | 110 |
| [그림 18] PHD별 사업비중 | 149 |
| [그림 19] 카테고리별 사업 분류 | 149 |
| [그림 20] SDG16 연수사업(별도)의 PHD별 비중 | 151 |
| [그림 21] SDG16 연수사업(별도)의 카테고리별 분류 | 151 |
| [그림 22] 연수사업 포함 전체 SDG16 사업의 PHD별 비중 | 152 |
| [그림 23] SDG16 사업 유형별 분류 (연수포함) | 152 |
| [그림 24] PHD의 프로젝트 단계별 접근(안) | 167 |

글상자 목차

| | |
|--|-----|
| [글상자 1] 해외 현지조사 목표와 주요 질문 | 7 |
| [글상자 2] FBA의 교육과정 목록 | 70 |
| [글상자 3] 스웨덴의 인권기반 접근 적용방법: P.L.A.N.E.T | 71 |
| [글상자 4] Sida의 인권기반 접근 적용 주제/분야 | 72 |
| [글상자 5] 독일 국제개발에서의 인권원칙의 적용 사례 | 78 |
| [글상자 6] 평화교육과정의 예: ForumZFD의 평화, 인권, 국제개발 전문가과정 | 89 |
| [글상자 7] 평화교육과정의 예: AGEH 2018 세미나 프로그램 | 90 |
| [글상자 8] ‘평화1. 모든 형태의 폭력(violence) 감소’ 카테고리 정의서(예시) | 135 |

국문 요약

I. 서론

1. 연구개요

United Nations(UN)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구촌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중 SDG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혁신 중점 과제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역점을 두고 인권, 참여,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10대 혁신 중점과제로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천명하고 이를 목표로 한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현대사의 경험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대내외적 정세 변화로 인해 SDG16의 핵심 요소인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SDG16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 및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고 정치적 불평등을 다루는 유일한 개발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핵심적인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논의는 그동안 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DG16의 핵심인 평화, 인권, 민주주의(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우선 살피고, 국내외 동향 분석과 함께 KOICA의 현 이행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KOICA 중기전략 내에서 SDG16이 보다 범분야적으로 적용되고 보완될 수 있는 적극적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SDG16의 세부 주제별 연구가 아닌 평화, 인권, 민주주의(민주적 거버넌스) 등 관련 주제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가 SDG16 달성을 위하여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세 가지 세부 목적은, ①국내외 SDG16관련 연구와 평화, 인권, 민주

주의(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②KOICA와 타공여기관의 SDG16 이행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며, ③KOICA의 향후 보다 효과적인 SDG16 이행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주요 개념 정의

UN이 정의한 SDG16의 공식 명칭은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기관, △평화이다(이성훈,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 Peace & Justice, 2018). 이후 SDG16+를 통해 SDG16 자체의 이행과 목표달성을 넘어 해당 목표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 7개 목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 등장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SDG16+를 단독으로 다뤄지는 개념이 아닌, SDG16의 이행강화 방안 및 지식확산에 필요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SDG16의 실현 방안에 대한 입장은 SDG16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문화·진화하고 있으나, 본 연구진은 SDG16의 세부목표를 평화(Peace), 인권(Human Rights),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의 세 가지 주제에 따라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II. SDG16 이행을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과 논의 동향

1.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가. SDG16 개념, 목표, 지표 논의 동향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거버넌스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 및 제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SDGs의 목표 16에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개발 의제로 간주하였다(김수진, 2015). SDGs의 세부 목표는 UN이 지향하는 5대 가치(5Ps)인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구성되어 있다. 5Ps의 관점에서 SDG16은 그 자체로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일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타 SDGs 목표와 비교하여 SDG16은 가장 많은 세부목표와 지표를 두고 있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SDG16을 실질적이고 전환적(Transformative)인 목표로 만들기 위해 다자 및 양자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목표에 대한 12개의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목표를 설명하는 언어의 표현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목표16 내 많은 세부목표들이 ‘굿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화’ 관련 세부목표의 수가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DG16은 본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방안과 이행성과를 측정할 방안이 세부목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SDG16의 대두와 함께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으며,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 중에서도 Pathfinders는 특히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로써 SDG16의 핵심개념인 평화, 정의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국제사회의 PHD 논의 동향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왔으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SDG16 의제 중 평화는 평화구축(Peace-Building) 및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에 관한 것으로, UN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가 주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논의해왔던 평화유지(Peacekeeping)나 평화조성(Peacemaking)과는 달리 평화구축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갈등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변화를 추진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폭력적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수많은 개입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기존의 평화구축 프레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지속적 평화’의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지속적 평화는 기존의 평화구축 개념이 분쟁 이후의 상황에 치중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적극적 평화를 위한 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지속적 평화는 분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등 주기(Conflict Cycle)의 모든 지점에서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장기적 요구를 고려한다.

인권은 인권기반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을 통한 인권 실현으로 연결되며, UNOHCHR, 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HRC) 등에서 주도하고 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인권과 개발의 협력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된 이후 UN은 인권기반 접근에 대한 공통의 이해(UN Common Understanding on the Rights-Based Approach, 2003)'를 통해 인권관련 협력을 체계화하였으며 UN의 개발관련 국가별 활동에 인권을 주류화 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UN은 2009년부터 인권 주류화 메커니즘을 설치하여 UN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인권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동시에 UN은 인권원칙과 가이드라인은 물론 지표 및 매트릭스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권기반 접근의 사업 적용방식을 표준화 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형성 단계에서부터 인권기반 접근을 주류화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에서의 인권관련 제도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과중심 논의가 강조되고 인권 제도화의 부작용 등이 비판을 받으면서 UN의 핵심논의에서 잠시 주춤했다 최근 SDGs 논의에서 평화, 인권, 민주화 등의 논의가 연계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Leaving No One Behind'의 개념을 통해 불평등 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개발 의제에 반영하고자 하며, 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rg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제개발법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DLO) 등에서 주도하고 있다. 과거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민주주의 지원'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제협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협력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올바른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와 더불어 반세기에 걸친 국제개발 협력의 경험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는 매년 민주주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직접 관할하는 UN민주주의기금(UN Democracy Fund, UNDEF)을 탄생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국제협력 분야에서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 SDG16과 PHD 접근의 재구성

SDG16의 이행방안에 대한 입장은 SDG16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는가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SDGs

목표의 전환적(Transformative)이고 개혁적인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SDG16이 다른 목표와 연계되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SDG16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PHD 접근법을 중심으로 SDGs의 세부목표를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특히 SDG16이 타 목표와 연계된 목표임을 고려하여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하위에 핵심(Core)과 연계(SDG16+)목표로 구분하였다.

2. 국내 주요 논의 현황

가. 정책방향

평화의 측면에서 한국은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분단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은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력체인 ‘CoD’의 운영 이사회 이사국이자 2위 공여국으로서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창설된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 와 UN민주주의기금(UN Democracy Fund)을 통해 신생민주주의 정착 지원 등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나.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의 SDG16

SDG16에 대한 국내 개발협력계의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2017년 11월 이미경 KOICA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에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핵심가치 구현 ODA’를 실현해나갈 것을 선언하면서부터이다. KOICA는 정부 지침 하에 SDGs의 달성을 위한 국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 장기적 국익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SDG16에 관한 국내 논의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올해 발표된 평가연구

(곽재성 외, 2017)에 의하면 KOICA는 「KOICA 중장기 경영전략(2017-2021)」이나 「KOICA SDGs 전략」을 통해 SDGs 달성을 기여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SDGs를 기준 사업에 연계하는 정도로 접근하고 있어, SDGs의 가치적인 측면인 인권 및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Leaving No One Behind’ 원칙 달성을 위해 특화된 전략 및 방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정책과 사회적 담론을 발전시켜온 것은 분명하나,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협력 영역과의 정책일관성을 이루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지지기반이 국내정책과 대외정책 간의 괴리를 줄여나갈 만큼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III. 주요 공여국의 SDG16 이행 현황 사례

1. 스웨덴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

가. 스웨덴의 SDG16 정책과 전략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국회에서 채택한 국제개발협력 기본 정책 문서인 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PGD)를 근간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quitable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을 범정부적 차원의 국제개발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 할 점은 스웨덴 정부가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신장에 대해 SDGs가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 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은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개발을 위해서는 인간 안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 또한 권리 및 빈곤층 중심 접근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스웨덴은 이러한 관점을 국제개발협력 목표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분쟁 국가들을 지원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과 1990년대부터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분쟁 예방 및 포괄적 평화를 설정한 것이다.

스웨덴은 1999년 발표한 정책문서 Swedish Action Plan에서 Sida가 분쟁과 갈등 분석에 기초한 총체적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을 시발점으로,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 및 전략

문서를 통해 꾸준히 평화와 인간안보, 분쟁 예방과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정책화를 시도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Strategy for Sustainable Peace 2017-2022를 통해 무장 분쟁 방지, 평화 구축과 국가 형성, 인간 안보의 총체적 역량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분야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권리에 기반한 관점과 빈곤의 다면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과 실행 전략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이다.

스웨덴 정부는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는 동일한 정책과 전략 내에서 일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사업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증진,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제도와 절차 강화, △민주주의적 요소 증진과 강화의 3가지 영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나. 스웨덴의 SDG16 사업수행체계

Sida는 최근 갈등 관점과 평화 및 안보 분야 지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돋기 위해 Peace and Conflict Tool Box(2017)를 만들어 Sida의 갈등 관리 및 평화 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선도적 역할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도구 상자는 평화와 관련된 용어, 정의, 기술적 정보와 함께 사업 수행 단계에서 갈등 민감성 관점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Sida는 또한 2016년 채택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통합된 갈등 관점을 적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시민사회의 평화 및 안보 분야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Sida는 HRBA를 권리 중심, 빈곤층 중심, 성평등, 갈등, 환경 및 기후 관점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분야로 인권과 동일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사업수행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인권이 권리 관점과 인권기반접근법을 통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근간이 되는 주류화 원칙이자 사업 분야라면, 민주적 거버넌스는 인권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체제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2. 독일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

가. 독일의 SDG16 정책과 전략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이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오늘날 독일은 평화 및 안전보장에 있어 직접 지원

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정부는 개발협력백서를 통해 범정부차원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SDGs의 정신과 목표를 실현하며, 2017년 SDGs 2030 의제 실현을 위한 5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현재 독일은 별도의 SDG16 전략을 마련할 계획은 아니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화를 통해 2018~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개혁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 개발협력 주무기관인 BMZ는 PHD와 관련하여 꾸준히 발전시켜 온 여러 정책 문서를 통해 분쟁 상황에서 따라야 할 행동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독일은 인권전략을 개발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침뿐만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꾸준히 시도해온 독일의 인권기반접근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착화되고 구체적인 지침이 발간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본 정책, 전략 및 지침에 근거하여 BMZ는 각 시행기관의 인권전략 수행을 평가하며, 시민사회는 자국 ODA의 인권적 접근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사후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은 또한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협력국의 시민사회와 인권 구조 역량을 구축하고, 대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한다. 독일의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정책은 인권증진 분야와 케를 같이 하고 있으며, 독일정부는 양자협력을 위한 인권·젠더 가이드라인에 인권주류화 도구 및 인권점검 도구 등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 독일의 SDG16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BMZ 전략 문서(4/2013e)인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는 KfW, DEG, GIZ, 시민 사회,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였는데, 이는 인권, 아동과 여성의 권리, 젠더, 농촌 개발, 반부패, 청렴(Integrity), 빈곤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BMZ는 평화를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Peace and Conflict Assessment)를 개발함으로써 갈등, 취약성, 폭력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듈 형식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어떠한 고정된 연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과 단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독일정부는 시민사회 평화프로그램(Civil Peace Service, CPS)을 운영하며 평화, 인권, 개발 전문 기관 및 단체들을 지원한다. CPS를 통해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비폭력 분쟁 해결을

목표로 협력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폭력적인 분쟁예방, 폭력 감소,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3대 세부목표로 선정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인권전략인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는 개발협력정책에 있어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을 명시한 정책으로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근간이 된다. 독일은 또한 일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Do no harm 지침을 분야별로 제시하여 인권주류화를 실현하며, 모든 사업에 주류화/대상적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곽재성 외, 2017).

민주적 거버넌스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독일 개발협력의 기본적 가치로서 모든 사업에 내재화 주류화되고 있다. 동시에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민주적 거버넌스를 협력 우선분야로 지정하고 기술협력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제공하는 대상화 전략도 병행한다.

3. 요약 및 시사점

스웨덴과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PHD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법적, 정책적 기반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해외 공관에서 정책적, 외교적 의제로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PHD 현장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스웨덴과 독일 모두 부처-원조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다층위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자 및 지역협력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정책대화에 참여하고, 원조기관은 이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원조기관 차원의 다양한 양자 기관 및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대화와 협력을 리딩해야 한다.

셋째, 스웨덴과 독일이 개발하고 적용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BMZ 및 스웨덴 정부의 인권주류화 도구(Instruments) 등을 참고 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주류화차원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해야 한다.

넷째, 스웨덴과 독일이 강조하고 있는 해외국가동향분석 혹은 국가별 협력전략에 인권상황, 평화 및 분쟁 상황, 해당국가의 거버넌스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로 독일과 스웨덴이 수행하고 있는 갈등 분석, 갈등 민감성 분석과 모니터링, 위기 사전평가 및 관리 도구 등을 단계적으로 대표 분야에 적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대표 프로그램을 차수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섯째,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 지지그룹과 이를 국제개발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실천할 주축그룹(Like-Minded Groups) 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웨덴과 독일은 공동적으로 부처 및 원조기관은 이러한 지지그룹들과 공동연구 수행, 가이드라인 수립, 독립평가, 교육을 참여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 가치가 개발 협력 프로그램 체계에서 실현이 되도록 사전에 예산과 노력을 배분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IV. KOICA의 SDG16 이행 현황과 이행강화 방안

1. KOICA의 SDG16 관련 전략과 지침 수립 현황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KOICA는 SDGs 달성을 위해 KOICA의 지원 분야들과 SDGs 각 목표들을 연계한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을 수립하였다. SDG16은 분야별 중기전략 내에서 공공행정, 보건, 성평등 총 3개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SDG16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공공행정으로써 SDG16이 포괄하고 있는 평화, 포괄적 사회, 폭력예방과 관리 등의 세부 주제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SDG16 이행을 위한 통합적 지침은 부재한 상태라고 평가된다.

KOICA는 SDG16이 SDGs 달성을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목표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SDG16과 현재 중기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 분야들과의 연계 확장 가능성 및 범분야적 적용 방안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SDG16의 비전 실현에 대한 KOICA의 의지는 KOICA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KOICA 10대 혁신과제(2018.2.2.)', 이사장의 취임사와 지난 1월에 열린 2018 BuDF(1/22~25, 부산)에 참석한 이사장의 기조연설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 KOICA의 SDG16 세부 분야별(PHD) 사업 운영 현황

SDG16의 주요 주제인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한 KOICA의 사업운영 현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KOICA의 SDG16 이행 강화를 위해 사업 측면에서 어떠한 보완노력을 해 나가야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OICA 기준 사업 분류를 위한 「사업현황 분류 기준 및 정의서」와, KOICA 기준 사업 분류 작업뿐 아니라 향후 SDG16의 주제별 사업 발굴 시에도 참조 가능한 「주제별 사업 분류 기준 및 정의서」를 도출하였다.

가. ‘SDG16’ 주제별 KOICA 사업 분류 기준 및 정의서 도출 방법론

SDG16에 해당하는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3개 주제별(Thematic)로 세부 사업 카테고리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SDG16+에 해당하는 36개 SDGs 세부목표(Targets)와 이에 해당하는 세부지표군(Indicators)을 활용하였다. 이는 SDGs 전체에서 범분야 이슈로서 고려되는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이슈들을 살펴볼 경우 단순히 SDG16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바, SDGs 전체에 대한 SDG16의 주류화 반영을 위한 노력 방안의 일환인 SDG16+로 분석범위를 확대함을 의미한다.

또한 SDGs를 바탕으로 각 주제별 세부 분류 카테고리를 확정한 것을 바탕으로 세부 정의서를 도출하기 위해 ‘OECD 원조목적코드별 CRS분류안’을 함께 참조한다. 현재 KOICA 내부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해 SDGs 목표별 OECD 원조목적코드별 분류 합의안이 존재하는 바, 동 자료를 활용하여 SDG16에 해당하는 CRS코드를 비롯해 SDG16 주제별 내용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코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분석 결과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2개년도 5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1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카테고리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분류대상 사업의 사업명,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목적 가운데 정의서가 정의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SDG16 관련 사업이라고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의서 상의 카테고리 별로 묶어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한 원칙과 정의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KOICA의 SDG16 사업은 민주적 거버넌스(85/115개, 74%), 인권(17/115개, 15%)과 평화(13/116개, 11%)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총 17개의 카테고리(평화 5개, 인권 2개, 민주적 거버넌스 10개) 가운데 특정 3개 카테고리(D3 50개, H2 17개, D6 16개)로의 쏠림현상이 돋보였다.

KOICA의 PHD 사업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전자정부 결합형 사업이 대부분이고, 2)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추진이 여의치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분야가 많으며, 3)사업영역은 해당 범주 내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사업개발 당시 SDG16 패러다임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의 PHD 컨셉을 가지고 개발되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다.

3. KOICA의 SDG16 대상화 이행강화 방안

KOICA는 SDG16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즉시 시행 가능한 영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제도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각 분야에서 적절한 방식의 사업을 우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소 분절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인 SDG16 대상화 전략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킨 다중적 융합형 사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화는 SDG16의 핵심가치의 하나이자 범분야 가치이면서 동시에 SDG 이행의 전제조건이자 결과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평화의 가치는 담론, 정책, 전략, 접근법 및 사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실현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PHD와 섹터, 지역적 특수성 등이 결합된 다중성의 넥서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는 사업 추진 역량이 중요하며, 이는 인지제고 수준을 넘어 특히 KOICA 담당직원과 사업수행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KOICA는 난민(평화), 장애인(인권), 시민(민주주의)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시그니처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형 지원을 우선 확대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표에 따라 대상보다는 목적 지향적으로 패러다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적 접근에 있어 ‘대상’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이를 강조하되 중장기적으로 목적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수준을 고도화 시키는 전략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화 전략은 우선 안정적인 정치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 협력국과의 사업을 부패방지,

행정효율화, 정보화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다. 안정국의 경우 정치적 리스크도 덜하고, 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하기 때문에 PHD 사업이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파트너이다. 나아가 취약국을 대상으로 한 법·제도 구축사업, 취약계층 권리보호, 치안역량강화 등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DG16 대상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가치와 철학, 우리 국민, 협력국 이해 관계자, 국제사회 간의 넥서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대 구축을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캠페인 및 국제행사 개최, 연수 및 교육 등 우선 인지제고 활동으로부터 시작함이 바람직하다.

앞서 제시한 전략에 기초하여 PHD 각각의 사업 분류에 따라 KOICA가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영역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영역을 구분하였으며 다자 기구와 파트너링이 필요한 경우 주요 기구(비정부기구 포함)를 주요 파트너로 예시하였다.

4. KOICA의 SDG16 주류화 이행강화 방안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주류화는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과제다. 물론 KOICA에서는 성인지, 장애 접근을 중심으로 외부적 수요와 내부적 합의를 도출, 인권 영역을 중심으로 주류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범분야가 난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실적으로 KOICA에서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바탕하여 보면, PHD 주류화의 경우 단계별 접근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이 될 것이다.

가. 제도개선을 통한 주류화

PHD 주류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토대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KOICA PHD 사업의 근간이 되는 상위부처의 법적,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 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연차별계획 등에 PHD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도록 명시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KOICA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인지제고를 통한 주류화

PHD의 주류화는 KOICA의 PHD 내재화를 의미한다. 즉, KOICA의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 PHD 인식 수준이 높아져 모든 사업 내용 및 사업의 제반 단계에 PHD가 고려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에 도달하려면 PHD 원칙에 대한 직원, 특히 사업 담당자의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완벽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인식제고, 파일럿 사업의 실행과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꾸준한 교육훈련과 제안 심사 시의 고려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해 사업 수행기관, 전문가에 대한 인지제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레벨에서 PHD 인식도를 높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협력국 파트너 공무원, 사업 수행그룹, 그리고 수혜그룹(인권의 경우 권리보유자)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인권적 접근이나 평화/갈등 감수성 접근을 드러내놓고 추진하기 어려울 때는 담당자나 수행자의 T.P.O.(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상황)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 사업 시행 절차의 주류화

우선 프로젝트 주기의 단계별 프로세스 상에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시행하되, 초기에는 KOICA에서 비교적 익숙한 인권-민주주의 관련 사항부터 시행하고, 난이도가 있는 평화-갈등감수성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시행을 고려한다.

인권-민주주의 주류화의 경우 각 단계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전략 단계(Programming)의 시작점은 CPS 상에 HD 주류화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책단계에서 제시된 기본원칙(Guiding Principle)을 국별 CPS 수립 시 반영한다. (2)사업형성 및 발굴 단계(Identification)에서는 각 사업 컨셉별로 HD 기본 원칙을 숙지하여 진행한다. 특히 각 사업이 Do no harm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한다. (3)사업준비 단계(Formulation)에서는 사전조사 및 기획조사 시 평등, 책무성 등의 기본원칙을 협력국 현실에 맞게 분석하고 적용하는 작업, 사업심사 시 주류화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4)조달(Procurement) 단계에서는 HD를 범분야로서 고려하도록 잠재적 수행자에게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각 분야 전문성은 물론 해당 지역과 범분야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수행자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사업수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PHD 원칙에 입각한 수행이 이루어 지도록 다각도로 관리-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6)모니터링 평가(M&E) 단계에서는 중간 점검 시 HD 영향력을 파악하고, HD 원칙을 고려한 평가 매트릭스를 적용한다.

중장기적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1)전략 단계(Programming)에서 CPS 상에 평화/갈등 감수성을 중심으로 중기협력전략을 구성한다. (2)사업형성 및 발굴 단계

(Identification)에서 평화에 대한 협력국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3)사업준비 단계 (Formulation)에선 사전조사 및 기획조사 시 평화 접근에 대한 분석 적용 작업, 사업심사 시 평화마커 적용 확인 등이 필요하다. 실시계획 수립 시엔 평화/갈등 감수성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 계획에 넣어야 한다. 분리데이터 수집을 위한 준비도 시행한다. (4)조달(Procurement) 단계에선 평화/갈등 감수성을 범분야로서 고려하도록 안내하며, 기술평가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5)사업수행(Implementation) 단계에선 평화/갈등 감수성 원칙에 입각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6)모니터링 평가(M&E) 단계에선 중간점검 시 평화/갈등 감수성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평가 매트릭스를 적용한다.

V. 결론

1. 가치지향적 접근 Value Proposition

SDG16을 위시하여 SDGs와 지속가능발전 의제 전반에 내포되어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및 평화와 포용성 가치를 내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전 체계 내에 관련 규범 및 담론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숙지, 그리고 적절한 표출이 필요하다. 동시에 KOICA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며 국제개발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PHD 가치를 실천할 주축그룹 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 정치 외교적 지원 Politico-Diplomatic Support

모든 개발협력행위는 정치-외교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PHD는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고도의 정치행위로 협력국에서 받아들일 소지가 있고 실제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의 정치 외교목표를 구현할 수도 있다. 이럴수록 정부 차원에서 국제개발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책적 근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외교라인과 개발협력라인의 일치, 특히 외교부 내에서 개발협력과 정무, 공공외교, 지역, 인도 지원 및 다자외교 간의 조정과 협력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외교부와 KOICA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정치적-외교적 기반조성은 정책 일관성의 프레임 내에서 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프로그램형 접근 Programming

PHD 사업은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며 기준 개발협력 섹터 사업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당연히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 발굴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경우 단일 컨셉을 중심으로 한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사 컨셉의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여국 기반 프로그램으로는 대상 중심, 섹터의 아이템 중심, 지역 중심 등이 가능하다.

4. 지역중심 접근 Area Centered Approach

개발협력에 있어 협력국 중심 사고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프로젝트가 섹터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SDG16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즉, 섹터 중심 지원 체계에서 탈피하여 목표 지향적 지원체계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PHD 자체는 모두 특수한 협력국의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류화도 어떤 분야와 섹터이든 협력국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 및 개도국 권역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채용, 그동안 지역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온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전문가-이해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기구를 통한 삼각협력 또는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5. 시민사회와의 연대 Civil Society

KOICA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지지그룹과 인력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전문가그룹-시민사회 대표를 포함한 SDG16 TF 구축, 프로그램 및 방법론 차원의 공동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국제연수 및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난이도가 높은 PHD 접근 시 사업수행의 보완재가 아니라 네지형 촉매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일반 양자 사업의 조달절차를 통해 수행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이나 정치적 민감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에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후발공여국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PHD는 앞으로 집중할 만한 분야, 그리고 특화를 고려해봄직한 영역이다. 그 이유를 다시 되새겨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토대 위에 최근 이룩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남북화해를 통해 평화 구축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업적을 달성하였다. 둘째, 선진공여국은 모두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여러 국가가 식민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테러와의 전쟁 등을 통해 PHD 자체를 위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에겐 이러한 원죄가 상대적으로 없다. 다만 ‘상대적’이라 함은 월남전 참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이슈가 될 만한 사안으로부터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셋째, ICT-전자정부 등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SDG16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의 브랜드파워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SDG16을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구현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또한 시의적절한 작업이라 하겠다.

Abstract

I . Introduction

1. Outline of Research

United Nation (UN)'s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resented 17 goals that all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should achieve. Among them, SDG16 focuses on "a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ing access to justice for all, building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rnational response to political inequality.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emphasized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such as human rights,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the vulnerable etc.) as a key policy objective. Meanwhil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declared to realize universal values such as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hereafter, PHD) in its top ten innovation tasks and decided to expand the projects with the aim of this. In addition, Korea naturally established itself as a leading country of peace, humanrights, and democracy which are the crucial component of SDG16 thanks to the experience of modern history—candle-light revolution and (re)democratization—and th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towards peaceful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research first introduce the concept of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democratic governance) in SDG16, and analyzes international trends the evolution of the application of SDG16 in the resp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of leading donors. Then the research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targeting and mainstreaming SDG16 in KOICA'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lated topics such as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democratic governance), rather than the detailed thematic study of SDG16. Based on this,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concret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strategy for KOICA. Three specific objectives are set to achieve this namely: i) to summarize the major discussion on SDG16-related and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democratic governance) research; ii) to analyze other donors' environment and status of implementing SDG16; and iii) to suggest ways to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G16 in the future for KOICA at a strategic level.

2. Definition of Key Concepts

The official name of SDG16, as defined by the UN are i) a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all levels, providing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ing effective, responsi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ii)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 and iii) peace (Lee, 2018). Since then, SDG16+ has taken the concept that SDG16 itself should be considered beyond achieving SDG16 itself based on its relevance to seven other goals that are highly relevant. In this paper, SDG16+ is not covered as a single concept, but as a broader concept to strengthen SDG16's implementation and knowledge sharing.

The position on implementing SDG16 is grounded on various perspectives on how it is understood and conceptualized. Although this conceptualization has developed in many directions, this paper has refined the detailed goals of SDG16 according to three themes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II.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and Trends for Implementation of SDG16

1. Major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 SDG16 Concepts, Goals, and Indicato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ed on UN considers the importance of a peaceful society, the rule of law, the inclusive approach to governance, and institution building as a development agenda by establishing it in SDG16 (Kim, 2015). The goals of the SDGs are composed of the five values (5Ps) that the UN is aiming for: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and Partn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5Ps, SDG16 is gaining its importance as it is not only a goal to be achieved, but also a means to achieve other goals.

Compared to other SDGs goals, SDG16 has the most number of targets and indicators because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encies have paid much attention to make SDG16 a practical and transformative goal. However, the 12 targets describe the goal in a vague and abstract way, and they mostly focus on 'good governance' which leads to significantly less number of targets for 'peace.' Therefore, SDG16 leaves a regret in that the methods to measure the result and implementation plan on how to fulfill this goal was not specifically presented in the targets.

Along with the rise of SDG16,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ies have launched a variety of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are actively leading discussions on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Among them, Pathfinders is particularly noteworthy for its efforts to make the core concept of SDG16—peace, justice, and inclusive society—practical at the national level.

2) PHD Trends in International Aren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UN, has continuously developed issues related to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It is introducing and developing new discussions in tune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Among the SDG16 agenda, **peace** refers to the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led by UN Peace-Building Commission. Unlike peacekeeping or peacemaking, which has been discussed previously as a way of resolving conflicts, peace-building is a comprehensive activity that promotes social,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s in order to transform structural conflicts in society into a longer-term, sustainable environment.

Nonetheless, violent conflicts have repeatedly occurred over the world in the past dec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ced criticisms that its interventions are ineffective, resulting in devaluation of the existing frame of peace-building. Under this circumstan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peace’ is newly introduced. Sustainable peace has been pro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oncept of peacebuilding that concentrate on the post-conflict situation and to take a more effective and consistent approach to active peace. Sustainable peace takes into account all the long-term needs to create an inclusive society at all points in the conflict cycle, starting from identifying elements contributing to a peaceful society, not from the conflicts.

Human rights are linked to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led by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OHCHR) a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HRC). Since the new vision of emphasizing the coopera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1993, UN has developed “UN Common Understanding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2003)” to help mainstream human rights into UN-related n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UN has set up a human rights mainstreaming mechanism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perspectives in its major policies and projects since 2009. At the same time, UN has standardized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approach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diverse way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providing indicators and matrices as well as human rights principles and guidelines. As a result, HRBA started to be mainstreamed from the project identification phas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in development’ has been slowed down from UN’s core debate, with the emphasis on result-based discussions around the globe and the side effects of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But recently, it is reexamined as

linkages between SDGs and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are discussed.

Democratic governance aims to incorporate inequality issues and consideration of vulnerable groups into the development agenda through the concept of ‘Leaving no one behind.’ The major leading groups on the issue are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DLO) and so on. ‘Democracy support’, which has been centered on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in the past, is now becoming a paradig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mocracy.’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partner countries through mere support and the fact that prioritization of proper governance and democracy is confirmed by the experience of half a centu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cademic evidence. As a result,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General Assembly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democratize and institutionalize democrac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birth of UN Democracy Fund (UNDEF), which adopts and directly controls the resolution on democracy annually.

3) Reconstruction of SDG16 and PHD Approach

The position on SDG16’s implementation strategy is based on different perspectives on how SDG16 is understood and conceptualized. The common emphasis of all of these perspectives is that SDG16 needs to be explored by being associated with other goals to realize the transformative and reformative agenda of SDGs goals. Based on various perspectives of understanding SDG16, this study sought to effectively reconfigure the SDGs’ goals with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focusing on the PHD approach.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SDG16 is linked to other goals, it is divided into core and linked (SDG16+) targets unde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2. Major Discussions in the Domestic Arena

1) Policy Direction

In terms of peace, Korea focuses primarily on resolving conflicts that arise in the context of the division with North Korea. Specifically, Korea paid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reats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made intensive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basic position is to build a peaceful Korean peninsula with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Through this, the goal is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ultimately to pursue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government is taking the lead in

creating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Asia Peace Cooperation Platform” in consideration of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Korea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e democracy around the world. Especially, Korea is leading the democratic community as a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and the second largest donor of the CoD, the most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body in the field of democracy. By participating in the Bali Democracy Forum, established in 2008 initiated by Indonesia, and the UN Democracy Fund, Korea promotes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e.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democracy).

2) Korea's SDG16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urning point to starting the discussion of the SDG16 on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Group was the inaugural address of the new president of KOICA in November 2017, declaring ‘ODA to realize core value of peace, democracy,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KOIC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 SDGs under the governmental guidelines and is seeking to pursue long-term national interests by increasing Korea’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ubstantial contributions.

However, the domestic discussion on SDG16 was generally inadequate. According to an evaluation (Kwak et al., 2017) published this year, KOICA has made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SDGs through Mid- and Long-term Strategies (2017–2021) and SDGs Strategy.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area specific strategy and direction for achieving the ‘Leaving No One Behind’ principle that considers human rights and the vulnerable, which is a valuable aspect of SDGs. Overall, it is clear that Korea has developed policies and social discourses related to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efforts to achieve policy coherence with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rea on an international level are relatively inadequat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ublic consensus, social consensus, and support bas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ed on ODA are sufficient to reduce the gap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II. Case Study of Major Donors' SDG16 Implementation

1. Sweden's SDG16 Policy and Program

1) Sweden's SDG16 Policy and Strategy

The Swedish government conceptualizes the main goal of its aid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to create a better life prerequisite for the poor and oppressed.’ In addition, ‘equitable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became the pan-governmental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 founded on the “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 ado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03. Particularly, the Swedish government has set a higher target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than the SDGs.

Primarily, Swede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eks human security for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also seen as a challenge to be addressed through a right- and poverty-based approach. Sweden has made a number of efforts to include this perspective in it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Most notable among them is the inclusion of disputed countries in the target countries and setting the prevention of conflict and inclusive peace in its priorities of foreign policy since the 1990s.

Initiated from “Swedish Action Plan”, published in 1999, Sweden called for Sida to take a holistic approach based on dispute and conflict analysis. With that, it steadily advocated peace and security,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through various policy and strategic documents. Sweden recently presented concret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peace-building, national formation and human security through “Strategy for Sustainable Peace 2017–2022.” The important point is not that it originated from a sectoral approach, but it also has developed policy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round rights-based perspectives and multiple aspects of poverty.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reated consistently within the same policies and strategies, with the view that the power structure must be enhanced through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poverty. Swedish government's human rights and democratic support projects have given priority to three areas: enhanc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strengthening institutions and procedures for democratic and rule of law principles, and promoting and strengthening democratic elements.

2) Sweden's SDG16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Sida recently developed “Peace and Conflict Tool Box (2017)” to facilita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flict, and peace and security. It shared Sida's expertise and leadership role in peace and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toolbox provides guidance on how and when to apply the conflict-sensitive perspective at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along with terminology, definition,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peace. Sida also stipulates through the policy framework adopted in 2016 that an integrated view of conflict should be applied in al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Meanwhile, the Swedish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programs for peace and security in civil society.

Sida uses HRBA as a tool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rights-based, poverty-centered, gender equality, conflict, environmental and climate perspective. Democratic governance, as a 'democracy' sector, is applied within the same policy framework and project execution system as human rights. If human rights is considered as a mainstreaming principle which is a basis of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a rights perspective and HRBA and a sectoral issue, democratic governance is a key element in realizing democracy, the system that can best implement human rights principles.

2. Germany's SDG16 Policy and Program

1) Germany's SDG16 Policy and Strategy

Germany, caused World War II and defeated, actively utilized ODA in the process of return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the country is regarded as a leader in direct support for peace and security. Germ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SDGs' spiritual goals as part of the government-wide development policy through the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lso, Germany announced five roadmap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2030 agenda in 2017. Currently, Germany is not planning to set up a separate SDG16 strategy but plans to implement policy, guidelines and program reforms gradually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of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2018–2020.

BMZ, a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 has been consistently developing various policy documents in relation to PHDs such as presenting guidelines on actions to be followed in disputed situations. Germany defines human rights strategies as legally binding obligations as well as economic guidelines for development policies. The German human rights-based approach, which has been steadily experimented since the 1990s, was made into policy and specific guidelines were published and applied since the early 2000s. Based on these policies, strategies, and guidelines, BMZ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strategies of each implementing agency. Civil society actively monitors the human rights approach of their own nation's ODA and conducts pre- and post-monitoring activities on human rights violations.

Germany also focuses on building civil society, structuring human rights, and enhancing communication capacity in partner countries through numerous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Germany's democratic governance policy is in line with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motion.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human rights monitoring tools in the human rights and gender guidelines for bilateral cooperation.

2) Germany's SDG16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BMZ Strategic Document (4/2013e),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 was intended to provide guidelines for KfW, DEG, GIZ, civil society and private sector projects. It has closely connected to human rights, rights of children and women, rural development, anti-corruption, integrity and poverty strategies.

In addition, BMZ has developed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peace, which provides a modular framework that can be applied in situations of conflict, vulnerability and violence. The four elements do not have any fixed continuity that makes them possible to be used independently. Also, they can be applied flexibly according to specific situation, phase, and demand.

German government operates the Civil Peace Service (CPS) to support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All of the projects undertaken through the CPS are aimed at resolving nonviolent disputes with the goal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partner countries to contribute to violent conflict prevention, reduction of violence, and long-term peace-building.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 sets out legally binding obligations in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s the basis of guidelines for all implementing organizations. Germany is also realizing the mainstreaming of human rights by presenting the minimum ‘do no harm’ guidelines in each sector that can be applied to the general projects. However, checklists for general projects are suggested since not all projects can be mainstreamed or targeted (Kwak et al., 2017).

Democratic governance, like human rights, is the foundational value of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s being mainstreamed in all projects. At the same time, it is designated as a priority area for cooperation and runs targeting strategy which concentrates on technic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s of the partner countries.

3. Summary and Implic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ies of policies and programs in Sweden and German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gal and policy basis of relevant minist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HD is crucial. German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peace as a policy and diplomatic agenda in foreign missions and emphasizes diplomatic support for PHD's field activities.

Second, both Sweden and Germany emphasize multi-level cooperation centered on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by separating the roles of ministries and aid agenci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ust participate in the policy dialogue on the possibility and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peace in multilateral and regional cooperation. While aid agencies identify and implement representative programs for them and lead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different bilateral/private organizations.

Third, gradual introduction of various policy and program tools developed and applied by Sweden and Germany is possible. In reference to Germany's BMZ, and the Swedish government's human rights mainstreaming instrument, the humanrights-based approach can be more strategically applied and practiced.

Four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human rights situation, peace and conflict situation, and governance analysis in the analysis of overseas trends or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as stressed by Sweden and German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apply conflict analysis, conflict-sensitivity analysis and monitoring, pre-crisis assessment and management tool in phases while preparing to initiate the related representative program.

Fifth, other donors and aid agencies have been playing an active role in fostering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upport groups and like-minded groups to actually practice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s. In Sweden and Germany, the ministries and aid agencies jointly carry out joint research, guideline establishment, independent evaluation, and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these support groups. It is impressive that they invest their budget and effort in advance to realize the relevant value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system.

IV. Status of KOICA's Implementation of SDG16 and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1. Status of KOICA's SDG16 Strategies and Guidelines

KOICA,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KOICA Mid-term Sectoral Strategy (2016–2020)' by connecting KOICA's supporting areas and each goal of SDG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capability of SDGs. SDG16 is linked to three areas, governance, health and gender equality. However, SDG16 focuses on the governance, which does not represent the detailed topics of SDG16 such as peace, inclusive society, and violence prevention and management. It is thus estimated that there is no comprehensive guide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16 at present.

KOICA confirms that SDG16 is both a tool and a goal to achieve SDGs. KOICA identifies the need for SDG16 to expand its linkage with other areas presented in the current mid-term strategy and cross-sectoral application. KOICA's commitment to the realization of the vision of SDG16 could be clearly seen on the inaugural address of the KOICA Innovation Committee (KOICA's Innovation Road Map (February 22, 2018)) and in the keynote address of the president at the 2018 BuDF (January 22~25, Busan).

2. KOICA's SDG16 Sub-Sector (PHD) Project Operation Status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Criteria and Definitions of Project Status" for KOICA's existing project classification and "Project Classification Criteria and Definitions" for that could be referenced not only for KOICA existing project classification but also for future SDG16's thematic project identification for KOICA were derived.

1) Methodology for Deriving KOICA's Project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by 'SDG16'

In order to establish detailed sub-sector project category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three themes of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corresponding to SDG16, 36 SDGs targets for SDG16+ and their indicators were used. It means the scope of analysis is expanded from SDG16 to SDG16+ in order to reflect the effort to consider SDG16 mainstreaming.

Also, refer to "OECD Aid Code of Objectives for CRS Classification" in order to derive the detailed definitions based on SDGs with detailed classification categories for each theme. Currently, there is an agreement for each OECD CRS code by the SDGs goals in KOICA. Therefore, these codes are us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codes that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SDG16's thematic contents including the CRS code corresponding to SDG16.

2) Result of Analysis

Category reclassification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15 project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7 to the first quarter of 2018, corresponding to five quarters in two years. The projects that can be qualitatively judged to be related to the SDG16—which have elements of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ir title, content, and purpose—are restructured by categories on the ‘Definition.’

As a result of re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ly defined principles and definitions, KOICA’s SDG16 projects are composed into democratic governance (85 out of 115, 74%), human rights (17 out of 115, 15%) and peace (13 out of 116, 11%) from largest to smallest. In total, projects were leaned towards three categories (50 D3 projects, 17 H2 projects, 16 D6 projects) among the 17 categories (5 peace, 2 human rights, 10 democratic governanc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found: i) most of them are e-government included projects, ii) many projects with high difficulty were not implemented, iii) there is no evidence to judge to what extent the project was developed with the PHD concept since SDG16 paradigm did not exist at the time of project formulation (although the scope of the project is included in the category).

3. KOICA’s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argeting SDG16

KOICA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y of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DG16. The area that immediate reflection of reality is ‘the system that allows for the simultaneous growth of democracy and economy’ and it requires first to develop the project in the fields of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is may be relatively fragmented, but it may be the most efficient approach to short-term SDG16 targeting strategy.

In a long-term, it would be possible to design multiple convergence projects combining various factors. In particular, peace has a complex nature as it is one of the core values of SDG16 and a mainstreaming value; and as the precondition and the result for implementation of SDGs. Therefore, the value of peace is realized in multiple dimensions such as discourse, policy, strategy, approach, and project, and requires various approaches. Ultimately, in order to construct a multi-level nexus that combines PHD with sectors and regional distinctiveness, the project implementation capacity that comprehensively measures such factors is vital. It goes beyond the level of improving awareness, this requires the expertise of KOICA staffs and project executing agencies.

KOICA first broadens program-type support focusing on signature projects for specific groups such as refugees (peace), people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and citizens (democracy). However, in the long term, paradigm should be strengthened in a

purpose-oriented manner rather than targe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presented in this study. Nevertheless, as awareness and concerns for the ‘target’ are basically needed in terms of human rights-based approach, it seems to be useful to highlight it in a short-term while strategies to upgrade the level of projects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urpose-oriented manner in a mid- to long-term.

In addition, the targeting strategy can first dynamically work with partner countries with stable political administration system in areas such as anti-corruptio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informatization. Stable countries are the suitable partners to meet Korea’s reality, as PHD project has not yet been advanced, since they have less political risk and project execution is relatively smooth. Furthermore, identification and execution of projects for fragile countries on the legaland institutional system, rights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group of society, and security capacity building and so on.

Finally, nexus among the values, philosophy, citizens, partner country stakeholders, and international society is essential in order for the SDG16 targeting project to settledown. As this takes time and effort to build such a solidarity, it is desirable to initiate activities such as raising awareness activities including hosting campaigns, international events, training, and educatio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strategies, project categories that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or in a short-term, or in a mid- to long-term are classified. Also, major organizations (including NGOs) are suggested as main partners for cooperation with multilateral agencies, if needed.

4. KOICA’s Implementation Strategy for Mainstreaming SDG16

As seen fromthe cases of Sweden and Germany, mainstreaming is a task to be carried out some day. KOICA centers on gender and disability perspective to draw out internal and external consensus while expanding mainstreaming from the humanrights sector. In this process, KOICA must be careful not to require too many cross-sectors and also to practically carry out within KOICA’s capability. With this, the phased approach will be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for PHDmainstreaming.

1) Mainstreaming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A more fundamental basis for PHD mainstreaming is to buil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achieve so, the legal and policy bases of the higher ministries must be strengthened. It is preceded by clarifying the government’s willingness for PHD i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nnual Implementation Plan.”

2) Mainstreaming through Raising Awareness in KOICA and Stakeholders

PHD mainstreaming means KOICA's internalization of PHD. In other words, the level of awareness of PHD in KOICA's organization and staffs is increased that leads to consideration of PHD in all project contents and stages. In order to reach this phase, PHD principles must be recognized and understood by all employees, especially project managers. However, it is practically challenging to pursue a project with all employees and stakeholders fully aware of PH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checklist followed by consistent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conducting pilot projects, and accumulating and sharing experiences.

Similarly,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among project executing agencies and experts through institutional approaches such as steady training and proposal review. Finally, the most important subject to raise PHD awareness at the stakeholder level is partner government officials, project execution groups, and beneficiary groups (rights holders in the case of human rights). However, in some cases when it is difficult to explicitly promote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or peace/conflict sensitivity approach, T.P.O. (time, place, occasion) of the person who is in charg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3) Mainstreaming of the Project Execution Procedures

First of all, it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checklist to be followed in each phase of the project cycle. At the initial stage, KOICA will begin implementing the relatively familiar human rights-democracy related issues, and peace/conflict sensitivity approach will be considered in the mid- to long-term considering its complication.

In the case of **mainstreaming human rights-democracy**, strategy for each stage is as follows. (1) Programming stage should start by mainstreaming HD on the CPS, which reflects the guiding principle presented at the policy stage when establishing the CPS. (2) At the project formation and the identification stage, the basic principles of HD are understood for each project concept. In particular, checking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do not harm principle must take place. (3) In the preparation phase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apply basic principles such as equality and accountability in the preliminary survey and the planning survey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of the partner country and to confirm the mainstreaming of HD in project review. (4) At the procurement stage, it is necessary to guide the potential executing agencies to consider HD as a cross-sector, and to ensure participation of experts who are highly aware on the sector, region, and cross-sector. (5) At the implement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monitor in multi-level to perform based on the PHD principle. (6) In the M&E stage, the influence of HD is assessed at the mid-term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matrix is applied considering the HD principle.

Mid- to long-term **peace/conflict sensitivity mainstreaming** requires (1) Mid-term cooperation strategy centering on peace/conflict sensitivity on the CPS in the programming phase. (2)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among the partner countries is needed for peace in the project formation and identification phase. (3) In the project formulation phas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analysis of the peace approach in the preliminary survey and planning survey and check the application of the peace marker in the project review. When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lan, indicators related to peace/conflict sensitiv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monitoring plan. Preparation is also made for the separated data collection. (4) At the procurement stage, peace/conflict sensitivity should be considered as a cross-sector and invite experts in the field for the technical evaluation. (5) At the implement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at implement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eace/conflict sensitivity. (6) At Monitoring and Evaluation stage (M&E), the influence of peace/conflict sensitivity should be assessed at the mid-term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matrix is applied considering the peace/conflict sensitivity.

V. Conclusion

1. Value Proposition

Endeavoring to internalize the values of human rights, democracy, peace and inclusion contained in SDGs and overall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including SDG16, is required. To this end, there is a need for firm trust,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presentation of relevant norms and discourses within the overall syste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KOICA should lead the paradigm shift and play a leading role in fostering the like-minded groups to implement PHD val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s.

2. Politico-Diplomatic Support

Although al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have politico-diplomatic attributes, PHD is more likely to embrace such goals. Partner countries may take it as a high degree of political actions, and it may realize our government's goal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clear legal and policy grounds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pea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To achieve this, the alignment and coherence of diplomatic lines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lines should be established. Especially,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development cooperation, administration, public diplomacy, regional-humanitarian support, and multilateral diplomacy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ould take precedence. Furthermo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KOICA should have a proper division of roles. Such a politico-diplomatic basis for the government must be completed within the framework of policy coherence.

3. Programming

PHD project is still unfamiliar to us and its difficulty level is way higher than the existing sector projects. It is expected to identify a project. In this case, developing a leading program based on a single concept is essential such as preparing a program that can develop a variety of projects in a similar concept. These donor-based programs can be target-oriented, sector-oriented, and regional-centered.

4. Area Centered Approach

Partner country-centered thinking is very natural in development cooperation, however, the fact that most of the projects are supported sector-wise makes understanding and access to SDG16 difficult. In other words, the goal-oriented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move away from the sector-centered system. Since PHD itself refers to the situation of a specific partner country, mainstreaming must take accoun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ner country in any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ire experts well-versed in individual countries and regions of developing countries, to cooperate with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at have been focusing on training regional experts, and to hold policy meetings with experts and stakeholders. At the same time, triangular cooperation through regional organizations or multi-bilateral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5. Civil Society

In order to support peace, human rights, democracy groups, to train experts, and to identify related program identification, KOICA must establish an expert-civil society representative SDG16 TF, conduct joint research on program and methodology, and provide practical intern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for capacity building. Civil society can play a role as a catalyst, not as a complement to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when PHD approach required a high degree of difficulty.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is pivotal for projects that are difficult to undergo general procurement process or contains political sensitivity.

In conclusion, PHD is an area of focus for future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as a late donor country. First of all, Korea achieved exemplary peace-building through the mature democracy established on the found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Second, other

donors all emphasize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at the same time, many of them have experienced threats to PHD itself through colonial imperialism, World War II, and the waron terrorism. Korea, on the other hand, is relatively less guilty. However, "relative" means that Korea is not completely free from issues such as the Vietnam War participation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foreigners. Third, it is possible to construct brand power of independent domain within SDG16 by selecting and concentrating Korea's comparative advantages such as ICT-E-government. Therefore, the implementationof SDG16 in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is an indispensable and timely work.

I. 서론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United Nations(이하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지구촌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SDGs에서는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 및 사회개발을 기본 목표로 두고, 경제개발 및 지구환경 보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종합적 행동 및 협력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SDGs는 기존의 경제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포용하여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루는 SDG16도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SDGs는 불평등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의 성격이 크다. SDG5는 성 불평등에 관하여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 강화’를, SDG10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하여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한다. 반면, 정치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SDG16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강조한다.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거버넌스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 및 제도 구축에 대한 목표를 SDG16에 설정(김수진, 2015)하고 핵심적인 개념의 틀을 평화, 정의 및 인권, 그리고 제도(민주주의)의 3대 축(Pillar)으로 정의하였다. SDG16의 기본 철학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인종이나 신앙,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며 사회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규범적·개념적 기초에 근거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혁신 중점 과제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역점을 두고 인권, 참여,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조한 바 있고,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10대 혁신 중점과제로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천명하고 이를 목표로 한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현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 구축, 인권 증진, 민주적 가치의 확산 등을 주요 외교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대내외적 정세 변화 덕에 SDG16의 핵심 요소인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국내정치 상황 변화가 대외정책, 특히 개발협력 정책의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현 단계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과 SDG16 간의 일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 오랜 남북 대치 상황의 종식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및 주변 4강의 물리적 대결의 장이었던 한반도는 이제 세계인에게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둘째, 인권 측면에 있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을 비롯한 7개 핵심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인권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한국은 현대 정치에 있어 성숙한 민주주의의 교과서 같은 존재로 국제사회에 부상했다. 오랜 군부독재를 이겨낸 1980년대의 토대위에, 재민주화를 다시 달성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룩한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한 편의 드라마로서 세계인에게 고도로 발전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각인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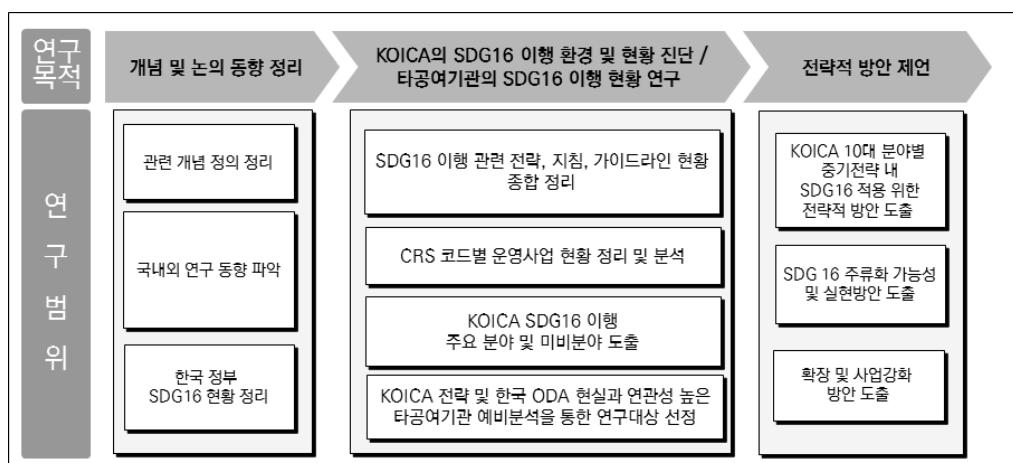
2. 연구의 필요성

SDG16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 및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고 정치적 불평등을 다루는 유일한 개발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핵심적인 목표를 어떻게 이행 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논의는 그동안 활발하지 못했다. ‘KOICA 10대 분야별 중기전략(2006-2020)’에 따르면 SDG16 유관 사업이 KOICA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의 전략상 보완을 위해서는 타 목표대비 SDG16의 국제적 동향 파악과 국내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 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수행 현황을 점검, 향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DG16의 주요 내용인 평화, 인권, 민주주의(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우선 살피고, 국내외 동향 분석과 함께 KOICA의 현 이행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KOICA 중기전략 내에서 SDG16이 보다 범분야적으로 적용되고 보완될 수 있는 적극적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SDG16의 세부 주제별 연구가 아닌 평화, 인권, 민주주의(민주적 거버넌스) 등 관련 주제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가 SDG16 달성을 위하여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세부 목적은, ①국내외 SDG16 관련 연구와 평화, 인권, 민주주의(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②KOICA와 타공여기관의 SDG16 이행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며, ③KOICA의 향후 보다 효과적인 SDG16 이행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림 1]).

[그림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출처: 저자 작성

첫째, SDG16 개념 및 논의 동향 정리를 위하여 SDG16과 SDG16+, 세부 목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의 정의(Definition)를 소개하고, SDG16 관련 국내 연구 현황 및 우리 정부가 수립한 SDG16 관련 전략을 정리하였다. SDG16에 대한 역동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다자 및 양자 기구들의 주요 논의현황을 UN을 중심으로 발전된 논의 흐름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특히, 양자기반의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은 문헌조사 및 해외현지 조사를 실시한 스웨덴과 독일 중심으로 주요 공여국의 SDG16 관련 정책, 전략, 사업수행의 기본체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둘째, KOICA의 SDG16 이행 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타공여기관의 SDG16 이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KOICA의 SDG16 관련 전략 및 지침,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KOICA의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총 2개년도 5개 분기 간의 사업을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의 SDG16 관련 카테고리로 재분류하고, 이를 KOICA의 SDG16 관련 전략현황과 비교분석하여 주요 성과와 미비분야를 도출하였다. 또한 주요 공여국/기관(특히 스웨덴과 독일)의 SDG16 관련 정책과 전략, 원칙 등을 우선 검토하고, SDG16 사업수행체계와 대표사업을 분석하여 KOICA의 전략적 벤치마킹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KOICA의 전략적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의 분류 및 정의를 시도하여 SDG16 대상화 방안을 제시(IV장 3절)하였다. 이는 KOICA가 SDG16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SDG16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KOICA의 전략 및 이행강화 방안을 가치지향적 접근, 정치외교적 지원, 프로그램형 접근, 지역중심 접근,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으로 제시(결론)하였고, SDG16 주류화의 가능성에 대해 기존 공여주체의 사례에 비춘 장단기전략에 대해서도 언급(IV장 4절)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 [표 1]과 같이 3단계X3트랙 연구수행 전략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단계별로 (1단계) SDG16 세부 주제별(평화 Peace, 인권 Human Rights, 민주적 거버넌스 Democratic Governance, 이하 PHD) 조사, (2단계) KOICA의 SDG16 전략 및 사업현황 분석, (3단계) KOICA의 SDG16 이행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도출로 구분하였다.

[표 1] 3단계X3트랙 연구수행 전략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SDG16 세부 주제별 조사 | KOICA의 SDG16 전략 및 사업현황 분석 | KOICA의 SDG16 이행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도출 ¹⁾ |
| [트랙 1] SDG16 관련 주요 개념 및 동향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제동향 조사연구매트릭스 작성평화트랙 문헌조사인권트랙 문헌조사민주주의트랙 문헌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평화트랙 문헌조사 (계속)인권트랙 문헌조사 (계속)민주주의트랙 문헌조사 (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분석) 동향 파악 분석 결과 토대로 시사점 도출(획산) SDG16 관련 KAIDEC 세션 개최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SDG16 세부 주제별 조사 | KOICA의 SDG16 전략 및 사업현황 분석 | KOICA의 SDG16 이행강화를 위한 전략방안 도출 ¹⁾ |
| [트랙 II] 타공여기관 SDG16 이행환경 및 현황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공여국/기관 분석 연구 매트릭스 작성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공여국 /기관 2-3개 관련 문헌조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 설문조사) 타공여기관 설문 수행 (심층면담) 해외 2개 기관 및 학회, 시민단체 방문 심층면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벤치마킹 방안 모색 (확산) SDG16 관련 포럼 참여(KOICA ODA연구정보 센터 협력) |
| [트랙 III] KOICA SDG16 이행환경 및 현황 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조사 연구매트릭스 작성 KOICA 정책 전략 관련 문헌조사 KOICA 기관 환경 및 사업 수행체계 관련 문헌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면담, 워크숍) KOICA 내 주요 부서 책임자 및 전문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워크숍 2회 실시 (현황분석) KOICA의 SDG16 세부분야별 사업운영 현황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KOICA SDG16 이행 방안 모색 (확산) SDG16 관련 포럼 참여(KOICA ODA연구정보 센터 협력) (주류화 대상화) KOICA의 SDG16 주류화 대상화 방안 도출 |

출처: 저자 작성

1. [트랙 I] SDG16 관련 주요 개념 및 동향 연구

트랙 I에서는 SDG16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사법제도와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성과 책임성이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위하여 SDG16에 대한 UN의 PHD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이니셔티브 Th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이하 Pathfinders)가 2017년에 제시한 SDG16의 i) 평화적인 사회(Peaceful Societies), ii) 정의로운 사회(Just Societies), iii) 포용적인 사회(Inclusive Societies)의 3대 주제를 심화적으로 조사하였다.

1) (확산) 활동은 본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속성 있게 SDG16 이행강화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략 방안 제시의 일환으로 본 연구기간 내 모두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음.

2. [트랙 II] 타공여기관 SDG16 이행환경 및 현황 연구

PHD 관련 정책적·전략적 근거에 대한 KOICA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표 2]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KOICA SDG16 전략분석 프레임워크

| 구분 | SDG16 평화·인권·민주적 거버넌스 중심으로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를 검토 | | |
|------------------------------|---|---|---------------|
| | 주제 1 평화 | 주제 2 인권 | 주제 3 민주적 거버넌스 |
| 한국 국제 개발 전반 | 법적기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검토 | |
| | 정책적 기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1-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등 검토 | |
| |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협력전략(CPS) 취약국 지원전략(2017) 인도적 지원전략(2015) 등 검토 | |
| KOICA 정책/전략/ 제도/ 조직 |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선진화계획(2011-2015) | |
| |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혁신 10대 중점과제(2018) KOICA 이미경 이사장 부산민주주의 포럼 연설문(2018) 인권전략(2013-2015)/인권전략(2017-2021) 성평등 중기전략(2016-2020) 등 검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종장기 경영전략(2017-2021) 취약국 지원 중기 이행전략(2017-2019)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등 검토 | |
| |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직제 담당부서/담당자/전문가 활용 등의 장치 검토 | |
| 역량 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대상 개발과 평화/인권/민주주의 개관 교육 검토 직원대상 평화/인권/민주주의 관련 기본 교육 검토 해외봉사단 대상 인권/성희롱 예방교육 등 검토 | |
| | | | |

출처: 저자 작성

벤치마킹 대상 국가인 스웨덴과 독일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PHD 의제를 국제개발 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제도적 환경을 비교하였다. 또한 문헌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5월 6일(일) ~ 5월 13일(일)에 스웨덴, 6월 14일(목) ~ 6월 22일(금)에 독일에서 해외 현지조사²⁾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i) 주요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ii) 면담 기관이 발행한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했으며, iii) 관련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해외 현지조사의 목표와 주요 공통 질문은 다음 [글상자 1]과 같다.

2) 2개국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함.

[글상자 1] 해외 현지조사 목표와 주요 질문

해외 현지조사 목표

- SDG16과 SDG16+, 세부 목표와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 SDG16 논의현황 및 스웨덴/독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관련 목표 운영 현황 파악
- 우리나라 SDG16 관련 국제개발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공통질문

- **(SDG16 이행 정책/전략)** 스웨덴/독일(중앙정부 및 SIDA, GIZ)은 SDG16 관련 정책/전략을 수립했는가(수립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국가/부처차원에서 관련 정책/전략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인가?
- **(국제개발협력에서 법/정책에서의 PHD)** 스웨덴/독일(중앙정부 및 SIDA, GIZ)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정책에 인권,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되었다면, 관련 법/정책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인가?
-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에서의 PHD)** SIDA, BMZ의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에 인권,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PHD관련 대표 프로그램/프로젝트는 무엇인가?
- **(촉진요인)** SIDA, BMZ이 인권,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어떠한 투자(정책, 예산, 인력 등)를 하고 있는가?
- **(저해요인)** SIDA, BMZ가 인권,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 시, 가장 큰 한계(법적/정책적 기반, 예산, 전략, 인력, 인식 등)는 무엇인가?

□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평화

- 부처차원의 평화관련 국제개발협력 법적/정책적 기반
- 평화이슈가 반영된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정책/전략
- 평화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 평화관련 대표 프로그램/프로젝트 수행 환경

□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인권

- 부처차원의 인권관련 국제개발협력 법적/정책적 기반
- 인권원칙/이슈가 반영된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정책/전략
- 인권원칙/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 인권관련 대표 프로그램/프로젝트 수행 환경

□ 국제개발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 부처차원의 민주주의(민주적 거버넌스)관련 법적/정책적 기반
- 민주주의/민주화(민주적 거버넌스) 이슈가 반영된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정책
- 민주주의/민주화(민주적 거버넌스)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 민주주의/민주화(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대표 프로그램/프로젝트 수행 환경

출처: 저자 작성

3. [트랙 III] KOICA SDG16 이행환경 및 현황 진단

KOICA의 SDG16 이행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5월 3일(목), 6월 26일(목)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고 KOICA 사업의 SDG16 세부 분야별(PHD) 재분류에 대한 방법론과 주류화 대상화 방안에 대하여 KOICA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논의하였다. 현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코드 및 CRS(Creditor Reporting Service) 코드로 구분되어 있는 KOICA 사업을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정한 PHD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SDG16 이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동 연구에서는 SDG16 주제별 KOICA 사업분류 기준 및 정의서를 도출하였으며, 동 과정은 KOICA 내부의 관련 전략 및 실제 사업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OICA 내부 관련부서의 공동 연구 참여방식을 통해 작성되었다.³⁾ 사업 분석대상은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총 2개년도 5개 분기에 시행된 사업 중 봉사단 사업을 제외한 총 4,015개의 사업이다.

제3절 주요 개념 정의

1. SDG16

UN이 정의한 SDG16의 공식 명칭은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기관, △평화이다(이성훈,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 Peace & Justice, 2018). 이 외에 비공식 명칭으로는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 △평화와 정의,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SDG16+ 등이 있는데, 이는 SDG16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념들을 단일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포괄적인 명칭으로써 ‘SDG16’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3) 동 사업분류기준 및 정의서는 KOICA ODA연구정보센터(김수진 연구원) 및 사업전략기획실(송수천 과장)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며, 경희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된 정의서를 바탕으로 경희대 측 연구진이 KOICA 사업현황 분석 및 SDG16사업화·주류화 방안을 도출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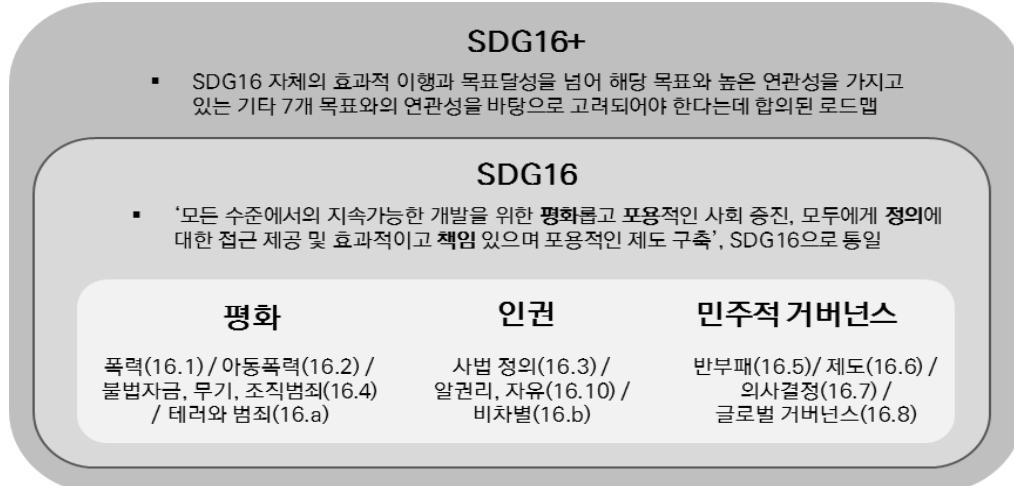
2. SDG16+

SDG16이 2030 의제의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괄적 사회구축’의 핵심 목표이지만, SDG16 자체의 이행과 목표달성을 넘어 해당 목표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 7개 목표⁴⁾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SDG16+이다. SDG16+의 세부목표 (Target)는 △평화, 정의, 포용이 2030 의제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나타내고,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편성에 대한 사례를 강화하며, △폭력, 불의, 배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취약 계층과 국가 간의 불평등 조장 요소를 강조하고,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 인권 협약에 기반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구축을 위한 노력의 중심에 성별 및 권리 관점을 적용하며, △SDG16+ 목표의 40%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 분야 전문가를 모아 모든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SDG16+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플랫폼과 이니셔티브가 형성되었다. 2016년 UN협회 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WFUNA)은 정부, 지역,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UN 시스템 회원, 민간 부문, 그리고 학계전문가를 한 곳에 모아 SDG16+ 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인 16+ Forum을 형성하였다. 또한 뉴욕대 국제협력센터(New York University,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스위스, 브라질, 시에라리온 정부가 주도하여 형성한 다자간 파트너십인 Pathfinders에서는 SDG16+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SDG16+을 단독으로 다뤄지는 개념이 아닌, SDG16의 이행강화 방안 및 지식화산에 필요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4) SDG1(빈곤퇴치), SDG4(양질의 교육), SDG5(성평등),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0(불평등 감소), SDG11(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

[그림 2] SDG16 관련 주요 개념 정리



출처: 저자 작성

3. 평화(Peace), 인권(Human Rights),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SDG16의 실현 방안에 대한 입장은 SDG16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진화 하고 있으나, 본 연구진은 [표 3]과 같이 SDG16의 세부목표를 평화(Peace), 인권(Human Rights),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의 세 가지 주제에 따라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3] PHD 접근에 따른 SDG16 세부목표 재구조화

| 구분 | 세부 구분 | 세부 목표 |
|---------------|--------------------------|---|
| 평화 (Peace) | 폭력 |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 감축 |
| | 아동폭력 |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 |
| | 불법자금, 무기, 자선, 범죄 등 |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반환 조치를 강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
| | 테러와 범죄 |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및 국내제도 강화 |

| 구분 | 세부 구분 | 세부 목표 |
|-------------------------------------|----------|--|
| 인권 (Human Rights) | 사법 정의 |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의 법치를 증진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 보장 |
| | 알 권리, 자유 |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보장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인 자유 보호 |
| | 비차별 | 16.b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 증진 및 강화 |
| | 아동인권 |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
| 민주적 거버넌스 (Democratic Governance) | 반부패 |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감소 |
| | 제도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 개발 |
| | 의사결정 | 16.7 모든 수준에서의 대응성이 높고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 정책 결정 보장 |
| | 글로벌 거버넌스 |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및 강화 |

출처: 저자 작성

즉 폭력(16.1), 아동폭력(16.2), 불법자산, 무기, 조직범죄(16.4), 테러와 범죄(16.a)는 평화의 영역으로, 사법정의(16.3), 알 권리, 자유(16.10), 비차별(16.b)의 경우 인권의 영역으로, 반부패(16.5), 제도(16.6), 의사결정(16.7), 글로벌 거버넌스(16.8)의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배치하였다. 물론 세부목표가 포괄적인 경우가 있고, 세 주제간 공통요소가 존재하여 하나의 목표가 여러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부목표 16.4 ‘불법자산, 무기, 조직범죄’의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와도 연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의 이행과 분류의 단순성과 편의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세부목표에 하나의 주제만을 할당하였다.⁵⁾

5) 보다 자세한 분류 및 정의에 대해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IV장을 참조.

II. SDG16 이행을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과 논의 동향

제1절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1. SDG16 개념과 최근 동향

가. SDG16의 개념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거버넌스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 및 제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SDGs의 목표 16에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개발 의제로 간주하였다(김수진, 2015). 이는 UN이 오랫동안 주창해온 ‘평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 없이는 평화가 없다’라는 명제를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SDGs 이전의 글로벌 개발목표였던 MDGs의 이행과정에서 개발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평화구축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명백히 반영한 것이다.

SDG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사법제도와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성과 책임성이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으로 그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의영 외, 2017).

나. SDG16의 5대 가치(5Ps)

SDGs의 세부 목표는 UN이 지향하는 5대 가치(5Ps)인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구성되어 있다. 5Ps의 관점에서 SDG16은 그 자체로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일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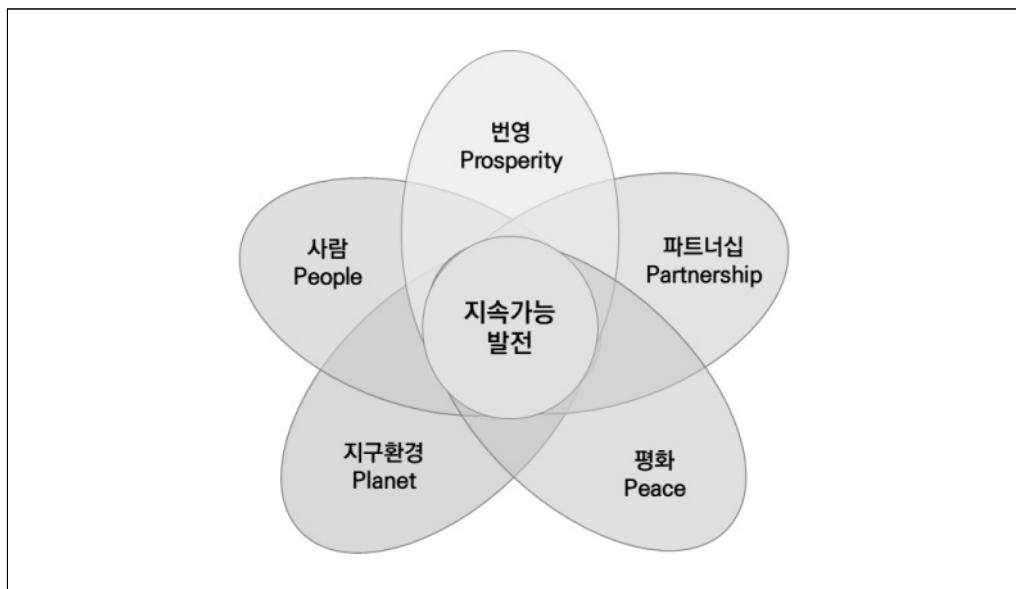
[표 4] SDGs 구조 – 5Ps를 중심으로

| | 사회발전 | 경제개발 | 환경 |
|--------------|-------------------------------------|--|---|
| 5P | 사람(People) | 번영(Prosperity) | 지구환경(Planet) |
| 무엇 (What) | 빈곤(1), 기아(2), 건강(3), 교육(4), 젠더(5) 등 | 식수(6), 에너지(7), 일자리(8), 산업화(9), 불평등(10), 도시(11) 등 | 식수(6), 도시(11), 지속가능생산과 소비(12), 기후변화(13), 해양생태계(14), 육상생태계(15) 등 |
| What+ How | 평화와 정의 거버넌스 | | 평화(Peace) |
| 어떻게(How) | 이행수단과 파트너십(17) 글로벌 거버넌스 | | 파트너십(Partnership) |

출처: 저자작성, KAIDEC 발표자료(2018.05.03.)

[그림 3] 5Ps의 개념도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및 파트너십(Partnership)



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5)

5Ps 중 i) 사람(People)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로서 모든 형태의 빈곤 및 기아 종식과 건강한 환경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관한 가능성의 실현 보장을 강조하며, 이는 SDG 1, 2, 3, 4, 5번 등에 구현되고 있다. ii) 번영(Prosperity)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모든 인간의 번영과 충족된 삶,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진보의 발생 보장을 강조하며, SDG 6, 7, 8, 9, 10번 등에 명시되었다. iii) 지구환경(Planet)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 변화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하여 지구를 환경파괴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SDG 6, 11, 12, 13, 14, 15번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SDGs는 전술한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와 파트너십을 지목하고 있다. 평화(Peace)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조건 및 방법으로서 SDG16에 설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두려움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 없이 지속가능발전은 없으며, 지속가능발전이 없는 평화는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평화와 SDGs의 연계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파트너십(Partnership)은 전 지구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목표로서 SDG17에 해당한다. 이는 모든 국가·이해관계자·인간의 참여와 전 지구적 결속 정신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여 본 의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국제사회의 SDG16 목표 및 지표 관련 논의

타 SDGs 목표와 비교하여 SDG16은 가장 많은 세부목표와 지표를 두고 있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SDG16을 실질적이고 전환적(Transformative)인 목표로 만들기 위해 다자 및 양자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래 설명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각자의 핵심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MDGs와 다르게 SDGs는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치열한 물밀 작업을 거쳐 목표 16에 대한 12개 세부목표 (Target)가 수년간에 걸친 세계 각 국가와 다양한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또한 SDGs지표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s)에 의해서 SDG16을 이행하고 측정할 기준이 되는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Global Indicator Framework)가 발전되었으며, 실질적인 출발점은 UN Statistical Commission의 47번째 회기인 것으로 2016년 6월 UN경제사회이사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COSOC)의 70번째 회기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기록되었다. SDG16의 12개 세부목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5] SDG16 세부목표의 내용

| | |
|-----------|---|
| SDG 16.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 감축 |
| SDG 16.2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 |
| SDG 16.3 | 국내·국제적 수준에서의 법치를 증진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 보장 |
| SDG 16.4 |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반환 조치를 강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 |
| SDG 16.5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감소 |
| SDG 16.6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 개발 |
| SDG 16.7 | 모든 수준에서의 대응성이 높고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 정책 결정 보장 |
| SDG 16.8 |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및 강화 |
| SDG 16.9 |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
| SDG 16.10 |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보장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인 자유 보호 |
| SDG 16.a |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및 국내제도 강화 |
| SDG 16.b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 증진 및 강화 |

참고: 환경부 번역 자료(2017)에 근거하여 저자가 일부 수정함.

세부목표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 세부목표 16.1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정부로부터 안전한 삶과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서, 신체적, 심리적, 성폭력뿐만 아니라 살인, 분쟁과 갈등, 폭력에 의한 사망 등 여러 형태의 사망과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 세부목표 16.2는 특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 성매매, 아동 노동 및 체벌과 학대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C182)등 국제사회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연계해야 하는 대목이다.
- 세부목표 16.3은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접근 가능한 법률과 사법 제도를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를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사법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는 이행수단인 16.a, 16.b와 관련이 있다.

- 세부목표 16.4는 불법자금과 무기거래의 감소와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 및 반환 조치, 조직범죄 퇴치에 대처하는 것으로 UN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CTOC) 및 인신매매, 이주민 밀거래, 총기제조 및 밀수에 관한 의정서⁶⁾가 담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다. 또한 전세계 무기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 조약인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과도 연관성이 깊다.
- 세부목표 16.5는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과 맥을 같이 하며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표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다루며 국가와 정부 체계 안에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자금의 거래와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와도 연관이 되며 세부목표 16.5와 겹치는 면이 있다.
- 세부목표 16.6은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제도 구축 측면에서 16.7과 상호 보완적이다. 부문별 승인된 예산 대비 정부 예산 지출 비율, 공공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끼는 인구 비율로 제시된 지표는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를 예산 집행 및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에 다소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을 위한 목표인 동시에 수단으로서 전체 17개 목표를 획단하는 SDG16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목표이기도 하다.
- 세부목표 16.7 역시 16.6과 유사한 성격으로 SDGs 전체를 포괄하고 뒷받침한다. 특히 'Leaving No One Behind'라는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핵심 명제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참여적 정책 결정 과정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6.6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16.7의 지표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 세부목표 16.8은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을 요구하는 목표이다. 지표는 국제기구 내 개발도상국의 투표권과 참여 비중만을 다루고 있어 개발도상국 정부의 참여로 협소하게 접근할 우려가 있으나,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6)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Firearms

- 세부목표 16.9는 국가의 공식적/법적 신분 등록이 정부의 예산 계획과 운영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집행에 핵심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세부목표 16.10은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가 SDG16 이행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임을 의미한다. 16.6과 16.7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정보의 생산 및 접근 관련 활동을 하는 이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지표로 삼고 있다.
- 이행수단에 해당하는 16.a는 폭력과 범죄에 대응하는 세부목표인 16.1, 16.4를 보완하며 제도적 측면으로서 16.6과도 연계된다. 16.b 역시 이행수단으로서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의 토대를 반영하고 있다. 세부목표 16.7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16이 다른 목표에 비해 가장 많은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나 지표를 들여다보면 이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목표에 대한 12개의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목표를 설명하는 언어의 표현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사실상 ‘세부목표(Target)’가 아니라 ‘달성목표(Goal)’를 다시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전 지역에서(Everywhere)’, ‘모든 형태의(All Forms Of)’, ‘모두에게(All)’, ‘모든 차원에서(At All Level)’ 등과 같은 막연한 표현이 16.8, 16.10, 16.a, 16.b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부목표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네 개의 세부목표 역시도 서술대상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매우 원론적인 묘사로만 이루어져 있다(김수진, 2015).

또한 목표 16 내 많은 세부목표들이 ‘굿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화’ 관련 세부목표의 수가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각 세부목표들 간의 조화성 문제 역시 ‘평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동 목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목표 16 상의 ‘평화로운 사회(Peaceful Society)’라는 표현은 애초에 ‘평화’라는 용어로 설정되었다가 개발협력국과 파트너국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변경·합의된 표현이다. 즉 ‘평화’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평화로운 사회’라는 보다 순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분쟁 및 분쟁 취약국들이 가질 수 있는 언어사용의 민감성 및 부담감을 보다 완화시키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김수진, 2015).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 극복, 축소하는데 방점을 두는 소극적인 평화로 해석되어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목표 16.1의 지표에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러 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들 국가는 사망자 추정치 계산과 관련한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표 설정에 있어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과 평화의 문화적·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도 마련 등 지나치게 하향식 방안만 제시하여 평화가 지역수준에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SDG16은 목표달성을 진행상황에 대한 데이터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각국 정부가 자국의 부패, 불평등, 구조적 폭력의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기꺼이 제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16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SDG16은 본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방안과 이행성과를 측정할 방안이 세부 목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UN은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지표체계에 대해 제시한 다양한 이슈와 한계를 인식하고 5년 주기로 2020년과 2025년에 지표 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행상황에 따라 지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3. SDG16 국제 이니셔티브 동향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SDG16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표 6]과 같은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으며,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표 6] SDG16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 | 정부간 국제기구 (IGO) |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 시민사회 네트워크 (CSO / NGOs) |
|----|--|--|---|
| 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iends of Governance • IDEA • Co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Alliance for Reporting Progress • Pathfinders • Data Initiative • SDG16+ Foru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P Network • ADA • ADN |

| | 정부간 국제기구 (IGO) |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 시민사회 네트워크 (CSO / NGOs) |
|----------|--|--|---|
| 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PBC • UNDP • UNHCR • UNOCHA • UNICEF • World Bank • OECD DAC INC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ation against Children •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ICTJ), •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PAC • SaferWorld • WILPF • IEP • International Alert • Geneva Call |
| 인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HRC • OHCH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 • GP on 16.2 • IFEX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xchang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 FA •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
| 민주적 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P • IDLO • UNODC • Praia Group on Governance Statistic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P2 • INTOSAI Development Initiativ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 • CIVICUS •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

출처: 저자 작성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 중에서도 Pathfinders는 특히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로써 SDG16의 핵심개념인 평화, 정의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UN 회원국 중 브라질, 시에라리온, 스위스 3개국이 주도적 리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영국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2017년 스위스 정부, 호주외무성, 네덜란드 외교부 및 노르웨이 외교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향후 5년 동안 SDG16 실천의 근간이 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본 로드맵에서 Pathfinders는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 한다(We are determined to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라는 모토 아래 SDG16을 i) 평화로운 사회(Peaceful Societies), ii) 정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Just Societies), iii) 포용적인 사회(Inclusive Societies)의 3대 주제로 구조화하고 그 하위에 회원국과 회원기관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9대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동력(Enablers)으로 i) 증거와 데이터, ii) 금융수단, iii) 학습과 환류, iv) 커뮤니케이션, 어드보커시 및 사회운동을 강조하였다.

[표 7] Pathfinders 전략 로드맵의 기본 프레임워크 (Framework)

| | | |
|---|----------------|---------------------|
| We are determined to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 | | |
| Peaceful Societies | Just Societies | Inclusive Societies |
| Enablers | | |
| Evidence and data Finance Learning and exchange Communication, advocacy and movement building | | |

출처: The Roadmap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 A call to action to change our world (Pathfinder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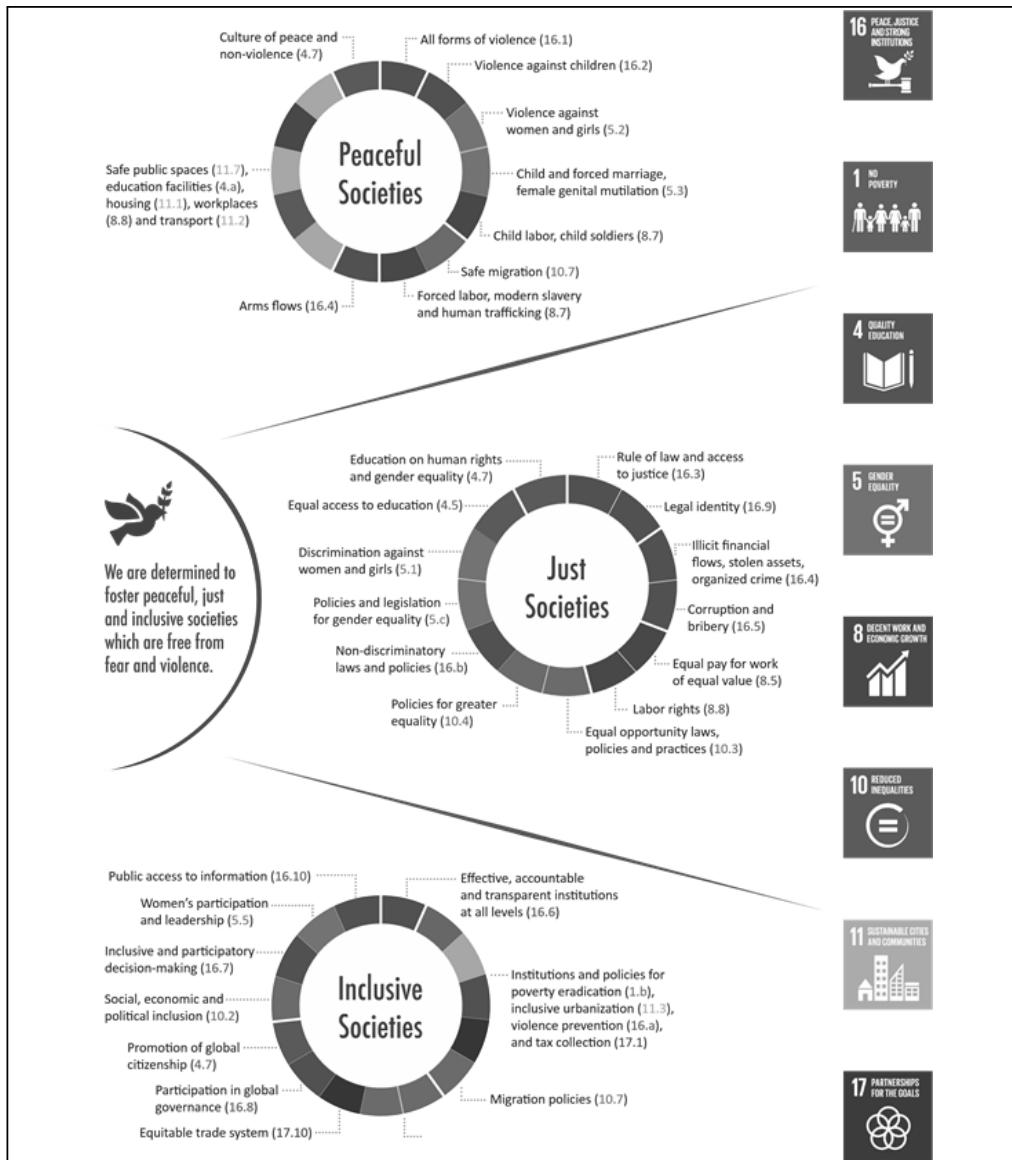
Pathfinders는 또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층적으로 복잡한 SDG16 의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대 영역(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으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표 8] 개발의 촉진제로서 SDG16의 3대 분야 (Catalyst for Development Progress)

| SDG16: Catalyst for Development Progress | |
|--|---|
| Peaceful Socie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uce violence and insecurity to: End poverty and realize gender inequality Remove barriers to health, education and service delivery, and to economic growth Tackle environmental crimes |
| Just Socie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mote rights,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o: Share prosperity and wealth Reach the vulnerable and furtherest behind Increase productivity and investment |
| Inclusive Socie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od governance and inclusion to: Deliver al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trengthen cooperation and overcome shared challenges Increase capacity for tax and revenue collection |

출처: The Roadmap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Pathfinders, 2017)

[그림 4] SDG16 개념—목표—분야별 목표의 재구성



출처: The Roadmap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Pathfinders, 2017)

Pathfinders 이외에도 SDG16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이슈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국제이니셔티브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부 간 국제기구인 ‘Friends of Governance’는 뉴욕 UN 대표부를 중심으로 한국, 멕시코, 루마니아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굿거버넌스, IFS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비공식적인 대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Data Initiative’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으로, SDG16 목표와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SDG16 목표 달성을 기여하고자 한다. ‘SDG 16+ Forum’은 WFUNA의 주도 하에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Global Alliance for Reporting Progress’는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주도하는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으로, SDG16 목표 이행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한다.

SDG16의 달성을 위하여 시민사회 또한 다음과 같은 국제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TAP) Network’는 SDG16에 관한 국제 애드보커시 네트워크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개발연대(Asia Development Alliance, ADA)가,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기구(International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는 지역 국제기구의 역할을 하면서 선거, 정당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해 민주주의를 분석한 ‘Global State of Democracy Report’를 발간한다. ‘민주주의 공동체 (Community of Democracies, CoD)’는 2000년에 창립되어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 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단체는 국별 보고용 지표를 개발하고, 2018년 부산민주주의포럼(Busan Democracy Forum, BuDF)⁷⁾을 공동개최한 바 있다.

특히 평화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제기구로는 UN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가 있다. UN 마약범죄사무소는 불법 마약 유통 등의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협력 및 조정기능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1997년 UNODCCP(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Crime Prevention)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02년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로 개칭했다.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ation against Children’은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으로, 아동폭력에 관한 세부목표 16.2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 폭력 예방 및 감소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활동한다.

7) SDG16의 이행현황 점검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SDGs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음.

인권과 관련한 국제기구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1993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1948년 세계 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사회에서 동의하는 기본적인 인권 규칙을 만들고 세계 각국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은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으로 SDG16의 세부목표 10번에 해당하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 국제사회의 PHD 논의 동향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왔으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혹은 민주화)에 관련된 논의들은 SDG16 이전에는 개발(혹은 발전)의 논의 장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발전되다가 최근 SDG16의 등장으로 재정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으로 SDG16의 핵심개념인 평화, 정의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SDG16 의제 중 **평화**는 평화구축(Peace-Building) 및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에 관한 것으로, UN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가 주도하고 있다. **인권**은 인권기반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통한 인권 실현으로 연결되며, UNOHCHR, 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HRC) 등에서 주도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Leaving No One Behind’의 개념을 통해 불평등 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개발 의제에 반영하고자 하며, 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rg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제개발법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DLO) 등에서 주도하고 있다.

가. 평화(Peace)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다루는 논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서구 중심으로 전지구적 분쟁해결과 평화유지를 표방하는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특히 UN헌장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는 UN의 창립 목적이자 핵심 과제로 부상하여 국가 간 분쟁해결, 군비축소, 무기체제 관리, 글로벌 거버넌스와 질서 형성과 같은 영역이 평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글로벌 과제로 발전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분쟁 관리 측면에 있어 UN의 개입은 ‘평화를 위한 개입’으로 정당화 되어 왔으며, 이는 ‘분쟁해결’이라는 방식으로 접근되었다. 이후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평화구축이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평화로운 구조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 개념은 평화학의 세계적 학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1975년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에서 고안한 개념으로 “폭력적인 갈등의 근본원인에 대처하고 평화적 관리와 갈등/분쟁 해결 역량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며 정치경제적 사회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논의해온 평화유지(Peacekeeping)나 평화조성(Peacemaking)과는 다른 개념이다. 평화유지는 갈등의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싸움을 막리는 행위로서 일차적인 폭력과 과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활동을 의미하며, 평화조성은 중재와 협상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어긋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활동이다. 평화구축은 평화 조성에서 나아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갈등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변화를 추진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갈등의 평화구축 개념은 1992년 UN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에 의해 UN 내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은

8) UN헌장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사회·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9) Johan Galtung,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in Peace, War and Defens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I, ed. Johan Galtung (Copenhagen: Christian Ejlers, 1976), 297–298.

『An Agenda for Peace』 보고서에서 평화구축은 “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를 강화시키는 구조를 확립하고 지원하는 행동”이라고 소개하면서 분쟁 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을 UN의 정식 평화구축을 위한 활동으로 명명했다.¹⁰⁾ 이때의 분쟁은 국가가 직면한 군사적 혹은 전통적 개념의 안보 위협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위협 등 다양한 충돌의 위협들과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상으로 드러난 폭력 해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확장되어 인권보호,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적 구조 변화, 경제성장, 사회적 환경 변화까지 아우르게 된다. 동 보고서는 UN 및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국가중심적 전통적 안보담론의 변화를 도모하여 “인간안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인간안보 논의는 분쟁과 갈등, 사회적 위기를 관리하고 경감시키는 역할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조직, 비정부기구, 초국적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주체들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UN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에 더욱 중점을 두고 민족 간, 종교 간 분쟁 및 대량살상과 학살 등의 국제 분쟁 해결에 UN 개입의 필요성을 확립해왔다. 일반적으로 평화구축 활동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갈등분석 등을 통해 UN이나 국제기구, NGO와 같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개입을 주요 모델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폭력적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수많은 개입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기준의 평화구축 프레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UN은 UNPBC¹¹⁾ 창설 10주년인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UN의 평화구축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토대로 평화구축 개념을 확장한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지속적 평화’의 개념은 UN의 AGE Report(the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f Experts for the 2015 Review of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rchitecture)와 Hippo Report(the Report of the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82(2016.4)과 UN총회

10)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1995)

11) 전 세계 각 분쟁지역의 전후재건,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 활동에 관해 UN 안보리,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간 기구로서 △각국 정부, 개발기구,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내 다양한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평화구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조정하는 기구

결의안 70/262(2016.5)을 통해 UN은 지속적 평화 개념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적 틀’로 규정하고 평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양 결의안은 갈등 예방, 국제 및 국가 수준의 법치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퇴치, 사회발전 촉진을 통한 평화유지에 대한 포괄적 접근, 책무성과 굿거버넌스, 민주주의, 평등과 존중, 인권과 근본적 자유 보장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등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평화구축은 분쟁의 확산, 확대, 재발 또는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으로 이미 분쟁이 명확한 곳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화활동이다. 즉, 평화구축의 출발점은 분쟁이고, 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과정에 집중한다. 반면 지속적 평화는 기존의 평화구축 개념이 분쟁 이후의 상황에 치중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적극적 평화를 위한 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분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요소들(사회적 응집력, 포용적 발전, 법의 지배 원칙, 인간안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분쟁 이후의 재건과 화해에 머물지 않고 갈등 주기(Conflict Cycle)의 모든 지점에서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장기적 요구를 고려한다. 여기에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분쟁의 예방, 발생, 긴장 고조, 지속, 재발 방지, 전후재건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지속적 평화는 반드시 불안정한 환경이거나 폭력적인 분쟁이 있는 곳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회에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개입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촉진, 법의 지배 원칙 강화, 빈곤 감소, 사회 개발, 지속가능발전 등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에 있어 여성의 참여,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제도와 메커니즘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한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정리하면, 지속적 평화는 사회 전반의 공통 비전을 세우는 과정으로 모든 계층과 분야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쟁의 예방, 발생, 지속, 악화, 재발, 전후재건에 이르기까지 분쟁의 모든 단계에 걸쳐 UN의 적극적 관여를 주문하는 개념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취임사(2016.12.12), 안보리 공개 연설(2017.1.10) 등을 통해 평화를 위한 외교력을 확산하고 분쟁예방 및 지속적 평화를 UN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High Level Meeting on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2018.4.24.~25)은 이러한 UN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에 대한 UN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인권(Human Rights)

인권과 개발은 UN이 현장 채택과 함께 설립된 1945년 이래 국제 사회의 중심적이고 불가분적인 기둥의 역할을 하여 왔다.¹²⁾ 이 역사적인 사건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³⁾에 의해 영감을 얻은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존엄과 복지의 삶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구축하는 규범적 시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인권과 개발 실천은 주로 냉전의 정치적 역학으로 인해 다른 경로로 발전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에 대해 인권개발과 평등한 인간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개발의 협력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UN은 인권기반 접근에 대한 공통의 이해(UN Common Understanding on the Rights-Based Approach, 2003)'를 통해 UN기구 및 OHCHR 등이 수행해 온 인권 관련 협력을 체계화하였으며 UN의 개발관련 국가별 활동에 인권을 주류화 시키는데 일조¹⁴⁾하였다. UN은 인권을 고려한 정책 및 사업 형성 및 수행 시 비차별과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참여와 포용(Participation and Inclusion),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¹⁵⁾하고 있다.

UN이 강조하고 있는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Approach, HRBA)의 기본원칙인 비차별과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은 인권 준수책무가 있는 국가 및 기타 의무부담자에게 법적, 제도적, 구조적, 그리고 개인 간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차별과 배제가 인권 침해인 이유는 그 자체가 개인에게 좌절과 열등감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차별에 근거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정치체제가 인권침해를 양산한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조효제, 2015). 1954년 UN현장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인종, 성, 언어,

12) OECD & The World Bank,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2016.

13) 세계 인권선언의 번역본은 국내에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최신 번역은 인권오디세이: 다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묻는다(2015)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용어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강조되는 맥락에 따라 인권기반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권리기반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 RBA)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로는 '인권에 기반을 준 접근법'·'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인권기반접근법'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권기반접근법(HRBA)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5) 인권기반접근법에 근거한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고안된 원칙 또한 다양하다. 관련된 소개된 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2014)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가 있다. 국제개발 협력의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적용한 최신 연구로는 'KOICA 사업의 취약계층 포괄적 접근 현황평가(곽재성 외, 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종교 등 네 가지 차별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1948년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초기의 2조에서부터 12가지의 반차별 원칙을 강조하여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하였다(조효제, 2015). 국제개발의 맥락에서는 이와 같은 비차별의 원칙이 사업 형성 시 차별적인 법의 개정 및 폐기, 모든 인권의 존중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성별, 연령, 문화적 차이에 대해 민감하고(Sensitive) 접근가능한(Accessible)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공공정책은 구조적 차별 및 배제로 이어지는 자원의 집중 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인권기반접근법의 두 번째 원칙인 참여와 포용(Participation and Inclusion)은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포용과 참여를 요구한다. 따라서 사업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정 및 절차는 계획과 개발에서 배제된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이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기존의 전통적 관행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곽재성 외, 2017).

셋째, 인권기반접근법의 주요 원칙이자, 최근 담론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책무성(Accountability) 논의는 국가 및 기타 의무부담자에게 인권 준수 책무가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구조적, 개인 간 차별의 철폐가 요구되며, 사업 형성 시 차별적인 법의 개정 및 폐기, 모든 인권의 존중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은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국제인권제도를 준수하고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해야하며 국제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특별 자문관들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곽재성 외, 2017).

또한 UN은 2009년부터 인권 주류화 메커니즘을 설치하여 UN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인권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 인권기반 접근의 적용을 위한 지침서인 ‘인권지표: 측정과 시행을 위한 가이드북(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을 출간하였다(곽재성 외, 2017). 본 지침서의 인권기반

접근을 통해 실제 개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양적·질적)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인권 및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산재해 있던 개발 사업의 표준화된 지표 적용에 일조하였다. 동시에 UN은 인권원칙과 가이드라인은 물론 지표 및 매트릭스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권기반접근의 사업적용방식을 표준화 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형성 단계에서부터 인권기반접근을 주류화(Mainstreaming)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문제와 같은 개발문제의 인식(평가), 권리보유자(Rights-holders)와 의무부담자(Duty-bearers)의 역량 및 역할 분석¹⁶⁾, 개발 목표(Objectives)에의 인권목표 및 지표 도입 등 실제 사업수행 시 고려해야 할 방법 및 도구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곽재성 외, 2017).

이와 같은 ‘개발에서의 인권관련 제도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과중심 논의가 강조되고 인권 제도화의 부작용 등이 비판¹⁷⁾을 받으면서 UN의 핵심논의에서 잠시 주춤하다 최근 SDGs 논의에서 평화, 인권, 민주화 등의 논의가 연계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 MDGs의 맥락에서는 경제권 및 사회권에 대한 간접적인 논의만 가능했지만 SDGs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권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리 및 발전권에 대한 연결 고리가 2030 의제의 가치차원에서 확실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UNOHCHR은 ‘Leaving No One Behind’라는 SDGs의 가치, SDG10, 16의 목표에 인권관련 가치와 목표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인권과 2030 아젠다, 인권과 개발재원, 그리고 SDGs를 통한 불평등과 차별의 해결(Human Rights and the 2030 Agenda, Human Rights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Addressing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in the SDGs)’이라는 문서를 통해 SDG10과 SDG16 목표를 강조하였다. 특히,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기, 10번 및 16번 목표에 대한 데이터 세분화 및 지표제시(Ensuring No One Is Left Behind: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ata Disaggregation, Proposed

16)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인권에서는 입법화와 제도화를 강조하게 되면서, 다양한 개발의 도구 중에서 권리보유자 및 의무부담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등장했다. 인권을 실현할 때,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그 요구를 수용할 의무를 지닌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조효제, 2015)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법과 분석이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지나치게 개별 권리보유자 혹은 권리보유그룹을 중심으로만 인권을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17) 1990년대부터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2000년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국제개발에서의 인권 법제화와 제도화의 중요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법제화와 제도화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언제나 건설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공공기관들은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된 일종의 ‘권리들의 목록’으로만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심리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조효제, 2015).

Indicators: Goal 10 and Goal 16)'를 통해 인권과 불평등의 연계를 강조하며 분리통계, 국제 인권기준 적용, 참여, 데이터수집과 세이프가드의 강조, 책무성 매커니즘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OHCHR는 SDGs가 강조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발전 의제와 국가차원의 발전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치지향적인 2030 의제가 향후 15년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핵심적인 철학 혹은 근간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2016).¹⁸⁾

다.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민주주의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미 미국은 1950년대부터 민주주의 증진을 외교의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왔다. 그러나 냉전시기 UN 내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감성과 주권 우위의 논리에 눌려 주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개별 국가의 노력은 80년대 냉전 말기와 90년대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제기구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로 세계적으로 확산 및 제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민주주의 지원’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제협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¹⁹⁾ 특히 SDG16과 그 세부목표에서 바라보면 민주적 거버넌스는 각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건한 제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함께 다시금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State Capacity)’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민주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국제협력 분야에서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1986년 마닐라에서 첫 출범한 신생재건민주주의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w or Restored Democracies, ICNDRD)이다. UN 주도로 열린 이 회의는 80년대 냉전 시대에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논리에 간과 또는 희생되어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90년대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1995년 스웨덴의 주도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로 출범한 민주주의 선거지원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IEDA), 1997년 국제의

18) SDG 수립 전과 후에 OHCHR가 발표한 인권관련 각종 입장문은 OHCHR의 Human Rights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9) <민주주의 국제협력기관: 지구민주화와 공공외교의 지형도>, 이정옥, 2010.

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의 세계민주주의선언 채택 등 민주주의를 의제화 및 제도화하려는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²⁰⁾

이러한 노력은 2000년에 바르사바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출범한 CoD에서 보다 본격화되었다. 미국 주도의 다자간 민주주의 협력체인 민주주의 공동체는 이후 2004년 UN 내부, 특히 인권위원회와 UN 총회에서 민주주의 의제를 확산하는 발판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쿠커스 (Democracy Caucus)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는 매년 민주주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직접 관할하는 UN민주주의기금(UN Democracy Fund, UNDEF)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UN 총회는 2007년 9월 15일을 민주주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UN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UN개발계획(UNDP)은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왔고, HRB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2002년에는 인간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HDR)의 주제로 민주주의 심화를 다루어 개발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UN에서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라는 용어로 거버넌스 논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진 공여국들을 중심으로 ODA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즉 민주주의의 가치 및 운영 원칙을 포괄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없이는 협력국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하지 않는 ODA 사업은 협력국 정부의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협력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협력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올바른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와 더불어 반세기에 걸친 국제개발 협력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원조효과성 담론과 정책에 있어서도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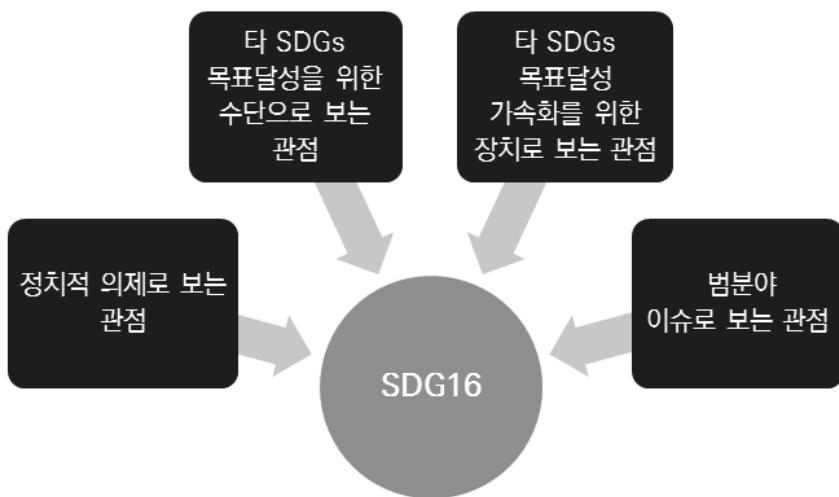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민주적 거버넌스가 가장 지속적이고 포용 가능한 제도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빠른 의사결정 및 시행 등으로 여타의 비 민주주의적인 과정이 더 낫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으나 민주주의는 개발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투명성, 책무성, 시민의 참여를 모두 장려하므로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에 적합하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20) 이성훈, ‘국제개발협력과 민주주의’, 2013.

5. SDG16과 PHD 접근의 재구성

SDG16의 이행방안에 대한 입장은 SDG16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는가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화는 국제사회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다양하게 분화 및 진화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SDG16이 1-15번과 같은 개별 목표 중 하나이지만 특정 영역과 이슈를 다루는 1-15번 목표와 다른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 5] SDG16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



출처: 저자 작성

- 첫째, 명시적으로 성(젠더) 불평등을 다루는 5번 목표,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10번 목표처럼 16번은 정치적 불평등 즉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사실 SDG 17개 목표 전체가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빈곤(1), 기아(2), 건강(3), 교육(4), 젠더(5) 등은 사회적 불평등, 식수(6), 에너지(7), 일자리(8), 산업화(9), 불평등(10), 도시(11) 등은 경제적 불평등, 식수(6), 도시(11), 지속가능생산과 소비(12), 기후변화(13), 해양생태계(14), 육상생태계(15) 등은 환경적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따르면 SDG16은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다루는 5번과 10번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룰 필요가 있다.

- 둘째, SDG16은 평화롭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를 지향한다는 목표 하에 가치지향적 전략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즉 SDG16은 이러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민주적 거버넌스 또는 효과적 제도(Democratic Governance or Effective Institution)를 의미한다. 즉 SDG16은 이를 SDGs 달성을 가능케 하는 수단(Enablers)이자 가속화하는 장치(Accelerator)로 보는 관점이다. SDG17의 이행수단이 SDGs 달성을 위한 외적 수단이라면 SDG16 내적 수단 또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셋째, SDG16이 표상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는 UN이 천명하고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어떤 목표와 영역을 다루더라도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범분야 가치 또는 이슈(Cross-Sectoral or Cutting Issues)로 접근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평화, 인권, 민주주의는 규범적 원칙으로 SDGs 이행에 주류화 되어야 하며 SDGs 이행에서 갈등 민감 접근(Conflict-Sensitive Approach),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접근, 인권기반접근 등으로 나타난다.
- 넷째, SDG16의 제목인 평화는 17개 목표를 표상하는 다섯 개 가치를 표상하는 5P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특히 평화는 UN 설립의 최고 가치이자 규범으로 SDGs 모든 목표 달성의 결과이자 전제조건으로 비록 SDG16에서 평화는 사회 내에서의 비폭력(Non-Violence)으로 축소되었지만 16번을 토대로 평화를 SDGs 전체와 연계하는 관점이 있다.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UN 사무총장의 군축의제가 대표적으로 군축과 SDGs를 연계하는 방식이 있다.

SDG16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 즉 정치적인 의제로 보는 관점, 5Ps의 관점에서 타 SDGs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Enablers)으로 타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하는 장치(Accelerator)로 보는 관점,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로 보는 관점 등이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SDGs 목표의 전환적(Transformative)이고 개혁적인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SDG16이 다른 목표와 연계되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제 72회 UN총회 부대행사 “SDG16+ 이행촉진”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SDG16의 주요 방향을 i) 평화로운 사회(Peaceful Societies), ii) 정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Just Societies), iii) 포용적인 사회(Inclusive Societies)의 세 가지 세부주제로 개념화하고 SDG16과 연계된 목표들을 나열하고 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9] 목표16 주요 카테고리별 세부목표의 재구성

| 카테고리 | 세부목표 |
|---------------------------|---------------------------------------|
| 평화로운 사회(Peaceful society) | 16.1, 16.2, 16.4, (16.a) |
| 법의 지배(Rule of Law) | 16.3, 16.9, (16.b) |
| 거버넌스(Governance) | 16.5, 16.6, 16.7, 16.8, 16.10, (16.b) |

출처: 김수진 (2015)

[표 10] SDG16+ 연계 목표 및 세부 내용

| 순서 | 구분 | SDGs 세부목표 | | |
|----|---------|--|------|--|
| |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 1 | 평화로운 사회 | 교육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 4.7 |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
| 2 | | 교육 (Education facilities) | 4.a |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
| 3 | | 양성평등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 5.2 |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 4 | | 양성평등 (Child marriage, female genital mutilation) | 5.3 | 아동결혼, 조흔, 강제결혼과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
| 5 | | 일자리 (Child labor, child soldiers) | 8.7 |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
| 6 | | 일자리 (Forced labor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 8.7 |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
| 7 | | 일자리 (Workplaces) | 8.8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증진 |
| 8 | | 불평등 (Safe migration) | 10.7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성 강화 |

| 순서 | 구분 | SDGs 세부목표 | | |
|----|---------|---|------|---|
| |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 9 | 평화로운 사회 | 도시 (Housing) | 11.1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
| 10 | | 도시 (Transport) | 11.2 |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 안전을 개선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 |
| 11 | | 도시 (Safe Public Spaces) | 11.7 |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
| 12 | | 평화, 정의, 제도 (All forms of violence) | 16.1 |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의 현저한 감소 |
| 13 | | 평화, 정의, 제도 (Violence against children) | 16.2 |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 14 | | 평화, 정의, 제도 (Arms flows) | 16.4 | 2030년까지 불법자금, 무기 거래를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
| 15 | 정의로운 사회 | 교육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4.5 |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균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
| 16 | | 교육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 4.7 |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
| 17 | | 양성평등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 5.1 |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 18 | | 양성평등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gender equality) | 5.c |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
| 19 | | 일자리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 8.5 |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
| 20 | | 일자리 (Labor rights) | 8.8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증진 |

| 순서 | 구분 | SDGs 세부목표 | | |
|----|---------|--|------|---|
| |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 21 | 정의로운 사회 | 불평등 (Equal opportunit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 10.3 |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근절, 이와 관련한 적절한 입법, 정책 및 행동의 진흥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
| 22 | | 불평등 (Policies for greater equality) | 10.4 | 특히 재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 |
| 23 | | 평화, 정의, 제도 (Rule of law and access to justice) | 16.3 |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 24 | | 평화, 정의, 제도 (Illicit financial flows, stolen assets, organized crimes) | 16.4 | 2030년까지 불법자금, 무기 거래를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
| 25 | | 평화, 정의, 제도 (Corruption and bribery) | 16.5 |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
| 26 | | 평화, 정의, 제도 (Legal identity) | 16.9 |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 |
| 27 | | 평화, 정의, 제도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 16.b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
| 28 | 포용적인 사회 | 빈곤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poverty reduction) | 1.b | 빈곤 퇴치 행동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개발전략에 기초하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체계를 창출 |
| 29 | | 양성평등 (Women'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 5.5 | 정치, 경제, 공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보장 |
| 30 | | 불평등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 10.2 |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을 강화 및 증진 |
| 31 | | 불평등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institution) | 10.5 | 글로벌 금융 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

| 순서 | 구분 | SDGs 세부목표 | | |
|----|---------|---|-------|---|
| |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 32 | 포용적인 사회 | 불평등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institution) | 10.6 |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경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
| 33 | | 불평등 (Migration policies) | 10.7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성 강화 |
| 34 | | 도시 (Inclusive urbanization) | 11.3 |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
| 35 | | 평화, 정의, 제도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 | 16.6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
| 36 | | 평화, 정의, 제도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 16.7 | 모든 수준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
| 37 | | 평화, 정의, 제도 (Participation in global governance) | 16.8 |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
| 38 | | 평화, 정의, 제도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 16.10 |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 |
| 39 | | 평화, 정의, 제도 (Violence prevention) | 16.a |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예방 및 테러리즘·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등을 통한 관련 국가 기관을 강화 |
| 40 | | 파트너십 (Tax collection) | 17.1 |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재원 동원 강화 |
| 41 | | 파트너십 (Equitable trade system) | 17.1 |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하의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 체제 증진 |

출처: 제 72회 UN총회 부대행사 “SDG16+ 이행촉진” 컨셉노트(2017.09.21.)

PHD 접근법을 중심으로 SDGs의 세부목표를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조화해보면 다음 [표 11]과 같으며, 이 경우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에 맞추어 재구성된 SDG16의 세부목표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PHD 접근법으로 3대 축에 관한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로

SDG16에 접근하여도 동 목표의 모든 세부목표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연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SDG16이 타 목표와 연계된 목표임을 고려하여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하위에 핵심(Core)과 연계(SDG16+)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평화 분야는 총 4개의 핵심(Core) 세부목표 및 12개의 연계목표(SDG16+), 인권은 총 3개의 핵심(Core) 세부목표 및 9개의 연계목표(SDG16+), 민주적 거버넌스는 총 5개의 핵심(Core) 세부목표 및 8개의 연계목표(SDG16+)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향후 SDG16+ 목표는 SDGs 이행을 진행하면서 차차 타 목표와의 연계의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1] SDG16 세부목표에 대한 PHD 접근의 재구성

| 구분 | 세부 구분 | SDGs 세부목표 | | SDGs 키워드 |
|---------|--------|-----------|---|-----------------------------|
| 평화/ 비폭력 | core | 16.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 감축 | 모든 형태의 폭력 |
| | core | 16.2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종식 | 아동폭력 |
| | SDG16+ | 5.2 |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여성 및 소녀대상 폭력근절 |
| | SDG16+ | 5.3 |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과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 아동결혼, 여성할례근절 |
| | SDG16+ | 8.7 |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 아동노동 소년병 |
| | SDG16+ | 8.7 |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 강제노동, 현대적 노예제, 인신매매 |
| | core | 16.4 | 2030년까지 불법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하고 불법 취득 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 모든 형태의 조직 범죄를 퇴치 | 불법자금흐름, 불법취득자산환수 조직범죄, 무기거래 |
| | core | 16.a |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국내 제도강화 | 폭력 및 분쟁예방 |
| | SDG16+ | 4.7 |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 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 평화 및 비폭력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실시 |

| 구분 | 세부 구분 | SDGs 세부목표 | | SDGs 키워드 |
|------------|----------------|---|--|----------------------------|
| 평화/ 비폭력 | SDG16+ 4.a |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 | 안전한 교육시설 구축 |
| | SDG16+ 8.8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증진 | | 이민 노동자 근로환경 증진 |
| | SDG16+ 10.7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성 강화 | | 안전한 이주 |
| | SDG16+ 11.1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 | 안전한 주거지 마련, 빈민가 개선 |
| | SDG16+ 11.2 |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 | | 안전한 교통체계 |
| | SDG16+ 11.7 |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 | 안전한 공공장소 |
| 인권 | core 16.9 |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 | 법적지위, 출생신고 |
| | core 16.1 |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보장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인 자유보호 | | 정보에 대한 대중접근성 |
| | core 16.b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증진 및 강화 | | 비차별 법규 및 정책 |
| | SDG16+ 1.b | 빈곤 퇴치 행동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개발전략에 기초하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체계를 창출 | | 빈곤퇴치를 위한 제도 및 정책마련 |
| | SDG16+ 5.5 | 정치, 경제, 공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보장 | | 여성의 참여 및 리더십강화 |
| | SDG16+ 10.2 |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을 강화 및 증진 |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포용성 강화 |
| | SDG16+ 10.5 | 글로벌 금융 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 | 글로벌 금융 및 경제규제 이행강화 |
| | SDG16+ 10.6 |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경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 | 글로벌 금융 및 경제 규제 이행 강화 |

| 구분 | 세부 구분 | SDGs 세부목표 | | SDGs 키워드 |
|----------|--------|-----------|--|------------------------------|
| 인권 | SDG16+ | 10.7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성 강화 | 이주정책 |
| | SDG16+ | 11.3 |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 포용적 도시화 |
| | SDG16+ | 17.1 |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재원 동원 강화 | 조세징수 |
| | SDG16+ | 17.1 |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하의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 증진 | 공평한 무역체제증진 |
| 민주적 거버넌스 | core | 16.3 |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의 법치를 증진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 | 법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권 |
| | core | 16.5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감소 | 부패 및 비리 |
| | core | 16.6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 개발 | 전범위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적이며 투명한 제도 구축 |
| | core | 16.7 | 모든 수준에서의 대응성이 높고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 정책결정 보장 | 포용적이고 참여적 의사결정 |
| | core | 16.8 |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확대 및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
| | SDG16+ | 4.5 |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 교육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
| | SDG16+ | 4.7 |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 인권 및 성평등 관련 교육 |
| | SDG16+ | 5.1 |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차별종식 |

| 구분 | 세부 구분 | SDGs 세부목표 | | SDGs 키워드 |
|----------|-------------|---|--|----------------------------|
| 민주적 거버넌스 | SDG16+ 5.c |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 |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
| | SDG16+ 8.5 |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 |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달성 |
| | SDG16+ 8.8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증진 | | 이주근로자 노동권 증진 |
| | SDG16+ 10.3 |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균절, 이와 관련한 적절한 입법, 정책 및 행동의 진흥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 | 평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입법, 정책, 행동 강화 |
| | SDG16+ 10.4 | 특히 재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 | | 점진적 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 |

출처: 저자 작성

이와 같이 SDG16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SDG16의 핵심적인 개념의 틀로써 평화, 정의 및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3대 축으로 구분 하였다. SDG16의 기본적인 철학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인종이나 신앙,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며 사회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규범적·개념적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인권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향후 SDG16이 우리나라 국제개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할 것이다.

제2절 국내 주요 논의 현황

1. 정책방향

가. SDGs 정책 방향

우리 정부는 SDGs 등 개발 관련 범지구적 과제 달성을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2010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하고, ODA 선진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에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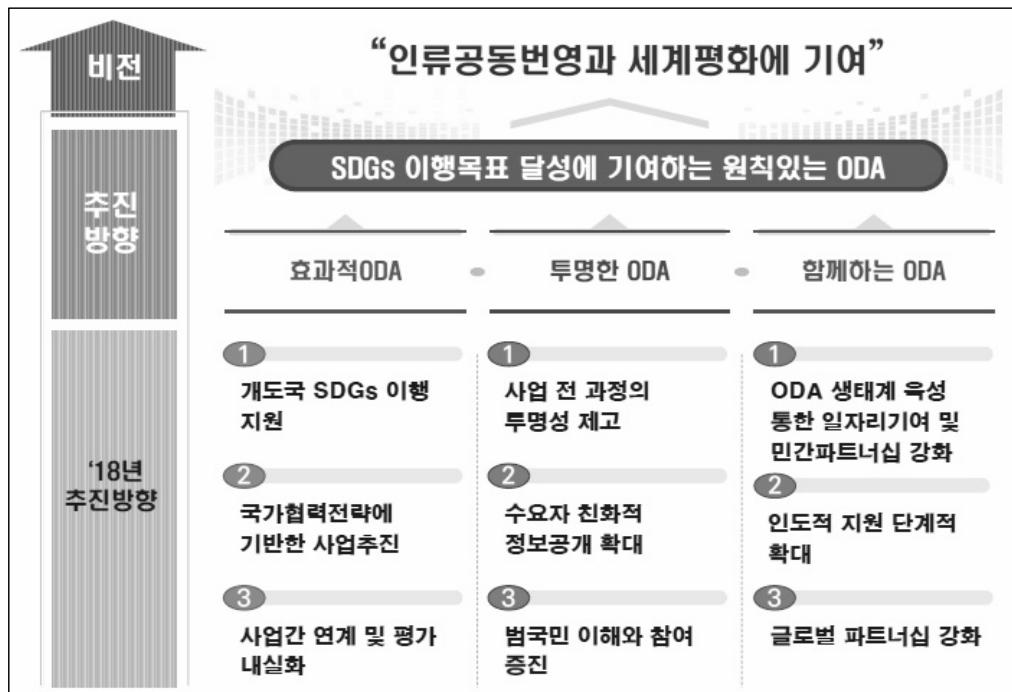
[표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 조항 | 규정 | 조항 | 규정 |
|------|----------------------|------|---------------------|
| 제1조 | 목적 | 제11조 |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
| 제2조 | 정의 | 제12조 |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
| 제3조 | 기본정신 및 목표 | 제13조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
| 제4조 | 기본원칙 | 제14조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15조 |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6조 | 전문 인력의 양성 |
| 제7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제17조 |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
| 제8조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8조 | 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
| 제9조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 제19조 | 재외공관의 역할 |
| 제10조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 제20조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출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ODA 규모 확대와 투명성 제고, 민간부문 및 범국민의 참여 확대,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SDGs 이행 목표 달성을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2차 기본계획 기간 내에 SDGs 이행 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농촌개발, 교육, 보건, 여성 분야 등 비교우위 부문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6]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출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나. PHD관련 정책 방향

우리 정부는 전후 반세기 만에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주요 외교 목표 중 하나로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을 비롯한 7개 핵심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와 관련한 인권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과 역량 강화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UN 총회 3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전 세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평화의 측면에서 한국은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분단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NPT와 더불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특정재래식무기금지 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제네바군축회의(Convention on Disarmament, CD) 등 군축/비핵산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평화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²¹⁾’의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플랫폼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이자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 협력체인 ‘CoD’의 운영이사회 이사국이자 2위 공여국으로서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창설된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에 지속적 참여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UN민주주의기금(UN Democracy Fund) 기여를 통해 신생민주주의 정착 지원 등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1)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의 3개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 100대 국정과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 안에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 및 SDG16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대 국정 목표에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되었다.

이 중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정전략은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총 열 가지이다. 정부는 또한 국정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앞서 말한 열 가지 전략에 대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제시하였다.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과 적재적소·공정한 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제시하였다.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지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과제로 내세웠다.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제시하였다.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 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제시하였다.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고자 한다.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도시경쟁의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해운·조성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의 실현 방안으로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며,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경 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3.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의 SDG16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근간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정하며,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제3조)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책으로는 동법에 근거한 정책문서인 1, 2차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사업의 전 과정에서 인권과 성평등을 고려하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SDGs를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1~2015)」은 인권, 성평등을 범분야 이슈로 관리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모든 사업의 전 과정에서 인권과 성평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차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SDGs의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SDGs의 대전제인 소외계층을 배려하고(Leaving No One Behind)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곽재성 외, 2017).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 개발목표로 작동하는 SDGs는 개발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립적 역량강화와 불평등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SDG16에 관한 국내 논의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2016년 9월 제71차 UN 총회를 계기로 'SDG16 관련 고위급 행사'를 외교부-UN 간 공동으로 주최하여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 제도의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SDG16에 대한 국내 개발협력계의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2017년 11월 이미경 KOICA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에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핵심가치 구현 ODA'를 실현해나갈 것을 선언하면서부터이다. 또한 KOICA는 2018년 7월에 UN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의 부대행사로서 미국 뉴욕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갖는 국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UN HLPF는 SDGs 이행 점검을 위해 매해 UN 총회와 ECOSOC가 주관하는 국제 포럼이다²²⁾.

이제 KOICA는 정부 지침 하에 SDGs의 달성을 위한 국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 장기적 국익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평가연구(곽재성 외, 2017)에 의하면 KOICA는 「KOICA 중장기 경영전략(2017~2021)」이나 「KOICA SDGs 전략」을 통해 SDGs 달성을 기여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SDGs를 기존 사업에 연계하는 정도로 접근하고 있어, SDGs의 가치적인 측면인 인권 및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Leaving No One Behind' 원칙 달성을 위해 특화된 전략 및 방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KOICA 성평등 중기전략(2016~2020)」에서 SDGs 목표와 연계한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평등

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53756.html#csidx5510da04ed21c419c455735c8863f38>

이외의 다른 취약 이슈인 인권과 장애를 포괄하는 「인권전략(2017-2021)」은 현재 작성 중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인권기반접근의 실천과 SDGs 이행을 위한 취약계층접근 포괄 통합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곽재성 외, 2018).

최근 정책적, 전략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KOICA는 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 사업수행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개혁, 제도개선을 병행하면서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중점 기여분야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KOICA 내부에서 사업수행 평가체계 내실화, 직원학습 및 역량강화, 외부 컨설턴트 육성을 통해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성, 포용성 및 근거에 기반을 둔 사업성과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ODA를 레버리지로 하여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재원과 연대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협력 사업의 이행수단에 접목하는 등 사업 수행방식을 혁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점 기여분야인 스마트 새마을 운동, 인적자원개발과 제도적 역량강화, 기후 변화에 집중하고, 최빈국·분쟁 취약국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KOICA의 중장기 전략, 국가별 CPS, 분야별 전략을 연동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SDGs 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KOICA는 현재 중장기 전략 핵심과제로 1) SDGs 이행전략 수립, 2) Post-2015 브랜드 사업 추진, 3) SDGs와 연계한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KOICA는 Post-2015 브랜드 대상화를 위하여 5대 중점분야인 지역개발(농촌), 교육, 보건,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와 3대 범분야인 젠더, 기후변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KOICA는 SDGs 달성을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테마별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정책과 사회적 담론을 발전 시켜온 것은 분명하나,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협력 영역과의 정책일관성을 이루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지지기반이 국내정책과 대외정책간의 고리를 줄여나갈 만큼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 과제는 KOICA의 SDG16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국내의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문화 등 다른 분야 정책과의 일관성 측면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지만,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SDG16 이행을 위한 보다 견고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III. 주요 공여국의 SDG16 이행 현황 사례

제1절 들어가며

해외 주요 공여국의 원조기관들은 다양한 국가별 정책환경, 외교적, 전략적 선택에 기반을 두고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및 평화관련 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유럽국가와 유사하게 평화, 안보, 인권, 거버넌스 등 SDG16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호주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인권전략의 경우, 보건, 교육, 젠더, 아동, 장애관련 전략 및 사업에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2018-2019 부처별 계획’내 SDG16이라는 목표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권, 거버넌스, 민주주의 및 포용’ 그리고 ‘평화와 안보’가 이미 정책화되고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며, 정부기관 및 CSO 모두 분쟁 지역에서의 분쟁 예방 및 안정화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섹터로서의 인권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거버넌스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개발 목표 달성을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17).

미국의 경우, 2007년 중기외교개발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port, QDDR)에 인권을 포함하고, 2013년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Democracy, Rights, and Governance, DRG) 전략을 수립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개발협력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사법부 개혁 프로젝트가 미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대표사례로 종종 소개되고 있다.²³⁾

영국의 경우, 취약국 문제해결을 위해 SDG16이 추구하는 법적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연간 원조 총액의 50%를 취약지역/국가의 안정성 확보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며, 부패방지, 조세 투명성, 법치주의의 확립 등을 강조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 영국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23) 필리핀 58개 법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목표로 개별 사건 처리 시간을 최소 60%에서 최대 78%까지 절감한 사업이다.

개도국 공공 재정의 투명한 관리 및 조세 체계 개선을 위하여 11개국에 3,260만 파운드를 투자한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민주화) 관련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수행에서 국제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양자, 다자의 외교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덴마크 외교부는 ‘세계 2030: 개발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전략’에서 △평화와 안보, △인권,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SDG16과 SDG17(파트너십)이 기타 SDGs 목표달성을 위한 토대임을 강조하였다. ‘Danish Neighborhood Program’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 ‘Danish-Arab Partnership Program’은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인권 개선을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협력국의 공공행정, 민주주의, 인권 개선 분야에 원조 총액의 약 20%를 배정하였다. 2016년 12월 외교정책 전략문서인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별도로 발행하였고, 인근의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SDGs 글로벌 데이터 구축을 지원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 (V-Dem)’를 진행해왔다. 독일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사업은 물론, 인권전략에 대한 주류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권을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근본 가치로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2011년 독일연방개발협력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는 ‘독일 개발정책에서의 인권전략’을 채택하였고, 다양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특히, 2017년 ‘아프리카를 위한 마셜플랜’은 신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이며, 총 3개의 영역(Pillar)으로 지원하며 이 중 2개의 영역이 SDG16에 해당한다.

주요 해외 공여기관들의 SDG16 관련 전략과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 [표 13]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의 세 분야에서 각국이 축적한 절대 우위와 KOICA 전략 및 한국 ODA 현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진은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SDG16 이행체계 구축에 가장 풍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스웨덴은 평화, 거버넌스, 인권 등의 전 분야에 있어 글로벌 개발협력 담론과 실행을 선도하는 국가로 정책, 전략-사업이 유기적으로 권리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인권의 주류화, 평화-안전보장 및 민주주의의 주류화와 대상화 차원에서 참고할 점이 많은 국가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두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정책-사업의 사업수행체계, 대표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원조기관들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규범적인 개발협력의 가치와 목표를 정착화하고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들이 실시되기를 바라며, 본 절에서는 스웨덴과 독일 사례 중심으로 정책-전략-사업수행의 체계의 공통점과 차이를 탐색하여 KOICA의 SDG16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 13] 주요 공여기관별 SDG 16 대응 전략 비교

| | 원칙과 활동 | 사업의 예 |
|------------|---|--|
| 영국 DFI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국 문제해결을 위해 SDG16이 추구하는 법적 제도 구축을 지원 연간 원조 총액의 50%를 취약지역/국가의 안정성 확보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지원 부패방지, 조세 투명성, 법치주의의 확립 등을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 공공 재정의 투명한 관리 및 조세 체계 개선을 위하여 2015년 11개국에 3,260만 파운드를 투자 |
| 스웨덴 Sid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적 거버넌스와 인권 개선은 개발협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 2000년대 초반부터 협력국의 공공행정, 민주주의, 인권 개선 분야에 원조 총액의 약 20%를 배정 2016년 12월 외교정책 전략문서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SDGs 글로벌 데이터 구축을 지원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 (V-Dem)’ |
| 독일 BMZ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사업은 물론, 인권전략에 대한 주류화를 시행 (법적의무화) 2011년 BMZ는 ‘독일 개발정책에서의 인권전략’을 채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아프리카를 위한 마셜플랜’은 신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이며 총 3개의 영역 (pillar)으로 지원하며 이 중 2개 영역이 SDG16에 해당 |
| 미국 USAI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 QDDR (중기외교개발보고서)에 인권포함 2013년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DRG) 전략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의 사법부 개혁 프로젝트로서 지역 내 58개 법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목표로 케이스 처리 시간을 최소 60%에서 최대 78%까지 절감 |
| 일본 JIC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부터 ‘인간 안보’를 국제개발협력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인권기반접근(RBA)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 2015년 「개발협력대강」에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간다 북부, 필리핀 민다나오 등에서 평화 정착과 민주화 등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
| 덴마크 DANID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덴마크 외교부는 ‘세계 2030: 개발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전략’에서 △평화와 안보, △인권,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동일한 문서에서 SDG16과 SDG17(파트너십)이 기타 SDGs 목표달성을 위한 토대가 됨을 명시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nish Neighborhood Program’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 ‘Danish-Arab Partnership Program’은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집중 |

| | 원칙과 활동 | 사업의 예 |
|-----------|---|---|
| 호주 AusAi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거버넌스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개발 목표 달성을 기여함을 명시 특히, SDG16과 SDG10 (불평등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d for Trade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체 원조 프로그램의 20% 지원 목표 |
| 캐나다 CID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2019 부처별 계획 내 SDG16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권, 거버넌스, 민주주의 및 포용’ 그리고 ‘평화와 안보’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관 및 CSO 모두 분쟁 지역에서의 분쟁 예방 및 안정화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보유 |

출처: 저자 작성

제2절 스웨덴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

1. 스웨덴의 SDG16 정책과 전략

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다시 이를 6가지의 하위 목표²⁴⁾로 세분화했다. 또한 6개 하위 목표 모두에 적용하는 3대 우선 순위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기후, △성평등과 개발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또한 2003년 국회에서 채택한 국제개발협력 기본 정책 문서인 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이하 PGD)를 근간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quitable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을 범정부적 차원의 국제개발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외교, 안보 및 국제 경제와 환경 정책과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 그리고 MDGs와 같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 목표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또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요소로서 i) 인권 존중, ii) 민주주의 및 굿거버넌스, iii) 성평등 iv) 지속가능한

24) i) Strengthened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greater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reedom from oppression, ii) Better opportunities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to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economic growth and obtain a good education, iii) A better environment, limited climate impact and greater resilience to environmental impact,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iv) Improved basic health, v) Safeguarding human security and freedom from violence, vi) Saving lives, alleviating suffering and maintaining human dignity.

자원 활용과 환경보호, v) 경제발전, vi) 사회발전 및 안보, vii) 분쟁관리 및 인간 안보 viii) 글로벌 공공재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동시에 i) 권리 중심 접근법 ii) 빈곤층 중심 접근법을 전 분야에 걸쳐 정책 결정과 사업 실행에 적용하는 주류화를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후에도 PGD를 뒷받침 하는 정책과 전략을 꾸준히 수립해왔다. 2014년에는 PGD에 요약된 다양한 관점과 정책 영역 간의 계층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Aid Policy Framework: The Direction of Swedish Aid’를 수립하여 빈곤에 대한 다면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인 억압의 형태인 폭력과 무력 충돌을 언급하면서 갈등과 분쟁 상황에 처한 지역 및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²⁵⁾

[그림 7] 스웨덴 개발협력정책의 목적: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Objective for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To contribute to equitable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Overarching objective for Sweden’s international aid: *To create preconditions for better living conditions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and under oppression*

*Sub-objective 1
Strengthened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greater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reedom from oppression*

*Sub-objective 2
Better opportunities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to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economic growth and obtain a good education*

*Sub-objective 3
A better environment, limited climate impact and greater resilience to environmental impact,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Sub-objective 4
Improved basic health*

*Sub-objective 5
Safeguarding human security and freedom from violence*

*Sub-objective 6
Saving lives, alleviating suffering and maintaining human dignity*

Results strategies for aid in countries or regions

Results strategies for cooperation with/through multilateral organisations

Results strategies for thematically focussed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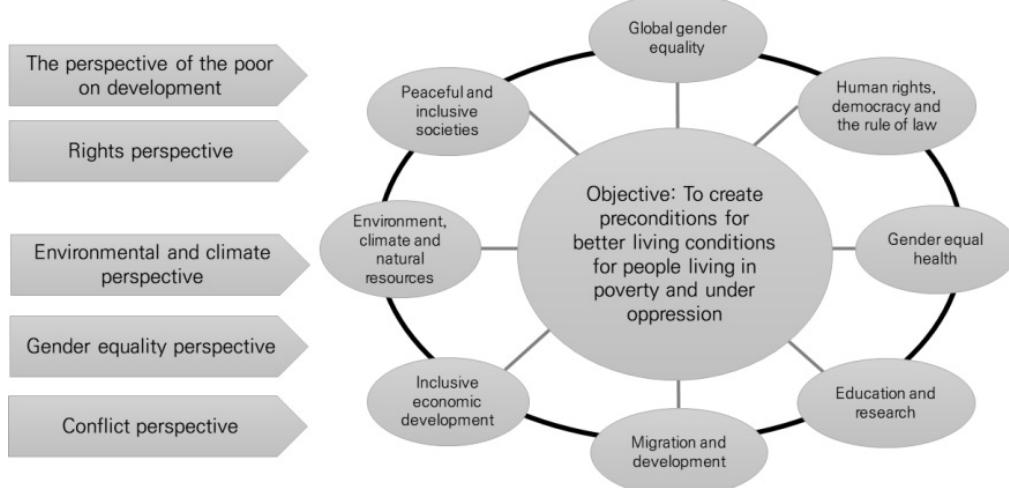
출처: Aid Policy Framework: The Direction of Swedish Aid

2016년에는 산재해 있던 기존 정책 문서들을 정비하고 새롭게 구성된 정부의 외교 정책과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 의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Policy Framework

25)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Government Communication 2013/14:131, Aid Policy Framework: The Direction of Swedish Aid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를 수립하여 2014년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대체하였다. 본 문서에서는 개발협력이 스웨덴 외교 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권리와 빈곤층 중심의 개발에 대한 관점을 고려한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갈등 관점과 환경 및 기후, 성평등 관점을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전 정책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발협력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SDGs의 17개 목표에 부합하는 8개 세부 주제²⁶⁾를 설정했다.

[그림 8] 스웨덴 개발 협력에 통합된 시각



출처: 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나. 국제개발에서의 PHD 정책 및 전략

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주요 회원국인 스웨덴은 특히 노르딕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세계시민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가치에 대한 강조뿐만

26) i)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ii) Global gender equality, iii) Environmentally and climate-relat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use of national resources, iv)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v)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vi) Migration and development, vii) Equal health, and viii) Education and research.

아니라 노르딕 국가들의 국제개발협력과 원조 수행 목적이 인도적 목적을 우선시한다는 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원조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빈곤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고 억압받는 이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⁷⁾

빈곤에 대한 다면적 접근과 빈곤층 중심 접근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은 SDGs이행 수단에 관한 목표인 SDG17을 앞서 설명한 정책문서 PGD와 연결시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스웨덴 정부가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신장에 대해 SDGs가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2) 평화관련 정책 및 전략

기본적으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은 빈곤이 물질과 자원의 결핍뿐만 아니라 전쟁과 폭력의 영향을 받는 국가와 지역에 만연하게 퍼져 있으며,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분쟁과 갈등을 빈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개발을 위해서는 인간 안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 또한 권리 및 빈곤층 중심 접근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스웨덴은 이러한 관점을 국제개발협력 목표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분쟁 국가들을 지원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과 1990년대부터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에 분쟁 예방 및 포괄적 평화를 설정한 것이다.

[표 14] 스웨덴의 평화관련 정책 및 전략 목록

| 발행 연도 | 정책 및 전략 문서 | 핵심 내용 |
|-------|---|---|
| 1999 | Swedish Action Pla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da가 분쟁과 갈등 분석에 기초한 총체적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청 |
| 2001 | Preventing Violence Conflict: Swedish Policy for the 21st Centur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정책 분야 간의 통합된 접근 촉구 분쟁 예방에 대한 장단기적 조치의 중요성 제시 |
| 2005 | Promoting Peace and Security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 인식, 갈등 감수성, 평화와 안보 증진을 포함하는 개발협력 정의 |
| 2006 | Manual for Conflict Analys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격적으로 갈등 민감성 접근법 제시 |

27) Sida 인권 및 민주주의 전문관 면담 내용

28) 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2016), 6p

| 발행 연도 | 정책 및 전략 문서 | 핵심 내용 |
|-------|--|---|
| 2014 | Aid Policy Framework: The Direction of Swedish Ai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안보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활동 전개 |
| 2016 | 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의 개념 명시 이를 위한 장기 정책 방향 제시 |
| 2018 | Strategy for Sustainable Peace 2017-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장 분쟁 방지, 평화구축과 국가 형성, 인간 안보의 총체적 역량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출처: 스웨덴의 정책 및 전략 문서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999년 발표한 정책문서 Swedish Action Plan은 Sida가 분쟁과 갈등 분석에 기초한 총체적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2001년 수립한 정책문서 ‘Preventing Violent Conflict: Swedish Policy for the 21st Century’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개발협력과 국제법, 무역 및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정책 분야 간의 통합된 접근을 촉구하며 분쟁 예방에 대한 장기적·단기적 조치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Sida는 구체적으로 개발협력을 통한 평화 및 안보 정책인 ‘Promoting Peace and Security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2005)’을 통해 위험 인식, 갈등 감수성, 평화와 안보 증진을 포함하는 개발협력에 대해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인 ‘Manual for Conflict Analysis(2006)’에서 본격적으로 갈등 민감성 접근법을 전면에 제시하였다.

2014년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는 “인간 안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 보호(Safeguarding Human Security and Freedom from Violence)”를 개발원조 정책의 6대 세부목표²⁹⁾ 중 5번째 목표로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 및 안보,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 △갈등에 대한 취약성 및 갈등 재발 가능성 감축, △갈등 및 분쟁 상황에서 인간안보 증진, △성폭력 감소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스웨덴은 평화와 인간안보 증진이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특히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 권리를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개발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9) 1)Strengthened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greater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reedom from oppression 2)Better opportunities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to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economic growth and obtain a good education 3)A better environment, limited climate impact and greater resilience to environmental impact,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4)Improved basic health 5)Safeguarding human security and freedom from violence 6)Saving lives, alleviating suffering and maintaining human dignity

따라서 스웨덴 개발원조는 폭력과 폭력의 결과를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줄이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역량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빈곤층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분쟁 후 조정과 화해 및 평화구축이 핵심이다.³⁰⁾ 목표로는 평화, 대상으로는 취약계층인 것이다.

2016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8대 주제 중 4번째 주제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를 제시하였다. 동 프레임워크에 따른 장기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평화구축과 국가 건설을 위해 갈등과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평화적 방법에 의한 갈등 해결 강화, △무력 충돌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와 중재 과정, 민간 위기관리 지원, △취약국에 대한 뉴딜정책과 연계한 정책대화 및 개발협력, △여성 영향력 강화에 기여, △여성과 소녀들의 평화구축 과정에 의미있는 참여 증진, △여성과 평화 및 안보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이행에 기여, △청(소)년과 평화 및 안보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50 이행에 기여, △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 △지뢰 제거 및 무기의 불법적 확산 방지 지원. 갈등 민감성 접근법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Strategy for Sustainable Peace 2017–2022’에 잘 드러나 있다. 요약하자면, 무장 분쟁 방지, 평화구축과 국가형성, 인간안보의 총체적 역량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무장 분쟁 방지 역량 강화, 평화 구축, 국가형성 절차 지원 역량 강화,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의 영향과 참여 촉진 역량 강화, △분쟁 취약국의 인간안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 촉진 역량 강화, △분쟁 취약국의 부패와 불의(Impunity) 대응 역량 강화, △통제되지 않은 소형무기의 확산을 감소시키고 UN무기거래조약을 시행하는 역량 강화, △지뢰, 클러스터탄과 다른 폭발물의 위협 감소 등을 설정하였다. 또 다른 목표로는 오래된 만성적 분쟁을 포함하여 평화구축과 국가형성 과정에서 무장분쟁을 방지하는 활동을 국가적, 지역적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협상, 중재, 평화구축 단계에서 여성과 청소년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 △분쟁 취약국의 평화구축과 국가형성 및 무장분쟁 방지 단계에서 국가적·지역적 수준의 평화 배당금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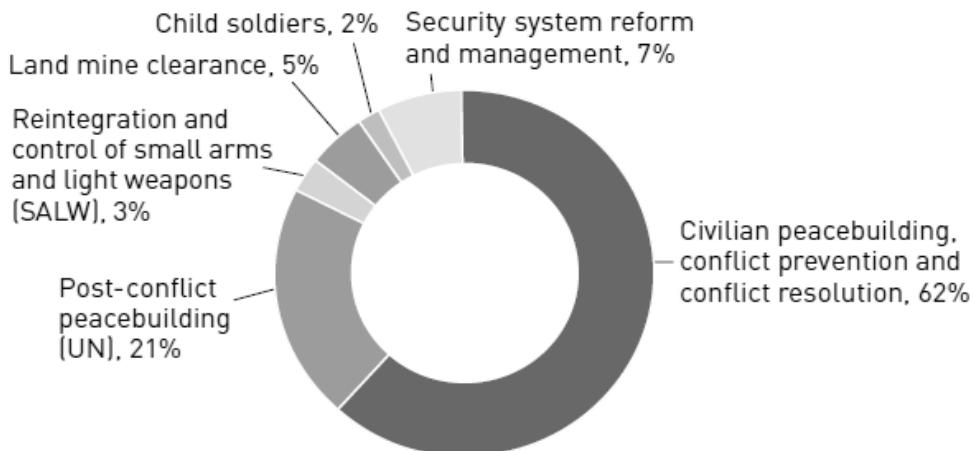
이처럼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평화와 인간안보, 분쟁 예방과 해결에 관심을 갖고

30) Aid Policy Framework: The Direction of Swedish Aid (2014), p37

정책화를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분야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권리에 기반한 관점과 빈곤의 다면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과 실행 전략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이다. 스웨덴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없이는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있을 수 없으며, 인권 존중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UN의 오랜 명제를 환기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이자 수단이라는 SDGs의 특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예산지출 기준으로, 분쟁, 평화 및 안보를 주요목표(Principal Objective)로 두고 있는 사업은 Sida 예산의 7%를 차지하며, 평화와 안보 보장을 2차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의 51%를 차지하여 스웨덴은 이미 SDG16의 대상화와 주류화를 이루했다고 볼 수 있다. 분쟁, 평화 및 안보 분야 대상 지원(Targeted Support) 사업은 Sida 총 예산의 3.9%(7억 3,300만 SEK)을 차지했다. 동 분야 지원 사업은 △소년병(2%) △소형무기 및 경량무기 통제 및 관리(3%) △지뢰 제거(5%) △안보시스템 개혁 및 운영(7%) △분쟁 후 평화구축(21%) △민간 평화구축,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62%)의 6개 하위분야로 진행되었다.

[그림 9] 2016년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하위분야별 지출



출처: Portfolio Overview 2016: Peace and Security (Sida, 2016)

3)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및 전략

스웨덴 정부는 권력(Power)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결핍을 빈곤의 원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동일한 정책과 전략 내에서 일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스웨덴 정부의 지원 사업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증진,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제도와 절차 강화, △민주주의적 요소 증진과 강화의 3가지 영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 정신과 방향, 중심과제는 PGD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인권 조약에 근거한 인권의 관점이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투영되어야 할 기본 정신으로 개발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였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인권 관점의 근본 원칙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 △참여 (Participation), △개방성과 투명성(Openness and 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이다. 스웨덴 정부는 실제로 권리의 관점을 작동시키는 것은 개인의 권리 보장,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신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원조의 결과가 지속가능하려면 원조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빈곤 없는 삶에 대한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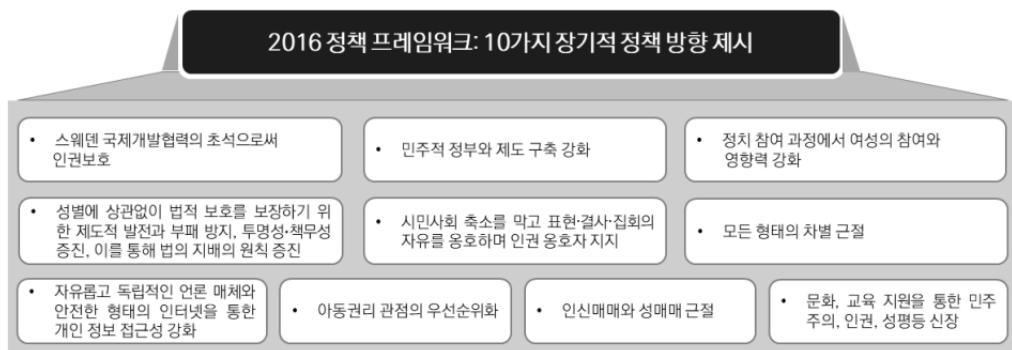
스웨덴은 2014년 채택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존중과 법의 지배 원칙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을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원칙을 지원하는 스웨덴 개발원조는 주로 여성,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LGBT), 원주민, 소수 민족, HIV/AIDS 감염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평등을 민주주의 증진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관점은 2016년에 수립한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더욱 강력하게 강조된다. 스웨덴의 인식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가치가 많은 국가에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해 자국이 국제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신뢰를 활용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해서 스웨덴은 2030 의제에서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전략문서에서 보듯, 국제개발협력의 8가지 주제 중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 원칙’이 첫 번째 주제로 명시된 것은 PHD에 대한 스웨덴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본 프레임워크에서 10가지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의 초석으로써 인권보호, △민주적 정부와 제도 구축 강화, △정치 참여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영향력 강화, △여성과 소녀들이 법 앞에 똑같이 대우받고 남성과 소년과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과 부패 방지,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지원, 이를 통해 법의 지배의 원칙 증진, △시민사회의 축소를 막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며 인권옹호자 지지, △성별, 나이, 성정체성 및 성별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민족/종교 또는 기타 신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와 인권과 법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안전한 형태의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 접근성 강화, △권리 중심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관점의 우선순위화, △인신매매와 성매매 근절, △문화, 교육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신장 등이다.

[그림 10] 2016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10가지 장기적 정책 방향



출처: 스웨덴의 2016 정책 프레임워크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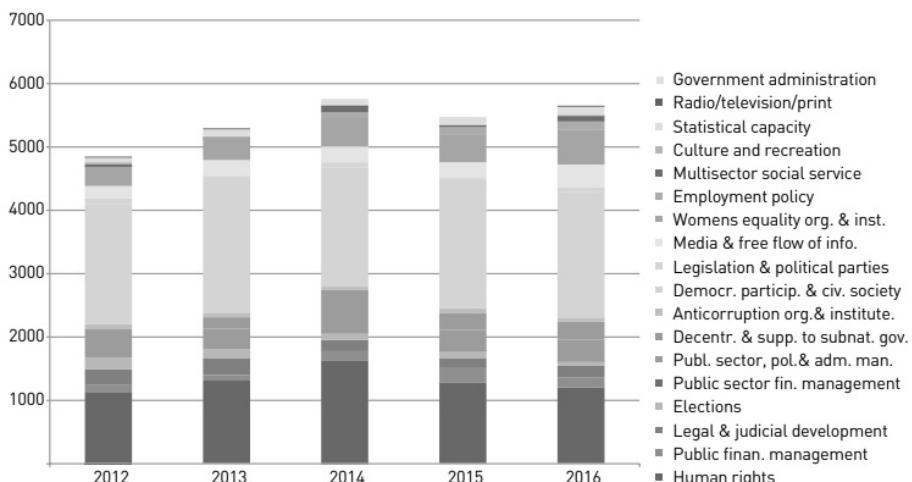
이후 스웨덴은 2016년 정책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전략문서인 ‘Strategy for Sweden’s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18–2022’를 수립하였다. 동 전략에서 인권은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정의롭고 공평하며 성평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국제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원칙을 정의하고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원칙은 그 자체로 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동 전략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중심 관점과 빈곤층 중심 관점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 전략에 따른 사업 활동은 구체적으로 △포용적 민주적 사회, △모두를 위한 동등한 권리, △안보, 정의 및 책무성과 같은 목적에 기여한다.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 원칙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민주적 원칙과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하며, 민주적 참여와 영향력을 증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모두를 위한 동등한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지역적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별 대우에 맞서 인권 존중을 강화하며,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보장,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권한 부여, 성평등을 위한 전제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안보, 정의 및 책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패 감소 및 투명성,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법의 지배 원칙과 정의에 대한 접근성 및 인권신장 활동 기관과 주체들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발협력에 있어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 대한 스웨덴의 의지는 지원 규모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PHD의 18개의 하위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2012–2016 Sida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하위분야별 지원

TABLE 1: DISTRIBUTION PER SUBSECTOR WITH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MILLION SEK



출처: Portfolio Overview 2016: Democracy and Human Rights (Sida, 2016)

2. 스웨덴의 SDG16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가. 일반적 사업수행체계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크게 Sida 본부의 사업기획 및 관리 업무와 협력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사업 실행 관리 체계로 구분된다. Sida의 사업 지원 관리는 9단계로, i) 국별 협력 전략 수립 및 검토(Cooperation Strategy), ii)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 파트너와의 대화(Dialogue), iii) 사업 예비 심사(Plan Appraisal), iv) 사업 제안(Project Document), v) 사업 심사 및 결정(Assessment and Decision), vi) 사업 지원 체결(Contribution Agreement), vii) 조달(Procurement), viii)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ix) 성과 측정 및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림 12] Sida의 사업 지원 관리 9단계



출처: www.sid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Sida는 사업 심사 및 결정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정책 프레임워크(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관점(권리, 빈곤층, 성평등, 갈등 민감성, 환경 및 기후) 접근법에 기반한 사전 분석을 수행하고 주제별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스웨덴 대사관의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Officer)가 협력 파트너와의 정책 대화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1차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 때, 프로그램 관리자는 현지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와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Sida 본부의 주제별(인권 및 민주주의, 갈등관리, 성평등 등) 전문관에게 보고하며, 전문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나. 평화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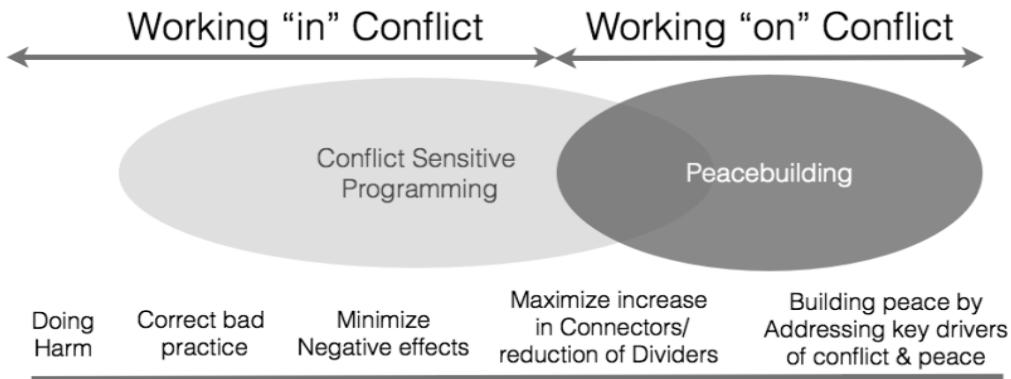
Sida는 최근 갈등 관점과 평화 및 안보 분야 지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돋기 위해 Peace and Conflict Tool Box(2017)를 만들어 Sida의 갈등 관리 및 평화 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선도적 역할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도구 상자는 평화와 관련 용어, 정의, 기술적 정보와 함께 사업 수행 단계에서 갈등 민감성 관점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Sida의 직원들과 파트너들은 사업 발굴 단계에서 스웨덴 개발협력의 전략적 우선 순위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Sida의 사업 관리에 있어 프로그램 관리자는 동 도구 상자를 활용해 사업발굴 시 갈등 요소 및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본 도구 상자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분쟁과 폭력에 취약해지고, 인간 안보의 부재와 빈곤 심화로 인하여 사회적 긴장도가 증가한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통합된 갈등 민감성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설계 시 예상되는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분쟁예방, 평화구축, 화해와 조정 및 갈등 관리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극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Sida는 도구 상자를 통해 사회 갈등이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이 아닌 평화적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갈등 및 분쟁해결의 기본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갈등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상황에 민감하게 접근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협력 대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폭력적 분쟁은 대부분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분쟁 후, 법-제도의 권위 상실, 정의에 대한 접근 부족, 폭력의 증가로 인해 더욱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웨덴은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과 관리 및 평화구축을 위한 장기 지원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폭력의 재발 방지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구축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도구 상자는 [그림 13]에서 보듯, 통합된 갈등 관점을 주어진 맥락과 의도된 목표에 따라 i) Working in Conflict (갈등주기의 어느 단계에서 설계되고 실행된 개발 이니셔티브) ii) Working on Conflict (평화와 안보를 목표로 설정한 사업)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림 13] 갈등 민감성과 평화구축: Working in Conflict와 Working on Conflict



출처: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Peace Building

Working in Conflict는 위험에 대한 인식³¹⁾과 갈등 민감성³²⁾을 요구하는 개념인 반면에 Working on Conflict는 폭력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분쟁 예방, 평화 및 인간 안보를 주요 목표 또는 부차적 목표로 삼기 위한 추가적 심층 분석을 요구한다. 특히, 인간안보 증진과 평화구축을 위해 고안된 개발 이니셔티브가 갈등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표 15] Sida의 갈등 민감성 접근법 적용 단계

| 갈등 민감성의 정의(The What and How of conflict sensitivity) | |
|--|------------------------------------|
| 핵심 원칙: 참여적 접근법, 포용성, 공평성, 투명성, 존중, 책무성, 파트너십과 조정, 상보성 및 일관성, 적시성, 유연성, 반응성 | |
| What to do | How to do it |
| 맥락에 대한 이해 | 갈등 분석 수행 및 정기적 업데이트 |
| 상황 및 맥락과 외부적 지원과 개입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 | 분석 결과를 프로그램 환경과 주기에 연계 |
| 위험 요소에 대한 식별, 평가, 완화, 관리 및 모니터링 (Do No Harm 관점 적용) 긍정적 사회 변화를 지원할 기회 발굴 (태도, 행동, 관계 등) | 갈등 민감성을 갖춘 프로그램 계획, 실행, 모니터와 평가 실시 |

출처: Sida Peace and Conflict tool box: Conflict sensitivity in programme management(2017)

31) 갈등 상황이 개발 이니셔티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

32) 개발 이니셔티브가 갈등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갈등의 역학에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역량

[표 16] Sida의 갈등감수성 통합 역량 구축 및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 Key questions |
|--|--|
| 1. Institutional Capacity 기관 역량 • Commitment • Culture • Resources • Knowledge • Too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licies/strategies, annual work plans, budgets and other key planning instruments refer to conflict sensitivity? Management and leadership culture support learning, flexibility and responsive programming? Analytical processes and strategic choices are systematized and well-documented (lessons learned)? Management and staff understand (have shared understanding) and are able to explain why conflict sensitivity is important to their respective areas of responsibility? Have they received training? Guidelines and tools on conflict sensitivity are available to staff and partners? |
| 2. Management Processes • Strategic • Program • Project leve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ategic programme/project planning and direction is informed by a conflict analysis or similar analysis taking into consideration root causes to conflict, conflict risks and opportunities, dividers and connectors? Conflict sensitivity considerations are reflected in the initiative (overall design, objectives and/or in the risk analysis)? Opportunities to support conflict prevention/resolution and/or peacebuilding are identified and reflected in the strategic direction? M&E and learning frameworks include reference to measuring intended and unintended outcomes from a conflict perspective? Flexibility, adaptation and responsiveness principles are built into the project/programme? |
| 3. Operational Practices • Approaches • Values • Principl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re principles of the conflict perspective (participatory approach, inclusiveness, impartiality, transparency, respect, accountability, partnership and coordination,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timeliness and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are reflected in operational practices? Risk mitigation from a Do-No-Harm perspective is systematically applied in project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positive change (e.g. by transforming attitudes, structures and institutions that have a bearing on the conflict context) are identified and acted upon? Structural causes of conflict (such as gender-based violence, gender inequality and other patterns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at risk leading to violent conflict are addressed in the project/programme? |

| | Key questions |
|--|--|
| 4. Results • Intended and unintended impact on the conflict contex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rough M&E and learning activities (internal and external), we have gathered evidence demonstrating that: • Efforts to mitigate the risk of doing harm have been effective, i.e. we are doing more good than bad? • Activities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flict context, i.e. we are contributing to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resolution and/or peacebuilding within the limitations of our respective mandates and objectives? • Operational challenges and lessons learnt, including from situations where activities may have had an unintended negative effect on the conflict context have been documented and analysed? |

출처: Peace and Conflict [Tool]: Building and Assessing Institutional Capacity to Integrate Conflict Sensitivity(Sida, 2017)

Sida는 오랜 개발원조 역사와 경험을 통해 많은 파트너 국가들이 점점 더 갈등 및 폭력에 취약해지고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며 그 결과 빈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채택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통합된 갈등 관점을 적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발협력에 대한 통합된 갈등 관점 적용은 본질적으로 갈등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요소가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개발 프로그램이 의도적 또는 의도적이지 않게 긴장과 갈등 유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분쟁예방, 평화구축, 화해 및 조정, 분쟁관리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협력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갈등 분석과 갈등 감수성 분석은 갈등 관점 적용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Sida는 사회 갈등이 폭력이나 폭력적 위협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갈등 관점 적용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17]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대표 사업(1)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Core support 2012-2016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2017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S(협력대상국 NGO) |
| 관련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gional Sub-Saharan Africa 2010-2015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vernment & Civil Society |
| 하위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
| 총 지출액 및 약정액(net valu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D 6,434,724 / USD 6,937,269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 기반 정책 제안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 인간안보향상 |
| 5대 핵심 지원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적 거버넌스 및 부정부패 감소 효과적 분쟁 예방 및 위험 분석 효과적 갈등 관리 및 평화 구축 초국가적 위협 및 국제적 범죄 퇴치 범죄 및 폭력 감소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아프리카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안보 역량 강화 훈련 콩고민주공화국의 최근 분쟁 및 개발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한 분쟁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아프리카연합(AU)의 분쟁 후 재건 및 개발 사업부(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Unit) 기술 및 갈등 분석 활동 지원 |

출처: Sida Building and Assessing Institutional Capacity to Integrate Conflict Sensitivity(2017)

[표 18]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대표 사업(2)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 & Peace Institute's Conflict Transformation Programme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2016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리아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 & Peace Institute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vernment & Civil Society |
| 하위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
| 총 지출액 및 약정액(net valu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D 3,641,525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리아 지속적 평화 창출을 위한 지역 분쟁 해결 |

| | |
|-------|--|
| 접근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의 지원 통해 평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 Life & Peace Institute와 함께 지역 파트너인 Somalia Peace Line과 협력 LPI와 SPL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협상기술 전파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전통적 평화구축 과정이 연장자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LPI는 모든 계층,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 고려 여성, 청소년, 소수민족, 취약계층의 참여 확장 소말리아 남부 Kismayo 지역 여성이 이끄는 단체인 Somali Womens Solidarity Organization와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여성이 중심이 되는 평화구축 과정 착수 |
| 주요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리아 남부 및 중부 5개 지역에서 15개 이상 현장 성과 도출 2014년 이후 24개 씨족 집단 간 갈등해결 대화 지원, 그 중 20%는 2015년에 실시되어 9건 합의 도출 씨족 간 충돌, 무력 분쟁 감소, 자원 공유방안 개선, 민병대 철수 및 공동체 정책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3건 협약 체결 그 결과로 지역 내 긴장 완화, 불법 검문 축소, 이동의 자유 증가, 씨족간 국경 넘어선 서비스 및 상품 증가 2015년 지역사회 지도자간 대화에 여성 참여 허용 여성 20명 지역 평화구축 활동 촉진자로 훈련받음 현지 파트너 단체 역량 강화, 평화구축 및 정부 감시 교육 수행 |

출처: <https://www.sida.se/English/where-we-work/Africa/Somalia/examples-of-results/local-conflicts-must-be-resolved/> (검색일자: 2018.05.03.)

스웨덴 정부는 시민사회의 평화 및 안보 분야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빙곤퇴치, 민주주의 발전, 인권 존중, 평화구축과 분쟁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한다. 스웨덴 정부는 궁극적으로 협력국에서 자국의 빙곤감소와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협력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화 및 안보 관련 시민사회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Forum Syd, Diakonia, Save the Children Sweden, Swedish Mission Council, Olof Palmes Internationella Center, Church of Sweden 등이 스웨덴 정부의 시민사회지원 전략인 Strategy for Support via Swedis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for the Period 2016–2022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표 19]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시민사회 통한 지원 대표 사업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unity-Based Peace and Governance support to local communities in Mindanao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2016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of Palme Internationella Center / SIMCARRD, INC-SIAD Initiatives in Mindanao-Convergence for Asset Reform and Regional Development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flict peace and security |
| 하위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vilian peace-building |
| 총 지출액 및 액정액(net valu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D1,207,588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사회 기반의 평화 활동 단체 역량 강화 민다나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지역 내 분쟁과 갈등 해결, 여성 권리 보호, 지역 거버넌스 참여 역량 강화 |
| 접근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 국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중요성 여성의 평화구축 활동 참여와 권리 증진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과 실행 |
| 주요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의 결과와 성과를 추적하는 프로젝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도적/행정적 역량 강화 기후변화 및 재난 위험 감소 대응 체계 개발 평화활동 단체 활동가 80%(470명 중 456명)의 평화구축역량 조직화, 분쟁해결 활동 개발 평화활동가에 대한 공동의 정의(개인과 사회의 변화,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분석 강화, 갈등 전환 기술 능력을 통해 평화 문화 건설을 촉진하는 사람) 합의 모든 차원에서 여성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 증진 지역 내 수행되는 대다수 개발 프로그램에 성평등 부문 통합, 우선순위 부여 평화구축 활동 활성화를 통해 물리적 폭력, 폭력적 위협으로 드러나는 갈등 대폭 감소 |

정부 기관 중에서는 Sida와 함께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스웨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Folke Bernadotte Academy(FBA)를 들 수 있다. FBA는 특히 분쟁 취약국 및 분쟁 이후 국가에서의 평화유지와 국가형성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평화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기관, 국제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또 EU와 UN이 주도하는 평화 작전 전문 민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주요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글상자 2] FBA의 교육과정 목록

- DDR 과정(Course on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 법의 지배 원칙 과정(Course on Rule of Law)
- 안보 분야 개혁 과정(Course on Security Sector Reform)
- EU 시니어 지도자 과정(EU Senior Mission Leaders Course)
- 젠더 자문가 과정(Gender Adviser Course)
- 다기능 국제업무에서의 정보 및 지식 협력(Information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in Multifunctional International Operations)
- EU CSDP 임무 수행 사전 교육(Pre-Deployment Training for Personnel in EU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Mission)
- 분쟁 지역의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Protection against Risks and Threats in Conflict Areas)
- 정치적 자문을 위한 맞춤형 과정(Tailor-Made Courses for Political Advisers)
- 분쟁 예방을 위한 맞춤형 과정(Tailor-Made Courses on Conflict Prevention)
- UN 민간프로그램관리자 과정(UN Civilian Staff Officer Course)

출처: fba.se/en/how-we-work/courses/all-courses/ (검색일자: 2018.05.03.)

다.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Sida는 HRBA를 권리 중심, 빈곤층 중심, 성평등, 갈등, 환경 및 기후 관점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Sida는 인권기반접근법 방법론 문서인 ‘Human Rights-Based Approach at Sida’에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에 인권기반접근법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도구, 시사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UN 중심의 인권기반접근법 의제를 내재화 하고 자국의 뜻과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권기반접근법을 스웨덴 정부의 외교 정책 안에서 권리 관점(Rights Perspective)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Sida의 인권기반접근법은 국가, 지역 및 국제법, 조약 및 인권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인권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인권의 4가지 원칙인 i) 비차별, ii) 참여, iii) 투명성, iv) 책무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권기반접근법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를 촉진하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스웨덴은 인권기반접근법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약어인 P.L.A.N.E.T를 사용하고 있다.

[글상자 3] 스웨덴의 인권기반접근 적용방법: P.L.A.N.E.T

- P는 참여(Participation)로 ‘문제 발생, 계획 수립, 실행 및 후속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참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 제공
- L은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s to Human Rights)로, ‘인권법, 조약 및 제도(민원 메커니즘, 법적 기구 및 인권위원회 등)와 국가, 지역, 국제 수준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들은 충분한가, 개정되어야 하는가, 존재하지 않고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가?’를 확인
- A는 책무성(Accountability)로 ‘의무 부담자는 누구인가? 인권 의무를 다하기 위한 지식과 자원, 의지가 있는가? 권리 보유자는 의무 부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의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확인
- N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로 ‘권리 보유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고려되고 있는가? 취약 계층들도 고려되고 있는가? 차별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가?’를 체크
- E는 권한 부여(Empowerment)로 ‘의무 부담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의 역량은 더 강화될 수 있는가?’를 확인
- 마지막으로 T는 투명성(Transparency)으로 ‘의무 부담자와 권리 보유자에게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한가?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확인

출처: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The World Bank, 2016)

Sida의 인권기반접근법은 다양한 주제 분야별 실제 적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LGBTI 및 장애인 권리는 Sida가 지원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각 주제 분야별로 프로그램의 설계,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서 인권기반접근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실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 분야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글상자 4] Sida의 인권기반 접근 적용 주제/분야

- 교육 및 기술 개발(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 환경과 기후(Environment and Climate)
-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 보건(Health)
- 시장 개발(Market Development)
- 평화 구축(Peace-Building)
- 민간 부문 협업(Private Sector Collaboration)
- 연구(Research)
- 지속 가능한 농촌생활체계(Sustainable Rural Livelihood Systems)
-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
- 성평등(Gender Equality)
- 장애인 권리(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LGBTI 권리(Rights of LGBTI Persons)
- 아동 권리(Children's Rights)

출처: www.sida.se/partners/resources-for-all-partners/methodological-materials/human-rights-based-approach-at-sida/ (검색일자: 2018.05.03.)

민주적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분야로 인권과 동일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사업수행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인권이 권리 관점과 인권기반 접근법을 통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근간이 되는 주류화 원칙이자 사업 분야라면, 민주적 거버넌스는 인권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체제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는 18개의 하위분야별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거버넌스에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및 공공행정이 포함된다. Sida가 목표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는 권력의 민주적 사용과 국가 기관과 시민들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부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Sida는 의무 부담자의 의무 수행과 권리 보유자의 권리 증진과 권한 부여 촉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한 스웨덴 외교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발협력 정책에 결합시키고 있다.

[표 20] 스웨덴 Sida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대표 사업(1)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PNA/Mobaderoon Fada II The initiative takers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2021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리아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baderoon(협력대상국 NGO)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vernment & Civil Society |
| 하위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ivil society |
| 총 지출액 및 약정액(net valu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D 2,316,684 / USD 5,290,820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리아 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의 시민 참여 증진과 갈등 해결 대안 도출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da의 지원으로 Mobaderoon은 평화 체제 준비 도구로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함. 시리아 전역에서 매년 1,800여 명이 대화 그룹에 참여하며, 2013년까지 총 4,000여 명이 참여했음. Mobaderoon은 매주 시리아 전역에서 78개 이상의 그룹 회의에서 활용할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리아의 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종교간, 정치 그룹 간의 대화와 네트워크를 촉진함. 참여자들 사이에 긴장감 해소 및 상호이해 효과 증진 5개의 새로운 시민사회조직과 200개 이상의 지역 사회 사업이 생겨남.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 관련 회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함. 2017년 초 제네바에서 시리아 위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Mobaderoon은 분쟁의 양 당사자들과 동시에 일할 수 있는 대표 시민사회조직으로 초청받음. 시리아 분쟁 중 남성들이 시리아를 떠나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Mobaderoon의 네트워크는 주로 여성이 주도함. 여성들은 훌륭한 평화 활동가로 역할했음. 학생일 경우 군 입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Mobaderoon은 남성 지도자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쟁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safe houses'를 세워 네트워크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

출처: <https://www.sida.se/where-we-work/Asia/syria/a-sample-of-results/talks-help-young-syrians-survive-the-conflict/> (검색 일자: 2018.05.03.)

[표 21] 스웨덴 Sida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대표 사업(2)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ab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11-2013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2013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랍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HR(Arab Institute for Human Rights) (협력대상국 NGO)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vernment & Civil Society |
| 하위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ivil society |
| 총 지출액 및 약정액(net valu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800,800 SEK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풀뿌리 조직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활동 강화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적 전환(democratic transition)을 위한 시민사회 조직과 사이버 활동가 플랫폼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Anabtawi 지역 트레이닝 캠프 조직, 2014년까지 5개 국가에서 지역 NGO 교육 실시 프로젝트 설계, 목표 설정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실질적 과정에 인권 반영, 프로젝트 관리(모금활동, 재무관리), 네트워킹 등이 주 교육 내용 시민/언론 활동가들에게 인권과 민주적 전환 문제에 관한 교육 제공 및 인권 활동가들의 협력 촉진 민주적 전환에 관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Arab Resource Hu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 다른 아랍 국가들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경험과 정보 수집, 다른 시민사회 주체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주적 전환에 관한 토론 활성화 및 정보와 경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로의 이행 관련, 특히 사회적 요구와 취약계층의 포용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 및 지원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 촉진, 지역 워크숍 조직 2011년 7월, 튜니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적 시스템” 주제로 국제 세미나 개최 2012년 4월, 모로코에서 “전환 과정에서의 인권 교육 우선 순위와 도전 과제”에 대한 주제로 지역 세미나 개최 |

출처: <https://www.sida.se/English/where-we-work/Asia/the-Middle-East/examples-of-results/local-organisations-important-actors-in-democratic-transitions/> (검색일자: 2018.05.03.)

제3절 독일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

1. 독일의 SDG16 정책과 전략

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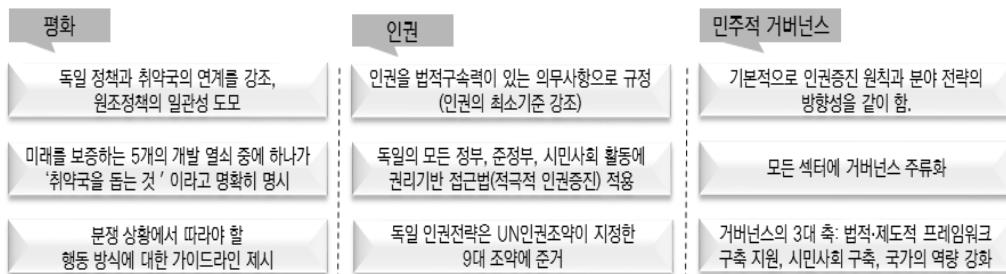
독일정부는 개발협력백서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SDGs의 정신과 목표를 실현하며, i) 양자 및 다자원조를 통한 빈곤 및 기아 감소, ii)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 iii) 지역적/국가적 환경, 자원, 기후변화, 보건, 교육 등의 글로벌 공공재의 강화, iv)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v) 개발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주체들과의 대화와 지식공유 촉진을 5대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SDGs의 비전과 목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2017년 Development Policy as Future-oriented Peace Policy를 발표하고 SDGs 2030 의제 실현을 위한 5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개념적으로는 i) 평화, ii) 인권, iii)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분야별 의제는 지속가능개발 및 빈곤완화를 중심에 위치(Roadmap 1)하며, 최우선 분야로는 i)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 ii) 도시화, iii) 이주의 긍정적인 효과 활용, iv) 평화와 분쟁, v) 민주화, vi) 기후변화 및 자원보호를 선정하였다.

나. 국제개발에서의 PHD 정책 및 전략

1) 독일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발협력에서의 개념화

현재 독일은 별도의 SDG16 전략을 마련할 계획은 아니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화를 통해 2018년-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개혁을 진행 할 계획이다. 특히 SDGs 2030 의제 실현을 위한 범분야 이슈로서 초국가적, 국가적, 지역적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평화와 관련된 3번째 로드맵은 ‘개발 기회를 촉진하고, 난민 발생의 원인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호한다(Promoting Development Opportunities, Mitigating the Causes of Displacement, Safeguarding Peace)’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발협력에 있어 평화와 분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14] 독일 개발협력의 PHD 개념화



출처: 독일의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동시에 독일은 개발협력 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인권을 강조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툴로써 인권기반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인권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거버넌스의 형태로 간주하며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발협력 분야로서 민주화를 강조하기 시작하며, 민주적 제도와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협력국 국민이 시민권, 정치적 권리를 주장, 민주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조직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과정과 제도, 법의 지배원칙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2) 평화 관련 정책 및 전략

독일은 평화 프로그램에 있어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이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나라이다. 독일은 여러 정책 문서에서도 '특수한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 평화 정책을 수립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1986년 '개발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빈곤 감소를 통한 세계 평화에의 기여 의지를 천명하였다. 독일은 또한 부처 간 가이드라인 For a Coherent German Government Policy towards Fragile States를 제시해 독일 정책과 취약국의 연계를 강조하고,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독일은 평화 및 안전보장에 있어 직접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은 개발협력 주무기관인 BMZ가 PHD와 관련하여 꾸준히 발전 시켜 온 여러 정책 문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BMZ의 개발 정책 전략 문서인 Minds for Change-Chancen schaffen. Enhancing Opportunities-Zukunft entwickeln(2011)을

통해 미래를 보증하는(Future-Proof) 5개의 개발 열쇠 중에 하나가 ‘취약국을 돋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Preventing Crises, Resolving Conflicts, Building Peace(2017)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에 대한 독일의 이해관계(Interests)를 명시하고, 분쟁 상황에서 따라야 할 행동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BMZ 전략 문서(4/2013e)인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를 통해 ODA 시행기관인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독일개발회사(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EG), 독일국제협력기구(Th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erman Corpor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 등은 물론 시민사회,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문서에서 제시된 전략은 5개의 평화 구축 및 국가 형성 목표(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PSGs)에 기초하고 있다. PSGs의 5개 목표는 △(Legitimate Politics) 포용적인 정치적 기반을 조성 및 분쟁 해결, △(Security) 사람들의 안전 수립 및 강화, △(Justice) 부당성 관리 및 정의에의 접근성 향상, △(Economic Foundations) 고용 창출 및 생계 개선, △(Revenues and Services) 수입 관리 및 공정하고 책임있는 서비스 전달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인 Peace and Conflict Assessment(PCA)는 2013년 3월, BMZ 전략 문서인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in the Context of Conflict, Fragility and Violence에서 등장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제안되었다. 이는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는 취약한 상황에서 개발 계획 및 통제 방법에 일관된 구조를 제공하는 모듈 방식의 프레임 워크이다. PCA의 4가지 주요 항목은 i) 분쟁, 취약성, 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 평화와 안보를 요구(상황 분석), ii) 평화와 안보의 관련성 평가, iii) 분쟁, 취약성, 폭력의 상황에서의 위기 대처, iv) 영향(Impact) 모니터링 및 부정적 영향 방지로 실제 프로그램 단위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인권 관련 정책 및 전략

독일은 인권전략을 개발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침뿐만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인권에 대한 개발정책인 3개년 시행계획인 ‘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on Human Rights 2004–2007’을 발간하였고, 2008년에는 ‘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on Human Rights 2008–2010, Applying Human Rights in Practice – Fact Sheet on HRBA in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해 독일의 모든 정부, 준정부, 독일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모든 국제활동에서 권리기반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적, 실천적 노력이 축척되어 2011년에는 독일 개발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를 채택하였다. 또한 독일정부와 협력대상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협약에 근거해 개발협력에서도 인권 규범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독일은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였고 협약의 이행에 있어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인권전략도 국제법, EU법, 독일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인권전략은 UN인권조약이 지정한 9대 조약에 준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이 활용하는 인권원칙은 △참여와 역량강화(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비차별과 기회의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투명성과 책무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이다. 이와 함께 인권기준으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품질(Quality), △문화적 수용성(Acceptability)을 적용하고 있다. 비차별과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의 경우, 국가는 인종, 연령, 성별, 장애 유무, 종교 등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차별적인 모든 정책과 법률,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비차별과 평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추진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 [글상자 5]와 같다.

[글상자 5] 독일 국제개발에서의 인권원칙의 적용 사례

참여와 포용(Participation and Inclusion)

- (평등한 접근) 개발협력 지원은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접근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쿼터제나 보조금 지원 등을 한시적 고려할 수 있음.
- (데이터 축적 지원) 배제, 차별을 감시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개발협력사업의 인권기반접근에 있어 중요함.
- (인식제고)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인, 지역 지도자 등이 차별철폐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지원함.

비차별과 기회의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 (민주적 참여 지원) 인권기반접근은 협력국의 지역, 지방, 국가수준에 있어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위한 공공부문의 조직, 정책, 법제도 개혁지원
- (파트너십) 개발협력사업은 현지기구, 중앙 및 지방 의회, 노동조합, 국가 인권기구, 옴부즈맨,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함.
- (역량강화) 개인과 집단의 역량강화를 장려하여 개발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기구, 국가의 정치구조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함.

책무성(Accountability)

- (협력국 시스템 개발 지원) 인권기반접근은 프로그램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파트너 국가의 역량과 시스템 개발 지원을 강조함.
- (참여를 통한 책무성 제고) 인권기반접근은 취약계층 스스로의 감시 및 책무성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참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

독일 국제개발협력은 인권원칙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권리보유자 중에서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BMZ는 2013년에 ‘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에서 젠더주류화를 강조하고, ‘Action Plan for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준비하였다. 2014년에는 ‘Gender Equality in German Development Policy’를 통해 독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2016년에는 ‘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2016–2020’라는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모든 정부 및 준정부기관들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독일의 국제개발협력은 비차별과 평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시도해온 독일의 인권기반접근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착화되고 구체적인 지침이 발간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 국제개발에서의 인권전략과 그 가이드라인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³³⁾으로 GIZ, GIZ International Services, KfW 및 그 하위기관 DEG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본 정책, 전략 및 지침에 근거하여 BMZ는 각 시행기관의 인권전략 수행을 평가하며, 시민사회는 자국 ODA의 인권적 접근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사후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단지 눈에 보이는 차별만 없애거나 문제되는 사안을 미리 배제하는 형식적 기회균등’으로 제도가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법칙 적용의 핵심은 차별의 선행요인을 고려한 공평한 기회 균등임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상의 비차별도 중요하지만 약자에 대한 인식상의 인정과 심리적 포용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책, 프로그램,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었다.

33) 2004년과 2008년 인권에 대한 개발정책 3개년 시행계획(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을 수행함. 또한 2011년 개발협력 주무기관인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독일 개발정책에서의 인권전략’을 채택함.

4)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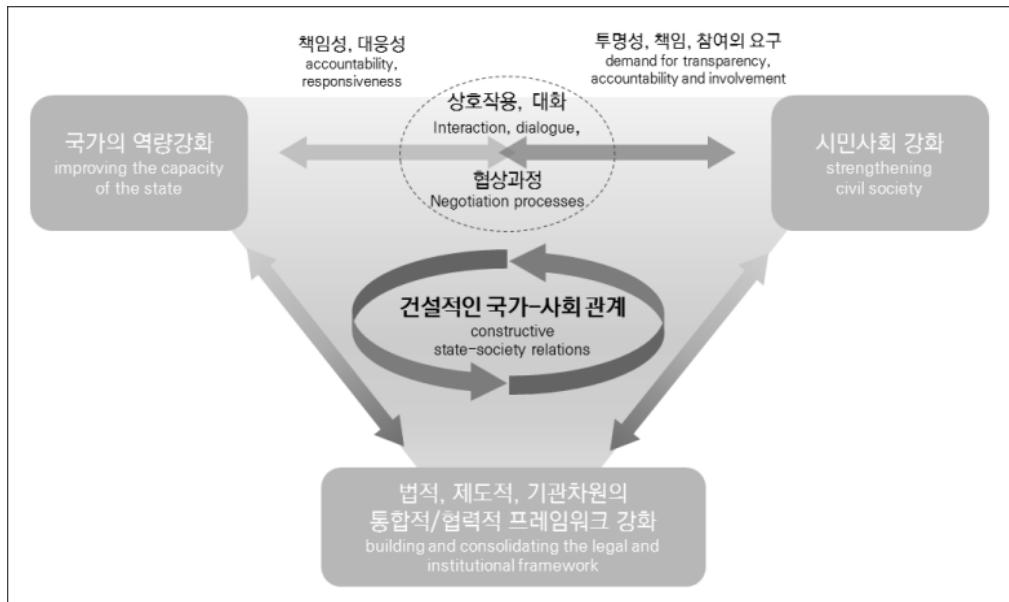
독일은 협력국이 자국의 정책에서 인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원인을 인권에 대한 이해의 결여, 관할 기관의 집행 능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부족 등으로 이해하고,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협력국의 시민사회와 인권 구조 역량을 구축하고, 대화 능력을 증진 시키는데 주력한다. 또한 독일은 협력국에 법의 지배(Rule of Laws)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법의 안정화 및 평화 촉진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법이 한 사회 내에서 조정 체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돋는다.

독일의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정책은 인권증진 분야와 궤를 같이 하며, 'Federal Government's Action Plan on Human Rights 2010–2012' 와 같은 독일 연방정부의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정책이 국제개발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인권의 3면적 의무인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충족을 위해, 국가를 의무부담자로 설정하고 국민을 권리보유자로 설정하였다. 협력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발의 조건으로 1) 빈곤위주(Pro-Poor)이자 지속가능한 정책, 2)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및 이행, 3)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국가의 효율성과 투명성, 5) 국제사회 내의 협조적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BMZ Strategy Paper 178이 민주적 거버넌스의 요소를 전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섹터에 거버넌스를 주류화 한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 국제개발에서의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의 3대축 및 전략으로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양자사업을 통한 국가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사회 구축-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협력국에 법의 지배(Rule of Laws) 원칙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량 강화-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BMZ에서 제시한 굿거버넌스 분석 기준은 i) 지속가능개발 정책 및 친빈곤정책, ii) 인권 보호 및 증진, iii) 민주주의 및 법치, iv) 국제커뮤니티 협력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유형과 성격을 분석한다.

독일정부는 양자협력을 위한 인권·젠더 가이드라인에 인권주류화 도구 및 인권점검 도구 등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의 인권, 평화와 분쟁 프로그램 도구로서 정부 간 정치적 대화, UN 인권시스템에 기반한 인권, 평화 접근법 강조, 평화 및 분쟁 사전 조사 강화, 시민사회지원, 사업수행기관/수행자에 대한 인권기반접근법의 엄격한 적용, 국제인권 시스템 및 BMZ의 인권기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등을 주로 활용한다.

[그림 15] BMZ/GIZ의 평화와 분쟁, 거버넌스 프로그램 도구



출처: BMZ, Promoting Resilient State and Constructive State-Society-Relations-Legitim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009)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BMZ의 조직적 차원을 살펴보면 Directorate 차원의 정책, 개발 협력, 시민사회 전반을 다루는 Directorate General 1, 양자개발협력의 정책 이슈를 다루는 Directorate 10, 조금 더 직접적인 조직으로 Directorate-General 3에 소속되는 Division 300과 Division 301이 각각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민주주의·법치·거버넌스를 총괄하고 있다.

2. 독일의 SDG16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가. 평화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BMZ 전략 문서(4/2013e)인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의 경우, 본 전략은 KfW, DEG, GIZ, 시민사회,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였는데, BMZ의 전략은 다음 평화 구축 및 국가 형성 5대 목표 PSGs에 기초하며, 인권, 아동과 여성의 권리, 젠더, 농촌 개발, 반부패, 청렴(Integrity), 빈곤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PSG1: (Legitimate Politics) 포용적인 정치적 기반을 조성 및 분쟁 해결

- PSG2: (Security) 사람들의 안전 수립 및 강화
- PSG3: (Justice) 부당성 관리 및 정의에의 접근성 향상
- PSG4: (Economic Foundations) 고용 창출 및 생계 개선
- PSG5: (Revenues and Services) 수입 관리 및 공정한 서비스전달 역량강화

평화를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Peace and Conflict Assessment)는 갈등, 취약성, 폭력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듈 형식의 프레임워크로써, 4가지 요소는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고정된 연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특정 상황과 단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6] PCA 4가지 주요 요소

| PCA Element 1 | PCA Element 2 | PCA Element 3 | PCA Element 4 |
|--|---|---|--|
| Main factors leading to conflict, fragility and violence. Needs for peace and security. (context analysis) | Assessment of relevance to peace and security | Dealing with risks in the context of conflict, fragility and violence | Monitoring impacts and avoiding negative impacts |

출처: Peace and Conflict Assessment Factsheet, BMZ (2014).

PCA 요소 1은 갈등, 취약성 및 폭력으로 이어지는 주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평화 및 안보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때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다.

-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의 구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 폭력 및 취약성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 그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서로 다른 현상이 상호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의 주체: 폭력을 유발하는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그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갈등, 취약성 및 폭력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인가?

-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의 원인과 역동성: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갈등의 심화, 상승작용에 기여한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역학 관계가 관련이 있는가? 향후 가장 가능성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 비폭력 갈등으로 전환 가능성: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전략과 자원은 무엇인가? 어떤 주체가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상황 분석 결과는 주된 요인에 기초하여 수집되고 다른 PCA 요소로 유입된다. 상기 상황 분석 이후 다음 단계는 평화와 안보 조치의 필요성을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평화롭고 포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PCA 요소 2의 기초가 된다. 이 때 적용해야 할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변화는 무엇인가?
- 평화롭고 포괄적인 개발을 위해 어떤 영역의 활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지역사회 단위, 지역적 단위, 국가적 또는 국제적 단위 중 어떤 단계에서 가장 먼저 개입이 필요한가?

PCA 요소 2는 평화 및 안보에 대한 관련성 사전 평가로서, 관련성 사전 평가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기존 또는 계획된 개발협력 방안이 이전에 확인된 평화 및 안보 개입 필요성에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분야 마커(Sector Marker) FS-1/FS-2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이후 구체적인 개입과 지원의 내용을 기획하는데 활용된다. 사전평가 수행 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주제 관련성: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 이슈를 다루는 개발협력 수단이 있는가?
- 지리적 타당성: 개발협력 지원은 특히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주체간의 관련성: 개발협력은 주요 행위자와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가?
- 시기: 개발협력이 적절한 시점, 즉 갈등, 취약성 및 폭력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 때 개입하고 있는가?

- 수단의 관련성: 개발협력은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의 맥락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는가?

PCA 요소 3은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의 맥락에서 위기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위기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이전에 위기를 식별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평가하는 것이다. 정기적 대화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갈등, 취약성 및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위험/위기 요소는 상황적 위기, 프로그램 차원 위기, 제도적 차원의 위기, 인적자원 차원의 위기로 구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CA 요소 4는 Do No Harm 원칙과 상황에 민감한 영향 모니터링에 해당한다. 갈등, 취약성 및 폭력에 대한 개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Do No Harm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PCA 요소 3에서 식별된 위험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다.

[표 22] 독일 BMZ 평화 분야 대표 사업(다자사업)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평화 및 안보, 재난 위험 관리 프로그램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7년-2020년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 세계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 프로젝트는 BMZ의 지역 부서가 리딩하고 Center for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ZI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orld Bank' s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GFDRR),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등의 다자기관 및 국제전문기관과 협력함.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 및 시민사회 |
| 하위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
| 접근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 프로젝트는 주로 BMZ의 평화 및 안보, 재난 위험 관리 부서(Peace and Security, Disaster Risk Management Division)에 자문을 제공함.이러한 접근법은 협력국의 BMZ 파트너와 공유되고 실행되도록 고안됨.본 프로젝트는 평화 구축과 실향 간의 연계, 취약국의 조직범죄 및 재난 위험 관리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음.프로젝트 팀은 폭력 예방, 평화 구축 및 재난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세계은행,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등의 국제무대에서 가치 있는 경험과 교훈, 독일 개발 정책 접근법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프로젝트는 취약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있는 국가 공무원, 독일 대사관의 BMZ 고문,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른 부처와 협력함. 이러한 활동은 해당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국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수반함.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은 201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 인도주의 정상 회의에서 개발 정책에 대한 견해와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BMZ는 GFDRR(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에서 자연 재해 와 취약성 사이의 연계를 다툼으로써 새로운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는 데 기여함. 본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하는 BMZ의 지역 사무국장은 12개국에서 갈등에 민감 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독일 개발 협력 포트폴리오와 각국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함. 본 프로젝트는 국제 포럼에서 다국적 조직범죄에 대한 개발 정책 접근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취약성, 분쟁, 안전, 실향민, 폭력 및 2030 의제와의 연계를 강조함. |

출처: <https://www.giz.de/en/worldwide/40996.html> (검색 일자: 2018.08.03.)

독일정부는 시민사회 평화프로그램(Civil Peace Service, CPS)을 운영하며 평화, 인권, 개발 전문 기관 및 단체들을 지원한다. CPS를 통해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비폭력 분쟁 해결을 목표로 협력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폭력적인 분쟁예방, 폭력 감소,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3대 세부목표로 선정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평화와 인권관련 총 8개 기관(GIZ를 포함하면 9개 기관)을 통해 독일 전문 단체의 전문가를 2년간 파견하는 것인데, 현재 42개국에서 300여명의 CPS 전문가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협력국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현장과 협력하며 대화한다. 파견국 별로 인권전문 시민사회 단체 1개, 평화전문 시민사회 단체 1개를 동시 파견하여 균형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표 23] 독일의 BMZ 평화분야 대표 사업(정부 간 주제/섹터사업)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통합 교육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2020년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리랑카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리랑카 교육부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평화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사회에서 평화롭게 함께 사는 방법을 교육 |
| 접근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프로젝트는 스리랑카의 9개 지방(province) 중 5개 북부 및 동부 지방에서 수행함. 프로젝트 팀은 교육부, 각 지방의 교육 당국 및 국립 교육원과 200개 시범학교의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 통합 및 평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가 전략을 개선·시행하도록 조언함. 본 프로젝트는 당국의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의 학교에 직원 배치, 커리큘럼 및 장비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조직 구조,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 • 정신적 외상을 입은 아이들을 위한 평화 교육 및 심리 치료의 방법론적 기술을 지원함.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국가 교육 전략이 개발됨. •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0개의 시범학교를 지원하고, 5개 교육 대학에서 343명의 트레이너, 약 2,900여 명의 선생님들, 1,300여 명의 교장, 512명의 강사를 훈련시킴. • 평화 교육은 6~10학년의 교과서와 커리큘럼에 적용됨. • 평화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써 Sinhalese, Tamil과 Muslim 학교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교와 교육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시범학교에서 학교 의회(school parliaments)가 세워졌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규칙을 경험하도록 함. • 시범학교는 제2언어를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해 왔으며, 60명의 전문가를 훈련시켜 이들이 2,000여 명의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도록 함. • 이전에 분쟁 지역이었거나 빈약한 농장 지역에 있던 200개 시범학교의 상당수가 학교 수준의 상담 교사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 • 상담 교사는 125명의 강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 및 연수 교육을 제공함. • 그러나 현재 5개 지방의 200개 시범학교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의 전파에는 한계가 있음. •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혁신적 조치의 영향을 확대하고, 국가의 화해 과정에 기여하는 것임. |

출처: www.giz.de/en/worldwide/18393.html (검색일자: 2018.05.03.)

[표 24] 독일 BMZ 평화 분야 대표 사업(시민사회 프로그램)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평화프로그램 (Civil Peace Service)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2022년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및 인권전문 시민단체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시민사회 |
| 하위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참여와 시민사회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분쟁의 비폭력적 변화를 조장하고 인권에 기반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
| 접근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평화프로그램(CPS)은 위기 상황이나 분쟁에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임. • 독일의 9개 평화 및 개발 기관이 지역 파트너와 함께 운영함. • 독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구축 및 분쟁의 비폭력적인 변화에 개입하기 위하여 CPS는 주로 시민사회 행위자들, 그리고 몇몇의 국가 행위자들의 역량을 개발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S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대화, 네트워킹 및 협력을 지지하고 그들의 표현 능력과 행동 능력을 향상시킴. • CPS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대화를 촉진하고 이어줌으로써 국가와 시민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함. • 주로 주요 도시 바깥에서 활동함. • 인권과 정치적 참여 및 협상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줌. • CPS 전문가는 분쟁 조정 기구를 지지하며, 정신적 외상을 입은 폭력 희생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조언을 제공하고, 평화 구축 전략을 개발함. • 이들은 지역 행위자를 교육하고, 지역의 파트너를 지원하여 소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외국인 혐오를 해소하는데 일조함. |
|--|---|

출처: <https://www.giz.de/en/worldwide/41095.html> (검색일자: 2018.05.03.)

현재 CPS에 참여한 독일 정부 및 시민사회 기관들은 공동으로 시민평화서비스그룹(Civil Peace Service Group)을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IZ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 기관이며, Forum Civil Peace Service(forumZFD) 및 Action Committee Service for Peace(AGDF)는 다양한 독일 시민사회의 중소규모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중간조직(Umbrella Organizations)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NGO들이 아닌 독일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였거나, 독일기반으로 활동하는 중소규모의 단체들이 본 CP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CPS의 재원³⁴⁾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평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시민사회 단체는 아래와 같다.

-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
- Association of Development Service (AGEH)
- EIRENE - International Christian Service for Peace
- Bread for the World - Protestant Development Service
- KURVE Wustrow Education and Meeting Centre for Non-Violent Action

34) 독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인권전문 단체와 평화 전문 단체의 역할이 다소 다르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1개 국가에 인권 단체 1개, 평화 단체 1개 파견단체가 파견되도록 배정되어 서로의 활동이 상호 보완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시민사회 프로그램 전략 및 사례는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 Peace Brigades International and World Peace Service (WFD)
- Action Committee Service for Peace (AGDF)
- Forum Civil Peace Service (forumZFD)

[표 25] 독일 시민사회 단체의 평화 분야 대표 사업의 예

|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캄보디아에서 포럼 ZFD의 시민사회 평화프로그램 (CP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포럼 ZFD의 시민사회 평화프로그램 (CPS) |
| 수행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hnom Penh; Battamba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rael and Palestine: Jerusalem |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 ZF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 ZFD |
| 섹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 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 평화 |
| 예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8,46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84,485 |
| 자금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Z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Z; Robert Bosch Foundation |
|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6명 (파견 4인, 현지 2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5명 (파견 7인, 현지 8인)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까지 캄보디아는 최근(특히 크메르 루즈 정권)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음. 또한 과거의 대중 담론은 민족주의를 심화시키고 소수 민족에 대한 오래된 적의 이미지와 편견을 심화시키는 정치적 편향을 낳고 있음. 포럼 ZFD는 자격을 갖춘 캄보디아 및 국제 평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 NGO, 대학, 에이전시, 소수 민족 및 청소년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캄보디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캄보디아 포럼 ZFD의 활동 분야는 주로 과거와의 대화(DwP), 대화 과정의 촉진, 분쟁 해결 방법의 전파, 갈등 해소 및 분쟁 해결 사회에서의 평화 구축 등임. | |

출처: <https://www.giz.de/en/worldwide/> (검색일자: 2018.05.03.)

forumZFD와 같은 시민사회단체(Umbrella Organization)는 15년간 집중적으로 평화와 분쟁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해온 경험과 분쟁 및 평화관련 국제지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민 평화서비스포럼 내에 분쟁전환아카데미(Academy for Conflict Transformation in the Forum Civil Peace Service)를 설립하여 평화전문 교육을 체계화하였다. 과정의 목표는 국제 평화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쟁에 민감한 국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특히, 본 아카데미는 현지 정부 및 시민사회 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되, 중장기적으로 협력국 스스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개발을 위한 평화과정에서는 기본원칙(Key Concepts in Civil Conflict Transformation, Conflict Theories, Group Process of Power), 주요 평화와 개발 프로그램(Facilitation and Interactive Problem Resolution, Elements of Meditation, Dialogue Process), 방법론(Constructive Communication, PME, Systematic Conflict Analysis) 및 태도, 행동, 관계(Attitude of Non-Violence and Self-Reflection, Communication and Behavior, etc)를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카데미 주요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래 [글상자 6]과 같다.

[글상자 6] 평화교육과정의 예: ForumZFD의 평화, 인권, 국제개발 전문가과정

과정 유형

- 전일 과정
- 파트타임 과정
- 특수과정(요청)

모듈

- 모듈 1 분쟁완화/전환을 위한 평화컨설턴트 훈련
- 모듈 2 분쟁 전환 방법론
- 모듈 3 분쟁 시뮬레이션 및 상황분석평가

분쟁과 평화 재건 전문가/실무자 과정 세미나

- 세미나 1 분쟁 시스템 및 분쟁의 사회심리적 분석
 - 세미나 2 평화 및 분쟁분야- 분쟁국가/지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세미나 3 효율적인 3자 개입 전략
 - 세미나 4 분쟁전환을 위한 혁신적인기술
 - 세미나 5 과거와 조우하기
 - 세미나 6 분쟁상황을 고려한 난민 프로그램
 - 세미나 7 평화심리학
- * 영어 및 독일어 과정 진행

출처: <https://www.forumzfd-akademie.de/en/> (검색일자: 2018.05.03.)

독일에는 다양한 평화관련 기관이 있으나, 국제개발협력과 평화 인권관련 교육은 AGEH (Arbeitsgemeinschaft für Entwicklungshilfe)가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AGEH는 1959년에 가톨릭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까지 6000명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에 파견해왔는데, 지난 20년간 국제개발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제개발기관/단체와 개발협력전문가 개인들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A Recognised Personnel Service Provide)으로 독일의 국제개발에서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AGEH는 전문가 양성 및 교육(평화, 인권과 국제개발), 전문가 파견(파견 전/후) 및 관리, 독일 난민정책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때, EU 및 독일의 기독교 가치를 가진 전문가들의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파견을 위한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AGEH 교육의 주요내용은 아래 [글상자 7]과 같다.

[글상자 7] 평화교육과정의 예: AGEH 2018 세미나 프로그램

- 모듈 1 평화와 개발
- 모듈 2 국제협력의 기초
- 모듈 3 개념, 접근법 그리고 적용에서의 주의할 사항
- 모듈 4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 모듈 5 독일 적응 프로그램 (난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 모듈 6 전문가역량강화(BMZ, AGEH, Bread for World 내부직원 세미나)

*독일어 과정, 영어과정의 경우 요청에 의해 진행

출처: https://www.ageh.de/fileadmin/pdf/AGEH-Seminarprogramm_2018_neu.pdf

나. 인권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독일정부의 인권전략인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는 개발협력정책에 있어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을 명시한 정책으로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인 '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의 근간이 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GIZ 뿐만 아니라, GIZ International Services, KfW, InWEnt 및 그 하위기관 DEG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을 위한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방법 - i) 주류화, ii) 직접적인 인권증진 프로그램, iii) 디ழ위적인 대화, iv)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 v) 다양한 개발도구 활용 - 으로 인권을 개발협력 사업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첫째, 인권기반접근의 주류화를 통해 모든 개발협력 분야에 인권적 접근을 포함하고, 건강, 교육, 농업 등 다른 개발협력 부문에서 인권기준과 연관된 목표 및 지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기반접근의 주류화는 특히 i) 정책 일관성, ii) 정부와 시민사회의 행동 촉진, iii)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iv) 인권위험요소와 영향력 평가, v) 비즈니스 활동의 5대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둘째, 특정 인권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협력국의 직접적인 인권 증진을 실현한다. BMZ는 협력국가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원조기관은 거버넌스에서의 특정 인권 프로그램(법치, 분권화, 정보투명성 등)을 실시하고, 시민사회를 통해 인권 증진에 직접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 셋째, 협력국, 지역 단위, 국제기구 차원의 다층적 접근을 통한 협력을 병행한다. BMZ는 인권관련 다자 및 협력국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인권증진을 정책대화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원조기관들의 경우 거버넌스 및 모든 분야별 사업에 인권관련 목표 및 지표가 포함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고, 이 단계에서 협력국의 중앙부처, 지방 정부와의 인권관련 대화를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넷째, 여성, 유소년, 선주민, 장애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을 지향한다. 여성, 유소년, 선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을 강조하는데 특히 여성을 인권 주류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기관, 사업 층위에서 모두 주류화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최근 정책적으로 선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주민 및 난민의 경우는 독일 국내정책과의 일관선 담보, 의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처 및 원조기관 내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정책,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다양한 개발도구상자(Development Toolbox)를 활용하여 정치적 대화 실시, 기준 작성, 평화 및 분쟁평가 수행, 재정지원, 시민사회, 책무성, 모니터링 및 평가구축을 실제 적용하고 있다.

BMZ는 직접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분야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특히 ‘기술협력/자금협력에 대한 인권/젠더기반접근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에서 ‘Do No Harm’ 지침을 제시하여 ODA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기반을 둔 접근은 i)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기준(Human Rights

Standard)과 ii) 인권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GIZ, KfW 등은 사업형성단계에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인권기준/원칙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모든 사업에 주류화/대상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BMZ의 인권/젠더기반 접근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ODA사업의 인권 위험요소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6] BMZ 인권/젠더기반 접근 가이드라인 상 ODA사업 인권 위험요소

| 위험요소 | 내 용 |
|---|---|
| 특정그룹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사업으로 인해 기존 협력국에 존재하는 취약그룹의 소외가 심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접근 - 젠더, 종족, 연령, 장애,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그룹(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존재 - 자원/서비스/의사결정 접근성 측면에서 특정그룹의 소외 및 차별 - 정보의 소외/언어장벽/사회적 계급으로 소외 - ODA 통해 제공되는 식수/보건서비스 이용비를 부담 어려운 극빈층 |
| 참여권의 침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업계획, 의사결정과정에 최대한 취약계층(장애인/선주민)을 포함, 의견수렴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함. - 관련 노력과 관련한 UN의 개념으로는 원주민에 대한 조작이나 강요가 없어야 하며, 협의 과정을 거치기 이전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참여와 협의가 축이 되는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 비자발적 이주 및 퇴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사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퇴거를 최대한 방지 - 불가피할 경우 적절한 법적 보호 및 고지,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 노동권 침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사업은 아동노동, 열악한 근무환경 등 노동권 침해를 방조해서는 안됨. - 협력국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의 사업 추진 시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 |
| 인권고려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보유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부담자인 정부/공공기관의 역량강화 • 정부에 인권법 준수를 요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역량강화 • 취약계층 역량강화 및 인권 인지제고교육 • 취약계층 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 |

출처: 관재성 외(2017.)

예비조사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 위험요소와 파급효과를 파악(Human Rights Risks and Impacts)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독일 ODA 중점분야별로 인권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ODA 사업 계획/추진 시 수혜자/수혜그룹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과급효과인 인권 위험요소로 특정그룹 차별, 참여권의 침해, 비자발적 이주, 노동권 침해 등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각각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인권 강화를 위한 방안(Ways to Strengthen Human Rights)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업 시행자가 선택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형성단계에서 따라야 할 인권 강화 유의사항(Human Rights Due Diligence Requirements)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보고 및 평가 시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젠더, 참여적 개발, 분쟁, 환경관련 가이드라인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 간 충돌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BMZ 인권국과 각 섹터국(BMZ Human Rights Division and Sector Division)간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일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Do no harm 지침을 분야별로 제시하여 인권주류화를 실현하며, 모든 사업에 주류화/대상적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곽재성 외, 2017). 특히, 협력국, 사업별 상황과 특징, 수혜자그룹에 따라 사업별 접근, 빌굴, 시행은 다양한 방식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은 본부에서 전달된 지침을 일관적으로 준수하며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 빌굴 초기부터 인권기반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한다. 단, 프로젝트 차원에서 인권기반접근법의 적용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예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곽재성, 2017).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개발협력 사업 중 주제별/섹터별 사업에 사회권³⁵⁾을 적용하는 방법과 권리보유자들의 인권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실현하고 있다. 주로 개발협력의 많은 목표들이 사회권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국제개발에서 사회권을 단순히 체크리스트화해서 이행과 불이행의 문제, 규정 준수 혹은 규정 위반이나의 논리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권의 실현은 단순 규정이 아닌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동시에 개발협력의 목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개발협력을 통해서 꼭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만 꼭 사회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권 보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선진국에서의 사회권 논의가 아닌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권의 논의는 현재 상태가 미흡하더라도 인권을 실현하는 방향을 국가의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그 쪽으로

35) 사회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줄임말이다.

나아가는 것이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일 수 있다.

원조프로그램의 주제/섹터³⁶⁾ 차원에서는 독일은 GIZ의 보건,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의 기술 협력과 InWEnt의 역량강화 사업에서 인권을 적용하는 방식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노동과 고용, 식수, 경제 등이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GIZ 식수사업의 목표를 깨끗한 식수의 공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거버넌스 개선'으로 선정하여 물 관련 다양한 부처의 법 개정, 물 관련 부처 및 기관 협력 매커니즘 수립 및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혹은 깨끗한 식수공급의 성과목표를 '권리로서 식수'로 접근하여 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보장, 여성참여 비율보장, 취약계층에 우선적인 식수제공 전략수립 등으로 물과 인권의 조합을 고려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인권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보건, 교육, 환경 등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보건 시스템의 분권화, 교육권과 분권화, 환경 거버넌스, 인권기반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사업 등으로 사업에 대한 개념화를 추구한다.

[표 27] 독일 인권사업(주제/섹터와의 융합)의 예

| 국가 | • 케냐 | • 과테말라 |
|-------|--|---|
| 세부사업 | • 수도서비스신탁기금 사업 • 건강재원조달위원회 사업 | • 농촌지역 옴부즈맨활동 지원사업 • 초등교육 모국어학습 지원사업 |
| 수행기관 | • 수도서비스신탁기금 사업- KfW • 건강재원조달위원회 사업- GIZ | • GIZ |
| 섹터 | • 인권 (식수, 보건) | • 인권 (농업, 교육, 원주민) |
| 자금지원 | • BMZ | • BMZ |
| 주요 내용 | [수도서비스신탁기금 사업] • 케냐의 수자원 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개발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인권 보장을 지향하고 있음. • 특히 케냐 정부는 도시 빈민가의 물 공급을 확대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적은 요금을 지불하도록 관세 시스템을 수정함. • 또한 KfW가 후원하는 '수도 서비스 신탁 기금 (Water Services Trust Fund)'은 빈 | [농촌지역 옴부즈맨활동 지원사업] • 2007년부터 본 프로그램은 옴부즈맨 사무소와 협력함. •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에 더 집중함. • 직원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을 위한 인권 교육을 제공함. •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건설하거나 현지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실시 |

36) 독일 현지조사에서는 한국 개발협력에의 전략 및 프로그램 차원 제언 초기부터 개발도상국가의 정치, 법, 정책개혁에 직접적인 개입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술, 교육, 등에서 인권 및 민주주의를 고려한 대표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단계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증진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축척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 | |
|---|---|
| <p>곤충 공공 수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함.</p> <p>[건강재원조달위원회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과 케냐의 보건 프로그램은 빈곤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강력한 인권 지향적인 협력을 도모함. • 의회 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 관련 기본권 정보를 제공 • 이로 인하여 대중 매체는 인구의 건강 상태에 관한 상황을 더 자주 논이며, 성별, 소득 또는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 공개됨. 이는 건강 정책 및 기금 분배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임. • 케냐의 국가 기획단인 '건강을 위한 재원 조달(Financing for Health)'에는 국가 인권 위원회 대표와 두 개의 비정부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 | <p>하는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활동함.</p> <p>[초등교육 모국어학습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테말라의 초등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인권을 통합함. • 지역의 수요와 토착민들의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함. •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가 아닌 모국어를 쓰는 원주민 자녀를 위해 이중 언어 교육을 확장함. • 교육 계획에서 인권 주제는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됨. • 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통제함. |
|---|---|

출처: <https://www.giz.de/en/worldwide/> (검색일자: 2018.05.03.)

독일 국제개발에서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독일정부, 독일인권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The German Institute of Human Rights), 학계전문가 및 GIZ가 협력하는 연구, 연수 및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독일인권연구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공공기관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독일의 다양한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진행한다.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자문을 제공한다. 독일인권연구소 내 담당 부서는 국제팀이며 독일의 국제개발과 인권 전략 수립, 액션플랜 수립,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인권 기반 국제개발에 있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BMZ는 예산지원, 외교적인 정책대화를 담당하고, GIZ는 국제개발에서의 인권 프로그램 전략화, 각종 툴 개발을 담당하며, 독일인권 연구소는 국제개발에서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자문³⁷⁾한다.

37) 독일인권연구소와의 현지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협력국과의 인권분야 협력을 자문하는데 있어 독일인권연구소는 협력국들이 "독일 개발협력은 인권기반이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인지하고 있도록 하는데 많은 인적, 전문적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외교부는 인권기반 접근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독일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과의 외교적 대화 시에도 자주 인권관련 사안을 언급하여 협력국가가 독일과의 '인권기반 개발협력'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구축하기도 한다고 전한다. 인권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정책적 언급이 민감한 국가에서는 "your

이 과정에서 독일인권연구소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최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협력국가의 국가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NGO 및 현지 학계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시민사회 협력(학계, NGO,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인권이 중장기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서 독일인권연구소는 법 및 정책자문, 국제 연수 실시 및 기술자문에 집중하고, BMZ-GIZ는 독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자체를 위한 CPS 프로그램의 심사 및 자문에 참여한다.

다.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굿거버넌스 및 민주주의(Promoting Good Governance and Democracy)는 독일의 전문분야 중 하나로서, 총괄적인 전략을 넘어 하위분야별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법치(Law and Justice)의 경우,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길고 어려운 개혁과정 중에서 협력국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민주주의 및 정치적 참여 확대(Promoting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의 경우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간의 구조적 관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독일 개발협력의 기본적 가치로서 모든 사업에 내재화 주류화되고 있다. 동시에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민주적 거버넌스를 협력 우선분야로 지정하고 기술협력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제공하는 대상화 전략도 병행한다. 독일이 수행한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은 첫째,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관 지원(Democratic Institutions, e.g. parliaments), 둘째,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과정 지원(Democratic Procedures, e.g. elections), 셋째, 인권 증진 및 법치 관련 지원(Human Rights, the Rule of Law), 넷째, 시민교육 지원(Civic Education)과 같은 유형을 포함한다(Grävingholt et.al, 2013). 지원 유형은 첫째, 무상 혹은 유상 원조 정책조건(Conditionality) 부여, 둘째, 시민사회에 ‘긍정적인’ 지원, 셋째, 국회 및 주요 기관에 펀드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 및 세금 투명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agenda”, “your problem”이라는 방식으로 대화의 방향을 전개하지 않고, 해당 국가가 국제인권조약 및 각종 국제협약에서 어떤 것을 비준했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하는 노하우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BMZ과 giz은 독일인권연구소와 다층위적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 정책활동 및 국내외 연수결과물은 본 연구의 첨부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28] 독일 인권사업(권리보유자의 보호 및 인권증진)의 예

| 권리보유자 | 청소년 보호 및 권리증진 | 여성 보호 및 권리증진 |
|-------------------------|---|---|
| 법,정책 제도 개선 | <p>[케냐에서 위험에 처한 길거리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 촉진(2000- 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정부는 2001년 12월, 케냐 정부는 GIZ의 지원으로 ‘전국 아동 법’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처음으로 부모의 보살핌 의무를 규정함. • 그 결과 정부는 청소년 문제 담당 국가 부서를 별도로 구성함.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 되었을 때 한 명의 직원만이 청소년 문제에 정통했으나, 이제는 청년들의 관심사를 다루는 별도의 다섯 개의 부서가 있음. • 2006년 부서 예산은 3억 590만 유로였음. • 정부는 약 1,100만 유로의 재원으로 유소년 개발 기금을 조성함. • 또한 100개의 주 및 비정부기구에 제공되는 자문 서비스는 길거리 아동의 상황을 상당히 개선시킴. | <p>[개발 협력에서 인권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GIZ가 실시하는 프로젝트의 후원 하에 개발 협력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 교육을 제공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기관으로서, GIZ는 독일 정부가 개발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함. • 독일 내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정보유통,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 |
| 정치참여 | <p>[시민 참여 및 정치참여를 위한 새로운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뢰기관: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 수행 국가: 이집트 • 대표사업수행기관: Ministry of State for Youth • 수행 기간: 2012~2014년 • 청소년 센터를 플랫폼으로, 청소년, 시민 사회단체 및 정부 대표 간의 대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1)16개 청소년 센터를 보수하고, (2)시민단체대표에 참여, 평화적 분쟁 해결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고, (3)시민사회대표, 청소년 및 의사 결정자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함. | <p>[중동에서 의사 결정 과정의 여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뢰기관: BMZ • 수행국가: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영토 • 수행기간: 2015~2019년 • 요르단과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여성의 의사 결정 과정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1)지역 정치에서 여성을 부흥시키고, (2)지자체의 젠더 감사(gender audit)를 실시하고 권고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며, (3)시민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젠더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
| 교육, 보건, 직업교육 훈련 등 | <p>[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성공적인 지역 청소년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의 지자체에서 진행 중임. • 지역 사회는 청소년 담당관을 교육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을 위해 기금을 모으며 청소년 사업을 홍보함. | <p>[기초 교육 및 직업 훈련 개선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뢰기관: BMZ • 수행국가: 모잠비크 • 대표사업수행기관: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Vocational, Technical and Higher Education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이들은 특별 강좌를 통해 청소년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으며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배워 청소년 업무를 성공적으로 관리함. 국가 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mmission)는 GIZ가 8년 동안 지원해 온 성공적인 지역 청소년 사업 프로세스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간: 2003~2019년 아동과 청소년, 특히 어린 여성에게 실제 세계와 관련된 양질의 기초 교육 및 직업 교육 제공. |
| 고용 및 노동 | <p>[네팔 : 아동 노동자의 처우 개선 (1997-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프로젝트는 네팔 정부가 아동 노동에 대응 및 처벌 조치를 취하고 대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도움.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 6~16세 사이의 4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학교 생활을 지원함.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도하여 유치원과 청소년 센터를 설립함. 프로젝트가 제공한 초기 추진력에 힘입어 지역 단체들은 어린이를 위한 지원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에서 도움을 얻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클럽에서 여가 활동을 스스로 조직 | <p>[MENA 지역의 여성 경제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뢰기관: BMZ 수행국가: Egypt, Jordan, Morocco, Tunisia 수행기간: 2010~2018년 비즈니스와 고용에의 여성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해 (1)고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2)성 인지적 경제·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3)여성을 위한 직업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함. |
| 지역협력 | <p>[라틴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 청소년 부흥 및 폭력 방지 (2001-2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년들과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를 네트워킹하는 것임. 5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을 로비하는 네트워크가 제도화되었음. 폭력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청소년 정책과 통합함. 또한 본 주제에 관한 훈련 과정을 실시함. 온두라스 교육부 및 보건부 지원과 온두라스의 비정부 및 청소년 단체 직원이 훈련 과정에 참가함. | <p>[라틴아메리카의 여성 폭력 근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뢰기관: BMZ 수행국가: 페루 대표사업수행기관: Ministry of Women and Vulnerable Populations, Peru (MIMP) 수행기간: 2014~2018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의 정부, 비정부, 민간 대표가 협력함. 400개가 넘는 사업체가 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했으며, 위급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함. 폭력을 당한 여성들로부터 편지를 받아 공개함으로써 여성 폭력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움. |

출처: <https://www.giz.de/en/worldwide/> (검색일자: 2018.05.03.)

BMZ는 'Promoting Resilience States and Constructive State-Society Relations – Legitim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정책에서 독일의 거버넌스 정책과 프로그램은 i) 국가(정부)의 역량강화, ii) 시민사회 강화, iii) 법적, 제도적 기관 차원의 통합적/협력적 프레임워크 강화를 3대 축으로 구조화하였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거버넌스 개혁은 국가-시민사회-기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독일정부는 국가(정부)-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SDGs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본 전략에서 BMZ는 국가별 거버넌스 유형의 차이를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BMZ는 Governance Readiness 분석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력국가의 상황분석, 국가기관 역량분석, 협력집중분야, 협력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조사하라는 지침을 명시하였다. 특히 국가별 상황분석에서 맥락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 법치, 민주주의 및 정치적 참여, 인권 향상을 중심으로 BMZ가 제시하고 있는 접근법을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법치(Law and Justice)의 경우,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개혁과정 중에서 협력국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 둘째, 민주주의 및 정치적 참여 확대(Promoting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의 경우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간의 구조적 관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한다.
- 셋째, 인권과 같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본적 가치이자 정치체제로 간주하여 모든 사업에 내재화하고 주류화하는 동시에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를 협력 우선분야로 지정하여 기술협력을 위주로 지원을 제공하는 이중트랙접근법을 적용한다.

2018년 6월 현재 GIZ는 29개의 중점협력국가 및 14개 추가 국가에서 거버넌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9개 중점협력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선정된 2-3개의 중점협력분야에 거버넌스가 포함된 경우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거버넌스와 분쟁이라는 부처(Sectoral Department)와 국제정책(Global Policy)과 거버넌스(Sector and Global Programme)가 있으며 사업 수행조직으로 G20 거버넌스와 인권(Governance and Human Rights)라는 유닛이

GIZ 내부에 존재한다. BMZ가 제시한 정책에 근거하여 GIZ 거버넌스 및 분쟁관련 전문가와 담당자들은 Sector Department 및 Sector & Global Program Department³⁸⁾에 위치하고 있다.

GIZ의 거버넌스 사업의 경우 50%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데, 위에 제시된 세부분야인 정부의 역량강화, 시민사회 강화,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통합적 프레임워크 개혁에 집중하여 사업이 기획되고 수행된다. SDG16 이후 거버넌스 사업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면서 GIZ는 법치(Rule of Law), 법 접근강화(Access to Justice), 부정부패처결(Anti-Corruption), E-governance 관련 사업들이 현장에서 눈에 띄고 확대되고 있다. GIZ의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SDGs와 연계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개정될 거버넌스 전략에서도 지방 분권화는 독일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핵심 세부주제로 유지하되, 책무성 논의가 강화되면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기업과의 협력 제도개선, 국내재원조달, 조세개혁 관련 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IZ는 민주주의 및 인권과 같은 규범적인 프로그램/프로젝트 목표 선정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치와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다.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사업을 기획할 때, 독일의 규범적인 접근법(Normative Approach in Development)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포괄적인 접근법 적용, 형평성 지표 적용, 분야별 거버넌스 사업에 분권화 도입, 시민 사회 참여 메커니즘 포함과 같은 실체적인 작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GIZ의 거버넌스 섹터팀의 분석 작업은 BMZ가 축척한 국가별 인권상황보고, 국가별 분쟁상황 보고 및 국가별 거버넌스 분석 보고서(Governance Readiness Report)에 근간을 둔다는 전제 하에, 실제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 분야에 집중하여 갈등분석(Conflict Analysis), 인권 분석(Human Rights Analysis), 젠더분석(Gender Analysis) 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GIZ는 거버넌스 사업 중 난이도가 높은 분쟁국가/분쟁지역 사업은 갈등분석도구(Conflict Tool)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위험요인분석(High Risk Assessment)도

38) Department 하위의 팀 구성: Africa, Asia, Latin America, Caribbean, Europe, Mediterranean, Central Asia, International Services, Human Resources, Finance, Procurement Property, Contracting, IT, Language Services (ELIVS); Sectorial Department (FMB)의 하위 구성: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Governance and Conflict, Methodological Approaches; Sector and Global Programmes (Globe)의 하위구성: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Digitalization, Crisis and Conflict, Management, Migration and Construction, Global Policy Governance, Rural Development

실시하는데 사업기획당시 가급적 상세하게 분쟁관련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획하려고 한다. 또한 GIZ는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툴로서 성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Impact Monitoring System)을 활용한다면, 분쟁국/분쟁지역사업은 별도로 분쟁에 민감한 모니터링 시스템(Conflict Sensitive Monitoring System)을 최근 개발한 바 있다.

[표 29] 독일 GIZ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대표 사업 개요

| 주제 | • 대표사업의 내용 |
|--------------------|--|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p>[민주주의 증진 및 정치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Z를 대표하여 GIZ는 잠비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대화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를 지원함. 구체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는 비정부기관(NGO)에 관한 입법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함. 소규모 시민사회는 국가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활기차고 다양한 시민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금융 지원 및 상호 학습을 위한 포럼에 접근할 수 있었음. |
| | <p>[거버넌스 개혁 과정과 빈곤 감소에 관한 시민사회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뢰기관: BMZ 국가: 잠비아 대표수행기관: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사업기간: 2015~2018년 |
| | <p>[굿거버넌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뢰기관: BMZ 국가: 캐나다 대표사업수행기관: Office of the Attorney-General and Department of Justice 사업기간: 2017~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가 시민 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분권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도움. |
| 지방분권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 <p>[지방 자치 행정 및 지자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뢰기관: 독일연방외무부 국가: 튜니지, 리비아 대표사업수행기관: Ministry of Local Affairs and the Environment - General Department of Local Authorities (튜니지) 사업기간: 2014~2018년 |
| | <p>[지역 개발과 민주주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뢰기관: BMZ 국가: 알제리, 모로코, 튜니지 사업기간: 2016~2018년 |

| | |
|---------|---|
| | <p>[전자정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메니아는 찬반이 갈리는 영토개혁의 포괄적인 과정을 추진 중임.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및 대중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전략적 의사소통과정의 일환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컨설팅을 받고 있음.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가 개선되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면서 시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 공공행정 개혁 | <p>[공공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IZ는 아제르바이잔 공무원위원회(CSC)에 공공 서비스분야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음. CSC는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및 전략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 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 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향상시키고 조정하는 행동강령의 구현임. 내부 CSC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서비스는 성과 능력과 조직문화를 향상시킴. 이를 위해 GIZ는 남아공에서 얻은 행정 개혁 경험을 활용, 획일화된 인사 전략 및 성과 비교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p>[EU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 역량 개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뢰기관: BMZ 국가: 아제르바이잔 대표사업수행기관: 아제르바이잔 공무원위원회(CSC) 사업기간: 2013 - 2015 |

출처: <https://www.giz.de/en/worldwide/> (검색일자: 2018.05.03.)

통일 이후 국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독일 시민사회 기관들의 해외사업이 확대되었다.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여 국제적인 정책옹호,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단체 중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주로 GIZ보다는 독일연방정부, 국회, 독일 외교부의 재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독일에서는 민주주의 및 분쟁관련 재원은 주로 연방정부, 외교부를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시민사회지원 프로그램은 GIZ보다는 BMZ에서 배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 현지조사를 통해 방문한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DRI)는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독일기반의 시민사회단체이다. 독일 외무부, 독일 연방정부, 영국 DFID, 스위스 개발협력부, 스웨덴 Sida, 독일 BMZ등에게 펀딩을 받고 있고 독일 외무부가 전체 펀딩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주로 독일 외무부의 Political Stabilization Unit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민주주의 관련 별도의 재원을 받아 협력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주요프로그램은 i) 협력국가의 헌법개정, ii) 선거지원 및 선거감시, iii) 국회 역량강화 지원, iv) 민주주의 기준 및 정책 옹호, v) 소셜 미디어 및 민주주의 프로젝트 운영, vi) 민주주의 교육 및 협력국의 민주주의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협력국가는 중동의 봄 상황에서 단체가 탄생하여 성장한 만큼 전통적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이집트, 튜니지, 레바논 등)에 집중하면서 기관이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스리랑카의 헌법개정 활동, 미얀마의 민주주의(선거, 시민사회, 민주주의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기준 및 정책 옹호, 소셜 미디어 및 민주주의 프로젝트 운영,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차세대 민주주의 인재양성 및 민주시민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30] 독일 시민사회 단체,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DRI) 민주주의 대표사업

| | | |
|-------|---|--|
| 사업명 | • 튜니지의 헌법 시행 지원 | • 미얀마 민주주의 펠로우십 |
| 수행지역 | • 튜니지 | • 양곤 |
| 수행기관 | • DRI | • DRI, Myanmar Institute for Democracy |
| 섹터 | • 민주주의, 법치 | • 민주주의, 선거, 교육 |
| 예산 | • €448,464 | • €1,084,485 |
| 자금지원 | • 독일 외무부 | • EU, STEP consortium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부터 DRI의 개입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는 튜니지의 헌법 이행을 지원하고 법률 개혁, 지방 선거 및 언론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 •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의회, 사법부, 시민 사회, 언론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함 • 의회 단체와의 원탁회의 •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법부 역량강화 및 교육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인을 위한 브리핑 및 교육 •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간행물발간 및 정기 분석 • 헌법 이행에 관한 지속적 관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민주적 선거활동 감시 활동 지원 • 2단계: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 • 선거 과정과 민주주의 지원 • 민주주의와 인권에 초점을 맞춘 대화식 교육 프로그램 제공 • 3가지 모듈 아래 시민 사회, 정당, 주 교육 기관 및 미디어의 젊은 지도자들이 모여 비교 사례와 법적 기준에 대해 배우고 토론을 통해 그들의 견해와 미얀마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공유함. |

출처: <https://www.giz.de/en/worldwide/> (검색일자: 2018.05.0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SDG16과 연관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표 31] 스웨덴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 | |
|----------------|--|
|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P, H, D에 대해 SDGs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국제개발협력정책은 외교정책의 연장선상EU 내 P, H, D 선도역할 |
| 2. 지역전문가와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갈등 민감성 접근을 주류화하며, 지역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 |
| 3. 시민사회 파트너십 | <ul style="list-style-type: none">P, H, D 모두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강조다양한 시민사회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활용 |

출처: 저자 작성

그 중 한국의 SDG16 이행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스웨덴 정부가 SDG16 이행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다. 현지 조사에서 면담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스웨덴 개발협력이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대해 SDGs가 합의한 목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목표하고 있음을 언급한 사실에서도 드러난 특징이다. 스웨덴 정부는 독자적인 개발 프로그램 수행뿐만 아니라 SDG16 이행 관련 노르딕 국가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그룹(Like-Minded Group)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웨덴의 경험을 공유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경우 UNDP, OECD-DAC의 활동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SDG16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노르딕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특히 EU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선도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권 존중과 국제법은 스웨덴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개발협력 정책 역시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오랜시간 동안 견고하게 형성되어 왔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은 빈곤 감소 및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 환경 및 기후변화를 우선순위 주제 분야로 다루고 있다. 인권과 성평등, 민주주의는 주류화정책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목표 설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화 및 안보의 경우 스웨덴 정부가 빈곤의 다면성을 집중적으로 인식하면서부터 ‘분쟁 예방과 포용적 평화’ 가 주요 외교정책 요소로 포함되고 있다.

스웨덴 개발협력 정책 내에서 평화와 안보는 지속가능개발과 빈곤퇴치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주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적극적 평화 관점에서 빈곤의 다면성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빈곤, 인권, 성평등, 환경 및 기후변화 관점과 함께 갈등 민감성 접근법(Conflict-Sensitive Approach)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접근법이자 주류화 대상이다. 평화 및 안보 분야의 경우 국별, 지역별 갈등 민감성에 따라 사업 수행 과정에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갈등관리 및 갈등분석에 대한 전문 역량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지역(Local) 전문가,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스웨덴은 평화 및 안보, 인권, 민주주의의 영역 모두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시민사회 활동이 강화되고 보장되는 것 자체가 평화 및 안보, 인권, 민주주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 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방문 조사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권 및 민주주의 관점에서 시민 사회 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제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웨덴 개발협력이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구축에 기여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OECD-DAC은 동료평가(2013)를 통해 스웨덴 개발협력이 외교정책 의제의 핵심수단이며,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과제 해결에 앞장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PGD를 강력한 정책적 토대로 두고 인권과 민주주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스웨덴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노르딕 국가 특유의 복지주의 전통을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과 방향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공감 기반이 조화를 이루어 SDG16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독일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 | |
|--------------------|--|
| 1. P,H,D의 단계적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SDG16 전략이 아닌 P,H,D를 개념화하여 ‘2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개혁진행 계획 ‘프로그램화’ 강조, 사업에 P,H,D를 ‘녹이기’ 위한 품질관리 수행 |
| 2. 인권기반접근(HRBA)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은 독일 개발협력 정책의 궁극적인 가치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인권기반접근 실천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강한 연계 |
| 3. 다양한 토론/연수/교육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이 축적한 P,H,D 경험의 실천방법에 대한 다양한 토론, 연구 진행 시스템 개선전략 강화와 함께 지역 특화적이며 신뢰에 기반을 둔 중장기 민주주의 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강조 이를 위한 정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연수 강조 |

출처: 저자 작성

현재 독일은 별도의 SDG16 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국제개발에서의 PHD 정책 및 전략 독일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발협력에서의 개념화하여 2018년-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평화적인 통일 경험을 기반으로 독일 개발협력 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인권이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틀로써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인권기반접근법)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인권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버넌스의 형태로 간주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하게 연계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협력국 국민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주장, 민주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조직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 과정과 제도,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독일정부가 지원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개발연구소의 Grävingholt, Leininger, Schlumberger는 ‘The Three Cs of Democracy Promotion Policy: Context, Consistency and Credibility (2009)’라는 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독일의 민주주의 지원은 2000년대 큰 비판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국제개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여해 온 이들 연구자들은 독일이 얻은 주요 교훈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서구가 희망했던 개발도상국에서의 권위주의 정부 몰락이후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등장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독일이 지원한 국가에서도 권위주의 정부가 새로운 형태로 전화되고 변모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혹은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서양식 민주주의 도입을 강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둘째, 국제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민주화 활동을 지원하고 민주주의 리더를 양성했지만, 구체적인 영향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유일하게 민주주의 지원에 명백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검증된 사례는 EU의 프로그램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독일의 시민사회는 독일정부의 국제민주주의 지원이 거시적인 맥락(정치적, 공간적, 문화적)과 미시적 맥락(사회적, 개인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기술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받을 만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의 정치적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원을 하여 종종 ‘정치적으로 순수하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민주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특수한 민주화지도자 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민주적인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학계에 대한 다양한 기관, 조직을 중심으로 현재 독일이 진행하고 있는 주제별, 분야별 지원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2009).³⁹⁾

Leininger, J.(2016)는 Contextualizing Democracy Promotion에서 아래와 같이 독일 GIZ가 수행해온 국제개발에서의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의 결과는 협력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수행된 수많은 연구에서 한 국가의 민주화의 결정적인 동인은 국제적인 지원이나 국제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보다는 국가 내의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정설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의 중요성도 완벽히 간과할 수는 없다는 연구도 최근 발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화의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양적, 질적 연구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연구들은 레짐(Regime), 국가의 취약성, 중요한 정치적 사건 등에 집중하고

39) Grävingholt, Leininger, Schlumberger는 자신들의 연구와 평가결과를 좀 더 발전시켜 2013년 독일의 민주주의 및 민주화 지원에 대한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① 국가별로 민주화 과정 및 민주화에 대한 조건에 대한 몰이해, ② 직접적인 민주화 지원 국가 선정에 대한 정치적 결정의 중요성, ③ 민주화 지원 프로그램의 개념화 및 프로그램 기획의 어려움, ④ 민주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의 중요성과 한계를 가장 현실적인 국제 민주화지원의 프로그램차원의 한계로 제시하였음.

사회적, 문화적, 초국가적 요인들에 위낙 다양하나, 현재까지 독일이 경험한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 지원의 과정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근거한 제안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미시적 권력 분석 측면에서는 특히 정치적 모멘텀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한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국가별, 지역별 특수하고 지역적인 의미의 ‘민주화’의 개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국가성, 취약한 거버넌스에 대한 유형을 현실적으로 파악 해야 한다.

넷째,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는 공간, 특히 도시공간 속에의 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제한된 지식인, 학계 및 시민사회의 한계에 대한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 이해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발협력의 전략 논의는 향후 SDG16이 우리나라 국제개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SDG16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고 최초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독일의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SDG16 넥서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추후 심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PHD 전략의 근간인 ‘인권의 최저기준(Minimum Standard)’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UN, EU와 같은 국제/지역기구들은 개발 협력이 기본적으로 인권 목표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기여해야한다는 ‘적극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은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소극적인 접근’으로서 제도적 측면, 기관운영 측면, 프로그램 측면의 다양한 Do No Harm 지침 또한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기관 및 원조 기관들이 이를바 인권의 ‘하향 한계선’을 명시한 것은 인권의 기본을 강조한 것이지, 인권이 최저 상태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시대와 사회발전의 정도에 따라 최저 기준 자체가 상향조정 되어 온 것이 인권의 역사’임을 고려할 때(조효제, 2015:34), 우리나라 개발 협력에서의 인권의 최소한이 무엇인지 정책적, 사회적 토론과 논쟁이 동시에 심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과 평화의 연계를 위해서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보는 소극적 평화론’을 넘어 적극적 평화론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경주(2014)는 ‘평화권’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인권과 함께 평화권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준거를 제공하고, 인권과 평화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를 통해 두 개의 주제가 조화롭게 시민사회와 학계에서의 토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효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 평화론은 ‘인간안보와 인권이 만나고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이 수렴하여 평화적 방식에 의한 인권보호 및 인권적 방식에 의한 평화보장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효제, 2015:49). 특히 평화와 인권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경우, 인권 갈등의 뿌리를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은 논의는 평화를 위해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평화를 위한 시위권리 보장, 군의 책무성 강화, 발전권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권, 희생자들의 권리요구까지 확장(조효제, 2015:48-52)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과 독일의 평화관련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관련 사업에서는 이와같은 적극적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SDG16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의 가치와 평화목표가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인권을 실행한 결과로서 평화가 온다는 도구적인 관점에 치우치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평화라는 목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책적, 사회적 토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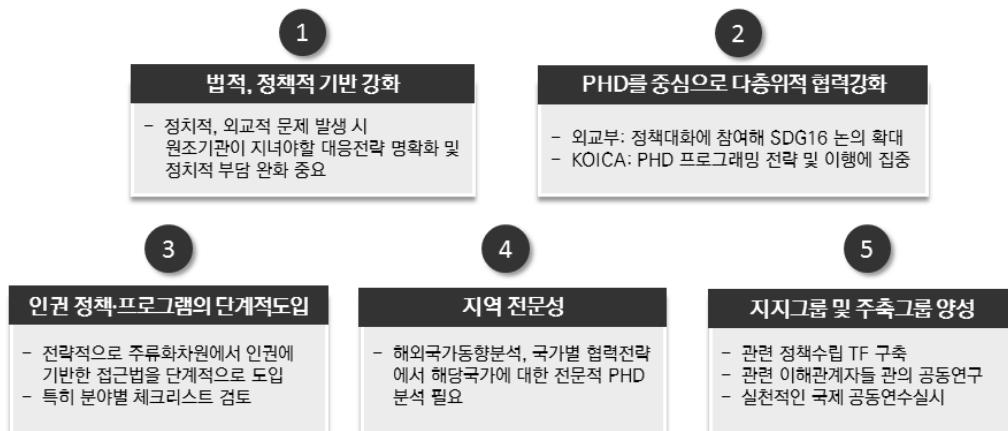
셋째, 인권과 민주주의의 연계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라는 성과중심 담론을 넘어 SDG16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학자들과 관련 정책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지원, 민주화 지원 혹은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등을 개발협력의 정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강조하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다수 대중이 소수의 국가엘리트에게 요구하는 권리인 참정권,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의 ‘민주권리’와 소수파가 다수에 맞서기 위해 요구하는 권리인 생명권, 안전권, 사생활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자유권리’로 구분 할 수 있다(조효제, 2015; 347).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권리’가 있어야 ‘민주권리’가 생기며, ‘민주권리’가 있어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인권이 전체적으로 보장(조효제, 2015:347-348)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개발에서는 종종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치적·정책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협력국가의 정치발전에 기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순진한’ 사례가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Camacho, 2014; Faust, 2009, Grävingholt, J., Julia L. and Schlumberge, 2009). 나아가 국제개발에서 인권기반 접근법 및 민주주의/민주화 지원을 강조해온 선진국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권이 별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시에 인권전체의 모습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DGs의 등장과 함께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규범적인 개발협력의 사업을 수행해온 독일의 개발협력계는 SDG16과 같은 목표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그간 축척한 경험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시민사회 리더에 대한 지원이 독일의 국제민주주의 지원이 좀 더 지속적이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전략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지역특화적이며 신뢰에 기반을 둔 중장기 민주주의 진흥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평화구축, 인권 증진 및 민주주의 지원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독일 국제개발에서의 새로운 논의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웨덴과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 [그림 17]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그림 17] 선진공여국 사례의 시사점



출처: 저자 작성

40) 여기서 경제발전과 경제적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 발전은 집단적, 평균적 개념이지만, 경제적권리라는 개념은 개인적, 분배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첫째, PHD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법적, 정책적 기반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부처에서 명확한 법적기반, 정책적 지지가 없으면, 정치적, 외교적 문제발생 시 원조기관이 지녀야할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음을 유의하고 있으며, 해외 공관에서 정책적, 외교적 의제로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PHD 현장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스웨덴과 독일 모두 부처-원조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다층위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자 및 지역협력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정책대화에 참여하고, 원조기관을 이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원조기관 차원의 다양한 양자 기관 및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대화와 협력을 리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스웨덴과 독일이 개발하고 적용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BMZ 및 스웨덴 정부의 인권주류화 도구(Instruments) 등을 참고 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주류화차원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분야/섹터 인권위기 예방도구(Instruments)로 예시가 소개된 분야별 체크 리스트도 핵심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주제별/섹터별/행위자별 사업에 PHD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넷째, 스웨덴과 독일이 강조하고 있는 해외국가동향분석 혹은 국가별 협력전략에 인권상황, 평화 및 분쟁 상황, 해당국가의 거버넌스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로 독일과 스웨덴이 수행하고 있는 갈등 분석, 갈등 민감성 분석과 모니터링, 위기 사전평가 및 관리 도구 등을 단계적으로 대표 분야에 적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대표 프로그램을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섯째,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 지지그룹과 이를 국제개발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실천할 주축그룹(Like-Minded Groups) 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 공통적으로 한국의 원조기관은 PHD의 규범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실현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을 포함한 지지그룹 및 주축그룹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독일 개발 협력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가 개발협력에서 ‘왜 중요한지’를 넘어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지그룹 밑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웨덴의 경우 다양한 국제기구 및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고, 독일의 경우, 국제적으로 국제법 근간을 만들고 의제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제기구보다는 양자기구들과 관련 학계 및 연구소들 간의 지지그룹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스웨덴과 독일 공통적으로 부처 및 원조기관은 이러한 지지그룹들과 공동연구 수행, 가이드라인 수립, 독립평가, 교육을 참여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 가치가 개발협력 프로그램 체계에서 실현이 되도록 사전에 예산과 노력을 배분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는 오랜 개발 경험으로 쌓인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사회적 인식이 사업 수행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권(권리)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지향적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국제개발협력의 전 체계 내에 관련 규범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중요성 인식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HRBA와 인권의 주류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온 바, SDG16 달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단 SDG16뿐만 아니라 SDGs와 지속가능개발 의제 전반에 내포되어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및 평화와 포용성 가치를 제도, 조직, 사업과 개발협력의 문화 내에 내재화 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IV. KOICA의 SDG16 이행 현황과 이행강화 방안

제1절 KOICA의 SDG16 관련 전략과 지침 수립 현황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KOICA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인 SDG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KOICA의 SDGs 달성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KOICA의 지원 분야들과 SDGs 각 목표들을 연계한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을 수립하였다. 동 중기전략은 5개 중점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와 3개 범분야(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환경에너지 분야는 다시 3개 세부분야(물, 교통, 에너지)로 나뉘어 총 10개 분야의 전략으로 구성된다.

SDG16은 분야별 중기전략 내에서 공공행정, 보건, 성평등 총 3개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SDG16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공공행정이다. 공공행정 중기전략은 SDG16이 제시하는 목표를 반영해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Effective and Inclusive Governance)’를 비전으로 삼고, 아래와 같이 4대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33] KOICA 공공분야 중기전략 전략목표

| 전략목표 | | 정의 |
|------|------------------|--|
| 1 |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 행정부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을 선도하고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
| 2 | 정치·행정 체제의 책임성 향상 | 정치가 국민에게 책임성을 기질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이 투명하게 운영된다. |
| 3 |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 | 법과 제도가 공평하게 집행되어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
| 4 | 거버넌스 주류화 | 분야별 사업에서 거버넌스 원칙을 반영하여 정책행위자들의 제도운영능력을 강화한다. |

출처: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 중 공공분야 중기전략

그러나 공공행정 중기전략은 SDG16이 포괄하고 있는 평화, 포괄적 사회, 폭력예방과 관리 등의 세부 주제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선행 연구 또한 공공행정 분야에 머물러

있어 현재 SDG16 이행을 위한 통합적 지침은 부재한 상태라고 평가된다.

KOICA는 SDG16이 SDGs 달성을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목표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SDG16과 현재 중기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 분야들과의 연계 확장 가능성 및 범분야적 적용 방안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SDG16의 비전 실현에 대한 KOICA의 의지는 KOICA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KOICA 10대 혁신과제(2018.2.2.)’에서도 드러난다. KOICA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KOICA 사업 및 조직 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로 신임 이사장(이미경) 취임 직후 출범하였다. KOICA 직원 및 외부위원 15명으로 이루어진 혁신위원회는 두 달 간의 활동 결과로 KOICA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표 34] KOICA 혁신 10대 중점과제

| | |
|----|-----------------------------------|
| 1 | 문제사업 재발방지 및 국민신뢰 회복 |
| 2 |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 |
| 3 | 개발협력 분절화 극복 및 개발효과성 제고 |
| 4 | 정부의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가진 원조전략 수립 및 이행 |
| 5 | 상호존중 및 책무성을 기반으로 모든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 |
| 6 | 글로벌 인재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 |
| 7 |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 데이터 공개 |
| 8 |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조직으로 도약 |
| 9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 |
| 10 | 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환류체계 강화 및 혁신과제 지속 추진 |

출처: KOICA 홈페이지

10대 중점과제 중 2번 과제인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는 향후 KOICA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항목으로, 세부과제로 관련 범분야 사업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전담조직 신설과 범분야 주류화 전략 및 실행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과제는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SDG16 목표인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SDG5인 성평등이 ODA 전 분야에 관철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다.

KOICA의 SDG16 이행 의지는 지난 1월에 열린 2018 BuDF(1/22~25, 부산)에 참석한 이사장의 기조연설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18 부산민주주의포럼은 SDG16의 이행현황 점검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SDGs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사장은 본 포럼에서 국제사회의 빈곤감소를 위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KOICA는 SDG16 관련 모범적인 ODA 사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SDG16이 제시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ODA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할 의지를 밝히며 향후 KOICA의 주요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절 KOICA의 SDG16 세부 분야별(PHD) 사업 운영 현황

새롭게 혁신하는 KOICA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의 가치를 주류화하고, 이를 모든 사업과 전략의 기준이 되는 ‘대원칙’으로 삼을 것이라는 표명과 함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체화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핵심가치 구현 ODA’를 실현해 나갈 것을 취임사를 통해 선언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SDG의 16번 목표관련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ODA 사업의 개발과 이행’을 한국 ODA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KOICA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의 세부분야인 PHD, 즉 SDG16 3대 가치와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의 중기전략 목표, 전략목표별 핵심 프로그램을 대응시켜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5] 3대 보편적 가치 기준 중기전략 목표 분류

| SDG16 3대 가치 | KOICA 중기전략 목표 | 전략목표별 핵심프로그램 |
|-------------------------------|---|---|
| 평화 (Peaceful Societies) | • 전략목표 3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 - 3.3.3 치안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활용 치안강화 시스템 구축• 과학수사 및 전문수사기법역량강화, 경찰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전문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연수• 마약 청정국으로서 마약수사 역량 강화 지원• 지뢰 및 불발탄(UXO) 제거 지원• 국제인신매매 범죄 차단을 위해 협력국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 취약국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평화증진을 위한 기금 지원 등 |

| SDG16 3대 가치 | KOICA 중기전략 목표 | 전략목표별 핵심프로그램 |
|-------------------------------|--|--|
| 인권 (Just Socie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3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2 취약계층 권리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등록을 위한 전자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 • 폭력피해 여성 보호 프로젝트 사업 •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수생 여성비율 준수 • 장애인 지원 실행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 취약계층을 직접수혜자로 하는 CSO와의 민관협력 사업 비중 확대 |
| 민주주의 (Inclusive Socie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2 (정치·행정 체제의 책임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 부패감소 - 2.2.3 선거제도의 책임성 강화 • 전략목표 3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1 사법기관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독립기구 설립 지원 •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 • 협력국 감사원과 협력하여 장기연수과정 추진 • WKF자문단을 협력국 감사원에 파견하여 협업에서 감사 기법 전수 • 중소득국가 이상에서 선거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지원 • 국회의정활동 지원시스템 현대화 사업 • 사법 분야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수립 지원 • 사회경제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지원 사업 • 빈곤 및 취약계층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법무전문가를 통해 협력국 내 사법 분야 역량강화, 법제도 정비 사업 등의 수요를 발굴 |

출처: 송수전, 2018, SDG16 Plus, 통합적 SDG 이행을 위한 연결고리, 9p. 공공행정 중기전략 57-58p,

전략 목표별 핵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얼마나 운영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KOICA의 사업들을 PHD별 주요 카테고리에 분류,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 ‘SDG16’주제별 KOICA 사업 분류 기준 및 정의서 도출 방법론⁴¹⁾

가. 도출목표

본 장에서는 KOICA가 SDG16의 주요 주제인 ‘평화(Peace), 인권(Human Rights),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와 관련하여 그간 사업운영 현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

41) 동 부분은 KOICA ODA연구정보센터(김수진 연구원) 및 사업전략기획실(송수전 과장)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보고 향후 KOICA의 SDG16 이행 강화를 위해 사업 측면에서 어떠한 보완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ICA 기준 사업 분류를 위한 ‘사업현황 분류 기준 및 정의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KOICA 기준 사업 분류 작업뿐만 아니라 향후 SDG16의 주제별(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사업 발굴 시에도 참조 가능하도록 ‘주제별 사업 분류 기준 및 정의서’를 도출하였다.

나. 활용대상

먼저 동 연구에서는 SDG16에 해당하는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3개 주제별(Thematic)로 세부 사업 카테고리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SDG16+에 해당하는 36개 SDGs 세부목표(Targets)⁴²⁾와 이에 해당하는 세부지표군(Indicators)을 활용하였다. 이는 SDGs 전체에서 범분야 이슈로서 고려되는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이슈들을 살펴 볼 경우 단순히 SDG16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바, SDGs 전체에 대한 SDG16의 주류화 반영을 위한 노력 방안의 일환인 SDG16+로 분석범위를 확대 한다. 특히 동 연구의 연구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SDG16 3개 주제에 대한 핵심대상화 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주류화 방안 또한 도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제별 접근에 있어 단순히 SDG16으로 목표를 한정하기보다는 SDG16+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DGs를 바탕으로 각 주제별 세부 분류 카테고리를 확정한 것을 바탕으로 세부 정의서를 확정하기 위해 ‘OECD 원조목적코드별 CRS분류안’을 함께 참조한다. 현재 KOICA 내부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해 SDGs 목표별 OECD 원조목적코드별 분류 합의안이 존재하는 바, 동 자료를 활용하여 SDG16에 해당하는 CRS코드를 비롯해 SDG16 주제별 내용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코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42) 중복을 포함하여 총 40개이다.

다. 분류 방법론

1) 1단계: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주제별 분류 기준 도출

[표 36] 1단계 세부 작업 순서

| | |
|---------|--|
| 1단계: |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주제별 분류 기준 도출 |
| [1-1단계] |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주제별 SDG16+ 세부목표 및 지표 분류를 통한 세부 분류 카테고리 도출 |
| [1-2단계] | 정의서 목표 및 핵심용어, 세부범위 도출 |

출처: 저자 작성

[1-1단계]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주제별 SDG16+ 세부목표 및 지표 분류

먼저 SDG16 주제별 분류기준 도출을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다음 [표 37]에서와 같이 SDG16+에 해당하는 세부목표풀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카테고리별로 1차 분류 작업을 실시하고 각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키워드 및 세부지표(Indicators)를 함께 분류하였다. 동 분류 작업을 위해 각 해당 세부목표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실제 KOICA 사업운영 차원에서의 맥락을 고려하여 범주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SDG16+에서 고려하는 SDG1(빈곤), SDG4(교육), SDG5(성평등), SDG8(일자리), SDG10(불평등), SDG11(도시), SDG16(평화, 정의, 제도), SDG17(파트너십) 등 총 8개 목표에 해당하는 세부목표 36개(중복포함 40개)를 분류 결과, ‘평화’ 이슈에는 총 15개, ‘인권’ 이슈에는 총 11개,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에는 총 14개의 세부목표로 분류된다. 아울러 [표 37]에서와 같이 각 주제별 SDG16+ 세부목표 및 지표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 내용상의 특성에 따라 세부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세부 카테고리를 각각 5개, 10개, 2개로 분류가능하다.

동 단계에서 평화 이슈 대비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경우 그 내용의 특성상 명확한 구분이 더욱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권의 경우 SDGs 세부목표의 대다수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 협약에 근거하고 있는 동시에⁴³⁾(UN, 2015; 이성훈, 2017; 김수진, 2018) ODA사업에 있어 인권 주류화 및 핵심화

43) 2030 개발의제 10항은 다음과 같다. [10항]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새천년 선언 및 2005년 세계정 상회의 결과에 기반하며,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과 같은 기타 국제적 선언문서의 내용에 입각한다. (10.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pter of the United

사업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할 인권 요소들 또한 매우 광범위함에 따라 동 연구의 분석대상인 평화를 비롯한 민주적 거버넌스와도 상당부분 중첩되는 요소가 많아 각 주제별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KOICA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ODA사업 운영현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주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상호 연관성을 보이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인권에 대한 분류를 위해 △주요 인권기준(Human Rights Instruments) 현황⁴⁴⁾ 및 △해외공여기관의 사례, △KOICA 사업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조율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먼저 인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여성, 아동, 소수민족, 장애인, 이주민 및 난민 등과 같은 취약집단별로 고려하나, 동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권기준들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카테고리화함으로써 크게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노동권 포함), 사회문화적 권리 등 총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ODA사업 운영에 있어 인권기준 적용을 위한 주요 부문으로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⁴⁵⁾’을 고려하고 있는 독일 GIZ의 사례와 함께 실제 KOICA에서의 공공행정 사업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업 범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권리(노동권 포함) 및 사회문화적 권리는 ‘인권’ 카테고리로, 아울러 인권 중에서도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공공행정 범주에 들어가는 정부제도 및 기관 역량 강화와 관련한 부분은 ‘민주적 거버넌스’ 카테고리로 최종 구분하였다.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New York: United Nations”

44) SDGs에서 고려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한 9대 주요 협약 및 기타 관련 주요 인권기준(Human Rights Instruments)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수진. 2018.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수준 분석: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8-2호:109-170. 특히 p.113-126. “III-1.SDGs 세부목표별 국제 인권기준 연계현황 분석방법 및 대상”(p.119-126)을 참조하기 바란다.

45) 독일의 경우 대부분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의 이행을 국가차원에서 법적인 구속력있는 의무로 수용하다 독일이 활용하는 인권원칙 및 인권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권원칙] △참여와 역량강화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비차별과 기회의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투명성과 책무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인권기준]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품질(Quality), 문화적 수용성(Acceptability). 동 부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III-3. 독일의 SDG16 이행방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37] 평화, 인권, 민주적 기반년스 주제별 SDG16+ 세부목표(40개) 분류안

| 순서 | 구분 | 번호 | 목표 (키워드)* | 세부내용 |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 | | | 해당 지표 | | |
| 1 | 평화, 정의, 제도 (All forms of violence) | 16.1 |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의 현저한 감소 | 16.1.1 인구 100,000명당 국제적 살인에 의한 희생자 비율(성별/연령별) 16.1.2 인구 100,000명당 폭력적 분쟁에 의한 희생자 비율(성별/연령별) 16.1.3 지난 12개월간 산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한 인구 비율 16.1.4 주거지 인근에서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 | |
| | | 8.7 | 일자리 (강제노동, 현대적 노예제, 인신매매) |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 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이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족족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이동노동 종식 | 8.7.1 성별, 연령별 아동노동 이동의 수 및 비율 | | |
| 2 | 평화1 | 16.2 | 평화, 정의, 제도 (Violence against children) | 아동에 대한 학대, 칙대,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16.2.1 지난 몇 달 간 보호자에 의해 신체적 치벌이나 심리적 공격을 경험한 1~17세 아동의 비율 16.2.2 인구 100,000명당 인신매매 희생자비율(성별/연령별/성취수준별) | | |
| | | 8.7 | 일자리 (이동, 노동, 소년병) |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 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이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족족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이동노동 종식 | 8.7.1 성별, 연령별 아동노동 이동의 수 및 비율 | | |
| 3 | 평화2 | 5.2 | 양성평등 (여성 및 소녀 대상 폭력 극복) |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칙대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극복 |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배우자 및 데이트 상대 포함)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경험자 비중(연령별/폭력의 형태별)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중(연령별/장소별) | | |
| | | | | | | | |

|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
|----------------|---------------------------------|------|--|---|--|---|
| 순서 | 구분 | 번호 | 목표 (키워드)* | 세부내용 | | 해당 지표 |
| 6 | 양성평등 (이동, 결혼, 여성 ヘルペ, 균질) | 5.3 | 아동결혼, 소홀, 강제결혼과 여성학暴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 2030년까지 불법자금, 무기 거래를 상당수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 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여성의 비중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 성기 절제 받은 연령별 비중 |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여성의 비중 |
| 7 | 평화, 정의, 제도 (Arms flows) | 16.4 | |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예방 및 테러리즘·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등을 통한 관련 국가 기관을 강화 | 16.4.1 내부 및 외부의 불법적 자금 흐름의 총액(현 미국달러 기준) 16.4.2 국제적 기준과 법적 기구의 관리 하에 추적이 가능한 소규모 무기 및 경무기의 비율 | 16.4.1 내부 및 외부의 불법적 자금 흐름의 총액(현 미국달러 기준) |
| 8 | 평화 (Violence prevention) | 16.a | |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기능적 교육 (평화 및 비폭력 문화 관련 교육 강화) |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과 (ii) 지속기능개발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 되어 있는 정도 | 16.a.1 파리 원칙에 의거한 독립적인 국가인권 기구 설치 |
| 9 | 평화3 | 4.7 | | 2030년까지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 기능개발 측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확득 보장 |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과 (ii) 지속기능개발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 되어 있는 정도 | |
| 10 | | 4.a | 교육 (안전한 교육시설구축) |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 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 4.a.1 (a) 전기, (b) 수업 목적인 인터넷, (c)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 기초 식수, (f) 생별로 분리되어있는 기초우생시설 및 (g) 기초 순 씨기 시설(WASH 지포장)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 | |
| 11 | | 11.2 | 도시 (Safe transport) |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이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인전을 개선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 | 11.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 |

| 순서 | 구분 | 번호 | 목표 (키워드)* |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 | 세부내용 | 해당 지표 |
| 12 | | 11.7 | 도시 (Safe public spaces) |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이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환경 창조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 11.7.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중 11.7.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추행의 피해자 비율 |
| 13 | | 8.8 | 일자리 (이주노동자, 그로환경 개선)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인정한 고용 형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균형 경증 | 8.8.1 성별, 이민신분별 차명 또는 비차별적 직업관련 부상 비도비율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하여 (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
| 14 | 평화5 | 10.7 | 불평등 (안전한 이주노조)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 및 동성 강화 | 10.7.1 이민국에서의 연소득 중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고용비용 10.7.2 잘 관리되는 이민정책을 이행해온 국가의 수 |
| 15 | | 11.1 | 도시 (안전한 주거지 미련, 빈민가)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기를 개선 | 11.1.1 빈민가, 무허가 또는 척결하지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
| 16 | | 8.5 | 일자리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 8.5.1 직업별,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시간당 소득 8.5.2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실업률 |
| 인권1 | | 8.8 | 일자리 (labor rights)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인정한 고용 형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균형 경증 | 8.8.1 성별, 이민신분별 차명 또는 비차별적 직업관련 부상 비도비율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하여 (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

|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
|----------------|----|----|---|---|---|--|
| 순서 | 구분 | 번호 | 목표 (키워드)* | 세부내용 | 해당 지표 | |
| 18 | | | 불평등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 2030년까지 나아, 성, 정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을 강화 및 증진 | 10.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중간소득의 50%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 | |
| 19 | | | 불평등 (Migration policies)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성 강화 | 10.7.1 이민국에서의 연소득 중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고용비용 10.7.2 잘 관리되는 이민정책을 이행해온 국가의 수 | |
| 20 | | | 도시 (Inclusive urbanization) |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 11.3.1 인구성장을 대비 토지소모비율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 |
| 21 | | | 교육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극복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4.5.1 패리티 지수(성별, 도농, 소득수준 및 장애, 원주민, 분쟁영향 등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 |
| 인권2 | | | 평화, 정의, 제도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 | 16.10.1 지난 12개월간 기자, 언론인, 노동조합원 및 인권옹호자에 대한 살인, 납치, 강제실종, 임의구금, 고문과 관련한 사건의 수 16.10.2 대중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헌법적, 법률적 혹은 정책적 보장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수 | |
| 22 | | | 교육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 개발 축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획득 보장 | 4.7.1 양생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① 글로벌시민의식 교육과 ② 지속가능개발 교육-③ 국가교육정책, ④ 교육과정, ⑤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
| 23 | | | 교육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 개발 축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획득 보장 | 4.7.1 양생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① 글로벌시민의식 교육과 ② 지속가능개발 교육-③ 국가교육정책, ④ 교육과정, ⑤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

| 순서 | 구분 | 번호 | 목표 (키워드)* |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 | 세부내용 | 해당 지표 |
| 24 | | 10.3 | 불평등 (Equal opportunit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균절, 0와 관련한 차별화된 법령, 정책 및 행동의 진통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인구 비율 |
| | | 25 | 불평등 (Policies for greater equality) | 특히 재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 등을 차별하고 점진적으로 평등화다리를 달성 | 10.4.1 GDP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 비중 |
| 26 | | 16.b | 평화, 정의, 제도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 16.b.1. 지난 12개월간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금지된 차별 근거를 기반으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되는 인구 비율 |
| 27 | 민주적 거버넌스1 | 16.3 | 평화, 정의, 제도 (Rule of law and access to justice) |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갈등해결 메커니즘에 보고된 폭력피해자 비율 16.3.2 전체 교도소 수감자 중 미결 체류자 비율 |
| 28 | 민주적 거버넌스2 | 16.5 | 평화, 정의, 제도 (Corruption and bribery) |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청받은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의 비율 16.5.2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청받았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기업 비율 |
| 29 | 민주적 거버넌스3 | 16.6 | 평화, 정의, 제도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 16.6.1 부문별 승인된 예산에 근거한 정부의 지출 비율 16.6.2 공공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낀 인구 비율 |

| 순서 | 구분 | 번호 | 목표 (키워드)* |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 | 세부내용 | 해당 지표 |
| 30 | 민주적 가버 너스4 | 16.7 | 평화, 정의, 제도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 모든 수준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 16.7.1 국가적 분포와 비교하여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공공행정, 시법부) 내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적급 비율 16.7.2 정체질경과성이 포용적이고 대응성이 높다고 믿는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적급 비율) |
| 31 | 민주적 가버 너스5 | 5.5 | 양성평등 (Women'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 정치, 경제, 공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 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보장 | 5.5.1 사회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5.5.2 여성경영진 비중 |
| 32 | 민주적 가버 너스6 | 10.5 | 불평등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institution) |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 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 이행 강화 | 10.5.1 금융간전성지수 |
| 33 | 민주적 가버 너스6 | 10.6 | 불평등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institution) |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경제· 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의결권 비율 |
| 34 | | 16.8 | 평화, 정의, 제도 (Participation in global governance) | 개도국의 글로벌 기반년스 기관 참여를 확대 하고 강화 | 16.8.1 국제기구 내 개발도상국의 투표권과 회원 비율 |
| 35 | | 1.b | 빈곤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poverty reduction) | 빈곤 토지 행동에 대한 투자 축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환경이고 성인화적인 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국가적, 지역적, 구체적 수준 에서 건전한 정체 체계를 창출 | 1.b.1 여성,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섹터에 배당된 정부의 운영 및 자본지출 비중 |

| 순서 | 구분 | 구분 번호 | 목표 (키워드)* |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
|----|-------------------|-------|--|--|---|
| | | | | 세부내용 | 해당 지표 |
| 36 | 민주적 기여 년수7 | 5.1 | 양성평등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5.1.1 양성평등과 번차별을 증진하고 강제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
| 37 | 민주적 기여 년수8 | 5.c | 양성평등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gender equality) |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화 법을 제탁하고 강화 |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중 |
| 38 | 민주적 기여 년수8 | 17.1 | 파트너십 (Tax collection) |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재원 동원 강화 | 17.1.1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수익 17.1.2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예산 비율 |
| 39 | 민주적 기여 년수9 | 17.10 | 파트너십 (Equitable trade system) | 도하개발의제 협상 티끌 등을 통하여 세계 무역기구 하의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 하며 개방적·번치별적이고 공평한 디자 무역체계 증진 | 17.10.1 전세계 기종 관세평균 |
| 40 | 민주적 기여 년수10 | 16.9 | 평화, 정의, 제도 (Legal identity) |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 | 16.9.1 출생신고가 완료된 5세 이하 아동 비율(언령별) |

출처: 제 72회 UN총회 부대행사 “SDG16+ 이행 촉진” 컨셉노트 (2017.09.21.) 바탕으로 저자 작성 46)

46) 상세사항은 다음에 서 확인가능하다. https://cic.nyu.edu/sites/default/files/unga_2017_side_event_concept_note_8sep17.pdf (접속일: 2018.07.06.)

[1-2단계] 정의서 목표 및 핵심용어, 세부범위 도출

상기 [1-1단계]를 통해 분류된 총 17개 세부카테고리(평화 5개, 인권 2개, 민주적 거버넌스 10개)의 세부목표 및 지표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각 세부 카테고리별 정의서 목표 및 핵심 세부범위를 도출한다. 아래 [표 38]은 이에 대해 정리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표 38] SDG16 주제별 정의서 목표, 핵심용어, 세부범위 도출 결과

| 구분 | 목표 (핵심) | 세부범위 |
|-----|---|---|
| 평화 | 1. 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 (폭력(viol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아동/소녀 및 여성 대상] 일체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폭력 등 커뮤니티 내 발생 하는 일체의 폭력(violence)적 행위 근절 지원 [일반/아동/소녀 및 여성 대상] 강제노동, 노예제도, 인신 매매, 조흔, 강제동거, 여성할례(여성성기질제술), 소년병 징집 등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강압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폭력적(violence) 행위 근절 지원 |
| | 2. 불법 거래흐름 척결을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예방 (불법 자금흐름, 불법취득자산환수, 조직범죄, 무기 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자금흐름 감소 및 불법취득자산 환수 및 반환조치 강화 무기거래 감소, 폭발물(지뢰, 불발탄) 제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
| | 3. 정부 및 국가차원에서의 폭력 및 분쟁의 효과적 예방 역량 강화(폭력 및 분쟁 예방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예방을 위한 국내 제도 수립 및 기구 설치 평화 및 치안유지를 위한 역량강화 평화유지군활동을 통한 국경간 대규모 분쟁(conflict), 테러 및 범죄 퇴치 |
| | 4. 치안 및 안전 강화를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예방 환경 구축 (치안(안전, 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습환경 제공 및 학교 설치 안전한 교통체계 마련 및 접근성 강화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강화, 성추행 비율 감소 |
| | 5. 이주민(국내 실향민 및 난민)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을 통한 사회 재통합 실현 (이주민(국내 실향민, 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의 비차별적 노동권 보호 및 평등한 근로환경 구축 이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위한 이주정책 개선 이주민들의 주거지(빈민가, 피난처) 개선 이주민(국내실향민 및 난민)을 위한 긴급구호(인도적 지원) 제공 |
| 인권* | 1. 동일한 임금 및 고용환경을 구축하여 경제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노동권, 경제권) | <p>[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O 기준에 맞는 평등한 노동권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임금, 고용) |

| 구분 | 목표 (핵심) | 세부범위 |
|----------|--|---|
| 인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권, 노동권 관련 국제 인권 협약을 국내 법률로 승인 • 이주민, 아동, 여성, 장애인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중간 소득의 50% 이하 빈곤층 해소 지원 • 이주민의 성별, 신분별 산업안전 강화 지원 • 이주민의 성별, 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하여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단체교섭권 및 결사의 자유 등) * ILO노동기준: 강제근로, 근로감독, 취업이주, 결사 및 단결권, 노동조항, 동등보수, 노동최저기준, 노동최저연령, 최저임금, 균등대우(고용차별), 고용정책, 인적자원, 산업안전, 가족부양근로자, 사회보장권, 장애인고용, 삼자협의, 소수자(토착민, 부족민, 여성, 아동, 이주민) 노동권, 근로조건, 직업소개소, 해사노동, 어선근로, 중소기업 등 |
| | 2. 비차별적인 접근성보장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사회권, 문화권, 교육, 정보) | <p>[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권 관련 국제 인권 공약을 국내법률로 승인 (경제권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인권 협약을 동 범주로 분류) • 국내 이주민(난민, 국내실향민) 지원 정책 마련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토지계획 마련 지원 • 성별, 도농, 소득수준, 장애, 소수민(원주민), 난민 등을 포용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지원 • 기자, 언론인, 노동조합원, 인권옹호자의 안전및 인권 보장 체제 강화 • 기자, 언론인, 노동조합원,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대중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 마련 지원 • 양성평등과 인권 교육, 글로벌시민의식 교육, SDGs 이해 교육 실시 • 양성평등, 인권, 글로벌시민의식, SDGs가 국내 교육 (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학생평가과정 등) 메커니즘 내 주류화 지원 |
| 민주적 거버넌스 | 1. 법치 촉진 및 평등한 사법접근성 제고 및 보장(법치, 사법(제도), 평등,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해결매커니즘 구축 및 실제 운영 강화 • 교도소 수감자 대상 최종 판결 완료 비율 강화 |
| | 2.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뇌물 수수 감소(뇌물, (부정) 부패, 비리, 불법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 일체 부패 및 뇌물 의뢰 또는 수수 감소 지원 • 정치부패 및 행정부패 등 일체 부패 해소 지원 |
| | 3. 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시스템 개선, 재정투명성 강화 지원 |

| 구분 | 목표 (핵심) | 세부범위 |
|-----------------|--|---|
| 민주적 거버 너스 | 적이고, 책무성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제도, 효과성, 책무성, 투명성, 공공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 제도의 효과적 책무적 운영 지원 |
| | 4. 공직 및 조직 내 여성 리더십 참여 및 비중 확대(여성, 리더십,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및 지방정부에서의 여성 참여 비중 강화 여성 경영진 비중의 강화 |
| | 5. 국제기구 내 개도국의 회원가입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 강화 (국제기구, 개도국 가입, 참여, 국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 내 개도국 회원 가입 지원 국제기구 내 개도국 참여 및 국제기준 이행 지원(국내 무역 기준 이행 지원 등) |
| | 6.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빈곤 감소 및 퇴치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빈곤, 취약계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층,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예산 책정 지원 |
| | 7.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양성 평등, (비)차별, 여성, 소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및 비차별을 이행 및 모니터링, 처벌 위한 법적 체계 구축 지원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 예산 배분 |
| | 8. 공정한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 및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조세 체제 강화(조세, 세금, 세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 징수 체제 강화 지원 |
| | 9. 개도국 내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이고 규칙을 근간으로한 다자 무역기준 이행력 제고 (공평, 무역체제, 기준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무역 기준 이행 지원 |
| | 10. 출생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법적 지위, 출생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출생신고 마련 지원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시스템 지원 사업 |

출처: 저자 작성

2) 2단계: 각 세부 카테고리별 정의서 완성

[표 39] 2단계 세부 작업 순서

| | |
|---------|--|
| 2단계: | 각 세부 카테고리별 정의서 완성 |
| [2-1단계] | 'CRS원조목적코드별 SDGs 목표 분류안'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 CRS 범위 도출 |
| [2-2단계] | 주제별 세부분류기준에 맞추어 연관된 CRS코드 분류 |
| [2-3단계] | 1단계 결과물과 종합하여 최종 정의서 완성 |

출처: 저자 작성

[2-1단계] 'CRS원조목적코드별 SDGs 목표 분류안'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 CRS 범위 도출

앞서 완성된 정의서의 기본 틀 내에서 ODA로 보고가능한 각 주제별 사업 범위에 대한 고려 또한 종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동 연구에서는 OECD CRS원조목적코드 중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해 유관 코드를 추출하여 해당 정의서 내용을 함께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2016.12.26. 기준으로 KOICA에서 CRS통계보고를 위해 SDGs 각 목표별로 CRS원조목적코드를 분류해놓은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주제에 대해 아래 [표 40]과 같은 A, B, C 분류기준에 따라 관련성 있는 코드를 도출하였다.

[표 40] OECD CRS원조목적코드별 SDG16관련 코드 분류 기준

| 분류 | 정의 | 개수 |
|----|--|-----|
| A | SDG16 목표로 분류되어 있는 CRS원조목적코드 | 18개 |
| B | SDG16을 제외한 목표 중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CRS원조목적코드 | 25개 |
| C | A,B에 해당하지 않으나, 내용상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CRS원조목적코드 | 7개 |

출처: 저자 작성

상기 기준에 따라 도출된 코드를 살펴보면 SDG16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내부적으로 합의된 CRS코드(A)가 중복을 포함 총 18개이며, SDG16이 아닌 타 목표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분류되어 있으나 SDG16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KOICA 주요 사업 분야인 공공행정 사업 연계로 분류되어 있는 CRS코드(B)에 해당하는 25개 코드도 함께 고려하였다. 아울러 A, B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평화 유지(Peace-keeping)를 위한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으로 보고되는 CRS코드(C) 총 7개 또한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함으로써 총 50개의 CRS코드의 정의서(Description)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고려된 50개 원조목적코드별 CRS 분류안의 구성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주제 관련 OECD 원조목적코드별 CRS 분류(안)

| 분류 | SDGs 목표 | CRS 코드 |
|---|---------|-----------------------|
| [분류기준] A: SDG16 목표로 분류되어 있는 CRS원조목적코드 (18) | SDG16 | 1511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
| | | 15111 (공공재정관리) |
| | | 15112 (분권화 및 지방정부 지원) |
| | | 15113 (부패방지기구 및 기관) |
| | |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

| 분류 | SDGs 목표 | CRS 코드 |
|--|---------|---|
| | | 15150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15151 (선거) 15152 (입법 및 정당) 15153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 15160 (인권감시 및 교육) 15170 (성평등 조직 및 제도) 15210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15220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예방) 15230 (UN평화유지군 활동) 15240 (사회재합류와 소형무기 통제) 15250 (지뢰제거) 15261 (소년병 예방 및 동원해제) 15180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 근절) |
| B | SDG5 | 1511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해당시) 15150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해당시) 16010 (사회/복지서비스) (해당시) 1602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해당시) 16050 (기초사회서비스부문 다부문 원조) (해당시) 24010 (금융정책 및 행정 관리) (해당시) 24040 (비정규/유사 금융기관) (해당시) 24081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해당시) 43010 (다부문 원조) (해당시) |
| [분류기준] B: SDG16을 제외한 목표 중 ‘공공행정’으로 분류 되어 있는 CRS원조목적 코드 (25) | SDG8 | 15180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 근절) 33110 (통상정책, 행정관리) 33120 (무역진흥) 33130 (지역무역협정) 33181 (무역교육 및 훈련) |
| | SDG10 | 1511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해당시) 15150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해당시) 15170 (성평등 조직 및 제도) (해당시) 16010 (사회/복지서비스) (해당시) 1602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해당시) 16050 (기초사회서비스부문 다부문 원조) (해당시)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해당시) 24040 (비정규/유사 금융기관) (해당시) 24081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해당시) 43010 (다부문 원조) (해당시) |
| | SDG17 | 15114 (국내재원조성) |

| 분류 | SDGs 목표 | CRS 코드 |
|--|---------|--|
| C | | 13010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
| [분류기준] | | 16064 (AIDS사회적영향완화) |
| C: A,B에 해당하지 않으나, 내용상 추가 고려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CRS 원조 목적코드 (7) | | 72010 (구호물자지원 및 서비스) 72040 (긴급식량원조) 72050 (긴급구호 조정/보호 및 안전확보) 73010 (재건구호) 93010 (난민지원-공여국내) |

출처: KOICA (2016) “OECD CRS원조목적코드별 SDGs 목표분류(안) (2016.12.26.)” (KOICA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별체 정리

[2-2단계] 주제별 세부분류기준에 맞추어 연관된 CRS코드 분류

이후 앞서 완성된 정의서 내 목표 및 핵심, 세부목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상 가장 우선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제별로 대상 CRS코드를 분류하고 해당 코드와 정의서(Description)를 함께 표기하였다. 또한 표기 시 각 CRS코드별로 내용상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주제에 따라 각각 평화(P), 인권(H), 민주적 거버넌스(D)로 별도 표기하였다. 이는 특히 SDG16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각각의 주제가 주류화 차원에서 고려될 경우 상호 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별 세부 카테고리에서도 세 가지 주제 중 두 개 이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에 따라 P, H, D로 구분은 하되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복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표 42]는 상기 기준을 따라 도출된 주제별 카테고리 중 ‘평화’에 해당하는 총 5개 세부 카테고리에 대한 CRS코드 분류결과이다. 민주적 거버넌스 및 인권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되었다.

[표 42] ‘평화’ 관련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CRS코드 분류 결과(예시)

| | |
|-------------------------------------|--|
| [평화1] 모든 형태의 폭력 (violence)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 근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소녀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 특정 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등 광범위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함(예: 배우자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여성할례, 아동의 조흔과 강제 결혼, 염산테러, 명예 살인,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 등) - 예방활동에는 여성 및 소녀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태도, 규범 및 행동 변화; 법률 개혁 제정 및 채택; 여성 및 소녀 대상의 폭력 종결 위한 법률 및 정책 도입 강화가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의 사회재합류 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기술협력이 해당 (국제평화유지 활동 또는 소년병과 관련 있는 활동은 별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병 (예방 및 동원 해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병 동원 방지 및 소년병의 해산, 무장 해제, 사회 재합류, 본국 송환, 재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원조와 정부 대상 기술협력 |
| [평화2] 불법 거래 흐름 척결을 통한 폭력 (violence) 및 분쟁 (conflict) 예방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무기 통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 생산시설의 민간 생산시설 전환, 소형무기(SALW)의 확산을 억제, 방지, 축소하기 위한 기술협력이 해당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관련 있는 활동은 별개) ◆ 지뢰제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뢰와 전쟁 후 잔여 폭발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 (지뢰, 잔여 폭발물 제거, 개발을 위한 대량 비축 무기 파괴 포함) (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지뢰제거 관련 활동은 별개); - 지뢰 위험 관련 교육과 인식 증진; 지뢰 피해자들의 사회복귀, 재합류 및 지원; 지뢰제거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지원 (활동 목적이 민간인을 위한 것이어야 함) ◆ 국제 불법 거래 및 조직적 부패 범죄 방지기구 및 제도 수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세탁 및 기타 조직적 부패 범죄와의 전쟁 및 방지를 위한 전문 조직, 기관 및 제도 수립 (예. 반부패위원회, 조직 범죄 및 불법 거래 모니터링 기구, 특별 수사지원 등) |
| [평화3] 정부 및 국가차원 에서의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의 효과적 예방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 예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유지, 분쟁 방지과 해결과 관련된 민간 활동에 대한 지원 (역량강화, 모니터링, 토론, 정보 교환 포함) - UN개발지원체제(UNDPA) 또는 EU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이 시행한 국제 민간 평화임무의 양자 참여, 민간 평화 기금 또는 위원회에 제공한 지원 (예: 평화구축 위원회, MDG 성과기금의 평화구축테마지원금). 지원의 형태는 자금 또는 장비·민간인·군병력 지원이다.(예: 민간인 훈련 목적) (평화유지활동 내에서의 양자 참여 활동은 별개) ◆ UN 평화유지군 활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전보장의사회 결의, 타 국제기구(UN, NATO, EU), 개발도상국의 지역 협의체 의해 의무지워진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양자 참여 - UN평화유지군 양자 지원활동 가능 범위: 인권 및 선거 모니터링; 해산된 군인들의 사회재합류; 국가의 기초 인프라 복원; 공무원 및 경찰 대상 재훈련과 모니터링; 치안 분야 개혁 및 기타 법률 관련 활동들; 세관 및 국경 관리 절차에 대한 교육; 거시경제적 재정적 안정화 정책에 대한 조언 및 교육; 무장한 파벌에 대한 해산 및 본국 송환, 무기 제거; 지뢰제거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강제시행은 ODA 비적격) - ODA에 적격한 평화유지 활동의 양자 참여 형태: 장비 또는 군병력, 관련 분야 인력(경찰)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 국제평화유지활동이 인도주의적 원조사업(인력 또는 장비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 차원으로도 지원 가능 - UN 평화유지군 활동 예산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양자 ODA가 아니라 다자 ODA |

| | |
|--|--|
| <p>[평화4] 치안 및 안전 강화를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예방 환경 구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민간에 의한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부처, 법 집행처와 치안 시스템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법부와의 기술 협력; - 공공 지출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포함한 사회보장비의 예산, 관리, 책임성 그리고 회계감사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와 민간 감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와의 기술 협력; - 안보 시스템에 대한 감사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이로 인해 책임성, 투명성, 굿 거버넌스 원칙과 민주적인 규범에 따라 안보 시스템이 관리됨) (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관련 활동은 별개) |
| <p>[평화5] 이주민(국내 실향민 및 난민)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을 통한 사회 재통합 실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물자지원 및 서비스 (인도적 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처, 물, 위생, 보건 서비스; - 의약품 공급과 기타 식량 이외의 긴급구호품 (개도국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에 제공하는 음식과 보호는 별개) - 난민과 국내피난민의 재정착 지원 ◆ 긴급 식량원조(인도적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에게 제공하는 무상 배급을 위한 식량원조 또는 특별 보완 급식 프로그램 ◆ 긴급구호 조정/보호 및 안전 확보(인도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조정방안(물류 및 의사소통 시스템 포함), 민간인과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안전, 행복, 존엄 및 온전성을 보호 및 증진하는 방법(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은 제외) ◆ 재건구호(인도적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의 기간동안의 활동과 관련됨. 긴급상황이나 분쟁 이후 기존 인프라 시설을 복구하는데 단기 재건 활동(도로, 다리, 항구등의 복구, 물과 위생, 피난처, 보건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시설들의 복구); 긴급상황으로 인한 새로운 생계수단 개발 또는 과거 생계수단으로의 복귀를 돋고 사람들이 과도기를 용이하게 넘도록 사회 경제적 복원(트라우마 상담과 치료, 고용 프로그램) ◆ 난민 지원(공여국 내) (P) |

출처: 저자 작성

[2-3단계] 1단계 결과물과 종합하여 최종 정의서 완성

상기를 통해 각 카테고리별 CRS코드 분류 및 정의서 확인이 완료되면, 앞선 [2-1단계]에서의 각 세부 카테고리별 목표 및 핵심, 세부범위 등으로 구성된 정의서 기본 틀에 [2-2단계] CRS 코드 작업 결과를 종합하여, 평화 5개, 인권 2개, 민주적 거버넌스 10개 세부 카테고리에 대한 최종 정의서를 완성한다. 아래 [글상자 8]은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정의서 중 ‘평화1. 모든 형태의 폭력(Violence) 감소’ 세부 카테고리에 대한 예시이다. 총 17개 세부 카테고리에 대한 최종 정의서 내용은 <부록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글상자 8] ‘평화1. 모든 형태의 폭력(violence) 감소’ 카테고리 정의서(예시)

- 목표: 모든 형태의 폭력(violence) 감소
- 핵심: 폭력(violence)
- 설명: 국내 또는 커뮤니티 내에서 아동, 소녀 및 여성, 난민, 토착민(소수자)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을 비롯한 일체의 폭력(violence) 발생을 근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활동 (*취약계층: 아동, 여성과 소녀, 인권옹호자, 토착민, 이민자, 국내실향민, 피난민, 장애인 등)
- 세부 범위
 - [소녀 및 여성 대상] 배우자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조uron, 강제동거, 강제결혼, 여성할례(여성성 기질제술), 염산테라, 명예살인, 인신매매 등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 특정 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아동 대상] 강제노동, 노예제도, 인신매매, 소년병 징집을 비롯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일체의 아동 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기타] 일체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폭력 등 커뮤니티 내 발생하는 일체의 폭력(violence)적 행위 근절 지원
- ◆ 취약계층 대상 폭력 근절 (P)
 - 예방활동에는 취약계층(여성 및 소녀, 아동, 인권옹호자, 토착민, 이민자, 국내실향민, 피난민, 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태도, 규범 및 행동 변화; 법률 개혁 제정 및 채택; 여성 및 소녀, 아동 대상의 폭력 종결 위한 법률 및 정책 도입 강화
- ◆ 제대군인의 사회재합류 지원(P)
 - 제대군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기술협력이 해당 (국제평화유지 활동 또는 소년병과 관련 있는 활동은 별개)
- ◆ 소년병 (예방 및 동원 해제) (P)
 - 소년병 동원 방지 및 소년병의 해산, 무장 해제, 사회재합류, 본국 송환, 재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원조와 정부 대상 기술협력
- ◆ 인권 감시 및 교육 (H)
 -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 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및 고문 피해자) (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은 별개)

출처: 저자 작성

2. 분류기준⁴⁷⁾⁴⁸⁾

가. 평화

1) 평화1: 형태의 폭력(Violence) 감소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국내 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폭력(Violence) 행위 일체에 대한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소녀 및 여성대상 폭력, 아동 폭력을 비롯한 일체의 신체적·심리적·성적 폭력이 그 대상이 된다. 특히 동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활동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의 사회 재합류, 소년병 예방 및 동원 해제 등 또한 동 범주에 해당한다.

2) 평화2: 불법 거래 흐름 척결을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예방 기여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일체의 불법자금흐름 및 조직범죄, 폭발물을 비롯한 무기거래 근절, 불법 취득자산 환수 등을 통해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발생에 기여하는 일체의 요인을 근절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3) 평화3: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의 효과적 예방 역량 강화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국내 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Violence) 뿐만 아니라 집단 간 대규모 분쟁(Conflict) 모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다자 차원의 평화유지(Peacekeeping)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동 활동에는 시민주도의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활동과 함께 UN평화유지활동 중 ODA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OECD DAC의 인정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 일체가 동 범주에 해당한다.

4) 평화4: 치안 및 안전 강화를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예방 환경 구축

네 번째 카테고리는 국내 및 커뮤니티 차원의 치안 및 안전(Safety) 강화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커뮤니티 내 평화 및 비폭력 문화 증진 교육 실시,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안전한 교통체계 및 공공장소에서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활동 일체가 해당한다.

47) 각 주제별 목표, 핵심, 설명, 세부범위 등이 정리된 정의서는 부록 9, 10, 11. 참고하기 바란다.

48) 동 부분은 KOICA ODA연구정보센터(김수진 연구원) 및 사업전략기획실(송수전 과장)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5) 평화5: 이주민(국내 실향민 및 난민)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을 통한 사회 재통합 실현

아울러 다섯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폭력 및 분쟁 사태로 인해 지속적으로 중대되어가고 있는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및 난민(Refugee)들의 안전한 이동 및 긴급구호 수혜, 난민 수용국에서의 안전한 정착을 통한 사회재통합 실현 등을 위한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긴급구호 활동에서부터 피난처 제공, 이주정책 개선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스스로의 노동권을 보호 받고 평등한 근로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회재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일체가 해당한다.

나. 인권

1) 인권1: 동일한 임금 및 고용환경을 구축하여 경제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노동권 및 경제권과 관련한 일체의 인권강화 지원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동일한 임금 및 고용환경을 구축하여 경제적 인권 및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카테고리에는 ILO 기준 및 관련 국제인권 협약 등의 국내 법률 승인 지원 및 이행을 위한 관련 인권 교육 실시, 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 기관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해당된다.

2) 인권2: 비차별적인 접근성보장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사회권 및 문화권 측면에서의 인권 보장 및 강화를 위한 일체의 인권 강화지원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동 범주에는 사회문화권 관련 인권 감시 및 교육 실시, 관련 국제 인권협약의 국내 법률 승인 지원, 기자 및 언론인, 노동조합원, 인권옹호자와 같이 비차별적인 인권 중대를 위한 핵심 구성원이면서도 스스로의 인권보장에 있어서는 취약지대에 놓여있는 개인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대중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 마련 활동 등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문화적 인권 강화 활동이 동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다. 민주적 거버넌스

1) 민주적 거버넌스1: 법치 촉진 및 평등한 사법접근성 제고 및 보장

첫 번째 카테고리는 평등한 사법접근성 제고 및 보장을 통해 법 집행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궁극적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구축 및 강화 관련, 사법 및 정책,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정비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민주적 거버넌스2: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감소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개인,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전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를 막기 위한 활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수립, 전문 조직 설립 및 운영, 감사, 예산 및 자금의 투명한 흐름 및 집행을 위한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3) 민주적 거버넌스3: 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책무성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책무성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공공분야 제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인적자원 개발 및 조직 운영 개선, 전자정부 구축 등 효율성 강화 활동,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4) 민주적 거버넌스4: 공식 정치과정 및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및 포용성 제고

네 번째 카테고리는 다양한 레벨에서 주요 공식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성 및 포용성, 참여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시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 인식제고 및 교육 제공, 선거를 통한 정치과정 참여 증진, 주요 요직에 취약계층 참여비율 제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분권화 및 지방정부 지원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단, 평화유지활동 차원에서의 선거관련 활동 및 지원은 평화유지활동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동 활동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5) 민주적 거버넌스5: 국제기구 내 개도국의 회원가입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 강화

다섯 번째 카테고리에는 국제기구(국제금융기구 포함) 내 개도국의 회원가입 및 참여확대를 통해 국제기준(국제 무역 기준 이행 포함) 이행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을

포함하며, 관련 분야 정책 및 행정관리, 기관 역량강화 지원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동 분야 지원은 향후 지원 확대 가능 분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양자형태보다는 다자적 형태
모색이 더욱 적절할 수 있으므로, 다자적 플랫폼 차원에서 고려 필요. 조세 및 무역 관련
국제 기준 이행 부분은 별도로 다룬다.)

6) 민주적 거버넌스6: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빈곤 감소 및 퇴치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SDGs가 강조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Leaving No One Behind)
개발’을 고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제도 및 정책 도입을 위한 활동으로, 빈곤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도입, 프로그램 시행 등의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민주적 거버넌스7: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일곱 번째 카테고리에는 양성평등 촉진, 차별 종식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차별의 근본이 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위한 조직 및 제도 개선,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차원에서 지원활동이 해당한다.

8) 민주적 거버넌스8: 공정한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 및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조세 체제 강화

여덟 번째 카테고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특정 계층만의 발전을 지양하는
포괄적 성장 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 및 행정 역량강화, 기술적 지원 제공을 위한 활동으로, 법
규정 개혁, IT 시스템 개선 등의 조세행정 개선, 국가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조세정책, 국제
조세 분야 기준 이행 관련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9) 민주적 거버넌스9: 개도국 내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이고 규칙을 근간으로 한 다자 무역기준 이행력 제고

아홉 번째 카테고리에는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기준 이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으로 관련 기관 지원,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 정보 제공, 네트워킹
지원 등이 해당한다.

10) 민주적 거버넌스10: 출생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열 번째 카테고리에는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및 보장을 위한 일체의 지원활동을 포함하며, 출생등록에 기반인 되는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및 출생등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활동이 해당한다.

3. 분석 결과

재분류 대상⁴⁹⁾은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총 5개 분기에 해당한 사업들이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 2017년 290개 전체 사업 중 정의서에 근거하여 SDG16 관련 사업: 76개 사업
- 2018년 284개 전체 사업 중 SDG16 관련 사업: 88개 사업(신규 20개 사업, 중복사업 49⁵⁰⁾개)
- 2개년도 5개 분기 총 115개 사업 카테고리 재분류 실시

[표 43] KOICA SDG16 관련 운영사업 수

| 구분 | 카테고리 | 2017 | 2018 | 계 (중복제외) |
|----------------------|------|------|------|----------|
| 평화 (Peace) | 1 | 2 | 2 | 2 |
| | 2 | 2 | 2 | 2 |
| | 3 | 0 | 0 | 0 |
| | 4 | 3 | 4 | 3 |
| | 5 | 4 | 5 | 6 |
| | 소계 | 11 | 13 | 13 |
| 인권 (Human Rights) | 1 | 0 | 0 | 0 |
| | 2 | 8 | 15 | 17 |
| | 소계 | 8 | 15 | 17 |

49) 연수생초청사업, 봉사단파견 등 제외,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 재분류 대상에 해당함.

50) 18년도 사업자료 중 ‘네팔 UNESCO 포괄적 성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소녀 및 여성 역량강화사업(’16-’20/515만불)과 17년도 사업자료 중 ‘네팔 UNESCO 포괄적인 성교육 및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청소년 역량강화사업(’16-’20/515만불)은 중복사업으로 집계

| 구분 | 카테고리 | 2017 | 2018 | 계 (중복제외) |
|-------------------------------------|------|------|------|----------|
| 민주적 거버넌스 (Democratic Governance) | 1 | 4 | 3 | 3 |
| | 2 | 2 | 2 | 1 |
| | 3 | 29 | 35 | 50 |
| | 4 | 2 | 2 | 4 |
| | 5 | 0 | 1 | 1 |
| | 6 | 14 | 6 | 16 |
| | 7 | 3 | 5 | 5 |
| | 8 | 0 | 1 | 1 |
| | 9 | 2 | 4 | 3 |
| | 10 | 1 | 1 | 1 |
| 소계 | | 57 | 60 | 85 |
| 합계 | | 76 | 88 | 115 |

[표 44] 카테고리 별 분류된 사업 목록

| 구분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목적 분류 참고 워딩 |
|----|------|--|------------------------------------|
| P1 | 프로젝트 | (분쟁취약) UNICEF 카메룬 북부 분쟁지역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사업 ('2017-2019/200만불) | 분쟁지역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 |
| | 프로젝트 |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 및 여아 예방 보호 모델 구축사업('16-'20/250만불) |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
| P2 | 프로젝트 |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사업 ('14-'18/300만불) | 라오스 불발탄 제거 역량 강화 및 UXO 피해자 삶의 질 향상 |
| | 프로젝트 | 베트남 지뢰 및 불발탄 통합대응 역량강화사업 ('16-'20/2,000만불) | 지뢰 및 불발탄 제거를 통한 베트남 국민의 안전 보장 |
| P3 | | - | |
| P4 | 프로젝트 |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16-'20/660만불) | 필리핀의 안정된 치안환경 조성 |
| | 프로젝트 |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사업('14-'18/420만불) | 시스템 도입을 통한 치안강화 및 범죄율 감소 |
| | 프로젝트 |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15-'17/320만불) | 중앙기관의 과학적 증거 분석 역량 강화 |
| P5 | 프로젝트 | (분쟁취약) UNDP 아이티 재해 국내실향민 경제 역량 강화(2017-2019/255만불) | 회복가능성(resilience) 증진 |
| | 프로젝트 | (분쟁취약) UNDP 수단 다르푸르 평화와 재건을 위한 청년지원활동 사업 (2017-2019/200만불) | 평화, 사회통합, 경제적 회복 |
| | 프로젝트 | (분쟁취약) 남수단 나일강 차수벽 배수펌프 지원 사업 (2015-2017/100만불) | 인도적 지원 |

| 구분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목적 분류 | 참고 워딩 |
|----|--------|--|-------------------------------------|-------|
| | 프로젝트 | 콜롬비아 UNHCR 내전 피해 국내난민 정착지원 및 지속 가능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한 평화 구축 사업('18-'20/500만불) | IDP | |
| | 프로젝트 | 아제르바이잔 IOM 물공급시스템(카흐리즈) 구축 지원사업('18-'21/450만불) | 국내난민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 소득 증대 | |
| | 프로젝트 | (분쟁취약) 시에라리온 POST-EBOLA 복구 식수 시설 2차 지원 사업 (2017-2018/100만불) | 예방 복원력 향상 | |
| H1 | 프로젝트 | - | | |
| | 프로젝트 | 필리핀 UNESCO 타클로반 지역 학교밖 소녀를 위한 교육사업('17-'20/610만불) |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센터 | |
| | 프로젝트 | 가나 UNICEF 여성청소년 권리과 교육 및 보건 증진 사업('17-'20/550만불) | 여성청소년이 직면한 위험과 취약성을 해소 | |
| | 프로젝트 | 베트남 중부고원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 사업('13-'17/500만불) | 소수민족의 취업격차 해소 지원 | |
| | 프로젝트 | 에티오피아 오로마이아주 라디오방송을 통한 초등 교육역량강화사업('13-'19/670만불) | 교육 접근성 및 교육의 질 제고 | |
| | 프로젝트 | 팔레스타인 제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13-'18/360만불) |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활동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
| | 프로젝트 | 에티오피아 통합보건 역량강화사업 ('15-'19/600만불)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 |
| | 프로젝트 | 필리핀 동부사말 기안 필리페 아브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재건사업('15-'19/480만불) | 최대 빈곤지역 지역거점 병원 재건 | |
| | 프로젝트 | 필리핀 비사야스 주립대 툴로사 캠퍼스 재건사업 ('14-'18/400만불)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내 교육 접근성 확대 | |
| | 프로젝트 | 베트남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개발전략 수립사업('18-'20/300만불) | 저소득층 가구와 산업단지 근로자의 적정한 주거 접근선 증대 지원 | |
| | 개발 컨설팅 | 볼리비아 UNICEF 코치밤바, 판도주 원주민 지역 사회 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성인지적 대응 사업('18-'20/200만불) | 통합적 교육 및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
| | 프로젝트 | 파키스탄 UNESCO 소녀들의 기초교육권리 확충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사업('18-'21/350만불) | 소녀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권 제고 | |
| | 프로젝트 |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자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 환경개선 3차 사업('18-'22/400만불) | 여성보건문화개선을 통한 미성년 임신 예방 및 여성부 역량강화 | |
| | 프로젝트 | 세네갈 영유아교육 강화사업('18-'21/460만불) |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 | |
| | 프로젝트 | 요르단 시리아 난민 밀집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3개 학교 건립사업('17-'20/1,110만불) | 시리아 난민 및 요르단 취약계층 아동에 정규교육 서비스 제공 | |
| | 프로젝트 | 케냐 카자이도주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 강화 사업('16-'18/423만불) | 케냐 이강카 카풀리지역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도 개선 | |

| 구분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목적 분류 참고 워딩 |
|------|---|---|------------------------------------|
| 프로젝트 | 우간다 이강가 카물리 지역아웃리치를 통한 모자보건 개선 사업('16-'18/382만불) | 우간다 이강카 카물리지역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도 개선 | |
| | 스리랑카 킬리노치 교사,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18-'22/750만불) | 내전으로 인해 취약한 킬리노치 지역 교육환경 개선 | |
| D1 | 프로젝트 |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17-'19/400만불) | 대국민 접근성과 기본권 향상 |
| | 프로젝트 |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13-'17/954만불) | 베트남 사법부(법관)의 역량강화 및 사법제도 개선 |
| | 프로젝트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5-'18/365만불) | 법제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 D2 | 프로젝트 | (분쟁취약) UNDP 동티모르 거버넌스 강화 지원사업(2017-2019/200만불) |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역량강화 |
| D3 | 프로젝트 | 라오스 출입국 관리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017-2020/860만불) | 출입국 업무 효율화, 국가 안전 보장 |
| |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18-'21/510만불) | 사이버범죄수사 관련 역량강화 |
| | 프로젝트 | 니카라과 새마을기반 정책개발역량강화사업 ('17-'19/180만불) | 정책 개발 교육 과정 컨설팅 |
| | 프로젝트 | (분쟁취약) WHO 키리바시 및 투발루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복원력 있는 보건시스템 구축 사업 (2017-2019/200만불) | 지역사회의 참여 및 행동 촉진/ 보건 부의 관리역량 강화 지원 |
| | 프로젝트 | 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강화사업 ('16-'20/759만불) | 소방방재청(FSCD) 재난대응 역량 강화 |
| | 프로젝트 |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정보 전산화 사업('12-'17/270만불) | 효율적인 교통관리 체계 구축 |
| | 프로젝트 | 방글라데시 사이버범죄수사 역량강화사업 ('12-'17/300만불) | 경찰행정 업무개선 |
| |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IT 행정 역량강화사업 ('13-'17/370만불) |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정책, 관리, 기술적 과제를 제시 |
| | 프로젝트 | 온두라스 치안역량강화사업('13-'18/550만불) | 국립경찰청의 행정역량현대화/ 효율성 효과성 제고 |
| | 프로젝트 | 네팔 정보재난복구센터 구축사업 ('13-'18/460만불) | 공공 데이터 손실 및 업무 중단 피해 최소화 |
| 프로젝트 | 이라크 KRG 쿠르드 공무원교육원(KIPA) 역량 강화지원사업('13-'18/600만불) |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 |
| | 우즈베키스탄 전염성 질병관리 역량강화사업 ('13-'18/600만불) | 국가 질병관리 시스템 강화 | |
| 프로젝트 | 필리핀 통합의료정보체계 구축사업 ('14-'18/510만불) | 의료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통한 보건정책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 | |

| 구분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목적 분류 참고 워딩 |
|--------|------|--|------------------------------------|
| 프로젝트 | 프로젝트 | 아제르바이잔 교사역량강화 및 교육정보화 지원사업('14-'18/600만불) | 온라인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
| | 프로젝트 |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사브즈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14-'18/850만불) | 법적/제도적 컨설팅 |
| | 프로젝트 | 르완다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사업('14-'18/400만불) | 공무원 역량강화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 |
| | 프로젝트 | 팔레스타인 공무원교육원 설립사업 ('14-'19/700만불) | 공무원 교육원 설립을 통한 정부 공공 행정 역량 강화기반 마련 |
| | 프로젝트 | 과테말라 치안강화를 위한 경찰교육시스템 개선사업('14-'18/398만불) | 중장기적 치안역량 강화 |
| | 프로젝트 | 에티오피아 재해경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사업('14-'18/400만불) | 재해 대응 체계 기상관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 | 프로젝트 | 키르기즈공화국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15-'18/400만불) | 지속가능한 토지정보종합관리 표준 시스템 구축 |
| | 프로젝트 | 볼리비아 국가표준체계 국제 경쟁력 향상사업 ('15-'17/400만불) | 운영시스템 강화, 표준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 | 프로젝트 |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 ('15-'18/520만불) | 홍수조기경보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 |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치타룸강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발 사업('14-'17/500만불) |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
| | 프로젝트 | 네팔 누와꽃군 지진피해보건분야 재건복구지원 사업('15-'18/840만불) | 보건의료체계 재건 및 복구 |
| | 프로젝트 |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16-'18/900만불) |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가산정체계 기반 마련 |
| | 프로젝트 | 방글라데시 마약통제 행정역량강화사업 ('16-'19/400만불) | 마약통제 행정역량을 강화 |
| | 프로젝트 |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사업 ('13-'19/856만불) | 전자정부 역량강화 지원 |
| | 프로젝트 | 페루 해양기후 관측역량 강화사업 ('16-'19/700만불) | 자연재해 취약지역 피해저감 |
| 개발 컨설팅 | 프로젝트 | 이라크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3-'16/300만불) |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 개발 컨설팅 | 프로젝트 | 라오스 사바나켓주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지리 공간정보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 ('18-'20/600만불) | 행정역량강화 지원 |
| | 프로젝트 | 이라크 쿠르드지방정부 공공조달 현대화 사업 ('18-'21/600만불) | 공공조달 현대화 |

| 구분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목적 분류 참고 워딩 |
|----|--------|---|--------------------------------------|
| | 프로젝트 | 팔레스타인 외교부 행정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네트워크 구축사업('18-'20/220만불)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 | 프로젝트 |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18-'20/560만불) | 조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 | 개발 컨설팅 |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 ('14-'19/2,000만불) | 공무원 및 연구 인력 강화 |
| | 개발 컨설팅 | 케냐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14-'18/400만불) | 국가산업훈련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
| | 개발 컨설팅 |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14-'18/320만불) |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
| | 개발 컨설팅 | 몽골 중기 재정계획 수립 역량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사업('14-'18/400만불) | 시스템 구축 지원 |
| | 개발 컨설팅 | 페루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광해관리 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15-'18/260만불) | 광해관리 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 |
| | 개발 컨설팅 | 페루 국가문화유산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15-'18/800만불) | 정보화시스템 기술 이전 |
| | 개발 컨설팅 |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 역량강화 사업 ('15-'18/150만불) |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 |
| | 개발 컨설팅 | 콜롬비아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기술역량 강화사업('13-'18/500만불) | 대기관리 시스템 현대화 |
| | 개발 컨설팅 | 우즈베키스탄 공공부문 인적자원 역량개발사업 ('17-'19/300만불) | 교육훈련제도에 대해 정책컨설팅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구축 |
| | 프로젝트 | 베트남 꽝찌성 새마을운동 사업 (꽝찌성 행복프로그램) ('14-'18/967만불) | 지방정부 거버넌스 강화 |
| | 프로젝트 | 베트남 라오까이성 새마을운동 사업 ('14-'18/1,400만불) | 지방정부 거버넌스 강화 |
| | 프로젝트 | 캄보디아 국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 ('15-'20/800만불) | 캄보디아 국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회적 투명성 증가 |
| | 프로젝트 | DR콩고 루붐바시 실험실 감염병 감시 및 진단 역량강화사업('17-'19/200만불) | 국가 감염병관리 역량강화 |
| | 프로젝트 | 베트남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정보 시스템 구축사업('18-'21/550만불) | 베트남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
| | 프로젝트 | 파라과이 취약계층 노인 보건의료복지센터 정책수립 지원사업('16-'20/1,000만불) |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개선 |
| | 프로젝트 | 탄자니아 보건분야 공동재정지원 ('16-'18/690만불) |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 |
| | 프로젝트 | 캄보디아 건강형평성 및 질 향상 프로그램 ('17-'19/700만불) |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

| 구분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목적 분류 참고 워딩 |
|----|--------|--|--|
| D4 | 프로젝트 | 튀니지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15-'18/500만불) | 정부의 투명성 강화 |
| | 개발 컨설팅 | 튀니지 UNDP 민주적 거버넌스 및 공공책임성 강화사업('16-'19/400만불) | 튀니지 내 민주주의 공고화 |
| | 프로젝트 | 에콰도르 개표결과 전송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 ('16~'17/133만불) | 선거개표결과의 신속한 전송 및 공표 지원 |
| | 프로젝트 | (분쟁취약) DR콩고 뉴딜 이행 촉진을 위한 인사 제도 정비 및 거버넌스 강화사업(2017-2019/200만불) | 뉴딜 이행 촉진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학계의 역량 강화 |
| D5 | 프로젝트 | 우즈베키스탄 표준청 국제동등성 확보 지원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14-'19/700만불) | 업무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제적 동등성 확보 |
| D6 | 프로젝트 |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및 보건 환경 개선사업 ('17-'20/600만불) | 전력망구축을 통한 전력불평등 해소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
| | 프로젝트 | 과테말라 웨웨메낭고주 식수공급 확대사업 ('11-'17/163만불) | 빈민층 대상 모자보건 강화 및 질병 감소를 위한 의료모델 구축 |
| | 프로젝트 | 페루 찬차마요 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 ('13-'18/275만불) | 빈민층 대상 모자보건 강화 및 질병 감소를 위한 의료모델 구축 |
| | 프로젝트 | 페루 파차쿠텍 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 ('13-'18/334만불) | 빈민층 대상 모자보건 및 질병 감소 |
| | 프로젝트 | 볼리비아 엘알또 한국병원 3차 지원사업 ('13-'18/840만불) | 보건 접근성이 취약한 엘알또시 보건의료체계 강화 |
| | 프로젝트 |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교 개선사업 ('14-'19/300만불) | 지역 및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
| | 프로젝트 | 필리핀 WHO 다바오 지역보건체계 강화 모자 보건 사업('15-'18/300만불) | 보건의료체계 강화, 보건의료 형평성 및 접근성 제고 |
| | 프로젝트 | 앙골라 교사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문해교육 2차사업('16-'18/260만불) |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기여 |
| | 프로젝트 |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16-'23/1,000만불) | 농촌 및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술 개발 |
| | 프로젝트 | (분쟁취약) 스리랑카 누워라엘리야 기후변화 및 분쟁복원력 강화사업(2016-2018/200만불) | 취약계층인 누워라엘리야 지역 기초 서비스 접근성 확대 |
| D7 | 프로젝트 | 필리핀 UNICEF 만다나오지역 생애초기 1000 일간 영양개선사업('18-'20/600만불) | 정부 영양관리 역량강화 |
| | 프로젝트 | 피지 멜라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역량강화사업 ('18-'20/600만불) |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인정적인 전력 공급 |
| | 프로젝트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 상수급수 연결 2차사업 ('18-'20/590만불) | 빈민 가정의 보건위생 환경 개선 |
| D8 | 프로젝트 | 볼리비아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 지원사업 ('13-'18/500만불) |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빈곤 감소에 기여 |

| 구분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목적 분류 참고 워딩 |
|-----|------|---|---|
| | 프로젝트 | 볼리비아 고원지역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17-'22/900만불) | 건강불평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 | 프로젝트 | 모로코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 ('14-'18/645만불) | 상공투자디지털경제부의 통계조사 효율성 제고 및 통계정보 품질 향상 |
| D7 | 프로젝트 | (분쟁취약) 시리아 전쟁 피해 여성을 위한 보건 및 생활 개선 프로그램(2017-2019/200만불) | 성평등 향상, 여성과 소녀들의 권한 부여 |
| | 프로젝트 | 밀리 UNESCO 교육을 통한 여성청소년 역량강화 ('16-'20/515만불) | 여성청소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 통한 역량 강화 |
| | 프로젝트 | 네팔 UNESCO 포괄적 성교육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소녀 및 여성 역량강화사업 ('16-'20/515만불) | 공교육 내 성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
| | 프로젝트 | 탄자니아 UNESCO 교육을 통한 탄자니아 여성 청소년 역량강화('16-'20/515만불) | 양성평등 제고 및 통합적 양질의 교육 제공 |
| | 프로젝트 |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여성역량강화 및 소득 증진 사업('18-'20/450만불) |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자립도모 |
| D8 | 프로젝트 | 르완다 세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 EBM 시스템 고도화 및 역량강화사업('18-'20/600만불) | 조세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한 세수확보 효율성 증대 |
| D9 | 프로젝트 | 에티오피아 싱글윈도우사업(2단계) ('17-'19/749만불) | 무역절차 간소화 및 물류 비용 절감 |
| | 프로젝트 | 페루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한 전자무역업무 개선 사업('14-'18/500만불) | 온라인상거래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 | 프로젝트 | 탄자니아 무역증진을 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18-'20/690만불) | 무역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 |
| D10 | 프로젝트 | 키르기즈공화국 전자주민카드(e-NID) 도입 사업 ('16-'18/746만불) | 전자주민카드(e-NID) 발급시스템 구축 |

위의 표는 KOICA의 2017, 18년도 전체 사업의 사업명,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목적에서 정의서가 정의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SDG16 관련 사업이라고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의서의 카테고리 별로 묶어 재구성한 것이다. 정성적 판단의 근거를 위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기입한 사업의 내용과 목적 중에서 특정 단어/용어가 정의서가 구분하는 카테고리에 적합하여 이와 같이 분류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업목적 분류 참고 워딩 셀을 우측에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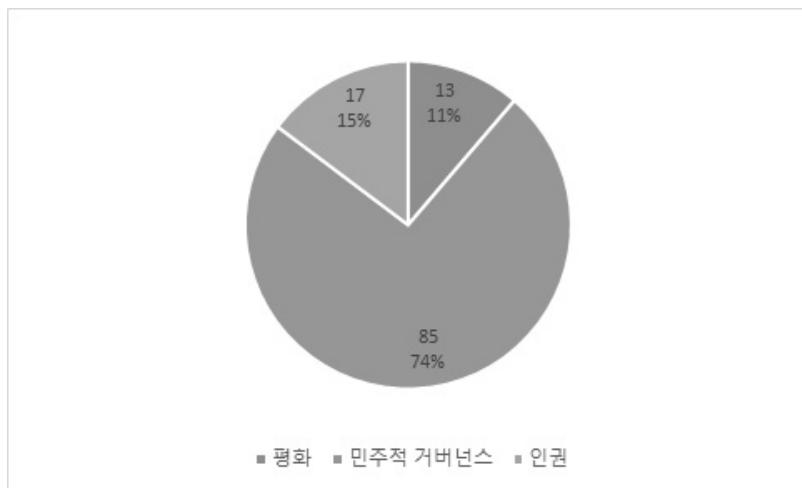
KOICA의 전체 사업 중 SDG16 관련 사업을 다음과 같이 평화 1-5, 인권 1-2, 민주주의 1-10까지의 17개 소분류, 크게는 3대 분류로 재분류함에 있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과제로는 중복성이다. 평화 없이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없고, 민주적 거버넌스 없이 인권이 없듯, 대분류인

PHD 세 주제 자체가 아우르는 범위의 중첩이 없을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했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기준, 해외 공여기관 사례, 그리고 KOICA 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PHD 주제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내렸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대상별 접근을 실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인권 기준을 고려한 권리기반 접근(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노동권 포함), 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 권리(노동권 포함) 및 사회문화적 권리는 ‘인권’ 카테고리로, 아울러 인권 중에서도 정치적 권리와 일반적인 공공행정의 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민주적 거버넌스’ 카테고리로 최종 구분하였다.

중복 없이 1회만 집계하기 위하여 정의서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업 분류의 모호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사업의 분류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권 기반접근과는 다르게 주제별 연구이므로 대상보다는 주제를 상위의 개념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 사업의 경우, 대상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민주적 거버넌스(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빈곤 감소 및 퇴치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사업의 주제가 보건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므로 보건과 관련된 목표와 관련된 카테고리인 인권2(비차별적인 접근성보장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에 분류하였다. 다음 원칙으로는 사업내용과 사업 목적 중에서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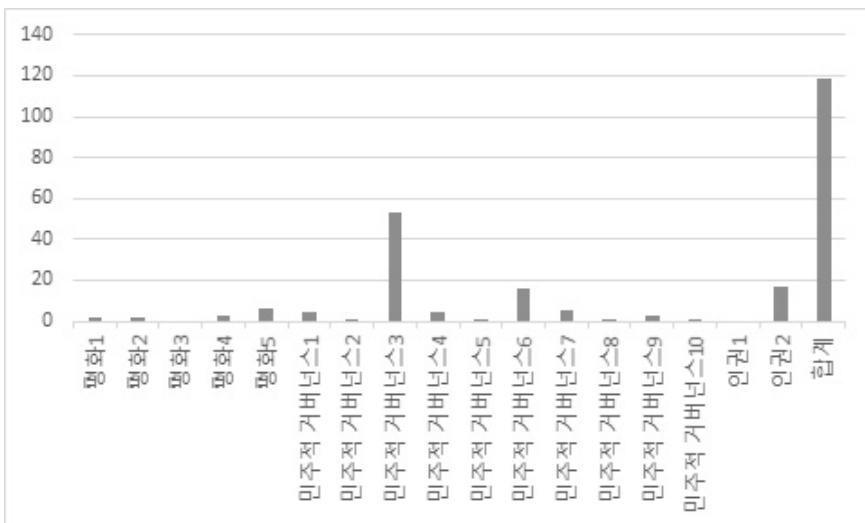
위와 같은 원칙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재분류된 KOICA의 SDG16 사업은 민주적거버넌스 사업 위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8] PHD별 사업비중



SDG16 사업 총 115개 사업 중 85개 사업이 민주적 거버넌스 사업에 포함되었다. 이는 74%에 해당한다. 나머지 평화와 인권 사업은 각각 13개 사업, 17개 사업이 해당되었다.

[그림 19] 카테고리별 사업 분류



더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적 거버넌스 중에서도 민주적 거버넌스3(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책무성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 분야 관리 시스템 및 역량 강화를 통해 효과성, 책무성, 투명성 있는 제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 활동을 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카테고리에 많은 사업이 해당하는 이유로는 KOICA의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중 공공행정 분야로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효과성, 책임성, 포용성을 갖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표명한 뒤 단기간 내에 수행한 사업의 대부분이 공무원 역량 강화(69개), 전자정부 구축(6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적 거버넌스3(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책무성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이 포함된 민주적 거버넌스 6(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빈곤 감소 및 퇴치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빈곤 감소 및 퇴치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위한 사업이다. 위 카테고리에는 불평등 해소, 취약성 해소 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세 번째로 많은 사업이 포함된 인권2(비차별적인 접근성보장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는 비차별적인 접근성 보장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로 여성 및 취약계층의 인권, 시민권, 사회적 보장을 위한 KOICA의 전략목표가 해당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평화3(평화유지활동을 통한 폭력 및 분쟁의 효과적 예방 역량 강화), 인권1(동일한 임금 및 고용환경을 구축하여 경제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3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폭력 및 분쟁의 효과적 예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세부범위로는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 예방 혹은 UN 평화유지군 활동이 있다.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을 시민주도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평화구축에 대한 전문성과 성숙한 시민사회 지원 역량 등이 필요하여 단기적으로 수행 사업을 형성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며 UN 평화유지군의 경우 국방부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 ODA/KOICA 사업으로 산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1(동일한 임금 및 고용환경을 구축하여 경제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은 동일한 임금 및 고용환경을 구축하여 경제적 인권 및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카테고리이며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로는 경제권, 노동권 관련 인권 감시 및 교육사업 또는 경제권, 노동권 관련 성평등 및 여권 신장 활동 기관 등이 있다.

연수생초청사업⁵¹⁾은 별도로 2017년 전체 237개 사업 중 SDG16 관련 사업으로 165개 사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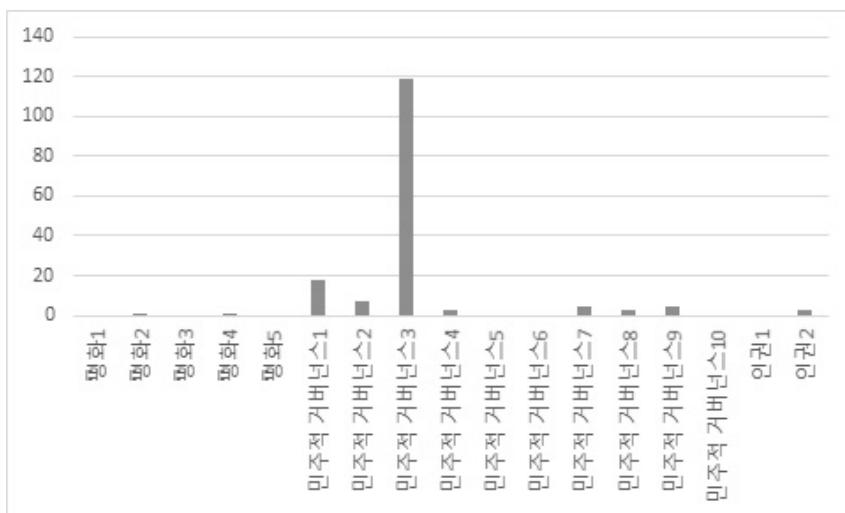
51) 앞서 실시한 분류 대상 사업에는 연수생 초청사업 미포함. 2018년도 연수사업 자료 없음.

있었으며 이 중 160개(97%)가 민주적 거버넌스 사업으로 분류되어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함을 파악하였다. 특히 민주적 거버넌스 사업 중에서도 기분석한 전체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거버넌스3(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책무성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에 가장 많은 사업이 해당되었다.

[그림 20] SDG16 연수사업(별도)의 PHD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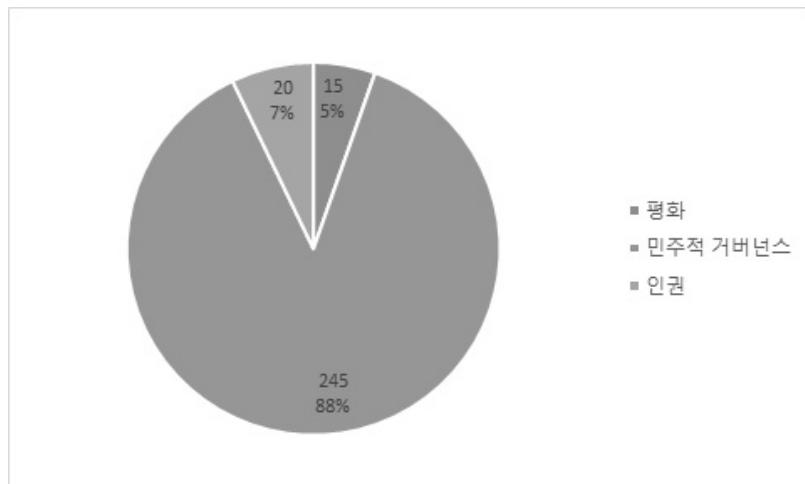
[그림 21] SDG16 연수사업(별도)의 카테고리별 분류



연수생 초청사업의 경우 그 특성이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사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공무원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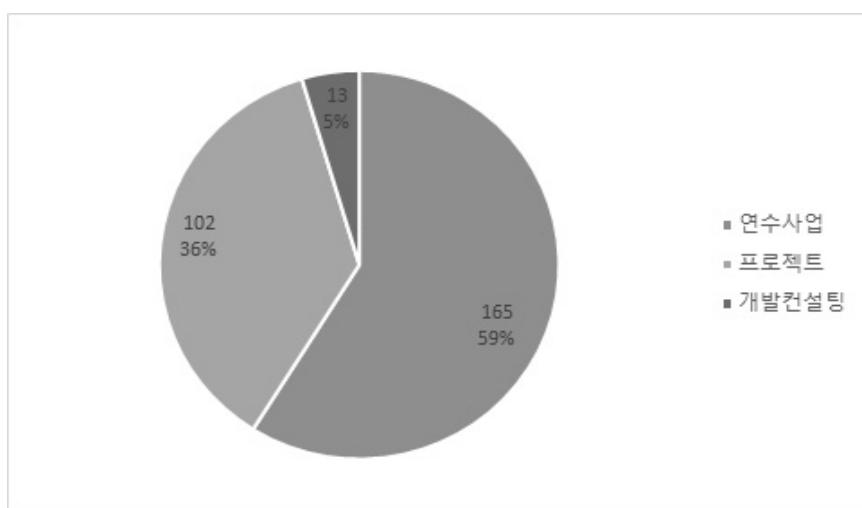
본 민주적 거버넌스 콜럼 현상, 특히 민주적 거버넌스 3(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책임성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이 많은 경향은 연수를 포함하였을 때 더욱 심해진다.

[그림 22] 연수사업 포함 전체 SDG16 사업의 PHD별 비중



KOICA의 SDG16 사업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연수사업이 가장 많으며(165개 사업 /59%), 프로젝트가 다음으로 많으며(102개 사업/36%), 개발컨설팅 사업(13개 사업/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SDG16 사업 유형별 분류 (연수포함)



KOICA의 PHD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전자정부결합형 사업이 대부분이고, 둘째,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추진이 여의치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분야가 많으며, 셋째, 사업영역은 해당 범주 내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사업개발 당시 SDG16 패러다임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의 PHD 컨셉을 가지고 개발되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상 본 절에서는 SDG16 사업의 대상을 분류·정의하고, KOICA의 최근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해당 영역의 사업 수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어지는 3절에서는 KOICA의 SDG16 대상화 이행강화 방안으로 세 가지 전략과 대상화 영역별 장단기 사업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KOICA의 SDG16 주류화 이행강화 방안을 제도개선, 인지제고, 시행 절차 주류화의 세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3절 KOICA의 SDG16 대상화 이행강화 방안

1. SDG16 대상화 전략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평화(P), 인권(H),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D)의 3대 축(Pillar)으로 구성된 SDG16은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자 해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16 관련한 KOICA의 사업은 다소 과편화·분절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SDG16 대상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선 단계별 대상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영역별 사업에서 다중적 융합형 사업으로

KOICA는 SDG16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즉시 시행 가능한 영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제도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각 분야에서 적절한 방식의 사업을 우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소 분절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인 SDG16 대상화 전략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일 것이다.

평화의 경우 분쟁지역 재건 및 회복력 강화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분쟁지역 내 난민 지원 사업, 불발탄 및 지뢰제거 사업,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치안 강화 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의 경우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주로 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대상중심의 인권중진 사업을 우선 개발할 수 있다. 난민정착지원 사업, 젠더기반 성폭력 예상사업, 취약 청소년 대상 사회편입 지원 사업 등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분야의 경우 민주성, 참여성, 반부패, 투명성 및 법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데, 시민참여 사업,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 취약국의 체제구축 법제도 구축사업 등이 가능하다. ([표 45])

[표 45] 단기적 PHD 대상화 사업

| | 평화 | 인권 | 민주주의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지역 재건 및 회복력 강화 치안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성, 참여성, 반부패, 투명성 및 법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사업 |
| 주요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지역내 난민 지원 사업 불발탄 및 지뢰제거 사업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치안 강화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정착지원 사업 젠더기반 성폭력 예상사업 취약 청소년 대상 사회편입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참여 사업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 취약국의 체제구축 법제도 구축사업 |

앞서 살펴본 KOICA의 지원 통계에서 시사하듯 중점협력국 중심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행정효율화 및 전자정부 프로그램은 SDG16, 특히 민주주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와 같은 아이템을 중심으로 적절한 브랜딩을 통해 SDG16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소외지역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정부 시스템 등과 같이 인권의 패러다임을 ICT 공공행정과 다중적으로 융합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킨 다중적 융합형 사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화는 SDG16의 핵심가치의 하나이자 범분야 가치이면서 동시에 SDG 이행의 전제조건이자 결과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평화의 가치는 담론, 정책, 전략, 접근법 및 사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실현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평화를 전통적으로 폭력적 갈등과 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의미에서 정의(인권)가 실현된

상태로 폭력적 갈등과 분쟁의 구조적 원인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도시 치안에서 국제 분쟁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특수성에 기초한 이해와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외와 차별, 분쟁을 경험한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며 오랜 독재를 거쳐 민주주의의 체제 전환을 하는 국가에 대한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인권적 요소(소수민족), 평화적 요소(분쟁해결), 민주적 거버넌스(주민등록 행정 전산화) 등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다중적 융합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메콩지역 국가 조기 홍수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평화적 요소(안전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ICT 모바일 활용)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PHD 사업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따르게 알릴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면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다. 2018년 8월에 라오스 홍수 사태에서도, 피해가 더 커진 이유 중 하나로 엄청난 양의 강물이 마을을 덮치는 그 순간까지 주민들은 사전에 어떠한 안내나 알람도 못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폭염경보, 호우경보시 전 국민에게 보내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PHD와 섹터, 지역적 특수성 등이 결합된 다중성의 넥서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는 사업 추진 역량이 중요하며, 이는 인지제고 수준을 넘어 특히 KOICA 담당직원과 사업수행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이와 같은 다중성을 고려하면서, 정치적 이슈가 집중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분야나 대상에서 권리와 목적으로

KOICA는 난민(평화), 장애인(인권), 시민(민주주의)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시그니처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형 지원을 우선 확대한다. 예를 들면 도시 거주 난민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초 인프라를 포함한 자활교육, 직업교육 등을 시행하고 정부 및 지역 이해관계자에 대한 역량강화도 지원하고, 여성 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권리 확보를 위한 사회-제도적 여건을 확립하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표에 따라 대상보다는 목적 지향적으로 패러다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분류표 평화 5번의 이주민 대상 사업의 경우 대상과 성격은 이주민(난민)과 이들의 인권이지만 목적은 평화 구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 지향성은 글로벌 개발협력의 뚜렷한 트렌드이며, CPS 단계에서부터 ‘교육’ 섹터 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의 탈 섹터화가 진행되고 있어, PHD의 분류 기준도 목적을 중심으로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적 접근에 있어 ‘대상’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이를 강조하되 중장기적으로 목적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수준을 고도화 시키는 전략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PHD 지원은 분야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권리에 기반한 관점과 빈곤의 다면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과 실행 전략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없이는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있을 수 없으며, 인권 존중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UN의 오랜 명제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 안정국에서 취약국으로

우선 안정적인 정치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 협력국과의 사업을 부패방지, 행정효율화, 정보화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다. 안정국의 경우 정치적 리스크도 덜하고, 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하기 때문에 PHD 사업이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파트너이다.

나아가 취약국을 대상으로 한 법·제도 구축사업, 취약계층권리보호, 치안역량강화 등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2차 OECD 동료검토 제안에 따라 2017년에 취약국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SDG16 추진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철학은 취약국의 취약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분류한 SDGs 접근 방식에 있어 취약국의 경우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국가의 복원력이 약한 국가가 많아 취약성-빈곤-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설정한 전략에서 만성적 취약국(재난국가 제외) [표 46]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영역 및 원칙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대부분 앞서 본 연구가 제시한 PHD 분류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취약국에 대한 효과적 지원 수단도 제시한 바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와의 맞춤형 협력, 삼각협력, NGO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협력 등은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표 46] 우리정부의 취약국 지원 중점 분야

| 영역 | 취약국 대상 주요 사업 |
|------|--|
| 평화 | 무장해제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및 직업 훈련 실시 |
| | 평화 기반 구축시 여성 참여 증진 |
| | UN 평화 활동과 연계한 분쟁예방 및 갈등 치유 |
| | 분쟁 종식 및 긴급 구호 이후 단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기초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지원 |
| 인권 |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강화 |
| |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권한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피해 취약 계층의 회복 및 생계 기반 구축 사업 설계 지원 |
| 민주주의 | 정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패척결 |
| | 법치 강화 지원 |
| | 세수 확대를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 |
| | 행정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
| |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취약국 지원 전략. pp. 6-9

마지막으로 SDG16 대상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가치와 철학, 우리 국민, 협력국 이해 관계자, 국제사회 간의 넥서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무드에 기초한 평화 중심 ODA가 자리를 잡으려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컨센서스와 그에 입각한 적절한 방식의 사업 개발 및 수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대 구축을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우선 인지제고 활동으로부터 시작함이 바람직하다. 캠페인 및 국제행사 개최(예: 평화와 SDGs 주간, ODA Conference), SDG16 관련 후속연구 및 교육 콘텐츠 개발(예: 평화 ODA와 SDGs 및 갈등 민감 접근 방법), 연수 및 교육 등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SDG16 대상화 영역별 장단기 사업 전략

앞서 제시한 전략에 기초하여 PHD 각각의 사업 분류에 따라 KOICA가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영역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영역을 구분하였으며 다자 기구와 파트너링이 필요한 경우 주요 기구(비정부기구 포함)를 주요 파트너로 예시하였다.

단기 및 중장기 구분의 기준은 현재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KOICA의 사업 개발 및 시행역량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경우 단기 사업 영역으로, 인식개선이나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는 사업 영역의 경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의 수행역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단기로, 인지제고나 시민사회 지원 등과 같은 제반 여건과 관련되는 사업을 중장기 사업영역으로 하였다. 예를들면 이미 활발한 한국의 UN 평화유지군 활동은 단기과제로,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 예방의 경우 중장기과제로 분류하였다(평화3 참조).

KOICA의 사업 추진 주체는 위의 전략을 참고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영역의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7] KOICA의 시기별 평화 분야 사업 가능 영역

| 분류 및 목표 | 단기 | 중장기 | 주요 파트너 |
|--|--|---|---|
| 평화1 모든 형태의 폭력(violence)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대상 폭력 근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활동에는 취약계층(여성 및 소녀, 아동, 인권옹호자, 토착민, 이민자, 국내실향민, 피난민, 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태도, 규범 및 행동 변화; 법률 제정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여성 및 소녀, 아동 대상 폭력 종식을 위한 법-제도 도입 강화 ◆ 소년병 (예방 및 동원 해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병 동원 방지 및 소년병의 해산, 무장 해제, 사회재합류, 본국 송환, 재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원조와 정부 대상 기술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의 사회재합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기술협력 (국제평화유지 활동 또는 소년병과 관련 있는 활동은 별개) ◆ 인권 감시 및 교육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및 고문 피해자) (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은 별개) | UNICEF UNHCR UNWOMEN UNDP |
| 평화2 불법 거래 흐름 척결을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예방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뢰제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뢰와 전쟁 후 잔여 폭발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 (지뢰, 잔여 폭발물 제거, 개발을 위한 대량 비축 무기 파괴 포함) (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지뢰제거 관련 활동은 별개); - 지뢰 위험 관련 교육과 인식 증진; 지뢰 피해자들의 사회복귀, 재합류 및 지원; 지뢰제거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지원 (활동 목적이 민간인을 위한 것이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무기 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 생산시설의 민간 생산시설 전환, 소형무기(SALW)의 확산을 억제, 방지, 축소하기 위한 기술 협력이 해당.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관련 있는 활동은 별개) ◆ 국제 불법 거래 및 조직적 부패 범죄 방지기구 및 제도 수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세탁 및 기타 조직적 부패 범죄 와의 전쟁 및 방지를 위한 전문 조직, 기관 및 제도 수립 (예. 반부패위원회, 조직 범죄 및 불법 거래 모니터링 기구, 특별 수사 지원 등) | APOPO Transparency International NATO |

| 분류 및 목표 | 단기 | 중장기 | 주요 파트너 |
|---|---|---|--------|
| 평화3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의 효과적 예방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평화유지군 활동(P) - ODA에 적격한 평화유지 활동의 양자 참여 형태: 장비 또는 군병력, 관련 분야 인력(경찰)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 국제평화유지활동이 인도주의적 원조사업(인력 또는 장비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 차원으로도 지원 가능 - 평화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 - UN 안전보장의사회 결의, 타 국제기구 (UN, NATO, EU), 개발도상국의 지역 협의체 의해 요청된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 예방(P) - 평화유지, 분쟁 방지과 해결과 관련된 민간 활동에 대한 지원 (역량강화, 모니터링, 토론, 정보 교환 포함) | UNPK |
| 평화4 치안 및 안전 강화를 통한 폭력(violence) 및 갈등(conflict) 예방 환경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P) - 민주주의와 법치 확립을 위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기술 협력 - 국방예산을 포함한 관련예산에 대한 투명한 회계시스템 및 민주적인 관리와 민간 감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P) - 국가안전보장체제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 ICPO |
| 평화5 이주민(국내 실향민 및 난민)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을 통한 사회 재통합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식량원조(인도적지원)(P) - 개도국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에게 제공하는 무상 배급을 위한 식량원조 또는 특별 보완 급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호 조정/보호 및 안전 확보 (인도적지원)(P) -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물류 및 의사소통 시스템 포함), 민간인과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안전, 행복, 존엄을 보호 및 증진(무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구호(인도적지원)(P) - 응급상황 기간 동안의 활동, 긴급상황이나 분쟁 이후 기존 인프리를 복구하기 위한 단기 재건 활동(도로, 다리, 항구등의 복구, 물과 위생, 피난처, 보건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시설들의 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구호(인도적지원)(P) - 긴급상황으로 인한 새로운 생계 수단 개발 - 과거 생계수단으로의 복귀를 돋는 사회 경제적 복원 지원활동(트라우마 상담과 치료, 고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지원(공여국 내)(P) | UNHCR |

[표 48] KOICA의 시기별 인권 분야 사업 가능 영역

| 분류 및 목표 | 단기 | 중장기 | 주요 파트너 |
|---|---|---|---------------------------------|
| 인권1 동일한 임금 및 고용환경을 구축하여 경제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권, 노동권 관련 성평등 및 여권 신장 활동 기관 지원(H) -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 매매 및 고문 피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권, 노동권 관련 성평등 및 여권 신장 활동 기관 지원(H) - 공공 대상의 노동권 및 경제 인권 교육에 인식 증진 | UNDP ILO UNHCR UNWOMEN |
| 인권2 비차별적인 접근성보장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권 관련 인권 감시 및 교육(H) - 전세계, 지역, 국가, 지방에 걸쳐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정의된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인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전문 인권 기구 또는 인권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활동; -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 매매 및 고문 피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권 관련 인권 감시 및 교육(H) - 국제 인권 공약을 국내 법률로 승인; 보고 및 후속 조치; 인권 관련 토론 - 인권 운동가 인권NGOs; 인권 변호와 운동; 공공 대상의 인권 교육에 인식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 유통(H) - 공공의제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검열없는) 흐름을 지원하는 활동 | UNESCO UNICEF |

[표 49] KOICA의 시기별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사업 가능 영역

| 분류 및 목표 | 단기 | 중장기 | 주요 파트너 |
|---|--|--|-------------------------|
| 민주적 거버넌스1 법치 촉진 및 평등한 사법접근성 제고 및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D) - 사법제도 및 정책, 행정 체계 구축, 경찰 치안 업무 및 서비스, 소방 및 구조 서비스, 사법시스템 구축 - 옴부즈만 제도, 이민정책, 수감제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D) - 사법시스템 강화 - 옴부즈만 제도, 이민정책, 수감제도 구축 | ICJ ICTY |
| 민주적 거버넌스2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기구 및 기관(D) - 부패, 뇌물, 돈세탁 및 기타 조직적 부패 범죄와의 전쟁 및 방지를 위한 전문 조직, 기관 및 제도 수립 | | UNDP |
| 민주적 거버넌스3 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책무성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D) - 공공 분야 관리 시스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지원 - 인적 자원 관리; 조직 개선 - 시민 서비스 개선 활동 - 전자 정부 구축 - 개발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원조 조정과 관련된 정부부처 지원; 비특정 분야의 기타 정부 부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정관리(D) - 예산편성, 국가감사, 채무 및 원조 자금 관리 | WB, OECD |
| 민주적 거버넌스4 공식 정치과정 및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및 포용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D) - 선거 외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및 민주주의 지원 ◆ 선거(D) - 선거 관리 기구 및 과정, 선거 참관 - 의회 및 지방정부에서의 여성 참여 비중 강화 - 여성 경영진 비중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D) - 국민투표 또는 시민 발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수단 - 구성원을 변호 및 대변하고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구 지원. - 공론의 장에서 시민의 활동을 돋는 지원. 다양한 수준의 시민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육 ◆ 선거(D) - 선거 관리 기구 및 과정, 선거 참관 - 의회 및 지방정부에서의 여성 참여 비중 강화 - 여성 경영진 비중의 강화 ◆ 분권화 및 지방정부 지원(D) -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지방 정부 행정 시스템 강화 | UNDP AGA (AU) OAS |

| 분류 및 목표 | 단기 | 중장기 | 주요 파트너 |
|--|---|---|--------------------------|
| 민주적 거버넌스5 국제기구 내 개도국의 회원가입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활동 및 국제기준 이행 강화 - 국제기구 내 개도국 회원 가입 지원 - 국제기구 내 개도국 참여 및 국제 기준 이행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D) - 금융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 금융 시장과 시스템 | UN OECD IMF BIS |
| 민주적 거버넌스6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빈곤 감소 및 퇴치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법률과 행정(D) -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사회 안전망과 기타 사회사업 계획; 노인, 고아, 장애인, 거리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비특정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법률과 행정(D) -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혁 | UNDP |
| 민주적 거버넌스7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조직 및 제도 개선 (D) -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차별 종식을 위한 노력, 태도, 규범 및 행동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조직 및 제도 개선 (D) - 법-제도 개정 지원 ◆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D) - 사법정책 및 계획, 행정 체계 구축, 사법시스템 구축 및 강화 | UNDP UNESCO |
| 민주적 거버넌스8 공정한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 및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조세 체제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재원조성(D) - 세금 징수, 조세정책 및 관련 행정 지원 | | OECD |
| 민주적 거버넌스9 개도국 내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이고 규칙을 근간으로 한 다자 무역기준 이행력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정책(D) - 무역 박람회등 민관 네트워킹 - 전자상거래; 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민간 부문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정책(D) - 무역과 기업협회,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 - 기업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 민간 부문 기관 역량강화; 통상 정보 제공 | WTO |
| 민주적 거버넌스10 출생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등록 및 법적지위 관련 법률과 행정(D) - 출생등록 시스템 마련 및 법적지위 강화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 출생등록 및 법적지원 보장 관련 사업계획; ◆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D) - 인구조사 업무; 인구동태 등록; 아주 데이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등록 및 법적지위 관련 법률과 행정(D) - 출생신고 및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구조적 개혁 | UNFPA |

제4절 KOICA의 SDG16 주류화 이행강화 방안

지금까지 KOICA 사업의 분류를 통해 PHD 관련 사업의 경향성과 특징을 파악하며 SDG16의 대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PHD 주류화 이슈는 여전히 남는다.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주류화는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KOICA에선 성인지, 장애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외부적 수요와 내부적 합의를 도출하여 인권 영역을 중심으로 주류화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범분야가 난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실적으로 KOICA에서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PHD 주류화의 경우 단계별 접근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주류화, KOICA 조직 및 이해관계자 인지제고를 통한 주류화, 사업 시행 절차의 주류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접근해보고자 한다.

1. 제도개선을 통한 주류화

PHD 주류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토대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KOICA PHD 사업의 근간이 되는 상위부처의 법적,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야한다. 즉, 국제 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현은 명확한 정책적 기반 수립 및 상위부처의 확실한 지지 하에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연차별계획 등에 PHD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도록 명시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으로 SDG16 이행을 위한 외교부-KOICA의 역할을 구분하여 평화, 인권, 민주주의 중심의 다층위적 국제-국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와 KOICA간 협업을 통해 PHD를 정책과 전략 영역으로 구체화하고 실무에서 가이드와 매뉴얼형태로 실천하는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외교부는 다자 및 지역협력에서의 한국의 PHD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정책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정책대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 특히 활용하고 있는 지역협력(예: 멀티바이 협력) 및 국가별 협력에서의 PHD 프로그래밍화 등은 KOICA가 실현할 수 있는 협력유형으로 관련 신규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기준주제/섹터별 사업의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2. KOICA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인지제고를 통한 주류화

PHD의 주류화는 KOICA의 PHD 내재화를 의미하는데, 곧 KOICA의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 PHD 인식 수준이 높아져 모든 사업 내용 및 사업의 제반 단계에 PHD 가 고려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에 도달하려면 PHD 원칙에 대한 직원, 특히 사업 담당자의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의 매뉴얼이 제공된다고 해도, 조직과 개인의 인식과 인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질적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KOICA 직원의 개인 차이를 고려하면,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완벽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우선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인식제고, 그래서 파일럿 사업의 실행과 경험 축적 및 공유를 통해 PHD의 인식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PHD 원칙과 개념에 대해선 본문을 통해 서술되었지만, 각 영역별 주류화의 경우 EC에서 제시한 영역별 원칙과 세부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KOICA의 가이드라인 작성 시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표 50]). 아울러 독일의 BMZ 인권주류화 도구(Instruments)로 소개된 인권문제 분석 및 인권 기여 가능성 분석(Analysis of Problems and Potentials), 타겟그룹 및 이해관계자 분석 (Target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Analysis), 스웨덴의 HRBA 도구 등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제시한 주류화 원칙을 살펴보면, 평화의 경우 행위자, 쟁점, 관점의 포용성; 행위자와 쟁점 관련 공평성; 투명성; 분쟁(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당사자의 오너십 존중; 행위에 대한 책임성; 파트너십과 조정력; 상보성과 일관성; 시간 적합성과 유연성; 반응성 등이다. 인권의 경우 인권기준과의 연계; 법치; 비차별과 평등; 참여와 포용; 조직역량; 투명성과 책무성 등이며, 민주적 거버넌스의 경우 참여와 주인의식; 평등; 조직역량; 투명성과 책무성을 들 수 있다(부록 4. SDG16의 PHD 주류화 추진방안 참조).

[표 50] SDG16 주류화 원칙(EC)

| | |
|------|--|
| 평화 | Guiding Princi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icipatory Process 참여적 과정 Inclusiveness of Actors, Issues and Perceptions 행위자, 쟁점, 관점의 포용성 Impartiality in Relation to Actors and Issues 행위자와 쟁점 관련 공평성 Transparency 투명성 Respect for People's Ownership of the Conflict and Their Suffering 분쟁(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당사자의 오너십 존중 Accountability for One's Own Actions 책무성 Partnership and Co-ordination 파트너십과 조정력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상보성과 일관성 Timeliness and Flexibility 시간 적합성과 유연성 Responsiveness 반응성 |
| 인권 | Guiding Princi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ks to Human Rights 인권기준과의 연계 Rule of Law 법치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비차별과 평등 Participation and Inclusion 참여와 포용 Organizational Capacity 조직역량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투명성과 책무성 |
| 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uiding Principles Participation and Ownership 참여와 주인의식 Equity 평등 Organizational Capacity 조직역량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투명성과 책무성 |

출처: Handbook on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EC Development and Co-operation(2004).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KOICA가 새롭게 내세우는 원칙과 슬로건이 절대 많거나 새롭거나 어려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권 주류화의 경우 스웨덴과 독일은 UN 중심의 HRBA 의제를 내재화 하고 인권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인권의 4가지 원칙인 i) 비차별, ii) 참여, iii) 투명성, iii) 책무성을 강조한다. 특히 스웨덴은 HRBA 적용 원칙으로 약어 P.L.A.N.E.T(Participation, Links to uman rights, 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 Empowerment)를 사용하고 있다.

조직 내 인지제고 작업과 병행하여 사업 수행기관, 전문가에 대한 인지제고도 필요하다. ODA교육원 등을 통해 꾸준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할 것이며, 더불어 프로세스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제안 심사 시의 고려 등 제도적 접근도 병행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수행단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서 독일 사례에서 보았듯이 PHD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대표프로그램을 형성하는 초기에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을 사전에 배정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가치기반의 성격을 가지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가 개발협력에서 ‘왜 중요한지’를 넘어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그룹 밑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여 인식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이해관계자 레벨에서 PHD 인식도를 높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협력국 파트너 공무원, 사업 수행그룹, 그리고 수혜그룹(인권의 경우 권리보유자)이다. 현장에서 브로셔, 리플렛, 포스터, 세미나, 교육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및 인지제고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인권적 접근이나 평화/갈등 감수성 접근을 드러내놓고 추진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수행자의 T.P.O.(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상황)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전략은 독일의 거버넌스 전략에서 정부 간 사업과 시민사회 사업의 두 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시사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 주체들이 PHD사업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적 전략 구축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협력국 공무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은 연수사업부서, 나아가 교육 ODA (GKS⁵²⁾사업)를 시행하는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장단기 연수를 통해 수학중인 협력국 공무원에 대한 PHD 인지제고 작업을 시행하는 것도 장기적 측면에서의 주류화 작업으로 포괄할 수 있다. 단기연수 시 한국의 경제발전과목에 더해 한국의 정치발전 또는 인권 민주주의 관련한 과목을 넣거나, 유관 장소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겠고, 장기연수(Scholarship Program, SP)의 경우 관련 과목 개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공공행정을 다루는 SP과정의 경우 코스 전반에 대한 PHD 주류화(또는 대상화)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다. 협력국 현장에서 바쁘고 분주한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인지제고가 여의치 않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장기적 간접적인 방식의 접근은 우리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대안으로 판단한다.

52) GKS, Global Korea Scholarship(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3. 사업 시행 절차의 주류화

우선 프로젝트 주기의 단계별 프로세스 상에서 지켜야할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시행하되([그림 24]), 초기에는 KOICA에서 비교적 익숙한 인권-민주주의 관련 사항부터 시행하고, 난이도가 있는 평화-갈등감수성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시행을 고려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인권-민주주의 주류화 단계별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제시한다.

[그림 24] PHD의 프로젝트 단계별 접근(안)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4]의 단계별 접근(안) 가운데 (4)조달 이전의 프로젝트 초기 형성 단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사업심사를 포함한 사업형성 단계에서 정책 프레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반 범분야(권리, 빈곤층, 성평등, 갈등 민감성, 환경 및 기후)에 대한 사전 분석을 수행하고 주제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때 현장(스웨덴 대사관)의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Officer)가 협력 파트너와의 정책 대화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1차 분석을 수행하고, Sida 본부의 주제별(인권 및 민주주의, 갈등관리, 성평등 등) 전문관에게 보고하며, 전문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참고 사항이다. 독일역시 절차상으로 스웨덴과 유사한 형태로 주류화 시행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GIZ의 경우 기관이 수행하는 분야/섹터 사업을 권리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교육원, 건강권, 식수권, 경제권, 노동권 등) 혹은 권리보유자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본부의 전략담당자 및 품질관리 담당자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가. 인권 민주주의 주류화(안)

인권-민주주의 주류화의 경우 각 단계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전략 단계(Programming)의 시작점은 CPS 상에 HD 주류화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책단계에서 제시된 기본원칙(guiding principle)을 국별 CPS 수립 시 반영한다. 이를 위해 CPS 작성가이드라인에 PHD 원칙이 강조되도록 한다. 젠더나 환경과 같이 사업에 대한 범분야 원칙으로서 뿐만 아니라, 협의 및 작성 단계에 있어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EC의 경우 협력국의 참여와 주인의식, 기회 균등의 원칙 준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의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 비차별과 포용 등의 인권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류화의 경우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기본원칙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별 CSP 작성 참여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워크샵 또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협력국 현장에서는 수원기관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들과 인권-민주주의 원칙에 교감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초안이 작성되면 HD 전문가가 작성된 CPS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가급적이면 젠더-환경 등 타 범분야 전문가와 공동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 사전 준비사항: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기본계획 등 정책단계에서 PHD 원칙 강조, CPS 작성 가이드라인에 PHD 원칙 포함
- 진행시: 사전 워크샵 시 SDG16에 대한 인식제고(또는 교육)
- 현장조사 및 협의: 수원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인권-민주주의 원칙에 교감 형성
- 사후 점검: CSP 초안에 대한 HD 전문가 검토
- 주요이해관계자: 국무조정실 및 부처 공무원, KOICA 등 CPS 참여 전문가, HD 전문가

(2) 사업형성 및 발굴 단계(Identification)에서는 각 사업 컨셉별로 HD 기본 원칙을 숙지하여 진행한다. 특히 각 사업이 Do no harm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한다(인프라 사업에서 기존 주민 재이주 이슈 등).

- 사전 준비사항: KOICA PHD 사업 가이드라인
- PCP 단계: 범분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고려되었는지 확인
- 사전조사: 협력국 관계 기관과 인권-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공감
- 주요이해관계자: KOICA 국별 사업담당자, KOICA 사무소, 협력국 수원총괄기관, 시행 기관(Executing Agency) 등

(3) 사업준비 단계(Formulation)에서는 사전조사 및 기획조사 시 평등, 책무성 등의 기본 원칙을 협력국 현실에 맞게 분석하고 적용하는 작업, 사업심사 시 주류화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실시계획 수립 시엔 HD별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 계획에 넣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분리데이터 수집을 위한 준비도 시행한다. 실무진과 전문가에 대한 인식제고가 매우 필요한 단계이다.

- 사전 준비사항: KOICA PHD 사업 가이드라인, PHD 전략을 담은 KOICA의 사전조사 가이드라인
- 사전조사: 사전조사 전문가에 대한 인식제고(또는 교육), 수원기관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들과 인권-민주주의 원칙에 교감
- 사업심사: HD 전문가 참여 및 검토
- 주요이해관계자: KOICA 국별 사업담당자, KOICA 사무소, 협력국 수원총괄기관, 시행 기관(Executing Agency), 사전조사 참여 전문가, HD 전문가 등

(4) 조달(Procurement) 단계에서는 HD를 범분야로서 고려하도록 잠재적 수행자에게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각 분야 전문성은 물론 해당 지역과 범분야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수행자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고급 수행그룹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사전 쇼트리스트(일명 Indefinite Quantity Contracts, IQC) 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고려하되,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기술평가에 개발협력 HD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협력전문가이면서 인권-민주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험자, 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학자 등을 우선 고려하되, 관련 학회 등을 통해 개발협력전문가 그룹에 대한 PHD 인지 제고를 확대하여 전문 인력 풀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 사전 준비사항: KOICA 사업 설명회시 PHD 주류화 포함, 각 제안요청서(RFP)상 HD 원칙 반영 강조
- 기술평가: HD 전문가 참여 (타 범분야와 공동 참여 가능)
- 주요이해관계자: KOICA 국별 사업담당자, 기술평가 담당자, 수행그룹, HD 전문가 등

(5) 사업수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PHD 원칙에 입각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다각 도로 관리-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사전 준비사항: 사업 수행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사업 수행 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사무소를 통한 HD 주류화 모니터링, 초청연수 시 SDG16에 대한 교육 시행
- 모니터링: HD 전문가 참여 및 파견 등을 고려(타 범분야와 공동 참여 가능), 협력국 시행기관에 대한 인지제고
- 주요 이해관계자: KOICA 국별 사업담당자, 사무소, 협력국 시행기관, 사업 수행자, HD 전문가 등

(6) 모니터링 평가(M&E) 단계에서는 중간점검시 HD 영향력을 파악하고, HD 원칙을 고려한 평가 매트릭스를 적용한다(부록 4. SDG16의 PHD 주류화 추진방안 참조).

- 사전 준비사항: KOICA 평가 가이드라인에 PHD 원칙 포함
- 평가 시행: 외주(용역 발주) 시 제안요청서 상에 HD 기본원칙 명시, HD 인식도가 높은 전문가 및 평가 전문기관 선정
- 주요 이해관계자: KOICA 사업 담당자, 평가실, 협력국 시행기관, 외부 평가전문가 및 평가전문기관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Programming | | | |
| 전략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 국별협력전략(CPS), 국별 중점 지원분야, 중기전략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협력전략수립 시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HD)의 주류화 - <참여과 주인의식> <평등> <조직 역량> <투명성과 책임성> 및 <인권> 원칙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인권과 민주주의 주류화 가이드라인” |
| Identification | | | |
| 사업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업 형성(Alignment & Harmonization) 및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의 HD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국별 HD 현황” 발간 |
| ↓ | | | |
| 사업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 사업제안서(PCP) 접수, 1차 검토를 통해 예비조사 대상 사업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P상의 HD 고려 확인 | |
| Formulation | | | |
| 예비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 각론 분석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인권과 민주주의 주류화 가이드라인” |
| ↓ | | | |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사업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후보사업 선정 후 외교부 시행계획 심의 및 국무조정실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내부 전문가가 HD 마커 분류 적합성 등 검토 - HD 주류화 사업에 대한 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전문가에 대한 HD 역량강화 |
| 예산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16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대상 SDG16 인지제고 |
| 기획조사 및 RD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기획조사 실시, 당해년도 사업들에 대한 정부 간 합의문 교환 및 사업시행 기관 간 협의 의사록(RD)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기획조사 시 HD 전문가 동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HD전문가 육성 및 pooling |
| 집행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실시계획 수립(사업 계획,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기자재 사양조사, 소요예산 산출, 입찰계획서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 요소 강조 - HD 별 다양한 지표(예, 인권 PANEL원칙)를 사업계획, 시행, 모니터링에 반영 - 주요사업에 대해 분리데이터 수집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 |
| Procurement | | | |
| 사업시행 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KOICA), 입찰제안서 제출(응찰업체), 기술평가, 가격 평가, 계약체결 및 본 사업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에 SDG 16 주류화 필요성 명시 - 기술평가에 개발협력 HD 전문가 초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pooling |
| Implementation | | | |
| 사업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 원칙에 입각한 사업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자 HD 교육 |
| Monitoring & Evaluation | | | |
| 모니터링 및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모니터링, 중간 점검 및 종료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 가능한 범위 분리 데이터 수집 - 중간점검 시 HD 영향력 등 파악 - HD 원칙 기반 평가 매트릭스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 모니터링 프레임 제시 (가이드) - ODA 평가 가이드 라인 개정 |
|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 |

출처: 저자 작성

나.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안)

중장기적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아래 도식화된 것과 같이 (1) 전략 단계(Programming)에서 CPS 상에 평화/갈등 감수성을 중심으로 중기협력전략을 구성한다. (2) 사업형성 및 발굴 단계(Identification)에서 평화에 대한 협력국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3) 사업준비 단계(Formulation)에선 사전조사 및 기획조사 시 평화 접근에 대한 분석 적용 작업, 사업심사 시 평화마커 적용 확인 등이 필요하다. 실시계획 수립 시엔 평화/갈등 감수성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 계획에 넣어야 한다. 분리데이터 수집을 위한 준비도 시행한다. (4) 조달(Procurement) 단계에선 평화/갈등 감수성을 범분야로서 고려하도록 안내하며, 기술평가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업수행(Implementation) 단계에선 평화/갈등 감수성 원칙에 입각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6) 모니터링 평가(M&E) 단계에선 중간점검시 평화/갈등 감수성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평가 매트릭스를 적용한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갈등에 대한 간섭(Intervention)은 간단하지 않다. Working in Conflict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갈등 민감성을 요구하는 개념인 반면에 Working on Conflict는 폭력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분쟁 예방, 평화 및 인간 안보를 주요 목표 또는 부차적 목표로 삼기 위한 추가적 심층 분석을 요구한다. 주류화 측면에서는 갈등 감수성에 입각한 Working in Conflict의 개념을 강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전략 단계(Programming)의 시작점은 CPS 상에 평화/갈등 감수성의 주류화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책단계에서 제시된 참여와 포용성에 대한 제반 원칙을 국별 CPS 수립 시 반영한다. 이를 위해 CPS 작성가이드라인에 평화/갈등 감수성의 원칙이 강조되도록 한다. EC의 경우 참여적 과정, 행위자, 쟁점, 관점의 포용성, 행위자와 쟁점 관련 공평성, 투명성, 분쟁(갈등)과 이로 인한 고통에 대한 당사자의 오너십 존중, 책임성, 파트너십과 조정력, 상보성과 일관성, 시간 적합성과 유연성, 반응성 등을 평화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류화의 경우 가급적이면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기본원칙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별 CSP 작성 참여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워크샵 또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협력국 현장에서는 수원 기관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들과 평화/갈등 감수성 원칙에 교감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내전을 겪었거나 그룹 간 분쟁의 여지가 있는 국가의 경우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초안이 작성되면 평화/갈등 감수성 전문가가 작성된 CPS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인권-민주주의 분야는 물론 젠더-환경 등 범 분야 전문가와 공동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 사전 준비사항: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기본계획 등 정책단계에서 PHD 원칙 강조, CPS 작성 가이드라인에 PHD 원칙 포함
- 진행시: 사전 워크샵 시 SDG16에 대한 인식제고(또는 교육)
- 현장조사 및 협의: 수원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평화-갈등 감수성 원칙에 교감 형성
- 사후 점검: CSP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 주요이해관계자: 국무조정실 및 부처 공무원, KOICA 등 CPS 참여 전문가, 평화/갈등 감수성 전문가

(2) 사업형성 및 빨굴 단계(Identification)에서는 각 사업 컨셉별로 평화/갈등 감수성 원칙을 숙지하여 진행한다.

- 사전 준비사항: KOICA PHD 사업 가이드라인
- PCP 단계: 범분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고려되었는지 확인
- 사전조사: 협력국 관계 기관과 평화/갈등 감수성 원칙에 대해 공감
- 주요이해관계자: KOICA 국별 사업담당자, KOICA 사무소, 협력국 수원총괄기관, 시행 기관(Executing Agency) 등

(3) 사업준비 단계(Formulation)에서는 사전조사 및 기획조사 시 평화의 기본원칙을 협력국 현실에 맞게 분석하고 적용하는 작업, 사업심사 시 주류화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실시계획 수립 시엔 평화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 계획에 넣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준비도 시행한다. 실무진과 전문가에 대한 인식제고가 매우 필요한 단계이다.

- 사전 준비사항: KOICA PHD 사업 가이드라인, PHD 전략을 담은 KOICA의 사전조사 가이드라인
- 사전조사: 사전조사 전문가에 대한 인식제고(또는 교육), 수원기관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들과 인권-민주주의 원칙에 교감
- 사업심사: 평화/갈등 감수성 전문가 참여 및 검토
- 주요이해관계자: KOICA 국별 사업담당자, KOICA 사무소, 협력국 수원총괄기관, 시행 기관(Executing Agency), 사전조사 참여 전문가, 평화/갈등 감수성 전문가 등

(4) 조달(Procurement) 단계에서는 평화/갈등 감수성을 범분야로서 고려하도록 잠재적 수행자에게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각 분야 전문성은 물론 해당 지역과 범분야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수행자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고급 수행그룹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사전 쇼트리스트(일명 Indefinite Quantity Contracts, IQC) 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고려하되,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기술평가에 평화/갈등 감수성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협력전문가이면서 평화, 분쟁과 갈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험자, 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학자 등을 우선 고려하되, 관련 학회 등을 통해 개발협력전문가 그룹에 대한 평화/갈등 감수성 인지제고를 확대하여 전문 인력 풀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 사전 준비사항: KOICA 사업 설명회시 PHD 주류화 포함, 각 제안요청서(RFP)상 평화 /갈등 감수성 원칙 반영 강조
- 기술평가: 평화/갈등 감수성 전문가 참여(타 범분야와 공동 참여 가능)
- 주요 이해관계자: KOICA 국별 사업담당자, 기술평가 담당자, 수행그룹, 평화 전문가 등

(5) 사업수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PHD 원칙에 입각한 수행이 이루어 지도록 다각도로 관리-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사전 준비사항: 사업 수행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사업 수행 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사무소를 통한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 모니터링, 초청연수 시 SDG16에 대한 교육 시행
- 모니터링: 평화 전문가 참여 및 파견 등을 고려(타 범분야와 공동 참여 가능), 협력국 시행기관에 대한 인지제고
- 주요 이해관계자: KOICA 국별 사업담당자, 사무소, 협력국 시행기관, 사업 수행자, 평화 전문가 등

(6) 모니터링 평가(M&E) 단계에서는 중간점검시 평화/갈등 감수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평가 매트릭스를 적용한다(부록 4. SDG16의 PHD 주류화 추진방안 참조).

- 사전 준비사항: KOICA 평가 가이드라인에 PHD 원칙 포함
- 평가 시행: 외주(용역 발주) 시 제안요청서 상에 HD 기본원칙 명시, HD 인식도가 높은 전문가 및 평가 전문기관 선정

- 주요 이해관계자: KOICA 사업 담당자, 평가실, 협력국 시행기관, 외부 평가전문가 및 평가전문기관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Programming | | | |
| 전략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 국별협력전략(CPS), 국별 중점 지원분야, 중기전략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협력전략수립 시 평화/갈등 감수성의 주류화 - 참여와 포용성에 대한 제반 원칙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
| Identification | | | |
| 사업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업 형성(Alignment & Harmonization) 및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의 Peace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국별 Peace 포트폴리오” 발간 |
| | | ↓ | |
| 사업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 사업제안서(PCP) 접수, 1차 검토를 통해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P상의 Peace 고려 확인 | |
| Formulation | | | |
| 예비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ce 각론 분석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
| | | | |
| 사업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후보사업 선정 후 외교부 시행 계획 심의 및 국무조정실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전문가가가 Peace 마커 분류 적합성 등 검토 - Peace 주류화 사업에 대한 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전문가에 대한 Peace 역량 강화 |
| | | | |
| 예산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16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대상 SDG16 인지제고 |
| | | | |
| 기획조사 및 RD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기획조사 실시, 당해연도 사업들에 대한 정부 간 합의문 교환 및 사업시행 기관 간 협의 의사록(RD)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기획조사 시 Peace 전문가 동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Peace 전문가 육성 및 pooling |
| | | | |
| 집행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실시계획 수립(사업 계획,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기자재 사양조사, 소요예산 산출, 입찰계획서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ce 요소 강조 - Peace의 다양한 지표를 사업계획, 시행, 모니터링에 반영 - 주요사업에 대해 분리데이터 수집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 |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Procurement | | | |
| 사업시행자 선정 | - 입찰공고(KOICA), 입찰제안서 제출(응찰업체), 기술평가, 기격 평가, 계약체결 및 본 사업 실시 | - 입찰공고에 SDG16 주류화 필요성 명시 - 기술평가에 개발협력 Peace 전문가 초빙 | - 전문가 pooling |
| Implementation | | | |
| 사업수행 | - 사업추진 | - Peace 원칙에 입각한 사업 수행 | - 사업수행자 Peace 교육 |
| Monitoring & Evaluation | | | |
| 모니터링 및 평가 | - 사업 모니터링, 중간 점검 및 종료평가 | - 모니터링 시 가능한 범위 분리 데이터 수집 - 중간점검 시 Peace 영향력 등 파악 - Peace 원칙 기반 평가 매트릭스 적용 | - Peace 모니터링 프레임 제시(가이드) - ODA 평가 가이드 라인 개정 |
| ↓ | | | |
| 사후관리 | - 종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 |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SDGs에서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정치적 불평등 해결 기제로서 SDG16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스웨덴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선진공여국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고, 관련분야 KOICA의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이에 입각해 KOICA의 이행전략을 가치지향적 접근, 정치외교적 지원, 프로그램 접근, 지역중심 접근,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5대 접근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치지향적 접근 Value Proposition

SDG16을 위시하여 SDGs와 지속가능발전 의제 전반에 내포되어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및 평화와 포용성 가치를 내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전 체계 내에 관련 규범 및 담론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숙지, 그리고 적절한 표출이 필요하다. 특히 SDG16과 궤적을 같이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한데, 다수 대중이 소수의 국가엘리트에게 요구하는 권리인 참정권,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의 ‘민주권리’ 와 소수파가 다수에 맞서기 위해 요구하는 권리인 생명권, 안전권, 사생활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자유권리’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선진 공여국에는 북유럽의 인권기반접근에서 일본의 국의 접근에 이르기까지 개발협력의 ‘가치’에 대한 컨센서스가 예외 없이 존재한다. 대부분이 장기간 축적된 이념적 기반, 국내외적 경험과 사회적 컨센서스의 토대 하에 개발협력의 가치가 상향식으로 정립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로를 겪지 않은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가치의 내재화 작업에 있어 법제도적 접근과 조직-인력에 대한 접근을 병행하는 하향식 접근도 고려해야한다. 국제개발기본법, 기본 계획, 연차별 계획, 중점협력국과의 CPS 등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기본 축으로 작동하는 법제도에 PHD 내재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후발공여국이라고 해서 국내적으로 이미 내재화된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의 포용성 으로부터, 헌법 전문의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에 이르기

까지 한민족의 핵심 가치는 이미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강하게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고 제도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동시에 KOICA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며 국제개발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PHD 가치를 실천할 주축그룹 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전 임직원의 인식제고라 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직무연수 및 교육훈련이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PHD 각 분야에 정통한 핵심 전문 인력을 직접 보유해야 한다.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지 제고 활동⁵³⁾ 및 공동연구,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PHD 지지그룹의 역량강화를 유도한다. 나아가 단내외의 주축그룹이 제반 가이드라인과 평가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등의 쟁크탱크 기능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필요한 작업이 앞서 강조했던 바와 같은 PHD 각 개념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 해석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면 평화의 개념에 접근할 때 분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요소들(사회적 응집력, 포용적 발전, 법의 지배 원칙, 인간안보 등)을 강조하는 적극적 접근을 강조하여 폭력과 갈등의 구조적인 원인 제거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정치 외교적 지원 Politico-Diplomatic Support

모든 개발협력행위는 정치-외교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PHD는 특히 더 그렇다. 경우에 따라 고도의 정치행위로 협력국에서 받아들일 소지가 있고 실제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의 정치 외교목표를 구현할 수도 있다. 이럴수록 정부 차원에서 국제개발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책적 근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의 PHD 적용은 명확한 정책적 기반 수립 및 상위부처의 확실한 인권개발협력에 대한 지지가 아주 중요하다. 부처에서 명확한 법적기반, 정책적 지지가 없으면, 정치적, 외교적 문제발생 시 원조기관이 지녀야할 부담이 클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공관장들이 정책적, 외교적 의제로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PHD 현장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OECD DAC, UN, MDB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해서도

53) 기존의 ODA 개념을 대체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이 자리 잡으면서 종래 ODA로 계상되지 않았지만 경제사회 개발의 바탕으로서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선 이를 평화3(P)으로 분류한 바 있다. 앞으로는 (예비)평화유지군에 대한 개발협력 교육과 PHD 인지제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SDG16 접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외교라인과 개발협력라인의 일치, 특히 외교부 내에서 개발협력과 정부, 공공외교, 지역, 인도지원 및 다자외교 간의 조정과 협력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외교부와 KOICA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한다. 협력국의 직접적 인권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독일의 경우 BMZ차원에서는 협력국 인권증진을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원조기관은 거버넌스에서의 특정 인권 프로그램(법치, 분권화, 정보투명성 등)을 실시하며, 시민사회를 통해 인권 증진에 직접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인권기반접근에 대한 원칙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독일인권연구소(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정치적 지원의 일환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정치적-외교적 기반조성은 정책일관성의 프레임 내에서 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 Addis Ababa Action Agenda)를 비롯한 거의 모든 SDGs의 이행 기제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의 강화를 강조한다. PCD 메커니즘에는 i) 약속 이행에 기여하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 선언문, ii) 정책 간의 충돌이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조정, 그리고 iii)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영향을 모니터링, 분석, 보고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그 핵심은 외교, 개발 부처와 조직, 그리고 원조 기관을 넘어서 범정부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부문별 정책 간(정책 갈등, 상충관계, 시너지효과) 그리고 국내외 정책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정부에서 갖추며, 이를 위해 CSO와 민간부문을 포함한 주요 이해 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

3. 프로그램형 접근 Programming

PHD 사업은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며 기존 개발협력 섹터 사업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당연히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 발굴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경우 단일 컨셉을 중심으로 한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사 컨셉의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여국 기반 프로그램으로는 대상 중심, 섹터의 아이템 중심, 지역 중심 등이 가능하다. (1)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아동 권리 증진’ 프로그램은 **대상 중심**, (2) 통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관원의 부패에 대처하고 관세 수입을 늘리는 ICT-전자정부 사업인 ‘전자통관시스템’은

섹터의 아이템 중심, (3)독일의 ‘아프리카를 위한 마셜플랜’은 **지역 중심 프로그램**의 사례이다.

프로그램형 운영의 또 다른 장점은 장기적 안목에서 통합적 성과관리나 모니터링, 그리고 사후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PHD 사업의 한 특징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렵거나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어 성과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협력국 정부 거버넌스 개선도 하루아침에 이룩되기 어렵다. 법-제도의 선진화 이전에 뿌리 깊은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자로서 이를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도 여의치 않다. 결국 프로그램 접근을 통해 여러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며 경향성을 추적하는 방식의 성과 관리가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장점은 브랜드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USAID의 식량원조-농촌개발 프로그램인 ‘미래의 먹거리(Feed the Future)’나 과거 KOICA의 ‘소녀를 위한 개발(Better Life for Girls)’ 등을 브랜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4. 지역중심 접근 Area Centered Approach

개발협력에 있어 협력국 중심 사고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프로젝트가 섹터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SDG16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즉, 섹터 중심 지원 체계에서 탈피하여 목표 지향적 지원체계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PHD 자체는 모두 특수한 협력국의 상황을 의미한다. 주류화도 어떤 분야와 섹터이든 협력국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독일의 ODA도 협력국의 거시적인 맥락(정치적, 공간적, 문화적)과 미시적 맥락(사회적, 개인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기술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협력국 시민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원을 하여 종종 ‘정치적으로 순수하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이와 같은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의 제반 단계에서 기능 또는 지역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전문성에 대한 공급확대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교육훈련과 인지제고를 통해 지역접근 및 분석에 대한 기법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한국 ODA에서 지역 전문성의 확대를 넘어 주류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특히, 인권상황, 평화 및 분쟁 상황, 해당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모니터링-분석 작업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위에서는 BMZ가 수행하고 있는 거버넌스 성숙도(Governance Readiness) 분석 작업과 유사한 국가기관 역량분석, 갈등 민감성 분석과 위기 사전평가 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 및 개도국 권역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채용, 그동안 지역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온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지역기구를 통한 삼각협력 또는 다자성양자(Multi-Bi) 사업 확대를 고려한다. 특히 정치적 통합과 역내 민주주의 확대 및 인권증진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AGA(Africa Governance Architecture)나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미주지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등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구들은 UN이나 MDB 등 전통적인 개발협력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각 지역의 정치적 통합과 민주적 현정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며 선거감시 및 민주 시민-청소년 양성 프로그램 등을 위시하여 SDG16과 직접 관련 있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분야의 지역 내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5. 시민사회와의 연대 Civil Society

KOICA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지지그룹과 인력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전문가그룹-시민사회 대표를 포함한 SDG16 TF 구축, 프로그램 및 방법론 차원의 공동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국제연수 및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 특히 개발 NGO는 해당 분야와 지역의 개발협력에 있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집단이다. 고유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외되고 배제된 취약 계층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대한 접근을 장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점에 있어 시민사회는 난이도가 높은 PHD 접근 시 사업수행의 보완재가 아니라 네지형 촉매재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일반 양자 사업의 조달절차를 통해 수행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 예를 들면 교도소 재소자 인권사업이나 거버넌스 취약국 시민사회 육성 프로그램 등 정치적 민감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에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PHD 사업에 있어서 지역정보 및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배가되는 만큼 현지 NGO와의 직간접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인권기반접근의 경우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무 부담자, 권리보유자)의 참여와 시민사회 차원의 인지제고 활동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NGO 사업상의 ‘참여와 인지’ 요소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와 학문으로서의 여성학도 일찍이 독일의 꾸준한 지원을 받아 성장한 사례가 있다.

아시아의 경우 2013년 발족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를 전향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아시아 최대의 민주주의 네트워크인 ADN은 1980년대 아시아에 불어왔던 민주화 바람이 신자유주의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다시 쇠퇴한 위기를 인식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이다.

결론적으로, 후발공여국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PHD는 앞으로 집중할 만한 분야, 그리고 특화를 고려해봄직한 영역이다. 그 이유를 다시 되새겨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토대 위에 최근 이룩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남북화해를 통해 평화 구축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업적을 달성하였다. 둘째, 선진공여국은 모두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여러 국가가 식민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테러와의 전쟁 등을 통해 PHD 자체를 위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에겐 이러한 원죄가 상대적으로 없다. 다만 ‘상대적’ 이라 함은 월남전 참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이슈가 될 만한 사안으로부터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셋째, ICT-전자정부 등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SDG16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의 브랜드파워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SDG16을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구현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또한 시의적절한 작업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다 심층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기간과 규모의 제약상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요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와 SDGs 연계/통합적 이행을 위한 ODA의 역할’, ‘인권-민주주의와 SDGs 연계/통합적 이행을 위한 ODA 역할’,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평화, 인권, 민주주의 과정 개발 및 전문가 양성전략’,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 사회의 PHD 각 분야 활동 현황과 성과 분석, 도전과제’, ‘사회권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및 방법 연구(보건, 교육, 농업 등)’, ‘경제권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및 방법 연구(노동, 고용, 창업 등)’, ‘중점 대상국별 평화, 인권, 민주주의 분야 현황 및 협력 파트너 맵핑연구’, ‘가치기반 개발협력을 위한 평가개념 및 방법연구’ 등이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재성, 정지선, 홍문숙, 이성훈, 신재은. 2017.『KOICA사업의 취약계층 포괄적 접근 현황평가』.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관계부처합동. 2016.『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_____ . 2016.『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_____ . 2015.『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_____ . 2010.『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2014a.『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_____ . 2014b.『인권과 국제개발협력』.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기획재정부·외교부. 2017.『취약국 지원 전략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9-3호)』
- 김도균. 2008.『권리의 문법: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 서울: 박영사.
- 김수진. 2015. “Goal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축진, 사법접근성 확보, 모든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309-330.
- 김수진. 2018.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수준 분석: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2018-2호:109-170
- 김은주, 권혁주. 2015. “KOICA 공공행정 분야 SDGs 대응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국제개발협력』2015-4호: 37-52.
- 김인. 2015.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방안.”『국제개발협력』2015-4호: 3-35.
- 김태균. 2015. “포스트-2015 개발시대의 분질적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유엔개발협력포럼(UNDC)과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을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24-3호 105
가을: 95-126.
- 대한민국정부. 2012.『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박대원. 2011.『KOICA의 거버넌스 분야 개발협력 방안: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법무부. 2018.『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서보혁, 2012. “국제평화권 논의의 추세와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Vol.22(1): 65–86.
- 송수전. 2018. “SDG16 Plus, 통합적 SDG 이행을 위한 연결고리”. 『공공행정 중기전략』.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9
- 이경주. 2014. 『평화권의 이해: 개념과 역사, 분석과 적용』. 사회평론.
- 이성훈.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 Peace & Justice.” KAIDEC 월례 발표회 (2018.05.03., 서울시 NPO 지원센터)
- _____. 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4호: 3-38.
- _____. 201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인권재단.
- 이정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민주주의 국제협력기관: 지구민주화와 공공외교의 정도』. 파주: 리북.
- 이정은. 2013. “한국 인권 운동의 토대 형성: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역사비평』. 103:61–91.
- 전혜령, 한국식, 장은지. 2017. 『SDGs 연계 성과프레임워크 수립 및 활용방안』. 2017.12, 1-201.
- 조철민.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12권 제3호(2017): 1-32.
- 조효제. 2016.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15. 『조효제 교수의 인권오디세이: 다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묻는다』. 서울: 교양인.
- _____. 2011. 『인권을 찾아서: 신세대를 위한 세계 인권 선언』. 파주: 한울아카데미.
- 코언, 스탠리(Cohen, Stanley). 2009.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 침해를 부인하는가』. 조효제 역. 창비.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필즈, 벨덴(Fields, Belden). 2013.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박동천 역, 모티브 북.
- 한국국제협력단. 2017.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 _____. 2017. 『KOICA 성평등 중기전략(2016–2020)』
- _____. 2016. “OECD CRS원조목적코드별 SDGs 목표 분류(안)” (내부자료, 2016.12.26. 기준)
- _____. 2016.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경영전략(2017–2021)』
- 한국법제연구원. 2010. 『주요국가의 ODA법제연구(미국)』
- 한국인권재단. 2015. 『인권기반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 환경부. 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SDG 16 일반 관련 해외문헌〉

- Boutros Boutros-Ghali. 1995. "An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 Burnell, Peter. 2007. "Does International Democracy Promotion Work?". die.
- European Union. "Concepts and Principles of Democratic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 Burnell, Peter *et al.* 2007. "Evaluating Democracy Support". Sida.
- CIPS. 2015. "Towards 2030: Building Canada's Engagement with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Ottawa: Center for Policy Studies.
- Community of Democracies. September 2017. "Voluntary Supplemental Indicators for Goal 16 on Inclusive, Just and Peaceful Institutions". Warsaw: Community of Democracies.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5. "Council Conclusions on the Ac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2015–2019," posted on EUropean Commission website on 20 July, 2015, available at https://ec.europa.eu/anti-trafficking/sites/antitrafficking/files/council_conclusions_on_the_action_plan_on_human_rights_and_democracy_2015_-_2019.pdf (접속일: 2018.04.11.)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7. "Performance of Australian Aid 2015–16". Barto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European Commission. 2004. "Handbook on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E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russels: European Commision.
- Galtung, Johan. 1976.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in Peace, War and Defens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I, 297–298.
- Global Affairs Canada. 2018. "Departmental Plan 2018–19". Ottawa: Global Affairs Canada
- Hazelzet, Hadewych. 2005. "Suspens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 Instrumen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Democracy?". ecdpm. Discussion Paper No.64B
- INCAF. 2015. "INCAF Response to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available at https://www.oecd.org/dac/conflict-fragility-resilience/docs/INCAF_collective_response_Pathways4Peace.pdf (접속일: 2018.04.16.)

- Levy, Marc A. and Michelle Scobie. 2015. "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Paris: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17. "The World 2030 Denmark's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ction" available at <http://amg.um.dk/~/media/amg/Documents/Policies%20and%20Strategies/Strategy%20for%20Danish%20Development%20Cooperation/The%20World%202030%20%20Denmarks%20strategy%20for%20development%20cooperation%20and%20humanitarian%20action.pdf> (접속일: 2018.05.26.)
- Friends of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deas for the Post 2015 Agenda". New World Frontiers.
- OECD. 2017. "The List of CRS Purpose Codes and Voluntary Budget Identifier Codes".
- _____. 2016. "The List of CRS Purpose Codes"(updated April 2016). available at https://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2015%20CRS%20purpose%20codes%20EN_updated%20April%202016.pdf (접속일: 2018.07.10.)
- _____. 2014a. "Bilateral Providers' and Multilateral Organisations' Practices on Earmarked Funding"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aid-architecture/Earmarked%20Funding_Four%20Pager.pdf (접속일: 2018.04.06.)
- _____. 2014b. "Development Assistance Flows for Governance and Peace".
- _____. 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Sweden 2013".
- _____. 2008. "DAC Sector Classification: Rules on the Frequency of Updates to Purpose Codes".
-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Revised Working Draft (Version 7). New York: United Nations,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United Nations (2015),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ddis Ababa Action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 TAP Network. 2016. "Goal 16 Advocacy Toolkit" available at <http://tapnetwork2030.org/>

wp-content/uploads/2016/07/TAP_AdvocacyToolkit_1pgFINAL.pdf (접속일:
2018.04.06.)

- UN. 2017a.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SDG16—Launch of the Roadmap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Concept note for a side event to the General Debate of the 72nd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21 September 2017, available at https://cic.nyu.edu/sites/default/files/unga_2017_side_event_concept_note_8sep17.pdf (접속일:2018.07.10.)
- . 2017b.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7".
- .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New York: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generalassembly/docs/globalcompact/A_RES_70_1_E.pdf (접속일:2018.07.10.)
-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Seventy-second Session Supplement No.1.
- United Nations; World Bank. 2018. "Pathways for Peace :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ashington, D.C.: World Bank
- UNGA. 2001.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A/69/700).
- UNSC. 2015.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List of Proposed Preliminary Indicators." New York: United Nations.
- Whaites, Alan. 2016. "Achieving the Impossible: Can we be SDG16 Believers?". GovNet Background Paper No.2, Paris: OECD,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accountable-effective-institutions/Achieving%20the%20Impossible%20can%20we%20be%20SDG16%20believers.pdf> (접속일: 2018.07.10.)
- World Bank. 2016.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인권과 국제개발 관련 해외문헌〉

- Boesen, Jakob Kirkemann and Tomas Martin.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An Inspirational Guide for Civil Society".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Cornwall, Andrea, and Nyamu-Musembi. Celestine. 2004. "Putting the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into perspective". *Third World Quarterly*. Vol. 25 , Iss. 8.
- Piron, Laure-Hélène. 2003. 'The right to development: a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debate for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vailable at www.odi.org.uk/pppg/publications/papers_reports/dfid/issues/rights01/index.html (접속일: 2018.05.17.)
- Piron, Laure-Hélène, and Francis Watkins. 2004. "DFID Human Rights Review. A review of how DFID has integrated human rights into its work". available at <https://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2289.pdf> (접속일: 2018.05.17.)
- Sida. 2015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t Sida: Compilation of Thematic Area Briefs", available at <https://www.sida.se/contentassets/410e73f0f7074e8d83e7397ba13a5a6a/18253.pdf> (접속일: 2018.05.17.)
- UN. 2009. "Common Country Assessment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Guidelines for UN Country Teams on Preparing a CCA and UNDAF".
- _____. 2003. "Statement of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available at <http://hrbaportal.org/the-human-rights-based-approach-to-development-cooperation-towards-a-common-understanding-among-un-agencies> (접속일: 2018.04.05.)
- UNDP. 2012. "Mainstreaming Human Rights in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ing: UNDP Experiences". New York: UNDP
- United Nations Evaluation Group. 2014. "Integrating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Evaluations". New York: UNEG.
- UNOCHA. 1998.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Washington D.C.: Brookings

- UNOHCHR.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and Geneva: UNOHCHR.
- USAID. 2014. "Strategic Plan FY2014–2017" posted on U.S. Department of State 2 April, 2014, avialable at <https://www.state.gov/s/d/rm/rls/dosstrat/2014/> (접속일: 2018.05.28.)
- _____. 2013. "USAID Strategy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available at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6/USAID%20DRG_%20final%20final%206-24%203%20%281%29.pdf (접속일: 2018.05.28.)
- _____. 2007. "Community Based Development in Conflict-Affected Areas: An Introdcutry Guide for Programming".
- _____. 2005. "Community Based Reintegration".

〈평화와 국제개발 관련 해외문헌〉

- CARE. December 2013. "Peacebuilding Toolbox: A collection of inspirational Peacebuilding approaches from around the world".
- Dawidson, Karin, and Karolina Hulterstrom. 2006. "Improv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Support". SADEV Report, 2006:1.
- DIE. 2015.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eds a coherent focus on governance and peace".
- Duke, Simon, and Aurelie Courtier. 2009. "EU Peacebuiliding: Concepts, Players and Instruments". Leuven Centre. Working Paper No.33.
- EU. 2000. "Checklist for Root Causes of Conflict European Union".
- Goldwyn, Rachel on behalf of Management Systems International, A Tetra Tech Company, and CDA Collaborative Learning Projects. 2016. "Conflict Sensitivity Integration Review." Washington D.C.: USAID
- Haugen, Valerie, JBS International, and Nina Papadopoulos. 2013. "Checklist for Conflict Senstivity in Education Programs." Washington D.C.: USAID
- Hearn, Sarah. 2016. "How to Achieve Sustainable Peace". Friedrich Eber Stiftung.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2017. "SDG16 Progress Report: A comprehensive global audit of progress on available SDG16 indicators"

- International alert. 2004. "Conflict-sensitive approaches to developm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eace building: tools for peace and conflict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Dialogue. "Realization of the SDGs in Countries Affected by Conflict and Fragility: The Role of the New Deal".
- Kezie-Nwoha, Helen, and Aditi Lalbahadur. 20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The Challenge of Sustaining Peace in Places of Crisis". African Policy Circle.
- Metcalfe-Hough, Victoria, Alastair McKechnie and Sara Pantuliano. 2017. "Delivering the UN 'sustaining peace' agenda".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Milante, Gary, and Suyoun Jang. 2016. "Measuring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in the New SDG Framework". *Journal of Peacebuilding & Development*. Vol.11 No.1.
- OECD. 2012. "Evaluating Pecebuilding Activities in Settings of Conflict and Fragility: Improving Learning for Results".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available at <http://dx.doi.org/10.1787/9789264106802-en> (접속일: 2018.06.05)
- Regeringskansliet. 2006.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 Rodrigues, Charmaine. "Goal 16 Advocacy Toolkit". TAP Network, available at www.tapnetwork2030.org (접속일: 2018.07.05)
- Rogers, Mark, Araon Chassy, and Tom Bamat. 2010. "Integrating Peacebuilding into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Programming". CRS.
- Rossier, Masayo Kondo. "Linking Humanitarian Action and Peacebuilding". The Graduate Institute.
- SIPRI. 2017.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IPRI Yearbook 2017.
- UN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2018.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72/707-S/2018/43.
- UNDP. 2017. "Monitoring to Implement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Pilot Initiative on National-Level Monitoring of SDG16". Oslo: UNDP
- _____. 2015. "The Indicators We Want". New York: UNDP

〈스웨덴 개발협력 및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참고문헌〉

- Dahl-Ostergaard, Tom, Karin Schulz, and Barbro Svedberg.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Sida's Work with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Sida. Sida Evaluation 2008:29.
- Government of Sweden. 2016a.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in Swedish foreign policy". Government Communication 2016/17:62.
- _____. 2016b. "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Government Communication 2016/17:60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Strategy for Sweden's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18–2022".
- _____. 2017b. "Towards Achieving the 2030 Agenda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report to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Forum (FfD Forum) in New York, 22.25 May 2017
- _____. 2016. "Women, Peace & Security".
- _____. 2013. "Aid Policy Framework: The Direction of Swedish Aid." Government Communication 2013/14:131.
- _____. 2010. "Shared Responsibility for Global Development".
- _____. 2003. "Human Rights in Swedish Foreign Policy". Government Communication 2003/04:20.
- _____. 2002. "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Government Bill 2002/03:122.
- _____. 2001. "Preventing Violent Conflict: Swedish Policy for the 21st Century". Reference No.: no.01.025.
- _____. 1999. "Preventing violent conflict- Swedish Action Plan 1999:24".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8. "Strategy for Sustainable Peace 2017–2022".
- Sida. 2017a. "Building and assessing institutional capacity to integrate conflict sensitivity," Stockholm: Sida
- _____. 2017b. "Conflict sensitivity in programme management". Stockholm: Sida
- _____. 2017c. "Conflict Preven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key policy commitments and priorities". Stockholm: Sida
- _____. 2017d. "Defining key Concepts, Tools and Operational Responses". Stockholm: Sida

- _____. 2017e. "Dimensions of Poverty Sida's Conceptual Framework". Stockholm: Sida
- _____. 2017f. "How Sida Works with Gender Equality". Stockholm: Sida
- _____. 2017g. "Peace and Conflict Tool Box: Conflict Sensitivity in programme management". Stockholm: Sida
- _____. 2017h. "Preventing Violent Extremism(PVE) through development". Stockholm: Sida
- _____. 2017i. "Sida's approach to an integrated conflict perspective". Stockholm: Sida
- _____. 2017j. "Strategy for Sweden's humanitarian aid provided through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2017–2020". UD2017/ 01299/KH.
- _____. 2016a. "Democracy and Human Rights," posted on 15 December, 2014 available at <https://www.sida.se/English/how-we-work/our-fields-of-work/democracy-human-rights-and-freedom-of-expression/democracy-and-human-rights/> (접속일: 2018.04.07.)
- _____. 2016b. "Parallel worlds-conflicting goals: how arms policy is infiltrating the 2030 Agenda".
- _____. 2016c. "Peace and Security: Preventing conflict, sustaining peace and promoting human security".
- _____. 2016d. "Portfolio Overview 2016: Democracy and Human Rights".
- _____. 2016e. "Sida's Support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2003–2015: Perspectives, Evidence and Lessons Learned".
- _____. 2016f.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results in figures".
- _____. 2015a. "HRBA and Peace Building,". available at <https://www.sida.se/globalassets/sida/eng/partners/human-rights-based-approach/thematic-briefs/human-rights-based-approach-peace-building-summary.pdf> (접속일: 2018.04.06.)
- _____. 2015b. "Gender Mainstreaming". Stockholm: Sida.
- _____. 2015c. "Gender, Peace and Security". available at <https://www.sida.se/globalassets/sida/eng/partners/gender-tool-box/gender-peace-and-security-portfolio-overview-2015.pdf> (접속일: 2018.04.06.)
- _____. 2014. "HRBA and Democratic Governance," available at <https://www.sida.se/globalassets/sida/eng/partners/human-rights-based-approach/thematic-briefs/human-rights-based-approach-democratic-governance.pdf> (접속일: 2018.04.06.)

- _____. 2013. "Power Analysis A Practical Guide". Stockholm: Sida
- _____. 2010. "Sida's Guidelines for Media Development". Stockholm: Sida
- _____. 2006. "Manual for Conflict Analysis". Stockholm: Sida
- _____. 2005a. "Promoting Peace and Security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Stockholm: Sida
- _____. 2005b. "Sida at Work: A manual of Contribution Management". Stockholm: Sida
- _____. 2005c. "Sida at Work: Manual for the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follow-up of cooperation strategies". Stockholm: Sida
- _____. 2002. "Perspectives on Poverty". Stockholm: Sida.
- Svensson, Arne, and Wiveca Holmgren. 2003. "Sida's Control Environment—a Feasibility Study". SIDA, Department for Evaluation and Internal Audit. Internal Audit 04/01.
- The Swedish Government. 2017. "Sweden and the 2030 Agenda—Report to the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2017 on Sustainable Development".

〈독일 개발협력 및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참고문헌〉

- Berghof Foundation. 2012. "Mapping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Peace Negotiations and Mediation: Experience, Potentials, Gaps and Areas for Strategic Support".
- BMZ. 2017a. "Africa and Europe—A new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eace and a better future: Cornerstones of a Marshall Plan with Africa." Berlin: BMZ
- _____. 2017b. "Development Policy as Future-Oriented Peace Policy". Berlin: BMZ
- _____. 2017c. "Making a difference: Germany's development cooperation". Berlin: BMZ
- _____. 2017d. "Social protection for equitable development". Bonn: BMZ
- _____. 2016a. "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2016–2020" available at http://www.bmz.de/en/publications/type_of_publication/strategies/Strategiepapier363a_03_2016.pdf (접속일: 2018.02.23.)
- _____. 2015. "Disaster Risk Management". Berlin: BMZ
- _____. 2014a. "Gender Equality in Germa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at http://www.bmz.de/en/publications/type_of_publication/strategies/Strategiepapier340_02_2014.pdf (접속일: 2018.07.06)

- _____. 2014b. “Peace and Conflict Assessment: Factsheet on the “Peace and Conflict Assessment(PCA)” methodological framework,” available at https://www.bmz.de/en/zentrales_downloadarchiv/themen_und_schwerpunkte/frieden/Peace_and_Conflict_Assessment_Factsheet.pdf (접속일: 2018.06.05.)
- _____. 2013a. “Action Plan for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vailable at http://www.bmz.de/en/publications/archiv/type_of_publication/strategies/Strategiepapier330_01_2013.pdf (접속일: 2018.02.23.)
- _____. 2013b.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 Development Policy in the Context of Conflict, Fragility and Violence”. Berlin: BMZ
- _____. 2013c. “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www.bmz.de/en/zentrales_downloadarchiv/themen_und_schwerpunkte/menschenrechte/Leitfaden_PV_2013_en.pdf (접속일: 2018.04.26.)
- _____. 2013d. “The German Government’s 14th Development Policy Report”. Bonn: BMZ
- _____. 2012. “Good Governance in Practice”. Bonn: BMZ
- _____. 2011a “Connecting Human Rights and Conflict Transformation: Guidance for Development Practitioners”. Bonn: BMZ
- _____. 2011b.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 Bonn: BMZ
- _____. 2011c. “The German Civil Peace Service”. *Synthesis Report*, Volume III.
- _____. 2010. “Human rights in practice: Fact sheets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development cooperation”. Bonn: BMZ
- _____. 2009a. “Promoting Resilience States and Constructive State–Society Relations – Legitim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pecial 168.
- _____. 2009b. “Promotion of Good Governance in German Development Policy”. Bonn: BMZ
- _____. 2008. “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on Human Rights 2008–2010”. Bonn: BMZ
- _____. 2004. “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on Human Rights 2004–2007”.
- BMZ, GIZ. 2014. “Peace and Conflict Assessment”. Bonn: BMZ
- Böckenförde, M. 2010. “Protecting human rights: promoting gradual processes rather than de-manding quick results” *Die Aktuelle Kolumne*, 29 November 2010.

- Camacho, Luis A. 2014. "Understanding Regime Support in New and Old Democracies: the role of performance and democratic experience" Discussion Paper 10/2014.
- Chancen schaffen und Zukunft entwickeln. 2011. "Minds for Change, Enhancing Opportunities-Zukunft". BMZ.
- Faust, J. 2009. "Democracy in Crisis, or: just how development-friendly is democracy?", Die Aktuelle Kolumne, 30 March 2009.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2015. "Key points for the introduction of post-shipment controls for German arms exports".
- German Federal Government. 2018. "Preventing Crises, Resolving Conflicts, Building Peace".
- GIZ. 2017. "Knowing What Works".
- _____. 2016. "Working Together Worldwide".
- _____. 2015. "Cross sectoral programme 'Realising human righ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Bonn: GIZ
- _____. 2013.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Examples from the Field"
- GIZ/DIMR. 2014a. "The ABC of Human Right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uploads/tx_commerce/e-info-tool_abc_of_hr_in_dc.pdf (접속일: 2018.07.23.)
- _____. 2014b.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fileadmin/user_upload/Publikationen/E-Info-Tool/e-info-tool_human_rights_based_approach_in_German_development_cooperation.pdf (접속일: 2018.07.23.)
- _____. 2012a. "Annex to the ABC of Human Right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African Human Rights System" available at <https://www.giz.de/expertise/downloads/giz2013-en-abc-of-human-rights-bf.pdf> (접속일: 2018.07.23.)
- _____. 2012b. "Promising Practices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 Education – PACE: A rights-based vision among education officials in Guatemala" available at <https://www.giz.de/expertise/downloads/Fachexpertise/giz2013-en-pp-education-pace-GTM-bf.pdf> (접속일: 2018.05.25.)

- _____. 2009.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 GPPi. 2016. "A Fresh Look at Crisis Prevention".
- Gr vingholt, J, Julia L., and Schlumberger O. 2009. "The three Cs of Democracy Promotion Policy: context, consistency and credibility". GIE Briefing Paper 1/2009.
- Grimm, S, and Mathis O.L. 2017. "Democratization via aid? The European Union's democracy promotion in the Western Balkans 1994–2010", Externe Publikationen.
-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2011.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A More Effectiv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 OECD. 2015. "Memorandum for the DAC Peer Review of Germany, 2015" Paris, available at <https://www.oecd.org/dac/peer-reviews/Memorandum%20for%20DAC%20Peer%20Review%20of%20Germany%202015%20ENG.pdf> (접속일: 2018.06.18.)
- _____. 2006. "DAC Peer Review Germany 2006" Paris, available at <https://www.oecd.org/dac/peer-reviews/36058447.pdf> (접속일: 2018.06.08.)
- Scholz, Imme. 2014. "BMZ Charter for the Future – New development goals" *Die Aktuelle Kolumne*, 24 November 2014.
- Striebinger, K. 2016. "The missing link: values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democracy promotion" Discussion Paper 19/2016.
- The Federal Government. 2017.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Guidelines on Preventing Crises, Resolving Conflicts, Building Peace".
- _____. 2016.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 von Haldenwang, C. 2010. "Values and law: development policy needs to take a stand in the debate on basic rights, integration, and religion" *Die Aktuelle Kolumne*, 18 January 2010.

〈참고 사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www.oecd.org/>

독일개발협력공사 <http://www.giz.de/>

독일 <http://www.bmz.de/>

독일 인권연구소(DIMR)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en/homepage/>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http://sida.se>

스웨덴 Folke Bernadotte Academy <http://fba.se/>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http://www.achpr.org/>

부록

1. 현지조사 결과: 스웨덴

1. 현지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18년 5월 6일(일) – 5월 13일(일)

□ 조사 지역: 스웨덴 스톡홀름, 유플라 지역

□ 조사자: 윤지영(피스모모)

□ 조사 상세 일정

| 일자 | 일정(안) |
|---------------------|---|
| 5월 6일[Sun] | 인천 – 암스테르담 – 스톡홀름 (KL0856 00:55 / KL1105 06:50) |
| 5월 7일[Mon] 스톡홀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Stockholm Forum on Peace and Development 참석 |
| 5월 8일[Tue] 스톡홀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ul style="list-style-type: none">Policy Support Uni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Policy Support<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d Policy Specialist, Democracy and Human Rights 면담- Lead Policy Specialist, Peace and Security 면담 |
| 5월 9일[Wed] 유플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g Hammarskjold Foundation<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gramme Manager for Building Peace 면담- Programme Manager for Agenda 2030 면담 |
| 5월 10일[Thu] 스톡홀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ul style="list-style-type: none">- Peace and Development Programme 연구진 면담 |
| 5월 11일[Fri] 스톡홀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ul style="list-style-type: non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olicy Support 면담□ Folke Bernadotte Academy (Swedish agency for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retaria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면담 |
| 5월 12일[Sat] | 스톡홀름 – 암스테르담 (KL1116 17:30) |
| 5월 13일[Sun] | 암스테르담 – 인천 (KL0855 21:35) |

2. 현지조사 목적 및 주요방향

- 현지 조사 이전에 실시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주요 정책 예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수행 체계 내의 SDG16 이행 환경과 대응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SDG16 관련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전반의 법적/정책적 기반과 전략, △Sida를 중심으로 하는 공여기관 차원의 정책/전략/제도적 현황 및 △SDG16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 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KOICA의 SDG16 이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도출에 반영함.

3. 주요 조사 항목과 질문

조사 목표

- SDG16과 SDG16+, 세부 목표와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 SDG16 논의현황 및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관련 목표 운영 현황 파악
- 우리나라 SDG16 관련 국제개발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공통질문

- (SDG16 이행 정책/전략) 스웨덴은 SDG16 관련 정책/전략을 수립했는가(수립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국가/부처차원에서 관련 정책/전략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인가?
- (국제개발협력에서 법/정책에서의 PHD)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정책에 인권,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되었다면, 관련 법/정책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인가?
-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에서의 PHD) Sida의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에 인권,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PHD관련 대표 프로그램/프로젝트는 무엇인가?

4. 조사 방법과 대상

가. 조사 방법

- 유관 기관(정부기관, PHD 전문기관, 수행기관) 관계자 면담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나. 조사 대상

| 기관명 | 담당부서 | 면담 주요 내용 |
|-----------------------------|--|---|
| SMoF (외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olicy Suppor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전반 법적/정책적 기반 |
| Sid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licy Support Uni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Policy Support• Humanitarian Uni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16 PHD 이행 전략 및 사업수행 체계- SDG16 대표 사업 소개 |
| SIPR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ace and Development Programm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Stockholm Forum on Peace and Development 결과 follow-up- Sida 및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SDG16 관련 정책 분석 |
| Dag Hammarskjold Found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ilding Peace Programme• Agenda 2030 Programm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시민사회 및 민간의 SDG16 이행 전략 및 사업 수행 현황- 스웨덴 정부/Sida의 SDG16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
| Folke Bernadotte Academ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partment for Prevention, Peacebuilding and Governance• Secretaria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SDG16 이행 주요 성과- 스웨덴 SDG16 정책 동향 분석 |

5. 현지조사 내용

가. SIPRI Stockholm Forum on Peace and Development 참석

| | |
|-------|--|
| 일 시 | 2018년 5월 7일(월) ⁵⁴⁾ |
| 장 소 | 스톡홀름 Munchenbryggeriet |
| 주 제 | 평화의 정치(The Politics of Peace)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를 위한 포용성(inclusivity) 강조• 특히 여성의 참여는 평화구축(peacebuilding) 및 평화의 지속화에 있어서 필수적임. 최근 연구결과 추세에 따르면, 여성이 참여한 평화협정(peace agreements)의 경우 체결 후 10년 간 현저하게 높은 실행률을 나타냄.• 다양한 문화와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차이들을 대화와 포용에 기반한 평화의 생태계 (ecosystem of peace)로 조성하는 것이 권력정치에 기반을 둔 단일문화보다 강한 회복력을 지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 분쟁 예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가 시급함. 최근 발생하는 분쟁들의 특징은 급격히 여러 지역, 국가로 이동하거나 확산하는 것임. 평화구축 과정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분쟁 및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집단들에 대한 포용과 화해 및 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취약 국가들의 많은 국내 갈등들은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인한 청년들의 주변화(marginalization)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평화구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함.• 청년은 평화, 안보 및 개발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가능성 높음. 평화와 개발협력의 리더로서 청년들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국가 차원의 청년 네트워크 지원 혁신 자금 조달의 필요성 강조•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사회 공간 축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강조. 시민사회는 평화구축과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서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필수 주체임.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시민사회는 중요한 역할을 함.• 각 국별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평화구축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No one left behind 명제 실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전문성, 실행 역량과 소외 계층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의 가치를 인정해야 함.•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억압과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UN 결의안 1325 등과 같은 국제 규범 이행 강화 강조.• 개발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발전 없으며, 인권 없이는 개발과 평화 모두 없음을 강조(No peace without development and no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ne of the above without human rights) |

54) 포럼 전체일정은 5월 7일~9일 총 3일이었으나 조사자는 다른 기관들 면담 일정으로 인해 5월 7일 일정만 참석함.

나.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담당자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5월 8일(화) 10:00~12:00 / 14:00~16:30 |
| 장 소 | 스톡홀름 Sida 본부 회의실 |
| 면담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인권 분야 선임 정책 전문관 • emocracy and Human Rights 민주주의 분야 선임 정책 전문관 • Peace and Security 평화 및 안보 분야 선임 정책 전문관 |
| 주요 면담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ida의 SDG16 이행 관련 주요 정책과 전략, 사업 2. Sida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갈등관리) 관련 정책과 전략 3. Sida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갈등관리) 대표 사업 4. Sida와 외교부 및 다른 기관들과의 역할분담 5. Sida 사업 수행체계 및 실행 과정 6. Sida의 SDG16 이행 관련 강점, 약점, 도전과제 7. SDG16 이행 관련 한국 정부와 KOICA에 대한 조언 |

다. Dag Hammarskjold Foundation(DHF) 담당자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5월 9일(수) 13:30~16:00 |
| 장 소 | 웁살라 DHF 사무실 |
| 면담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ilding Peace 부서 프로그램 매니저 • Agenda 2030 부서 프로그램 매니저 |
| 주요 면담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HF 기관 소개 2. SDG16 및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DHF의 정책과 대표 사업 소개 3. Sida의 SDG16 이행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 4. Sida와의 협력 현황 및 지원 체계 5. SDG16 이행 관련 주요 역량에 대한 의견 6. SDG16 이행 관련 시민사회와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평가, 의견 |

라.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담당자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5월 10일(목) 11:30~15:30 |
| 장 소 | 스톡홀름 SIPRI 사무실 |
| 면담대상자 | Peace and development program 평화와 개발 프로그램 연구진 |
| 주요 면담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IPRI 기관 소개 2. SDG16 및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SIPRI의 연구 동향 3. Sida의 SDG16 이행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 4. 외교부, Sida와의 협력 현황 5. SDG16 관련 국제사회 주요 연구 동향과 흐름 6. SDG16 관련 데이터 수집 방안 7. SIPRI 포럼 주요 결과와 평가 의견 |

마. 스웨덴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담당자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5월 11일(금) 10:00~11:30 |
| 장 소 | 스톡홀름 외교부 회의실 |
| 면담대상자 |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r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매니저 |
| 주요 면담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스웨덴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체계스웨덴 외교정책과 개발협력 정책의 연계SDG16 및 인권, 민주주의, 평화(갈등관리) 관련 정책 수립의 역사SDGs 수립 및 16번 목표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기여와 역할Sida와의 협력 체계SDG16 이행 관련 한국 정부와 KOICA에 대한 조언 |

바. Folke Bernadotte Academy(FBA) 담당자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5월 11일(금) 14:00~15:30 |
| 장 소 | 스톡홀름 FBA 회의실 |
| 면담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Secretaria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개발협력전략부 프로그램 매니저 면담 |
| 주요 면담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FBA 기관 소개SDG16 및 인권, 민주주의, 평화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소개외교부, Sida와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SDG16 이행 관련 한국 정부와 KOICA에 대한 조언 |

6. 주요 조사 결과

- 스웨덴 개발협력 정책은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되고 있음. 인권 존중과 국제법은 스웨덴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개발협력 정책 역시 이를 따르고 있음.
- 스웨덴은 노르딕 국가의 정체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EU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선도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SDG16 이행의 기여를 동반함.
- 스웨덴의 개발협력은 빈곤 감소 및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 환경 및 기후변화를 우선순위 주제 분야로 두고 있음.
- 성평등과 인권 및 민주주의는 주류화(mainstreaming) 정책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목표 설정에 반영하고 있음. 성평등 및 인권 정책 마커 적용함.

- 평화 및 안보의 경우 스웨덴 정부가 빈곤의 다면성을 집중적으로 인식하면서 1990년대 초기에 ‘분쟁 예방과 포용적 평화’를 주요 외교 정책 요소로 포함시킴.
- 2001년 발표한 ‘Preventing Violent Conflict: Swedish Policy for the 21st Century’ 정책문서를 통해 분쟁 예방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014년 수립한 Aid Policy Framework에서는 개발과 안보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스웨덴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정책 틀 안에 반영됨. 스웨덴 원조의 6가지 하위 목표를 통해 분쟁과 분쟁상황이 각 목표 달성을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강조됨.
- 이후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평화와 안보가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스웨덴 개발협력 정책과 빈곤감소에 대해 주요하게 자리잡힘. 갈등예방 및 갈등민감성은 스웨덴 개발협력 정책 안에서 논쟁거리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함. 현재는 빈곤, 인권, 성평등, 환경 및 기후변화와 함께 스웨덴 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접근법으로 갈등 민감성 접근법 (conflict-sensitive approach) 또한 주류화 대상임.
- 스웨덴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우호적임.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평화 및 안보 분야 선도적 역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 외교정책과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다만 스웨덴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이슈는 사회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음.
- 사업발굴과 형성 및 수행 모든 과정은 각 국가별 대사관에서 외교부, Sida 직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국별 관리의 책임은 대사관에 있음. 본부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 및 갈등관리 전문가는 사업형성과정 및 수행, 평가 과정에서 대사관에서 검토 의견을 구할 때 검토를 하고 의견을 주게 됨.
-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은 외교부가 주도하며, Sida는 제안은 할 수 있으나 수립의 주체는 아님. 외교부가 수립한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로 구분되어 있음. 다만 Sida 내부 전략은 Sida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음.
- 주제별/섹터별 사업 목록은 세밀하게 리스트업하기 어려우며, 오픈에이드(openaid.se) 및 OECD DAC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별 샘플 조사를 권장함.

- Sida의 전직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매년 교육훈련 주간(training week)을 편성해 업무별 필요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SDG16 이행 관련해서는 노르딕 국가를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그룹(like-minded group)과의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경우 UNDP, OECD DAC의 활동이 활발함.
-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SDG16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나 일본, 호주 등 인접 국가들과 뜻을 같이하는 그룹(like-minded group)을 형성하여 하위 주제들로부터라도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기를 권장함.
- 평화 및 안보 분야의 경우 국별, 지역별 갈등 민감성에 따라 사업 수행 과정에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갈등관리 및 갈등분석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함. 지역(local) 전문가, 지역(local)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인권, 민주주의, 평화 및 안보 모두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영역임. 시민 사회 활동이 강화되고 보장되는 것이 인권, 민주주의, 평화 및 안보 강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됨.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 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Sida와 함께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인 FBA는 평화, 인권 관련 정책 연구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구축 활동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이니셔티브(Swedish Women Mediation Network, Nordic Women Mediators 등)를 주도하고 있음.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중요시 하는 스웨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2. 현지조사 결과: 독일

1. 현지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18년 6월 14일(목) – 6월 22일(금)

□ 방문 지역: 독일 본, 쾰른, 베를린

□ 조사자: 홍문숙(서울대학교)

□ 방문 조사 주요 일정(안)

| 일자 | 일정(안) |
|-----------|---|
| 6월 14일(목) | 인천 – 본 이동 |
| 6월 15일(금) | <u>1. DIE (German Development Institute)</u> • 독일 및 EU 자료수집을 위한 자료실 방문 (Dr. Hackenesch, Christine) |
| 6월 16일(토) | <u>1. 심층면담</u> • Lingnau, Hildegard 면담 (전 GIZ 인권국장, 전 OECD DAC 근무) <u>2. DIE ((German Development Institute)</u> • Transformation of Political (dis)order Team, Dr. Jörn Grävingholt |
| 6월 17일[월] | <u>본-쾰른 이동</u> <u>1. BMZ</u> • Human Rights, Gender and Disability Team 국장 및 담당자 면담 <u>2. Forum Civil Peace Service</u> • Academy for Conflict transformation, Dev Cooperations Officer 면담 • Agenda 2030/peace policy Officer 면담 <u>3. AGEH</u> • Peace and Human Right training Team 방문 |
| 6월 18일[화] | <u>쾰른-베를린 이동</u> <u>1. GIZ (German Corpor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u> • Governance and Conflict 팀 양자사업 어드바이저 면담 • Governance and Conflict 팀 프로그램 기획 및 질관리 어드바이저 면담 <u>2. DIE ((German Development Institute)</u> • Inter/transnational Cooperation Team, Dr. Julia Leininger 면담 |
| 6월 19일[수] | <u>1.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u> •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y 연구진(정책) 면담 <u>2.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u> • Asia Democracy Team(Myanmar, Sri Lanka, Cambodia) 담당자 면담 |
| 6월 20일[목] | 베를린-인천 이동 |
| 6월 21일[금] | 인천 도착 |

2. 현지조사 목적 및 주요 방향

- 방문 조사 이전에 실시한 독일 주요 관련 기관 예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독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수행 체계 내의 SDG16 이행 환경과 대응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SDG16 관련 △독일 국제개발협력 전반의 법적/정책적 기반과 전략, △BMZ/GIZ를 중심으로 하는 공여기관 차원의 정책/전략/제도적 현황 및 △SDG16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 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KOICA의 SDG16 이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도출에 반영함.

3. 주요 조사 항목과 질문

조사 목표

- SDG16과 SDG16+, 세부 목표와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 해외 SDG16 논의현황 및 주요 공여국의 목표관련 운영 현황 파악
- 우리나라 SDG16 관련 국제개발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SDG16 이행 정책/전략) 독일은 SDG16 관련 정책/전략을 수립했는가(수립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국가/부처차원에서 관련 정책/전략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인가?
- (국제개발협력에서 법/정책에서의 PHD)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정책에 인권,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되었다면, 관련 법/정책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인가?
-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에서의 PHD) BMZ/GIZ의 전략 및 사업수행체계에 인권,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PHD관련 대표 프로그램/프로젝트는 무엇인가?

4. 조사 방법과 대상

가. 조사 방법

- 유관 기관(정부기관, PHD 전문기관, 수행기관) 관계자 면담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나. 조사 대상

| 기관명 | 담당부서 | 면담 주요 내용 |
|---|---|---|
| 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 (BMZ) | Human Rights Policies in Germany and Europe Division Human Rights, Gender Team | 독일 국제개발협력 전반 정책적 기반 SDG16 PHD 이행전략 및 주요 성과 |
|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 Governance and Conflict Unit Governance and Human Rights Unit (Quality Assurance) | 인권과 거버넌스 사업수행 현황 거버넌스와 분쟁 사업수행 현황 관련 개발도구 조사 및 수집 |
| 독일인권연구소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y | 독일정부의 인권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현황분석 및 평가 |
| DIE (German Development Institut) | Inter/transnational Cooperation Team Transformation of Political (dis)order Team, Information and Library | 독일 분쟁과 평화, 인권과 거버넌스 정책 연구 및 평가결과 |
| Forum Civil Peace Service (ForumZFD) | Academy for Conflict Transformation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 독일 SDG16 평화 및 분쟁 동향분석 SDG16 시민사회 대표사업 |
| AGEH | Peace and Human Right training Team | 독일 SDG16 인권 및 평화 동향분석 SDG16 시민사회 대표 역량강화 사업 |
|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 (DRI) | Asia Democracy Team(Myanmar, Sri Lanka, Cambodia) | 독일 SDG16 민주주의 인권 동향분석 SDG16 시민사회 대표 민주주의 사업 |

5. 주요 조사, 면담 내용

가. BMZ 사회개발국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6월 17일(월) |
| 장 소 | BMZ, Bonn |
| 면담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권, 젠더, 장애 주류화 국장인권, 젠더, 장애 주류화 담당 지원 직원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독일 SDG 16 전략: 별도의 SDG 16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현재 독일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제개발에서의 인권, 평화, 거버넌스 관련 전략들을 SDG 16을 고려하여 BMZ가 새로 수립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등은 kfw, GIZ, Inwent 등과 같이 내년에 준비 할 예정임. 2018년 12월까지 SDG 16을 고려하여 독일의 국제개발 인권전략 2030을 발간예정임.국제개발과 인권전략의 주요 내용: 2010년 전략의 주요 내용: 독일 개발에서의 HRBA 접근법에 대한 설명, HRBA와 지속가능개발 논의, HRBA와 MDGs; 인권과 빈곤의 관계를 강조함.HRBA 접근법과 전략: ‘11년부터 HRBA 주류화 적용, 인권 대표프로그램의 확대, 다층위적인 접근법, 포괄적인 개발강조, 개발도구 확대 강조 경향, 최근 양자사업의 철학적 근간으로서 인권증진, 프로그램간의 목표의 충돌의 문제 발생, 타 다자 및 양자기관과의 협력 등 다층위적인 협력전략 수정 필요성 확대를 다룸.독일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전략의 연계: 독일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정당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전략을 수립하여 (i) 독일 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강조, (ii)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위한 다면적 접근법 적용, (iii) 국가별 맥락을 고려한 독일 개발협력의 정치참여 프레임워크 구축, (iv) 개발협력정책 협력 및 정치적 참여의 고려 사항으로서 위기 및 도전과제, (v) 적극적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력 강조, (vi) 성공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시너지 창출 – 다양한 개발협력의 정책 및 프로그램 도구의 적용을 설명함.독일 민주적 거버넌스의 3대축: 첫째,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 둘째, 시민사회 구축, 셋째, 국가의 역량 강화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자사업을 통한 국가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협력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통합한 제도개선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굿거버넌스 분석 기준: 분석기준을 (i) 지속가능개발 정책 및 친환경정책, (ii) 인권 보호 및 증진, (iii) 민주주의 및 법치, (iv) 국제커뮤니티 협력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유형과 성격을 분석함인권, 평화, 분쟁관련 도구: 양자협력을 위한 인권·젠더 가이드라인에 인권주류화 도구 및 인권점검 도구 등 개발하여 적용. 독일 개발협력의 인권, 평화와 분쟁 프로그램 도구로서 정부간 정치적 대화, UN 인권시스템에 기반한 인권, 평화 접근법, 평화 및 분쟁 어세스먼트 강화, 시민사회지원 강조, 사업수행기관/수행자에 대한 HRBA의 엄격한 적용, 국제인권시스템 및 BMZ의 인권기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활용한국 개발협력에서의 정책적 제언: 명확한 정책적 기반수립 및 상위부처의 확실한 인권개발협력지지 명시가 핵심. 부처에서 명확한 지지가 없으면, 정치적, 외교적 |

| | |
|------|---|
| | <p>문제발생 시 원조기관의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음을 유의 할 필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개발협력에의 전략 및 프로그램 차원 제언: 초기부터 개발도상국가의 정치, 법, 정책개혁에 직접적인 개입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 교육, 행정제도 개선 등에서 인권 및 민주주의를 고려한 대표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단계적으로 차차 법적,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도 가능함. |
| 수집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Z Human Rights in Development 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Human Rights Mainstreaming Instruments German development thematic evaluation report and others |

나. GIZ (German Corpor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담당자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6월 18일(화) |
| 장 소 | GIZ (German Corpor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onn |
| 면담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vernance and Conflict 팀 양자사업 어드바이저 Governance and Conflict 팀 프로그램 기획 및 질관리 어드바이저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및 분쟁 프로그램/프로젝트 현황: 거버넌스 및 분쟁관련 전문가와 담당자들은 Sector Department 및 sector & global program department에 위치함. 2018년 6월 현재 GIZ은 29개의 중점협력국가 및 14개의 추가적인 국가에서 거버넌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9개 중점협력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선정된 2-3개의 중점협력분야에 거버넌스가 포함된 경우임. 지역적 우선순위는 50%는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프로그램 구성요소: 지방분권화,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 공공재 정이 주요 3대 분야로서 가장 많은 사업이 수행되었음. 법치(Rule of Law), 법에의 접근강화(access to justice), 부정부패척결(anti-corruption), E-governance 등의 주제로 확장 중임. 최근 지방분권화는 핵심 분야로 유지하되, 기업과의 협력정책 개선, 국내재원조달, 조세제도개혁들이 새로운 세부주제로 최근 부각되고 있음 규범적인 프로그램/프로젝트 목표 설정: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사업을 기획할 때, 가급적 독일의 규범적인 접근법(normative approach in development)가 녹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포괄적인 개발사업, 형평성 지표, 시민사회 참여 매커니즘 포함과 같은 실제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인권, 평화와 분쟁, 민주주의 프로그램 형성단계의 중요성: 규범지향적인 개발협력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술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에서 자주 배제되기도 하여, GIZ 조직 내의 전략팀, 주제별 전문가가 꼼꼼히 작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분쟁국가/지역에서 기본적인 인권위반사항이 없는지 조직, 인력, 내용차원에서 체크하고 있음. BMZ/GIZ의 평화와 분쟁, 거버넌스 프로그램 도구: 독일의 거버넌스 정책과 프로그램은 (i)국가의 역량강화, (ii) 시민사회 강화, (iii) 법적, 제도적, 기관차원의 통합적/협력적 프레임워크 강화를 3대 축으로 선정함. BMZ는 Governance readiness 분석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력국가의 상황분석, 국가기관 역량분석, 협력집중분야, 협력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조사함. GIZ의 섹터팀의 분석작업: conflict analysis, human rights analysis, gender analysis |

| | |
|------|--|
| | <p>등에 집중함. GIZ은 거버넌스 사업 중 난이도가 높은 분쟁국가/분쟁지역 사업은 Conflict tool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 High risk assessment도 실시하는데 사업기획 당시 가급적 상세하게 분쟁관련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획하려고 함. GIZ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impact monitoring system)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분쟁국/분쟁지역사업은 Conflict sensitive monitoring system) 활용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e-minded Groups 양자 및 전문가 그룹의 중요성: GIZ 입장에서는 다자기구들은 워낙 국제적으로 국제법 근간을 만들고 의제를 띄우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자기구보다는 양자기구들과 관련 학계 및 연구소들 간의 지지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함. 실제 이러한 지지그룹들과 연구, 가이드라인 수립, 독립평가를 실시하면서 인권관련 아덴다가 실제 실현이 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과 노력을 사전 고려하고 배분할 필요가 있음 |
| 수집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pdated Organizational Chart Conflict analysis tool |

다. German Institute of Human Rights 전문가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6월 19일(수) |
| 장 소 | German Institute of Human Rights, Berlin |
| 면담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y 연구진(정책) 면담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y 연구진(실무) 면담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인권연구소의 역할 및 국제팀의 역할: 독일 국내에서는 다양한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사업 수행을 우선순위 두고 있지 않음. 국제분야는 각종 부처/기관의 FP를 중심으로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최우선의 역할로 선정함. 국제개발 분야에서의 우선순위 및 활동: 독일의 국제개발과 인권 전략 수립, 액션플랜 수립, 연구작업 리딩을 BMZ, GIZ, 독일인권연구소가 협력 및 역할 분담 (BMZ는 예산 지원, 정책대화, GIZ은 프로그램 전략화, 각종 툴 개발, 인권연구소는 법적, 제도적 연구를 수행함).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독일 외무부, 개발협력부, GIZ 및 KfW와 2000년대 중반부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왔음 2004년 이후부터는 개발협력 전략에서 인권이 더욱 강조되었고, SDG 16을 모멘텀으로 사업수행체계 (특히, 협성, 심사, 평가)체계 등에서 인권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강조하고 있음. 일반적인 impact monitoring 뿐 아니라 인권/젠더 모니터링을 도입한 것이 최근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함. 협력국과의 인권분야 협력 전략: 협력국 자체가 “독일 개발협력은 인권기반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외교부에서 자주 이를 언급해서 “인권개발 협력”이 당연하다는 협력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인권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에서는 “Your agenda”, “Your problem”이라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상당히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국제인권조약 및 각종 협약에서 어떤 것을 비준했는지 알아보고 확인하고, 국제인권조약 및 각종 협약에 근거해서 common discussion point를 발굴함. 인권역량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는데, 법, 정책, 제도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개발협력이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협력(학계, 엔지오,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인권이 중장기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독일 시민社会의 역량강화 자체를 위한 지원을 약 15년간 지원해왔음. 한국 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의 제안사항: SDG 16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음. 관련 개발협력정책만 만들다 2년을 보내고 나면, |

| | |
|------|--|
| | <p>경험이 축척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에 걸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먼저 론칭시키고 그 과정의 시사점을 정책에 녹이는 방법도 있음. 해당 부처와 원조기관의 스마트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음. 인권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외교부의 초기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책적 지지를 외교부가 해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원조기관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워크숍 및 국제연수 개최 및 활용: 원조기관에서는 특별연수를 실시하거나 국제회의/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하루정도는 실용적인 인권펀드 매니지먼트 사례 공유, 운영 문제, 펀드의 규모, 펀딩 방식, 시민사회 참여 목표와 절차 등을 세심하게 워크숍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유의사항: 개발협력에 종사하는 원조기관 공무원, 전문가, 파견자들이 기본적인 인권 프로토콜을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함. 특히 개발협력종사들의 매춘, 성희롱 및 아동 성폭력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조기관이 아주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및 원조기관의 기관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함. |
| 수집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rman Institute of Human Rights 최신 정책자료 ABC Human Rights to Development Promising Practices on HRBA in Development |

라. DIE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전문가 면담 및 전문자료실 방문

| | |
|--------|--|
| 일 시 | 2018년 6월 15일(금), 6월 18일(화) |
| 장 소 | DIE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Bonn |
| 면담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 Jörn Grävingholt (Transformation of Political (dis)order Team) Dr. Julia Leininger (Tlnter/transnational Cooperation Team)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E 연구소: 인권, 평화, 분쟁과 거버넌스 관련 최근 연구 소개함. 인권 관련 핵심 연구는 모두 2000년대에 이루어지고 최근은 실제 프로그램에서의 구현에 집중하는 분위기 (당연히 인권, 젠더, 장애등의 평가연구 활발) 최근은 분쟁과 거버넌스, 민주화, 독일의 정치적지원에 관련 연구 및 인덱스 작업 활발 (2017-18 기관차원의 대표연구는 SDG 16과 전환국들의 정치임) BMZ, GIZ과 연구소의 협력: 국가분석작업에서 BMZ가 담당하고 있는 인권상황분석, 분쟁분석, 위기분석 등이 아주 중요하고 연구소에 이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BMZ 보고서를 인권과 거버넌스 관련 “정치적 분석” (정치그룹 분석, 정치적건강관계 분석, 폭력 및 분쟁상황 분석,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과 차별분석, 정치적 모멘텀 조사)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함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 지원의 두 축 강조: GIZ은 전통적으로 거버넌스, 민주주의증진 및 지원, 정치적 참여강화, 분권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최근 시민사회의 공간이 줄어들고,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독일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i) 정부의 효율성 강화, (ii) 시민사회 지원, (iii) 통합적인 법적, 정책적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지원된다고 할 수 있음. 초기단계 PHD 도입을 위한 전략 제언: 한국의 중점협력국가 중 이미 개혁개방에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국가부터 PHD 전략을 도입하는 것을 환영함. KOICA가 권리기반, 평화친화적으로 개발협력을 하고자 하고 관련된 방법과 도구들이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하고 서로 설명하고 정보를 많이 취합하는 작업을 해야 함. KOICA 다양한 접근법과 도구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협력국을 상대로 절대로 협의를 진행 할 수 없음. 정치적, 외교적 고려사항: 협력국가에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유럽처럼 할 필요가 없고 국가의 맥락에 따라서 프로그램/프로젝트 안에 상세히 녹이면 되지만 종종 심각한 인권유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원칙에 대해서 외교적 의지 혹은 우려를 반드시 표현해야함. 따라서 한국의 SDG16 전략은 원조기관의 사업전략으로 남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에 적용을 위한 제언: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녹이는 것임. 독일은 보건, 교육 등에서 가치지향적 접근법을 십분 활용해 왔고 최근에는 노동과 고용, 식수, 경제 등이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음. 예를 들자면 water system이 아니라, water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이고 물 관련 다양한 부처의 법 개정, 물 관련 부처 및 기관 협력 매커니즘 수립 및 강화, 권리로서 식수사업 강화, 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보장, 여성참여 비율보장 등으로 확장하고 있음.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함. 보건, 교육, 환경의 경우에도 보건 시스템의 분권화, 교육권과 교육분권화, 환경 거버넌스 등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가치를 포함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개념적 및 주축그룹 역량강화의 중요성: 한국이 아시아 도너로서 (중국의 포지셔닝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를 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환영하며, 한국에서 증진/지원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이 무엇이고 한국의 사례가 무엇인지 학술적, 정책적 정리작업을 진행 할 것을 제안함. 독일의 경우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에 대한 일반연구, 정책, 프로그램 관련 대화를 2-3년에 한번 기획하고 다자, 양자, 멀티바이, 학계를 활용함. 가치지향적인 사업접근법은 결국 핵심 오피니언 리더 및 연구자, 기획가들이 동의하고 지지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함. |
| 수집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E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ource Center에서 관련 연구 및 자료 15건 수합 |

마. 평화전문단체 Forum Civil Peace Service (ForumZFD)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6월 17일(월) |
| 장 소 | Forum Civil Peace Service, Köln |
| 면담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gram Officer, Academy for Conflict Transformation 면담 Officer, Agenda 2030 and peace policy 면담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배경 및 특징: 독일은 당시 이미 30여년간의 개발협력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전통적으로 기술협력, 직업교육훈련, 농업, 최근에는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90년대 말 독일의 평화 무드에 힘입어 대표 평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 하였던 과정에서 forumZFD(Mitgliedschaften und Netzwerke)를 설립함. 평화교육에 집중하던 기관들이 모여서 “army of peace builders” 를 만들고자 하는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기관을 설립함. 1999년 즈음에는 독일의 개발협력에서 이미 국제개발에 대한 일반/분야별 교육을 받은 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음. 평화전문기관으로서 개인들이 평화를 중심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음.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 역량강화 및 연수, 정책 로비 및 어드보카시(특히 국회, 정당, 부처에 대한 정책옹호를 강조함). 현재 9개국-11개국에 직접사무소를 열고 평화와 분쟁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현지 시민사회와 컨소시엄 맺기보다는 현지에 직접 현지사무소를 두는 방식으로 일함. 교육을 받은 인력들을 중심으로 현장에 1-3년 기본으로 해외파견을 보내고 있음. 평화를 대화할 수 있는 역량, 평화 감수성, 기관/조직의 평화역량을 키우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임. ForumZFD 평화교육의 특징 및 주요 내용: forumZFD는 15년간 집중적으로 평화와 분쟁관련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해온 경험과 분쟁 및 평화관련 국제지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민평화서비스포럼 내에 분쟁전환아카데미(Academy for Conflict Transformation in the Forum Civil Peace Service)를 설립하여 평화전문 교육기능을 민간에 설립함. |

- 아카데미의 목표는 국제평화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쟁에 민감한 국제개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음. 특히, 본 아카데미는 현지의 현지 정부 및 시민사회 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여, 중장기적으로 협력국가의 평화가 그들 스스로 안착 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ForumZFD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영어, 독일어 과정)

과정 유형

- 전일 과정
- 파트타임 과정
- 특수과정(요청)

모듈

- 모듈 1 분쟁완화/전환을 위한 평화컨설턴트 훈련
- 모듈 2 분쟁 전환 방법론
- 모듈 3 분쟁 시뮬레이션 및 상황분석평가

분쟁과 평화 재건 전문가/실무자 과정 세미나

- 세미나 1 분쟁 시스템 및 분쟁의 사회심리적 분석
- 세미나 2 평화 및 분쟁분야- 분쟁국가/지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세미나 3 효율적인 3자 개입 전략
- 세미나 4 분쟁전환을 위한 혁신적인기술
- 세미나 5 과거와 조우하기
- 세미나 6 분쟁상황을 고려한 난민 프로그램
- 세미나 7 평화심리학

• 독일정부의 시민사회 국제평화 프로그램(Civil Peace Service, CPS)

- ✓ 독일정부(BMZ)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지원에 일환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평화, 인권 개발전문 기관 및 단체들을 지원하는 Civil Peace Service (CPS) 프로그램을 운영 중
- ✓ 모든 CPS 프로젝트는 비폭력 분쟁 해결을 목표로 협력국가의 다양한 시민사회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폭력적인 분쟁예방, 폭력 감소,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3대 세부목표로 선정하였음.
- ✓ 본 프로그램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CPS experts)는 협력국가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현장과 협력하며 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강보하며, 현재 42개국에서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음.
- ✓ 독일의 평화와 인권관련 총 7개 기관(GIZ를 포함하면 8개기관)이 2년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음. 독일 BMZ는 본 펀드를 운영하면서, 평화와 인권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인권전문 시민사회 단체 1개, 평화전문 시민사회단체 1개를 같은 국가에 파견하여 균형을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으로 정부 및 시민사회 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기관들이 시민평화서비스그룹(Civil Peace Service Group)을 설립하였음.
 - Association of Development Service (AGEH)
 - EIRENE- International Christian Service for Peace
 - Bread for the World – Protestant Development Servic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 - KURVE WustrowEducation and Meeting Centre for Non-Violent Action - Peace brigades international and World Peace Service (WFD) - Peace organisations Action Committee Service for Peace (AGDF) - Forum Civil Peace Service (forumZFD) |
| 수집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어드보커시 및 시민사회 현황자료 • Civil Peace Service (CPS) 관련 현황자료 및 보고서 |

바. 평화 및 민주주의 전문단체 AGEH 기관방문

| | |
|-------|---|
| 일 시 | 2018년 6월 17일(월) |
| 장 소 | AGEH, Köln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H(Arbeitsgemeinschaft für Entwicklungshilfe)는 1959년에 가톨릭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까지 6000명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에 파견해왔음. • 지난 20년간 국제개발에 수요가 꾸준히 증각하면서 국제개발기관/단체와 개발협력전문가 개인들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a recognised personnel service provide)으로 독일의 국제개발에서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임. • 전문가 양성 및 교육(평화, 인권과 국제개발), 전문가 파견(파견전, 파견후) 및 관리, 독일 난민정책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기관 특수성상 EU 및 독일의 기독교 가치를 가진 전문가들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파견을 위한 전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AGEH 교육의 주요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AGEH 2018 세미나 프로그램(독일어 과정, 영어과정의 경우 요청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 1 평화와 개발 • 모듈 2 국제협력의 기초 • 모듈 3 개념, 접근법 그리고 적용에서의 주의할 사항 • 모듈 4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 모듈 5 독일 적용 프로그램 (난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 모듈 6 전문가역량강화(BMZ, AGEH, Bread for World 내부직원 세미나) <p>* 본 세미나 프로그램은 BMZ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p> </div> |
| 수집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및 인권관련 교육 및 어드보커시 자료 |

사. 인권 및 민주주의 전문단체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 면담

| | |
|--------|--|
| 일 시 | 2018년 6월 19일(수) |
| 장 소 |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 Berlin |
| 면담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ia Team (Myanmar, Sri Lanka, Cambodia) 담당자 면담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현황: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고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부를 선출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2005년에 기관 설립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민주주의 지원활 재원: 독일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기관. 독일 외무부 (BMZ 아님), 독일 연방정부, 영국 DFID, 스위스 개발협력부, 스웨덴 sida(국회정치에 대한 작은 연구 진행 수준)등에게 펀딩을 받고 있고 독일 외무부가 전체 펀딩에 70% 이상을 차지함 •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주요프로그램: 민주적 참여적 거버넌스가 곧 인권이며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확신에 의해 운영됨. 선거, 의회, 헌법, 민주적 가치와 같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세계의 민주적인 통치를 촉진함. 이를 위해 상세한 현장 조사에 기반한 신중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주주의 상황 보고, 민주적 인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개선에 대한 전문적 정책 조언 제공, 국내 행위자, 언론 및 관련 국제기구의 변화를 지지하며 가능한 국가 기구와 협력함. 협력국가의 헌법개정, 선거, 국회지원, 민주주의 스탠다드, 소셜 미디어 및 민주주의, 관련 교육 및 협력국의 민주주의 리더양성함. • 주요 협력국가: 중동의 봄 상황에서 단체가 탄생하여 전통적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이집트, 튜니지, 레바논 등)에 집중하면서 기관이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스리랑카의 헌법 개정활동, 미얀마의 민주주의(선거, 시민사회, 민주주의 인재양성)에 집중함. • 대표 프로그램 사례: 미얀마 선거, 법치, 교육 및 민주주의 후속 세대 지원사업 사례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독일 정부와의 협력: 실제 기관의 시니어들이 관련 의제를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외무부에는 Political Stabilization Unit 이 있어 이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BMZ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펀드를 통해서 협력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민주주의 및 분쟁관련 재원은 주로 연방정부, 외교부, BMZ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 • GIZ와의 협력: GIZ과의 협력은 용이하지 않음. 거버넌스 사업의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직접적으로 인권이 거버넌스 안에 녹는 것에 대해서는 긴장관계가 있어 CPS 프로그램 선호하지 않음 • 시민사회지원 강화 흐름: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시민사회의 공간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공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지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 수집자료 | 독일의 민주주의(법치, 행정제도 개선, 공공데이터)관련 자료수집 |

6. 주요 조사 결과

가. 독일 SDG 16 정책환경

- 최근 독일정부는 개발협력백서를 통해 독일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은 범정부차원의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SDGs의 정신과 목표를 실현하며, (i) 양자 및 다자원조를 통한 빈곤 및 기아 감소, (ii)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 (iii) 지역적/국가적 환경, 자원, 기후변화, 보건, 교육 등의 글로벌 공공재의 강화, (iv)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v) 개발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주체들과의 대화와 지식공유 촉진을 5대 분야로 선정함.

- 2017년 Development Policy as Future-oriented Peace Policy를 발표하고 SDGs 2030 의제 실현을 위한 5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i) 개념적으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ii) 분야별 의제는 지속가능개발 및 빈곤완화을 중심에 위치하며, (iii) 최우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 도시화, 이주의 긍정적인 효과 활용, 평화와 분쟁, 민주화, 기후변화 및 자원보호를 선정하였음.
- SDGs 2030 의제 실현을 위한 크로스커팅 주제로서의 **초국가적, 국가적, 지역적 평화**를 강조하고 있음. 최근 발표된 평화와 관련된 3번째 로드맵은 ‘개발 기회를 촉진하고, 난민 발생의 원인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호한다(Promoting development opportunities, mitigating the causes of displacement, safeguarding peace)’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개발협력분야로서 평화와 분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현지조사 결과, 별도의 독일 SDG 16 전략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나, 국제개발에서의 PHD 정책 및 전략 독일의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발협력에서의 개념화하여 2018년-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개혁을 진행 할 계획으로 알려짐.
- 독일은 협력국 국민이 시민권, 정치적 권리를 주장, 민주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조직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 과정과 제도,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고 강조 함.
- 궁극적으로 **인권**은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툴로써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HRBA)를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현재 수행중인 대표 프로그램 및 주요분야/섹터에도 인권목표와 지표가 포함된 프로젝트들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권에 대한 존중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버넌스의 형태로서 **민주주의**를 간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협력의 분야로서 **민주화**를 더욱 강조 할 예정임.

나. 독일 BMZ-GIZ의 인권 전략과 프로그램

- 독일의 인권전략은 개발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침뿐만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임.

- 2004년과 2008년 인권에 대한 개발정책 3개년 시행계획(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을 수행함.
 - 2011년 개발협력 주무기관인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독일 개발정책에서의 인권전략’ 을 채택함.
 - 독일정부와 협력대상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협약에 근거해 개발협력에서도 인권 규범 준수의 의무를 부과함.
- 독일은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였고 협약의 이행을 국가 차원에서 법적인 구속력 있는 의무로 수용함. 독일이 활용하는 인권원칙 및 인권기준은 아래와 같음.
- 참여와 역량강화(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비차별과 기회의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인권기준: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품질(Quality), 문화적 수용성(Acceptability)
- HRBA 접근법과 전략
- ‘11년부터 HRBA 주류화 적용, 인권 대표프로그램의 확대, 다층위적인 접근법, 포괄적 인 개발강조, 개발도구 확대 강조 경향, 최근 양자사업의 철학적 근간으로서 인권증진, 프로그램간의 목표의 충돌의 문제 발생, 타 다자 및 양자기관과의 협력 등 다층위적인 협력전략 수정 필요성 확대 필요함. 2018년 12월까지 SDGs 2030을 정책지향점으로 선정하여 작성한 BMZ 인권전략 2030을 발간 할 예정임.
- 사업 형성 및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인권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함.
- 비차별과 평등(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 국가는 인종, 연령, 성별, 장애 유무, 종교 등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차별적인 모든 정책과 법률,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등한 접근) 정부 및 개발협력 자원은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쿼터제나 보조금 지원

등을 한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데이터 축적 지원) 배제, 차별을 감시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개발협력사업의 인권기반접근에 있어 중요함.
- (인식제고)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인, 지역 지도자 등이 차별철폐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지원

○ 참여와 포용(Participation and Inclusion)

- 인권기반접근은 ‘참여’를 선택에서 권리로 전환시켰으며 참여를 비차별과 책무화도 연계함.
- (민주적 참여 지원) 인권기반접근은 협력국의 지역, 지방, 국가수준에 있어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조직, 정책, 법제도 개혁을 지원
- (파트너십) 개발협력사업은 현지기구, 중앙 및 지방 의회, 노동조합, 국가 인권기구, 옴부즈맨,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야 함.
- (역량강화) 개인과 집단의 역량강화를 장려하여 개발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기구, 국가의 정치구조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
- 책무성(Accountability)
 - (협력국 시스템 개발 지원) 인권기반접근은 프로그램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파트너 국가의 역량과 시스템 개발 지원을 강조함.
 - (참여를 통한 책무성 제고) 인권기반접근은 취약계층 스스로의 감시 및 책무성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참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

□ 개발협력에서 인권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 접근을 병행하고 있음.

- **인권기반접근(HRBA)의 주류화:** 모든 개발협력 분야에 인권적 접근을 포함. 건강, 교육, 농업 등 다른 개발협력 부문에서 인권 기준과 연관된 목표와 지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프로젝트를 협의, 사업의 시행과 평가를 수행함.
- **협력국의 직접적 인권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 수행:** BMZ는 협력국가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원조기관은 거버넌스에서의 특정 인권 프로그램(법치, 분권화, 정보투명성 등)을 실시하고, 시민사회를 통해 인권증진에 직접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수행함.

- **다층적 접근을 통한 협력:** 협력국, 지역 단위,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대화를 병행함. BMZ는 인권관련 다자 및 협력국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인권증진을 정책대화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원조기관들의 경우 거버넌스 및 모든 분야별 사업에 인권관련 목표 및 지표가 포함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고, 이 단계에서 협력국의 중앙부처, 지방 정부 등과의 인권관련 대화를 진행하도록 권장함.
 - **포괄적인 개발(inclusive development):** 여성, 유소년, 원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을 강조함. 특히, 여성은 인권주류화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기관, 사업 층위에서 모두 주류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주류화를 강조하고 있음. 독일정부는 최근 정책적으로 원주민/선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개발도구상자(development toolbox) 활용:** 인권관련 정치적 대화 실시, 인권 기준 작성, 평화 및 분쟁평가 수행, 재정지원, 시민사회, 책무성, 모니터링 및 평가 구축을 실제 적용하고 있음.
- 인권기반접근의 주류화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섯가지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음.
- i) 정책 일관성, ii) 정부와 시민사회의 행동 촉진, iii)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iv) 인권 위험요소와 영향력 평가, v)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기반 접근을 주류화하고 있음.
- 직접적 인권증진을 위해 독일 BMZ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특히 Do No Harm을 지정하여 ‘기술협력/자금협력에 대한 인권/젠더기반접근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에서 ODA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Do no harm’ 지침 제시
 - 이러한 지침에 기반한 접근은 i)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기준(Human Rights Standard)과 ii) 인권원칙을 근간으로 함.
 - GIZ, KfW 등이 사업형성단계에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인권기준/원칙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 모든 사업에 주류화/대상적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지침

[표 51] BMZ 인권/젠더기반접근 가이드라인 상 ODA사업 인권 위험요소

| 위험요소 | 내 용 |
|---|---|
| 특정그룹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사업으로 인해 기존 협력국에 존재하는 취약그룹의 소외가 심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종족, 연령, 장애,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그룹(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존재 - 자원/서비스/의사결정 접근성 측면에서 특정그룹의 소외 및 차별 - 정보의 소외/언어장벽/사회적 계급으로 소외 - ODA 통해 제공되는 식수/보건서비스 이용비를 부담 어려운 극빈층 |
| 참여권의 침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의사결정과정에 최대한 취약계층(장애인/선주민)을 포함, 의견수렴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함. - 관련 노력과 관련한 유엔의 개념으로는 원주민에 대한 조작이나 강요가 없어야 하며, 협의 과정을 거치기 이전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참여와 협의가 축이 되는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 비자발적 이주 및 퇴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사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퇴거를 최대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할 경우 적절한 법적 보호 및 고지,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 노동권 침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사업은 아동노동, 열악한 근무환경 등 노동권 침해를 방조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의 사업 추진 시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 |
| 인권고려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보유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부담자인 정부/공공기관의 역량강화 • 정부에 인권법 준수를 요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역량강화 • 취약계층 역량강화 및 인권 인지제고교육 • 취약계층 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 |

○ 프로그램단위에서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 위험요소 및 파급 효과 파악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독일 ODA 중점분야별로 인권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 제시

- 인권 위험요소란 수혜자/수혜그룹에 대해 발생 가능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파급

효과를 의미하는데, 분야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임.

- 동시에 인권 강화를 위한 방안(Ways to Strengthen Human Rights) 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업진행자가 선택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형성단계에서 따라야 할 인권 강화 유의사항(Human Rights Due Diligence Requirements)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 및 평가 참고가능
 - 젠더, 참여적 개발, 분쟁, 환경관련 가이드라인과 병행하여 활용하며, 가이드라인 간 충돌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BMZ 인권국과 각 섹터국(BMZ Human Rights Division and Sector Division)간 협의 실시]

국제개발에서의 독일정부-독일인권연구소-GIZ 협력 매커니즘

- 독일 인권연구소의 역할 및 국제팀의 역할: 독일 국내에서는 다양한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사업 수행을 우선순위 두고 있지 않음. 국제분야는 각종 부처/기관의 FP를 중심으로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최우선의 역할로 선정함.
- 국제개발 분야에서의 우선순위 및 활동: 독일의 국제개발과 인권 전략 수립, 액션플랜 수립, 연구작업 리딩을 BMZ, GIZ, 독일인권연구소가 협력 및 역할 분담 (BMZ는 예산 지원, 정책대화, GIZ은 프로그램 전략화, 각종 툴 개발; 인권연구소는 법적, 제도적연구를 수행함.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독일 외무부, 개발협력부, GIZ 및 kfw와 2000년대 중반부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왔음 2004년 이후부터는 개발협력 전략에서 인권이 더욱 강조되었고, SDG 16을 모멘텀으로 사업수행체계 (특히, 형성, 심사, 평가) 체계 등에서 인권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강조하고 있음. 일반적인 impact monitoring 뿐 아니라 인권/젠더 모니터링을 도입한 것이 최근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함.
- 협력국과의 인권분야 협력 전략: 협력국 자체가 “독일 개발협력은 인권기반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외교부에서 자주 이를 언급해서 “인권기반 개발협력”이 당연하다는 협력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인권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에서는 “Your agenda”, “Your problem”이라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상당히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국제인권조약 및 각종 협약에서 어떤 것을 비준했는지 알아보고 확인하고, 국제인권조약 및 각종 협약에 근거해서 common discussion point를 발굴함.
- 인권역량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최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특히, 국가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엔지오 및 현지 학계화의 협력이 필수임. 양자 사업을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협력(학계, 엔지오,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인권이 중장기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독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자체를 위한 재원 (예: Civil Peace Service, CPS 사업)을 약 15년간 운영함.

□ 인권 사업수행체계 및 단계별 특징

- 인권전략은 개발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침뿐만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⁵⁵⁾으로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인권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GIZ, GIZ International Services, KfW 및 그 하위기관 DEG에 모두 적용됨.
 - BMZ는 각 시행기관의 인권전략 수행을 평가함.
 - 독일의 CSO는 자국 ODA의 인권적 접근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사후감시 활동 시행
- 독일 BMZ는 ‘기술협력/자금협력에 대한 인권/젠더기반접근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Gender, in Programme Proposals for Bilateral Germa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에서 ODA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Do no harm’ 지침 제시
 - 이러한 지침에 기반한 접근은 i)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기준(Human Rights Standard)과 ii)인권원칙을 근간으로 함.
 - GIZ, KfW 등이 사업형성단계에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인권기준/원칙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 예비조사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 위험요소 및 파급효과 파악(Human Rights Risks and Impacts)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독일 ODA 중점분야별로 인권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 제시
 - 인권 위험요소란 수혜자/수혜그룹에 대해 발생 가능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를 의미하는데, 분야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히

55) 2004년과 2008년 인권에 대한 개발정책 3개년 시행계획(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을 수행함. 또한 2011년 개발협력 주무기관인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독일 개발정책에서의 인권전략’을 채택함.

제시하는 것임.

- ODA 사업 계획/추진 시 의도하지 않은 인권 위험요소로 특정그룹 차별, 참여권의 침해, 비자발적 이주, 노동권 침해 등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각각의 문제해결 방안 제시
- 동시에 인권 강화를 위한 방안(Ways to Strengthen Human Rights) 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업진행자가 선택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형성단계에서 따라야 할 인권 강화 유의사항(Human Rights Due Diligence Requirements)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 및 평가 시에도 참고가능
 - 젠더, 참여적 개발, 분쟁, 환경관련 가이드라인과 병행하여 활용하며, 가이드라인 간 충돌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BMZ 인권국과 각 섹터국(BMZ Human Rights Division and Sector Division)간 협의 실시
- 요약하자면, 일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Do no harm 지침을 분야별로 제시하여 인권주류화를 실현하며, 모든 사업에 주류화/대상적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지침 제시(곽재성 외, 2017)
- 특히, 협력국, 사업별 상황과 특징, 수혜자그룹에 따라 사업별 접근, 발굴, 시행은 다양한 방식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독일은 본부에서 전달된 지침을 일관적으로 준수하며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 발굴 초기부터 인권기반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함. 프로젝트 차원에서 인권기반접근법의 적용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예외 처리가 가능 (곽재성, 2017)
- 기본적으로 독일은 UN 원칙을 바탕으로 참여, 포용, 책무성, 역량강화, 비차별/평등 등을 준용하되 협력분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함. 참여/포용/책무성 원칙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비차별과 평등도 포함되어 있음. 나아가, 기본적으로 인권기반접근 및 취약계층 포괄 원칙 이행을 위해 내부직원, 파트너 기관,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지제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문관/자문위원회 등 조정/지원메커니즘 마련하여 인적, 조직적,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다. 독일 BMZ-GIZ의 민주적 거버넌스 전략과 프로그램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및 전략

- 독일의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정책은 인권증진 분야와 케를 같이 함. 그러므로 Federal Government's Action Plan on Human Rights, 2010-2012와 같은 독일 연방정부의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책이 국제개발전반의 기반이 됨.
 - 또한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충족, 국가를 의무부담자로 설정, 국민을 권리보유자로 설정하는 인권의 3면적 의무가 정책의 기반이 됨.
 - 1) 빈곤위주(pro-poor)이자 지속가능한 정책, 2)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및 이행, 3)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국가의 효율성과 투명성, 5) 국제사회 내의 협조적 태도를 협력국과의 관계에서 개발의 조건으로 내세움.
- 전략적 측면에서는 BMZ Strategy Paper 178^o] Good Governance를 위주로 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요소를 전면적으로 명시함.
 -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모든 섹터에 거버넌스를 주류화한다는 점이 포함됨.
- 독일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전략의 연계
 - 독일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정당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전략을 수립하여 (i) 독일 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강조, (ii)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위한 다면적 접근법 적용, (iii) 국가별 맥락을 고려한 독일 개발협력의 정치참여 프레임워크 구축, (iv) 개발협력정책 협력 및 정치적 참여의 고려사항으로서 위기 및 도전과제, (v) 적극적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력 강조, (vi) 성공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시너지 창출 - 다양한 개발협력의 정책 및 프로그램 도구의 적용을 설명함.
- 독일 민주적 거버넌스의 3대축
 - 첫째,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 둘째, 시민사회 구축, 셋째, 국가의 역량 강화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자사업을 통한 국가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협력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통합한 제도개선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굿거버넌스 분석 기준
 - 분석기준을 (i) 지속가능개발 정책 및 친빈곤정책, (ii) 인권 보호 및 증진, (iii)

민주주의 및 법치, (iv) 국제커뮤니티 협력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유형과 성격을 분석함

○ 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의 도구

- 독일 정부차원의 인권, 평화, 분쟁관련 도구: 양자협력을 위한 인권·젠테 가이드 라인에 인권쥬류화 도구 및 인권점검 도구 등 개발하여 적용함.
- 독일 개발협력의 인권, 평화와 분쟁 프로그램 도구로서 정부간 정치적 대화, UN 인권시스템에 기반한 인권, 평화 접근법, 평화 및 분쟁 어세스먼트 강화, 시민사회지원 강조, 사업수행기관/수행자에 대한 HRBA의 엄격한 적용, 국제 인권시스템 및 BMZ의 인권기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활용을 활용함,

○ 인권과 법치의 연계

- 협력국에 법의 지배(Rule of Laws) 강화 지원 함. 협력국이 자국의 정책에서 인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이해의 결여, 관할 기관의 집행 능력 부족, 시민 사회와의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의 부족 등으로 이해됨. 그러므로 독일의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인권교육을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협력국의 시민 사회와 인권 구조 역량을 구축하고, 대화 능력을 증진 시키는데 주력함.
-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법의 안정화 및 평화 촉진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법이 한 사회 내에서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조직 내부의 구성으로는 Directorate 차원의 정책, 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반을 다루는 Directorate General 1, 양자개발협력의 정책 이슈를 다루는 Directorate 10, 조금 더 직접적인 조직으로 Directorate-General 3에 소속되는 Division 300과 Division301이 각각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민주주의·법치·거버넌스를 총괄함.

□ 개발협력에서의 민주주의 지원동향 및 프로그램 구성요소

○ 굿거버넌스 및 민주주의(Promoting Good Governance and Democracy)는 독일의 전문분야 중 하나의 분야로 간주되었고⁵⁶⁾ 독일이 수행한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은 유형을 포함하여 수행되었음 (Gr vingholt, Leininger,

Schlumberger, 2013).

-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관 지원 support for democratic institutions (e.g. parliaments)
 -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과정 지원 procedures (e.g. elections)
 - 인권 증진 및 법치 관련 지원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 시민교육 지원 civic education
 - 과거 독일의 도너의 프로그램 도구(program instruments)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음.
 - 무상 혹은 유상 원조 “정책조건(conditionality)” 부여
 - 시민사회에 “긍정적인” 지원
 - 국회 및 주요 기관에 펀드를 제공하는 “직접 지원”
 - 국가재정 및 세금 투명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간접 지원”
- 국가별 거버넌스 수준의 차이 및 거버넌스 관련 분야에도 하위 분야가 많으므로 총괄적인 전략 대신 하위분야별 접근법을 제시함.
- 법치(Law and Justice)의 경우,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길고 어려운 개혁과정 중에서 협력국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
 - 민주주의 및 정치적 참여 확대(Promoting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의 경우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간의 구조적 관계 구축에 도움을 줌.
- 인권과 같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본적 가치이자 정치체제로 간주하여 모든 사업에 내재화하고 주류화하는 동시에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를 협력 우선분야로 지정하여 기술협력을 위주로 지원을 제공하는 이중트랙 접근법을 적용함.
-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거버넌스와 분쟁이라는 부처(sectoral department)와 국제정책(Global Policy)과 거버넌스(sector and global programmes)가 있으며 사업 수행조직으로 G420 거버넌스와 인권(Governance and Human Rights)라는 유닛이

56) <https://www.GIZ.de/expertise/html/5352.html>

GIZ 내부에 존재함.

□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주요 분석도구

○ 거버넌스 및 분쟁 프로그램/프로젝트 현황

- GIZ 거버넌스 및 분쟁관련 전문가와 담당자들은 Sector Department 및 sector & global program department에 위치함. 2018년 6월 현재 GIZ은 29개의 중점협력국가 및 14개의 추가적인 국가에서 거버넌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9개 중점협력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선정된 2-3개의 중점협력분야에 거버넌스가 포함된 경우임. 지역적 우선순위는 50%는 아프리카에 집중함.

○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프로그램 구성요소

- 지방분권화,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 공공재정이 주요 3대 분야로서 가장 많은 사업이 수행되었음. 법치(Rule of Law), 법에의 접근강화(access to justice), 부정부패척결(anti-corruption), E-governance분야가 확장 중임. 최근 세부전략 변화의 트렌드는 지방분권화는 핵심 분야로 유지하되, 기업과의 협력 제도개선이 좀 더 확장되고 있고, 공공재정 사업에서는 국내재원조달, 조세제도개혁들이 새로운 세부주제로 최근 부각되고 있음

○ 규범적인 프로그램/프로젝트 목표 설정

-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사업을 기획할 때, 가급적 독일의 규범적인 접근법 (normative approach in development)가 녹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포괄적인 개발사업, 형평성 지표, 시민사회 참여 매커니즘 포함과 같은 실제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 인권, 평화와 분쟁, 민주주의 프로그램 형성단계의 중요성

- 규범지향적인 개발협력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술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 자주 배제되기도 하여, GIZ 조직 내의 전략팀, 주제별 전문가가 꼼꼼히 작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분쟁국가/지역에서 기본적인 인권위반사항이 없는지 조직, 인력, 내용차원에서 체크하고 있음.

○ BMZ/GIZ의 평화와 분쟁, 거버넌스 프로그램 도구

- 독일의 거버넌스 정책과 프로그램은 (i)국가의 역량강화, (ii) 시민사회 강화, (iii) 법적, 제도적, 기관차원의 통합적/협력적 프레임워크 강화를 3대 축으로 선정함.

BMZ는 Governance readiness 분석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력국가의 상황분석, 국가기관 역량분석, 협력집중분야, 협력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조사함.

○ GIZ의 섹터팀의 분석작업

- Conflict analysis, human rights analysis, gender analysis 등에 집중함. GIZ은 거버넌스 사업 중 난이도가 높은 분쟁국가/분쟁지역 사업은 Conflict tool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 High risk assessment도 실시하는데 사업기획당시 가급적 상세하게 분쟁관련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획하려고 함. GIZ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impact monitoring system)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분쟁국/분쟁지역 사업은 Conflict sensitive monitoring system) 활용하고 있음(방법론 및 체크리스트는 최종보고서 참고)

□ 개발협력에서의 민주주의 지원의 결과 및 시사점

○ Grävingholt, Leininger, Schlumberger는 ‘The three Cs of democracy promotion policy: context, consistency and credibility(2009)’라는 평가연구에서 전세계에 걸쳐 진행된 독일의 민주주의 지원은 1990년대에 확장되다 2000년대 큰 비판을 받았던 과거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소개함. 과거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시민사회 리더에 대한 지원을 많았던 독일의 국제민주주의 지원이 좀 더 지속적이고 지역특화적이며 신뢰에 기반한 중장기 민주주의 진흥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민주주의 지원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독일 국제개발에서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함.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국제개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여해 온 die의 연구자들은 지난 수년간의 민주주의 지원의 역사에서 독일 얻은 주요 교훈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민주주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님. 서구가 희망했던 권위주의 정부 몰락이 후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등장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독일이 지원은 수많은 국가에서도 권위주의 정부가 새로운 형태로 전화되고 변모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였음.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혹은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서양식 민주주의 도입을 강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음.
- 둘째, 국제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민주화 활동을 지원하고 민주주의 리더들을 양성했지만, 실제 국제민주주의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영향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 전문가들은 2000년대 유일하게 민주주의 지원에 명백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검증된 사례는 EU의 프로그램 뿐이라고 판단함.

- Grävingholt, Leininger, Schlumberger(2013)는 독일의 민주주의 및 민주화 지원에 대한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① 국가별로 민주화 과정 및 민주화에 대한 조건에 대한 몰이해, ② 민주화 지원 국가 선정에 대한 정치적 결정의 중요성, ③ 민주화 지원 프로그램의 개념화 및 프로그램 기획의 어려움, ④ 민주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의 중요성과 한계를 가장 현실적인 국제민주화지원 프로그램의 한계로 제시함.
- Leininger, J. (2016)는 Contextualizing Democracy Promotion에서 아래와 같이 독일 GIZ이 수행해온 국제개발에서의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의 결과는 협력국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음. 전세계적으로 수행된 수많은 연구에서 한 국가의 민주화의 결정적인 동인은 국제적인 지원이나 국제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보다는 국가내의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정설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의 중요성도 완벽히 간과할 수는 없다는 연구도 최근 발간되고 있음.
- Leininger(2016)는 민주화의 유형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양적, 질적 연구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연구들은 레짐, 국가의 취약성, 중요한 정치적 사건 등에 집중하고 사회적, 문화적, 초국가적 요인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독일이 경험한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 지원의 과정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함.
 - 미시적 분석 측면에서는 특히 정치적 모멘텀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액터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함
 - 문화적 측면에서는 국가별, 지역별 특수하고 지역적인 의미의 ‘민주화’의 개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
 -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국가성, 취약한 거버넌스에 대한 유형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함
 -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는 공간, 특히 도시공간 속에의 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어야 함
 -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제한된 지식인, 아카데미아 및 시민사회의 한계에 대한(이상적이 아닌) 현실적 이해가 제고되어야 함.

□ 민주화 지원의 파트너십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시민사회는 독일정부의 국제민주주의 지원이 거시적인 컨텍스트(정치적, 공간적, 문화적)와 미시적 맥락(사회적, 개인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기술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하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이해하지 못해 종종 ‘나이브하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함.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민주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특수한 민주화지도자 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민주적인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학계에 대한 다양한 주제별, 분야별 지원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정부와 학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제개발에서의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Leininger, J. (2016)는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첫째, 해당 국가의 핵심 엘리트들의 사회적, 문화적인 정치적 특성 및 태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이들과 같은 엘리트들이 래짐 변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에 대한 어떠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비서구 국가의 다양한 정치사회변화의 모델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들의 정치사회변화 경로에 대해 사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함.
 - 셋째, 최근 변화하는 민주화의 양상을 살펴볼 때, 단순 정부 지원으로는 민주화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명확함. 최근 민주화의 변화의 장소는 정부 중심이 아닌 도시의 다양한 지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에서 발생, 확산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및 학계에 대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민주화 지원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이므로 외교공관 및 원조기관의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국가별로 고유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종종 이와 같은 민주화 프로그램은 현장의 인력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 Leininger는 면담에서 독일은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과 도구를 활용하여 민주주의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나,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마다, 독일 사회 내에서 협력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 활동에 개입하는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철학적 논쟁과 도구적 차원의 논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도구적 차원의 논쟁: 민주주의는 과정이자 다른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위치할 수 있음. 민주주의 지원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강조될 수 있음.
- 철학적 차원의 논쟁: 민주주의 증진 자체가 개발의 목표가 되어야 함. 민주주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는 것인 부차적인 것이므로,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정치적인 권리의 실현을 통한 기재로서 궁극적인 목표로서 다루어져야 함.

독일이 국제민주화지원 경험에서 얻은 10대 교훈

- 지식에 아낌없이 투자하라 Democracy promotion policies require (more) reliable knowledge of what triggers or prevents democratisation and how such processes evolve.
- 정책목표와 연동하라 Democracy promotion is not always the most urgent task, but where it is, other policy goals must be subordinated to it; otherwise, success is unlikely
- 국가간 신뢰가 구축된 국가를 선택하라 Democracy promotion requires that donor countries pursue consistent foreign policies towards target countries and set a good example by acting democratically themselves.
- 국가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구축하라 Knowledge or ignorance of the local balance of power and of informal rules and processes determines the success of an intervention as early as the planning stage.
- 전략을 유지하라 Democratisation is a long-term, macrosystemic and non-linear process
 - interventions must be planned according to their overall effects.
- 파트너를 조심스럽게 선정하라 “Change agents” and actors who contribute to either the establishment or the erosion of a democratic order vary with the situation in individual countries.
- 개입의 타이밍을 고려하라 Human rights, for example, are a priority, whereas free elections often bring decisive progress only at a later stage.
- 활동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라 Human rights, for example, are a priority, whereas free elections often bring decisive progress only at a later stage.

- 다자와 양자를 모두 활용하라 “Change agents” and actors who contribute to either the establishment or the erosion of a democratic order vary with the situation in individual countries.
- 평가는 거시적인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라. Rather than considering project output, evaluation should be undertaken from macro-systemic perspective and assess the coherence and significance of overall policy input while identifying meaningful structural change in target countries.

출처: The three Cs of democracy promotion policy: context, consistency and credibility (Leininger, 2009)'

라. 독일 BMZ–GIZ의 평화 전략과 프로그램

평화관련 정책 및 전략

-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이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나라임.
 - 1986년 ‘개발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빈곤 감소를 통한 세계평화에의 기여 의지를 천명함.
 - 독일은 여러 정책 문서에서 ‘특수한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 평화 정책을 수립함을 언급
- 독일은 평화 및 안전보장에 있어 직접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이며, 독일은 부처 간 가이드라인(Interministerial Guidelines)인 “For a coherent German Government policy towards fragile states”을 제시해 독일 정책과 취약국의 연계를 강조하고,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함.
- 2011년부터 BMZ의 개발 정책에 대한 전략인 “Minds for Change–Chancen schaffen. Enhancing Opportunities–Zukunft entwickeln”은 미래를 보증하는 (future-proof) 5개의 개발 열쇠 중에 하나가 ‘취약국을 돋는 것’이라고 보았음.
- Preventing Crises, Resolving Conflicts, Building Peace(2017) 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에 관한 독일의 이해관계(interests)을 고려하고, 분쟁 상황에서의 행동 방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BMZ 전략 문서(4/2013e)인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의 경우, 본 전략은

독일 재건은행(KfW), 독일개발회사(DEG), 독일국제협력기구(GIZ), 시민사회,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함.

- BMZ 전략은 5개의 평화 구축 및 국가 형성 목표(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PSGs)에 기초함. BMZ의 인권, 아동과 여성의 권리, 젠더, 농촌 개발, 반부패, 청렴(integrity), 빈곤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PSG1: (Legitimate Politics) 포용적인 정치적 기반을 조성 및 분쟁 해결
 - PSG2: (Security) 사람들의 안전 수립 및 강화
 - PSG3: (Justice) 부당성 관리 및 정의에의 접근성 향상
 - PSG4: (Economic Foundations) 고용 창출 및 생계 개선
 - PSG5: (Revenues and Services) 수입 관리 및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역량 구축
- 평화를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Peace and Conflict Assessment (PCA)는 2013년 3월, BMZ 전략 문서인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 Development Policy in the Context of Conflict, Fragility and Violence'에서 등장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제안되었는데, 갈등, 취약성, 폭력이 발생할 때, 개발 정책에 의해 채택된 계획 및 통제 방법에 일관된 구조를 제공하는 모듈 방식의 프레임 워크
- PCA의 4가지 주요 항목은 첫째, 분쟁, 취약성, 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 평화와 안보를 요구함. (상황 분석), 둘째, 평화와 안보의 관련성 평가, 셋째, 분쟁, 취약성, 폭력의 상황에서의 위기 대처, 네째, 영향(impact) 모니터링 및 부정적 영향 방지로 실제 프로그램단위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독일정부의 평화관련 시민사회지원 프로그램

- 독일정부는 시민사회를 통해 평화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평화 프로그램(Civil Peace Service, CPS)을 운영하고 있음. BMZ의 운영되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지원에 일환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평화, 인권 개발전문 기관 및 단체들을 지원함.
- Civil Peace Service (CPS)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비폭력 분쟁 해결을 목표로 협력국가의 다양한 시민사회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폭력적인 분쟁예방, 폭력 감소,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3대 세부목표로 선정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CPS experts)는 협력국가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현장과 협력하며 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강보하며, 현재 42개국에서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의 평화와 인권관련 총 8개 기관(GIZ을 포함하면 9개기관)이 2년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음. 독일 BMZ는 본 펀드를 운영하면서, 평화와 인권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인권전문 시민사회 단체 1개, 평화전문 시민사회단체 1개를 같은 국가에 파견하여 균형을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정부 및 시민사회 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기관들이 시민평화서비스그룹(Civil Peace Service Group)을 설립하여 전세계적으로 평화와 인권고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시민사회 기관 및 단체는 아래와 같음.
 - Association of Development Service (AGEH)
 - EIRENE- International Christian Service for Peace
 - Bread for the World – Protestant Development Service
 -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
 - KURVE WustrowEducation and Meeting Centre for Non-Violent Action
 - Peace brigades international and World Peace Service (WFD)
 - Peace organisations Action Committee Service for Peace (AGDF)
 - Forum Civil Peace Service (forumZFD)
- ForumZFD와 같은 시민사회단체(Umbrella organization)는 15년간 집중적으로 평화와 분쟁관련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해온 경험과 분쟁 및 평화관련 국제지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민평화서비스포럼 내에 분쟁전환아카데미(Academy for Conflict Transformation in the Forum Civil Peace Service)를 설립하여 평화전문 교육기능을 민간에 설립함. 아카데미의 목표는 국제평화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쟁에 민감한 국제개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음. 특히, 본 아카데미는 현지의 현지 정부 및 시민사회 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여, 중장기적으로 협력국가의 평화가 그들 스스로 안착 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주요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평화교육과정의 예: ForumZFD의 평화, 인권, 국제개발 전문가과정

과정 유형

- 전일 과정
- 파트타임 과정
- 특수과정(요청)

모듈

- 모듈 1 분쟁완화/전환을 위한 평화컨설턴트 훈련
- 모듈 2 분쟁 전환 방법론
- 모듈 3 분쟁 시뮬레이션 및 상황분석평가

분쟁과 평화 재건 전문가/실무자 과정 세미나

- 세미나 1 분쟁 시스템 및 분쟁의 사회심리적 분석
- 세미나 2 평화 및 분쟁분야- 분쟁국가/지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세미나 3 효율적인 3자 개입 전략
- 세미나 4 분쟁전환을 위한 혁신적인기술
- 세미나 5 과거와 조우하기
- 세미나 6 분쟁상황을 고려한 난민 프로그램
- 세미나 7 평화심리학

* 영어 및 독일어 과정 진행

- AGEH(Arbeitsgemeinschaft für Entwicklungshilfe)의 경우에는 1959년에 가톨릭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까지 6000명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에 파견 해왔는데, 지난 20년간 국제개발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제개발기관/단체와 개발협력전문가 개인들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a recognised personnel service provider)으로 독일의 국제개발에서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임.
- 전문가 양성 및 교육(평화, 인권과 국제개발), 전문가 파견(파견전, 파견후) 및 관리, 독일 난민정착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기관 특수을 고려할 때, EU 및 독일의 기독교 가치를 가진 전문가들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파견을 위한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AGEH 교육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평화교육과정의 예: AGEH 2018 세미나 프로그램

- 모듈 1 평화와 개발
- 모듈 2 국제협력의 기초
- 모듈 3 개념, 접근법 그리고 적용에서의 주의할 사항
- 모듈 4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 모듈 5 독일 적응 프로그램 (난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 모듈 6 전문가역량강화(BMZ, AGEH, Bread for World 내부직원 세미나)

*독일어 과정, 영어과정의 경우 요청에 의해 진행

7. 시사점 및 제언

BMZ 전문가의 제언을 요약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제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의 PHD 적용은 명확한 정책적 기반 수립 및 상위부처의 확실한 인권개협력에 대한 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함. 부처에서 명확한 법적기반, 정책적 지지가 없으면, 정치적, 외교적 문제발생 시 원조기관의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음을 유의 할 필요 있음.
- 독일 개발협력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 공통으로 개발협력분야에서 이를 개발협력에서 “왜 중요한지”를 넘어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지그룹 밑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국제개발의 입장에서는 다자기구들은 국제적으로 국제법 근간을 만들고 의제를 띄우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자기구보다는 양자기구들과 관련 학계 및 연구소들 간의 지지그룹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실제 이러한 지지그룹들과 연구, 가이드라인 수립, 독립평가,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관련 가치가 개발협력 프로그램 체계에서 실현이 되도록 사전에 예산과 노력을 배분하고 있음이 인상적이였음.
- 한국 개발협력에의 전략 및 프로그램 차원 제언 초기부터 개발도상국가의 정치, 법, 정책개혁에 직접적인 개입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술, 교육, 등에서 인권 및 민주주의를 고려한 대표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단계적으로 차차 법적,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도 가능함.
- 그러나 법적,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조기관만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위험이 있어 한국의 외교부 및 원조기관은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것이 필수임.

□ Die 전문가들의 제언

- 한국이 민주화를 성취한 아시아 도너로서 (중국의 포지셔닝을 고려할 때) PH 논의를 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환영하며, 한국에서 증진/지원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이 무엇이고 한국의 사례가 무엇인지 학술적, 정책적 정리 작업을 진행 할 것을 제안함.
- 다양한 Die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국제개발협력은 많은 노력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한국도 관련 프로그램 기획, 조사방법, 평가론 등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실천해봐야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제고 될 것임. 기준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로는 본 프로그램의 적절한 기획, 수행,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한국의 학계와 KOICA가 이러한 체계적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국제개발에서의 인권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7-8년에 걸친 연구, 포럼, 출판, 연수 등의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었고, 최근 SDG 16의 등장으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및 분쟁 예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따라서 BMZ와 DIE는 관련 연구, 정책, 프로그램 관련 대화를 다시 재기획하고 있음. 이와같은 작업은 다자, 양자, 멀티바이, 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 가치지향적인 사업접근법은 결국 핵심 오피니언 리더 및 연구자, 기획가들이 동의하고 지지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함을 유의해야함,

□ GIZ 거버넌스, 분쟁 담당자들이 제언을 요약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원조수행기관의 입장에서 별도의 SDG 16 전략을 만든다기 보다는 SDG 16의 등장으로 현재 이행 중인 평화와 분쟁, 인권, 민주주의 관련 전략들이 수정되고 재편 될 가능성성이 높음.
- 지난 20년간 인권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민주화, 평화 및 분쟁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해온 독일과 같이 한국이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방대한 재원을 들여 시작 할 필요는 없음. 단, 종종 심각한 인권유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원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원칙 및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의지 혹은 우려를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것임. 따라서 한국의 SDG 16 전략은 원조기관의 사업전략으로 남을 수 없고, 정부 부처, 원조기관,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이 함께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가야 하는 작업으로 간주 할 필요가 있음.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PHD 대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시에 현재 형성 중인 사업에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녹이는 것임. 독일은 보건, 교육 등에서 가치지향적 접근법을 십분 활용해왔고 최근에는 노동과 고용, 식수, 경제 등이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음. 예를 들자면 깨끗한 식수의 공급이 사업목표의 핵심이 아니라, “물거버넌스”와 개념으로 사업명을 선정하고, 물 관련 다양한 부처의 법 개정, 물 관련 부처 및 기관 협력 매커니즘 수립 및 강화, 권리로서 식수사업 강화, 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보장, 여성참여 비율보장 등으로 확장하고 있음.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한 보건, 교육, 환경의 경우에도 보건 시스템의 분권화, 교육권과 분권화, 환경 거버넌스 등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가치를 포함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GIZ의 경우 주제/섹터 전문가들의 교육, 훈련, 갈등과 설득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KOICA도 이와같은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독일인권연구소의 국제개발과 인권 전문가들의 제언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음.

- SDG 16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 개발협력정책만 만들다 2년을 보내고 나면, 경험이 축척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에 걸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먼저 론칭시키고 그 과정의 시사점을 정책에 녹이는 방법도 있음.
- 해당 부처와 원조기관의 스마트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음. 인권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외교부의 초기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책적 지지를 외교부가 해주어야 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원조기관들이 혼들리지 않는다는 것임.
- 원조기관에서는 관련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20년이상 해당 분야에서 사례를 축척해 온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음. 국제회의/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하루 정도는 실용적인 인권펀드 매니지먼트 사례 공유, 운영 문제, 펀드의 규모, 펀딩 방식, 시민사회 참여 목표와 절차 등을 세심하게 워크숍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KOICA가 권리기반, 평화 친화적으로 개발협력을 하고자 하고 관련된 방법과 도구들이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들과 사례중심, 방법중심 워크숍을 하고 서로 설명하고 정보를 많이 취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초기 수년간 집중하기 바람.

□ 현지 문현수집 및 다양한 전문기관/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본 현지조서의 종합적인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관련 부처의 법적, 정책적 기반 마련
 -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개발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책적 근거를 수립 할 필요가 있음.
 - 해외 공관장들이 정책적, 외교적 의제로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PHD 현장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지가 필요함.
- 부처-원조기관의 역할 정립 및 다층위적 협력 강화
 - 외교부는 다자 및 지역협력에서의 한국의 PHD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정책대화에 참여해야함.
 - KOICA (지역협력(멀티바이 협력) 국가별 협력에서의 PHD 프로그래밍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기존주제/섹터별 사업의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리딩 할 필요가 있음.
- 인권 정책 및 프로그램의 도구의 단계적 도입
 - BMZ 인권주류화 도구(Instruments) : 인권문제 분석 및 인권기여 가능성 분석 (nalysis of problems and potentials), 타겟그룹 및 이해관계자 분석(Target groups and other stockholders Analysis) 등을 좀 더 전략적으로 “주류화” 차원에서 도입 해야 함.
 - GIZ 분야/섹터 인권위기 예방도구(instruments) Design of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차원의 질문을 분야별(민주주의, 시민사회, 공공행정, 평화 재건 및 위기 예방, 교육, 보건의료, 식수, 식량안보 및 농업, 경제개발,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주제별/섹터별 사업에 PHD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함.
- 거버넌스, 분쟁, 평화 도구의 적용의 단계적 도입
 - BMZ Governance readiness 분석 작업 실시 (국가기관 역량분석, 협력집중분야, 협력 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GIZ의 섹터 및 질 관리팀이 수행하는 conflict analysis, risk assessment, human rights analysis, gender analysis, Conflict sensitive monitoring system 등을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단위에서 적용 할 필요가 있음.

○ PHD 지지그룹 및 주축그룹 형성

- 원조기관은 PHD의 규범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실현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을 포함한 지지그룹 및 주축그룹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함.
- 이를 위한 부처-원조기관-관련전문가그룹-시민사회대표를 포함한 관련 정책수립 TF 구축,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의 공동연구, 실용적인 국제연수를 실시하여 국내의 PHD 관련 지지그룹의 역량강화를 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음.

3. SDG16의 PHD 대상화(Targeting) 방안

[표 52] SDG16 세부목표의 내용

| | | |
|----|-----------|---|
| P | SDG 16.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 감축 |
| P | SDG 16.2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 |
| D | SDG 16.3 | 국내·국제적 수준에서의 법치를 증진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 보장 |
| P | SDG 16.4 |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반환 조치를 강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 |
| D | SDG 16.5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감소 |
| D | SDG 16.6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 개발 |
| D | SDG 16.7 | 모든 수준에서의 대응성이 높고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 정책 결정 보장 |
| D | SDG 16.8 |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및 강화 |
| HD | SDG 16.9 |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
| HD | SDG 16.10 |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보장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인 자유 보호 |
| P | SDG 16.A |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및 국내제도 강화 |
| H | SDG 16.B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 차별적 법규와 정책 증진 및 강화 |

가. 평화

| 영역 | 핵심이슈 |
|--|--|
| 1. Conflict Prevention 갈등예방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the P/P designed in such a way that it takes into account conflict potential? • Are the P/P's benefits to be delivered in such a way as to not be appropriated by any existing parties in conflict? • Can the P/P help increase rival group confidence through more openness and communication and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balanced, local ownership of the P/P? • Have expectations and concerns, voiced in consultation with the stakeholder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P? • Do the relevant stakeholders perceive the P/P as important? |

나. 인권

1) 인권 사업 핵심이슈

| 영역 | 핵심이슈 |
|--|--|
| 1. Human rights principles 인권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ks to Human Rights• Rule of Law•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Participation and Inclusion• Organizational Capacit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 2. Human rights standards 인권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Political and civil rights<ul style="list-style-type: none">• Right to life• Torture and punishment•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Freedom of movement interference•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Children• Minorities2.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 Family• Standard of living |

2) 인권 사업 고려사항

주요 주제별/섹터별 영역

- Has the core of HRBA core risks areas (*disadvantaging certain groups; interference with participation rights; forced eviction/displacement; interference with labour rights*) are considered in design of the Korean thematic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 governance, rule of law,
- health, education, food and agriculture
- drinking water,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sanitation
-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management
-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 energy, transport and communication and others

| 원칙 | 세부 고려사항 | 기준 |
|---|---|--|
| 1. Disadvantaging certain groups 특정그룹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s the programme/project consider human rights under the... - A unjustified formal or de facto restriction or exclusion of particular groups from access to resources, services o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 Unjustified preferential treatment extended to particular groups in terms of access to resources or servi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eral Comment No. 20 on non-discrimination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8 on non-discrimination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CPR) or/and Related national Standards |
| 2. Interference with participation rights 참여권의 침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s the programme/project respect those human rights under the principle of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derives from these rights and has come to be widely recognised. -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 Right to preserve their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knowledge; - Rights of disposal over commonly administered land and natural resour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and Related national Standards |
| 3. Forced eviction and displacement 비자발적 이주 및 퇴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s the programme/project respect those human rights under forced eviction and displacement in case of; - States have a duty to adopt and enforce laws that protect people from forced eviction by state or third parties. - Involuntary resettlement is to be avoided. Where eviction or involuntary resettlement takes place. Evictions and involuntary resettlement must not leave people homeless or violate their human rights. The state mus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individuals who are unable to help themselves. Those affected have a right to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ir proper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led Evictions/ Displacement or/and Related national Standards |
| 4. Interfer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s the programme/project respect those human rights under labour standard tha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O Core Labour Standards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

| 원칙 | 세부 고려사항 | 기준 |
|--|---|---|
| with labour rights 노동권 침해 | <p>cannot be derogated from under any circumstance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 on child labour; - ban on forced labour; - ban on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n occupation and employment; - freedom of association | <p>Princip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and Related national Standards |

다. 민주주의

1) 민주주의 사업 핵심이슈

| 영역 | 핵심 이슈 |
|--|--|
| 1. Support for democratisation 민주주의 지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epresentative and accountable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ions – processes and electoral observation • Democratic role of political parties •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to parliament and the judiciary •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and police • Minimising corruption 2. Pluralist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lusion of women and disadvantaged groups • Government responsiveness to citizens 3. Media in a democratic society |
| 2. Reinforcement of the rule of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법치 및 정의로운 행정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vel of physical safety • Crime rate and rate of detection • Accessibility to civil and criminal justice • Efficiency of the system of justice • Fight against corruption • Observation of due process • Alternative media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formal legal process, traditional justice) • Penal regime (sentencing and detention – pre-trial, juvenile detention, mental institutions) • Mechanisms for review of law and legal services |
| 3.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행정 개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hange management and public management re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equate implementation plan 2. Civil service reform and Service delivery |

| | |
|--|---|
| <p>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and civil service reform 행재정개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al code • Human resource management (recruitment, training, salaries) • Non-discrimination • Decentralisation • Public policy formulation • Service delivery <p>3. Public finance management(PFM) financial accounta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al basis • revenue • Budget structure • Projections • Internal controls • Reconciliation • Reporting • Accounting and auditing • Decentralisation • Public procurement <p>4. Political trust and accountability</p> <p>5. Management of macro-economic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vate–Public relations • Macro-economic policy |
| <p>4. Decentralisation and local government reform/capacity building 지방분권과 역량강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nomy • Adequate resources • Subsidiarity,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service delivery |

2) 민주주의 사업 고려사항

| 원칙 | 기본 고려사항 | 세부 고려사항 |
|---|--|--|
| 1. Support for democratisation, including support for electoral processes and electoral observation | | |
| 민주주의 지원 | | |
| Representativity 대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the participa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generally presented/accepted as being representative of a constituency? Is there an adequate representation of disadvantaged groups in the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the decision-makers have a constituency or do they just represent themselves or a tiny clique? - Will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be one of persuasion or coercion? - Does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volve – directly or indirectly –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groups like the very poor or women or indigenous peoples? - Is there any kind of consultation mechanism and is it used? |
| Accountability 책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 (formal or informal) procedures exist for ensuring that there is accountability for the P/P activities at the different leve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e there debates in relevant forums on the issues? - Do decision-makers feel under any obligation to report back to these forums or to consult further when difficulties arise? - Are responsibilities defined so that it is clear who is answerable to whom at the different stages? |
| Pluralist participation 다원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decisions relating to the P/P taken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relevant actors at the different levels, e.g. (national) Parliament, (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stakeholders not directly implicated in the decision hav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debate and discussion? - Is this likely to continue throughout the activities? - Will they be able to raise concerns with those responsible for the activities? |
| 2. Reinforcement of the rule of law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 | |
| 법치 및 정의로운 행정 구현 | | |
| Legal framework 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 there a loc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posed activities of the P/P, which includes (a) the basis for the decision and (b)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vi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e there specific or general legal provisions that cover the decision and activities? - If these are customary laws, are they recognised by the court system? If there were to be a challenge to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 or the activities, could this be successfully defended within the legal system (rather than extra-legally, by intimidation or corruption)? |

| 원칙 | 기본 고려사항 | 세부 고려사항 |
|---|---|---|
|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효과적인 분쟁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there any mechanisms for resolving disputes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decisions/activities that are equitable and which recognise and respect the rights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in the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e the courts able to offer an impartial & effective forum for dispute resolution? If not, are there other forms of arbitration, formal or informal? - In reality, are these accessible to all stakeholders? - Are the stakeholders willing to be bound by the decisions given? |
| Legitimate expectations 예측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s the legal framework guarantee that the expected beneficiaries of the project will be able to realise the anticipated benefi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e there any discriminatory provisions in the law that governs the project, or that has a corollary impact upon it, which adversely affect the expected beneficiaries? - Are there any positive legal guarantees of non-discrimination? - Are there discriminatory practices that are tolerated, and against which there are no effective legitimate remedies? |

3.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and civil service reform

행재정개혁

| | | |
|-------------------------------------|--|--|
| Public service institutions 행정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 the public service bodies have the mandate to fulfil the role identified for them in the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e the right incentives in place for them to play that role? - Do they have the capacity (financial, human, structural, etc.) to play that role? - Has there been discussion with relevant personnel and finance authorities on the resource implications of the P/P? - Will “new” resources be allocated, or are existing ones expected to absorb the extra burdens of the P/P? - Is there adequate provision for training and information to ensure that, after the end of the P/P, its results will be fully absorbed into institutional mentality and practice? |
| Service delivery 행정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systems in place to ensure that the P/P will result in better provision of services to citizens, especially those most vulnerabl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s the P/P identify how the results will be made operational? - Have the relevant authorities given any commitments to make the changes in policy and/or practice necessary to ensure this? - Are there provisions to inform the putative beneficiaries of the improved services as to how they will be affected by the changes? |

| 원칙 | 기본 고려사항 | 세부 고려사항 |
|------------------------|---|---|
| Anti-corruption 반부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the culture, system and skills present able to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reduction of corrup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there a true commitment from all parties to implementing the P/P with no corruption as a goal? - Are systems of financial management present, or financial reforms planned, to ensure that the funds involved in the P/P are used for their purposes? - Does the accounting system track all income and expenditure? - Are there standard modalities to ensure accountability, e.g. double signatures for larger expenditure, procurement rules, stock and asset ledgers, etc.? - Are there effective independent verifiers of the financial accounts? - Are the accounts made available to the stakeholders? |

4. Decentralisation and local government reform/capacity building

지방분권과 역량강화

| | | |
|---|---|--|
| Autonomy 자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 local authorities have an autonomous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f required in the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local authorities have to refer issues to central authorities before giving their views/decisions? - Are local authorities more answerable to their local assemblies and electorates or to central authorities for the exercise of their powers? - Do they operate within a clear framework of devolved power or does this depend on extraneous factors, like ethnic or political affiliation? If they oppose central authority, do they risk “punishment” in some unfair way in comparison with those that support the central authority line? |
| Subsidiarity 보충성의 원칙 (기본적으로 지방이 담당, 중앙은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decisions regarding the P/P taken at the most appropriate level in order to achieve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service delivery in the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re the P/P has a specific geographic focus, does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reflect that, or must all decisions be taken far away from the focus of the P/P? If the P/P has mixed focus, do the central authorities deal with the transversal aspects, and the local authorities the local aspects? - Do the stakeholders have a clear idea of the |

| 원칙 | 기본 고려사항 | 세부 고려사항 |
|-------------------|--|---|
| | | <p>decision making structure and consider that it responds to acceptable levels of subsidiarity?</p> |
| Resources 재원자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 the local authorities have adequate resources (financial, human, skills) in order to undertake the roles assigned to them in the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s there been discussion with relevant personnel and finance authorities on the resource implications of the P/P? - Will “new” resources be allocated, or are existing ones expected to absorb the extra burdens of the P/P? - Is there adequate provision for training and information to ensure that, after the end of the P/P, its results will be fully absorbed into institutional mentality and practice? - How much of the budget is dependent on external conditions over which the local authority has little control? |

4. SDG16의 PHD 주류화(Mainstreaming) 방안

SDG16 주류화 추진 방안^[57]

| | |
|------|--|
| 인권 | <p>Guiding Princip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ks to Human Rights 인권기준과의 연계- Rule of Law 법치-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비차별과 평등- Participation and Inclusion 참여와 포용- Organizational Capacity 조직역량-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투명성과 책무성 |
| 거버넌스 | <p>Guiding Princip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icipation and ownership 참여와 주인의식- Equity 평등- Organizational Capacity 조직역량-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투명성과 책무성 |
| 평화 | <p>Guiding Princip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icipatory process 참여적 과정- Inclusiveness of actors, issues and perceptions 행위자, 쟁점, 관점의 포용성- Impartiality in relation to actors and issues 행위자와 쟁점 관련 공평성- Transparency 투명성- Respect for people's ownership of the conflict and their suffering 분쟁(갈등)과 그로인한 고통에 대한 당사자의 오너십 존중- Accountability for one's own actions 책무성- Partnership and co-ordination 파트너십과 조정력-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상보성과 일관성- Timeliness and Flexibility 시간 적합성과 유연성- Responsiveness 반응성 |

57) Handbook on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E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2004.

1. 인권

| Guiding principles | Key questions |
|---|--|
| 1. Links to Human Rights 인권기준과의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ratified and acceded by the partner country? H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ratified and acceded by the partner country? H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ERD) ratified and acceded by the partner country? Ha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ratified and acceded by the partner country? H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ratified and acceded by the partner country? H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ratified and acceded by the partner country? |
| 2. Rule of Law 법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s the partner country have clear legal and policy basis on fulfilling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 Does the partner country have clear legal and policy basis on fulfilling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oes the partner country have clear legal and policy measures against all the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Does the partner country have clear legal and policy measures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oes the partner country have clear legal and policy basis on fulfilling the rights of child? Does the partner country have clear legal and policy basis on ensuring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3.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비차별과 평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ve all relevant stakeholders been identified and given the possibility to participate? Is there a balanced and representa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Have costs to stakeholders' participation been evaluated? Have expectations and concerns, voiced in consultation with the stakeholder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P? Do the relevant stakeholders perceive the P/P as important? |
| 4. Participation and Inclusion 참여와 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s the P/P provide net gains to poor people that respond to their priority needs? Does i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ial impact of poverty by gender and by disadvantaged groups? Does the P/P enhance strategic and immediate gender equality? Is there unjustified discrimination in the benefits/burdens of the P/P? |

| Guiding principles | Key questions |
|---|--|
| 5. Organizational Capacity 조직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 the mandate of the organizations concerned compatible with the role expected from them in the P/P? Do they have the capacities (financial, human, structural.....to undertake the specific tasks in question and guarantee responsibility for them?) Are necessary internal and external incentives in place for them to be able to adequately play their role? |
| 6.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투명성과 책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 there a flow of information (in an adequate format) to the relevant constituencies about the P/P? Is there clarity in the P/P proposal regarding responsibilities, roles and organization among the stakeholders? Are targets and results of the P/P clearly identified? Will those dealing with resources have well-defined and consequent obligations (e.g. reporting on the use of those resources)? Are they required to demonstrate fulfillment of those obligations and face sanctions for failure? |

2. 민주적 거버넌스

| Guiding principles | Key questions |
|---|---|
| 1. Participation and ownership 참여와 주인의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ve all relevant stakeholders been identified and given the possibility to participate? Is there a balanced and representa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notion of legitimacy)? Have costs to stakeholders' participation been evaluated? Have expectations and concerns, voiced in consultation with the stakeholder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P? Do the relevant stakeholders perceive the P/P as important? |
| 2. Equity 평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s the P/P provide net gains to poor people that respond to their priority needs? Does i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ial impact of poverty by gender and by disadvantaged groups? Does the P/P enhance strategic and immediate gender equality? Is there unjustified discrimination in the benefits/burdens of the P/P? |
| 3. Organisational capacity 조직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 the mandate of the organisations concerned compatible with the role expected from them in the P/P? Do they have the capacities (financial, human, structural.....to undertake the specific tasks in question and guarantee responsibility for them?) Are necessary internal and external incentives in place for them to be able to adequately play their role? |

| Guiding principles | Key questions |
|---|---|
| 4.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투명성과 책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 there a flow of information (in an adequate format) to the relevant constituencies about the P/P? Is there clarity in the P/P proposal regarding responsibilities, roles and organisation among the stakeholders? Are targets and results of the P/P clearly identified? Will those dealing with resources have well-defined and consequent obligations (e.g. reporting on the use of those resources)? Are they required to demonstrate fulfilment of those obligations and face sanctions for failure? |

3. 평화 – 갈등 감수성⁵⁸⁾

| | |
|--|--|
| Mainstreaming SDG 16 Conflict Sensitivity 주류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flict sensitivity :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you operate;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your intervention and the context; and act upon the understanding of this interaction, in order to avoid negative impacts and maximize positive impacts. What and How of conflict sensi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to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you operate ✓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your intervention and the context ✓ Use this understanding to avoid negative impacts and maximise positive impacts How to do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ry out a conflict analysis and update it regularly - Link the conflict analysis with the programming cycle of your intervention - Plan, implement, monitor and evaluate your intervention in a conflict-sensitive fashion (including redesign when necessary) |
|--|--|

58) Sida(2017) Approach to an Integrated Conflict Perspective, Sida(2017) Conflict sensitivity in programme management, Saferworld(2004) Conflict-sensitive approaches to developm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eacebuilding 참조하여 재구성

가. Sida: Building and assessing institutional capacity to integrate conflict
체크리스트(2017)

| | Key questions |
|---|--|
| 1. Institutional Capacity 기관 역량 Commitment culture, resources knowledge too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licies/strategies, annual work plans, budgets and other key planning instruments refer to conflict sensitivity? Management and leadership culture support learning, flexibility and responsive programming? Analytical processes and strategic choices are systematized and well-documented (lessons learned)? Management and staff understand (have shared understanding) and are able to explain why conflict sensitivity is important to their respective areas of responsibility? Have they received training? Guidelines and tools on conflict sensitivity are available to staff and partners? |
| 2. Management Processes Strategic Program Project leve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ategic programme/project planning and direction is informed by a conflict analysis or similar analysis taking into consideration root causes to conflict, conflict risks and opportunities, dividers and connectors? Conflict sensitivity considerations are reflected in the initiative (overall design, objectives and/or in the risk analysis)? Opportunities to support conflict prevention/resolution and/or peacebuilding are identified and reflected in the strategic direction? M&E and learning frameworks include reference to measuring intended and unintended outcomes from a conflict perspective? Flexibility, adaptation and responsiveness principles are built into the project/programme? |
| 3. Operational Practices Approaches Values Principl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re principles of the conflict perspective (participatory approach, inclusiveness, impartiality, transparency, respect, accountability, partnership and coordination,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timeliness and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are reflected in operational practices? Risk mitigation from a Do-No-Harm perspective is systematically applied in project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positive change (e.g. by transforming attitudes, structures and institutions that have a bearing on the conflict context) are identified and acted upon? Structural causes of conflict (such as gender-based violence, gender inequality and other patterns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at risk leading to violent conflict are addressed in the project/programme? |
| 4. Results Intended and unintended impact on th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rough M&E and learning activities (internal and external), we have gathered evidence demonstrating that: Efforts to mitigate the risk of doing harm have been effective, i.e. we are doing more good than bad? |

| | |
|------------------|---|
| conflict contex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ities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flict context, i.e. we are contributing to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resolution and/or peacebuilding within the limitations of our respective mandates and objectives? • Operational challenges and lessons learnt, including from situations where activities may have had an unintended negative effect on the conflict context have been documented and analysed? |
|------------------|---|

나. EU Root Causes of Conflict 체크리스트(2002)

| | Key questions |
|----------------------------------|--|
| 1. Legitimacy of the St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e there proper checks and balances in the political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ect of the Constitution, ability of the Parliament and the Judiciary to check on the executive, devolution of powers and ability of regional authorities (if any) to counterbalance central power ... • How inclusive is the political or administrative 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hnic and religious representativeness of the government, equality of access to political activity,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fair recruitment in the administration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 • What is the overall level of respect for national autho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storical resentments against State authority, existence of independentist movements, parties advocating for extreme solutions (revolutionary or reactionary) to perceived shortcomings, perceived ability of the State to answer people's needs ... • Is corruption widespre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all level of corruption, existence of anti-corruption programmes, widespread bribery in bureaucracies, collusion between private sector and civil servants ... |
| 2. Rule of La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strong is the judicial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the judiciary, equality of all citizens before the law, effective possibility to undertake legal action against state decisions, enforcement of legal decisions ... • Does unlawful state violence ex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cipation of security forces in illegal activities (road blocks, extortion, others), effective prosecution of human rights abuses by security forces, existence of a minimal human rights framework for their operation, prison conditions ... • Does civilian power control security fo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luence of security forces over political decision-making, role of the Parliament debating/checking their use, existence of open debate and media/academic scrutiny on the security sector ... • Does organized crime undermine the country's s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rol of a significant part of the country/economy by criminal networks (drugs, natural resources, human trafficking), existence of private armies or armed paramilitary groups acting with impunity, proper re-integration of former combatants into social life ... |

| | Key questions |
|---|---|
| 3. Respect for Fundamental Righ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e civil and political freedoms respec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ect of the right to vote eligibility,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 assembly, free and fair elections respecting the rights of the opposition ... • Are religious and cultural rights respec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nishment by law of religious, ethnic, or cultural discrimination, recognition of minority language e.g. in education, definition of the state with no reference to a dominant religious/cultural identity ... • Are other basic human rights respec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secu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rture, illegal detention), gender equality, freedom of private practices (dress codes, private life, etc.), adherence to and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effective operation of human rights monitoring by NGOs and/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 4. Civil Society and the Medi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 civil society operate freely and efficient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tection of NGOs and rights of association by the state, liveliness of civil society access to staff, training, resources and others, ability to influence policy processes and resolve tensions between communities... • How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are the m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nsorship by government, independence of the media from partisan agendas and political or private interests, ability to reflect the views of all social groups |
| 5. Relations Between Communities and Dispute-Solv ing Mechanism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good are relations between identity grou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ility of major identity groups to mix together, frequency of outbursts of racial/religious violence, perpetuation of negative stereotypes or mutual suspicions by collective memory and culture, existence and effectiveness of reconciliation mechanisms (e.g. justice commissions) ... • Does the state arbitrate over tensions and disputes between comm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istence and effectiveness of mechanisms arbitrating between conflicting parties ('wisemen', elders, ombudsmen), political manipulation of ethnic/identity differences, existence of regional for a for conflict prevention/resolution ... • Are there uncontrolled flows of migrants/refug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friction between migrant and host communities (e.g. adverse pressure on food, water, etc.), respect for basic rights of migrants/ refugees, impact of migration flows on ethnic/identity balance of host regions ... |
| 6. Sound Economic Manag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robust is the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ome dependence on a limited number of sectors (e.g. one single agricultural product or industry or remittance), capacity to react to natural disasters or international conditions (e.g. massive swings in commodity prices) ... • Is the policy framework conducive to macro-economic s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bility of main macro-economic fundamentals (inflation, public deficit, current |

| | Key questions |
|--|---|
| | <p>accounts), ability to attract investment (both domestic and FDI), implementation of policies negotiated with IFI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sustainable is the state's environmental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irness of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e.g. water), anticipation of possible internal or external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s, risk of serious environmental degradation (e.g. desertification) forcing people into exile or threatening traditional ways of life ... |
| 7. Social and Regional Inequali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are social welfare policies address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all level of literacy, health, sanitation, development of safety nets & income policies (or, by default, existence of alternative social mechanism ensuring local or family solidarity), correct anticipation of massive demographic changes by public policies (especially urbanization and youth unemployment) ... • How are social inequalities tack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end for poverty and marginalization (especially in absolute terms), vulnerability of least-favoured segments of society, fairness of access to education, health care, jobs, economic opportunities (including women and minorities), existence of public policies addressing inequalities, among communities through land reform, quota systems, social programmes or others ... • How are regional disparities tack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ban/rural gaps, existence of regions lagging behind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or particularly affected by lack of vital resources, redistributive policies between regions ... |
| 8. Geopolitical Situ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stable is the region's geopolitical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lations with the country's neighbours, pending border issues, dependency of the country on unstable neighbours for vital assets (e.g. access to sea or water), effectiveness of regional 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 • Is the state affected by external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stabilising policies of outside forces, existence of proactive communities/ diaspora abroad, ability to control arms trafficking ... • Is the state affecting regional s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to militias or rebel groups operation on neighbouring territories, protection of war criminals or rebel groups from neighbouring states, exploitation of the country's natural resources for foreign purposes, presence of illicit international activities on the country's territory ... |

2. 사업 시행 절차별 주류화(안)

가. 인권 민주주의 주류화(안)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 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Programming | | | |
| 전략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국 국별협력전략(CPS), 국별 중점 지원분야, 중기전략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및 협력전략수립 시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HD)의 주류화 〈참여과 주인의식〉〈평등〉〈조직 역량〉〈투명성과 책무성〉 및 〈인권〉 원칙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인권과 민주주의 주류화 가이드라인” |
| Identification | | | |
| 사업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사업 형성(Alignment & Harmonization) 및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대상국의 HD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협력국별 HD 현황” 발간 |
| 사업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국 사업제안서(PCP) 접수, 1차 검토를 통해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P상의 HD 고려 확인 | |
| Formulation | | | |
| 예비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 각론 분석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인권과 민주주의 주류화 가이드라인” |
| 사업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후보사업 선정 후 외교부 시행 계획 심의 및 국무조정실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내부 전문가가 HD 마커 분류 적합성 등 검토 HD 주류화 사업에 대한 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전문가에 대한 HD 역량강화 |
| 예산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 16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대상 SDG16 인지제고 |
| 기획조사 및 RD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기획조사 실시, 당해연도 사업들에 대한 정부 간 합의문 교환 및 사업시행 기관 간 협의 의사록(RD)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 기획조사 시 HD 전문가 동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협력 HD전문가 육성 및 pooling |
| 집행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세부실시계획 수립(사업 계획,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기자재 사양조사, 소요예산 산출, 입찰계획서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 요소 강조 HD 별 다양한 지표(예, 인권 PANEL 원칙)를 사업계획, 시행, 모니터링에 반영 | |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 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에 대해 분리데이터 수집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 |
| Procurement | | | |
| 사업시행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KOICA), 입찰제안서 제출(응찰업체), 기술평가, 가격평가, 계약체결 및 본 사업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에 SDG 16 주류화 필요성 명시 기술평가에 개발협력 HD 전문가 초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pooling |
| Implementation | | | |
| 사업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 원칙에 입각한 사업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자 HD 교육 |
| Monitoring & Evaluation | | | |
| 모니터링 및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모니터링, 중간 점검 및 종료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시 가능한 범위 분리 데이터 수집 중간점검 시 HD 영향력 등 파악 HD 원칙 기반 평가 매트릭스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 모니터링 프레임 제시 (가이드) ODA 평가 가이드 라인 개정 |
| ↓ | | | |
|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 |

나.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안)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 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Programming | | | |
| 전략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국 국별협력전략(CPS), 국별 중점 지원분야, 중기전략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및 협력전략수립 시 평화/갈등 감수성의 주류화 기본 원칙 확인 Participatory process Inclusiveness of actors, issues and perceptions Impartiality in relation to actors and issues Transparency Respect for people's ownership of the conflict and their suffering Accountability for one's own actions Partnership and co-ordination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Timeliness and Flexibility Responsivenes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평화/갈등감수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 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Identification | | | |
| 사업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사업 형성(Alignment & Harmonization) 및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대상국의 Peace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협력국별 Peace 포트 폴리오” 발간 |
| ↓ | | | |
| 사업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국 사업제안서(PCP) 접수, 1차 검토를 통해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P상의 Peace 고려 확인 | |
| Formulation | | | |
| 예비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ace 각론 분석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평화/갈등감수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
| ↓ | | | |
| 사업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후보사업 선정 후 외교부 시행 계획 심의 및 국무조정실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내부 전문가가가 Peace 마커 분류 적합성 등 검토 Peace 주류화 사업에 대한 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전문가에 대한 Peace 역량 강화 |
| ↓ | | | |
| 예산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 16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대상 SDG16 인지제고 |
| ↓ | | | |
| 기획조사 및 RD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기획조사 실시, 당해연도 사업들에 대한 정부 간 합의문 교환 및 사업시행 기관 간 협의 의사록(RD)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 기획조사 시 Peace 전문가 동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협력 Peace 전문가 육성 및 pooling |
| ↓ | | | |
| 집행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세부실시계획 수립(사업 계획,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기자재 사양조사, 소요예산 산출, 입찰계획서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ace 요소 강조 Peaced의 다양한 지표를 사업계획, 시행, 모니터링에 반영 주요사업에 대해 분리데이터 수집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 |
| Procurement | | | |
| 사업시행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KOICA), 입찰제안서 제출(응찰업체), 기술평가, 가격 평가, 계약체결 및 본 사업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에 SDG 16 주류화 필요성 명시 기술평가에 개발협력 Peace 전문가 초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pooling |

| 구분 | 현행 사업추진절차 | SDG 16 주류화 전략 | 준비사항 |
|------------------------------------|-------------------------|---|---|
| Implementation | | | |
| 사업수행 | • 사업추진 | • Peace 원칙에 입각한 사업 수행 | • 사업수행자 Peace 교육 |
| Monitoring & Evaluation | | | |
| 모니터링 및 평가 | • 사업 모니터링, 중간 점검 및 종료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 가능한 범위 분리 데 이터 수집 • 중간점검 시 Peace 영향력 등 파악 • Peace 원칙 기반 평가 매트릭스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ce 모니터링 프레임 제시 (기아드) • ODA 평가 가이드 라인 개정 |
| ↓ | | | |
| 사후관리 | • 종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 |

2. 프로세스별 점검사항

가. EC 거버넌스의 예

1) Programming (전략 및 CPS 단계)

Checklist:

Overal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Political system, its organisation and agenda

Relevant aspects of the country's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dentification of the main actors involv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Political context and constraints

Pressing governance needs of the country

2) Identification (사업형성)

Checklist:

1. Participation and ownership

- Are all relevant stakeholders identified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 Is there a balanced and representa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 Have the costs of participation for stakeholders been evaluated?
- Do the relevant stakeholders perceive the P/P as important?

2. Equity

- Could the P/P provide net gains to poor people that respond to their priority needs?
- Could the P/P enhance strategic and immediate gender equity in the country?
- Are the benefits of the project free from unfair discrimination?

Checklist:

3. Organisational capacity

- Is the mandate of the implementing organisations compatible with the role that will be expected from them in the P/P?
 - Do they have the capacities (financial, human, structural..... to undertake the specific tasks in question and guarantee responsibility for them?)
 - Are necessary internal and external incentives in place for them to be able to play their role adequately?
-

4.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Will there be a flow of information about the P/P (in an adequate format) to the relevant constituencies?
 - Is there clarity in the P/P proposal regarding responsibilities, roles and organisation among the stakeholders?
 - Are targets and results of the P/P identified?
 - Will those dealing with resources have well-defined and consequent obligations (e.g. reporting on the use of those resources)?
 - Will they be required to demonstrate fulfilment of those obligations and face sanctions for failure?
-

3) Formulation (사업개발)

Checklist:

1. Participation and ownership

- Are all relevant stakeholders identified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 Is there a balanced and representa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 Have the costs of participation for stakeholders been evaluated?
 - Have expectations and concerns, voiced in consultation with the stakeholder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P?
 - Do the relevant stakeholders perceive the P/P as important?
-

2. Equity

- Does the P/P provide net gains to poor people that respond to their priority needs?
 - Does the P/P enhance strategic and immediate gender equity in the country?
 - Are the benefits of the project free from unfair discrimination?
-

3. Organisational capacity

- Is the mandate of the concerned organisations compatible with the role expected from them in the P/P?
 - Do they have the capacities (financial, human, structural..... to undertake the specific tasks in question and guarantee responsibility for them?)
 - Are necessary internal and external incentives in place for them to be able to play their role adequately?
-

4.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Is there a flow of information about the P/P (in an adequate format) to the relevant constituencies?
-

Checklist:

- Is there clarity in the P/P proposal regarding responsibilities, roles and organisation among the stakeholders?
 - Are targets and results of the P/P clearly identified?
 - Will those dealing with resources have well-defined and consequent obligations (e.g. reporting on the use of those resources)?
 - Are they required to demonstrate fulfilment of those obligations and will they face sanctions for failure?
-

4) Implementation (사업수행)

Checklist:

1. Participation and ownership

- Are all relevant stakeholders identified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 Is there a balanced and representa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 Have the costs of participation for stakeholders been evaluated?
 - Have expectations and concerns, voiced in consultation with the stakeholder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P?
 - Do the relevant stakeholders perceive the P/P as important?
-

2. Equity

- Does the P/P provide net gains to poor people that respond to their priority needs?
 - Does the P/P enhance strategic and immediate gender equity in the country?
 - Are the benefits of the project free from unfair discrimination?
-

3. Organisational capacity

- Is the mandate of the concerned organisations compatible with the role expected from them in the P/P?
 - Do they have the capacities (financial, human, structural..... to undertake the specific tasks in question and guarantee responsibility for them?)
 - Are necessary internal and external incentives in place for them to be able to play their role adequately?
-

4.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Is there a flow of information about the P/P (in an adequate format) to the relevant constituencies?
 - Is there clarity in the P/P proposal regarding responsibilities, roles and organisation among the stakeholders?
 - Are targets and results of the P/P clearly identified?
 - Will those dealing with resources have well-defined and consequent obligations (e.g. reporting on the use of those resources)?
 - Are they required to demonstrate fulfilment of those obligations and will they face sanctions for failure?
-

5) Evaluation

Checklist:

1. Participation and ownership

- Have all relevant stakeholders been identified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 Has there been a balanced and representa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 Have the costs of participation for stakeholders been evaluated?
- Have expectations and concerns, voiced in consultation with the stakeholder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P?
- Did the relevant stakeholders perceive the P/P as important?

2. Equity

- Did the P/P provide net gains to poor people that responded to their priority needs?
- Did the P/P enhance strategic and immediate gender equity in the country?
- Were the benefits of the project free from unfair discrimination?

3. Organisational capacity

- Was the mandate of the concerned organisations compatible with the role expected from them in the P/P?
- Did they have the capacities (financial, human, structural……) to undertake the specific tasks in question and guarantee responsibility for them?
- Were necessary internal and external incentives in place for them to be able to play their role adequately?

4.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Was there a flow of information (in an adequate format) to the relevant constituencies about the P/P?
- Was there clarity in the P/P proposal regarding responsibilities, roles and organisation among the stakeholders?
- Were targets and results of the P/P clearly identified?
- Did those dealing with resources have well-defined and consequent obligations (e.g. reporting on the use of those resources)?
- Were they required to demonstrate fulfilment of those obligations and did they face sanctions for failure?

다. Sida 평화—갈등감수성의 예

1) Strategic Level

Analysing Structures

- What are the key sources of tension and the underlying structural causes that could lead to structural instability in the society (e.g., poverty, economic inequality, poor governance, lack of democracy, uncontrolled spread of small arm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carcity of natural resources)?
- What structural factors can be regarded promoting peace (e.g., low levels of corruption, functional

social safety nets, independent judiciary, and military forces under civil democratic control)?

- What is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capacity to respond?
-

Analysing Actors

- Who and what are the key actors?
 - What are their interests?
 - What are their power bases and resources?
 - What are the roles of men and women in this conflict situation?
 - What are their specific needs, interests, and potential strengths?
 - Try to link actors and their interests in order to define ongoing and/or potential conflicts in which actors have incompatible interests. Try also to link actors and interests so as clearly to define the common ground where actors may have compatible interests.
 - Look at actors' positions and assess their incompatible interests in terms of greed and grievances.
 - Look at actors' expectations and assess possible expectation gaps.
 - Look at fear and insecurity as driving forces of various actors.
-

Analysing Conflict Dynamics

- What events, actions, and decisions can be identified as actual or potential trigger factors?
 - What consequences have these trigger factors had or will they have on structural causes and key actors?
 - What is/are the main mechanism(s) driving the conflict: for example, structural instability, struggles for power and influence, security dilemmas, or a combination of the above? What is/are the main mechanism(s) driving the conflict: for example, structural instability, struggles for power and influence, security dilemmas, or a combination of the above? See the Analytical Framework section.
-

Scenario Analysis

- What does a given scenario mean in a given context (e.g., a shift towards peace in a situation of rising tensions is very different from one in a situation of full-blown war)?
 - What events must take place for this scenario to be realised? Events should be outlined using clearly identifiable factors, including changes in the status quo when it comes to structural issues and actors' behaviour and attitudes.
 - What observable signs should appear if this particular scenario is to be realised?
 - What can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do to exert a positive influence over the course of events if a given scenario is realised? In connection with thi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historical opportunities and risks, so that a proactive stance can be adopted and suitable interventions planned and prepared beforehand.
 - Try to identify realistic future scenarios, looking at potential changes in the level and type of violence.
-

Strategies and options

- What structural processes need to be supported in the interest of greater structural stability?
 - How can projects/programmes support the roles of actors promoting peace and reduce the influence of those promoting violence?
-

-
- What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could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identified conflict situation(s)?
 - How can one ensure that the proposed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ventions are being carried out in a conflict sensitive manner?
 - Is there a need for specific projects to address the identified conflict situation(s)? What interventions could be supported?
-

2) Sector level

- Key sectors that need support and can assist in promoting peace by addressing root causes of conflict;
 - Content of the prsp and other poverty-reduction strategies;
 - Level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government decision making, especially concerning budget levels and priorities;
 - Opportunities and risks, concerning conflict issues, of a close/closer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 Likely impact of suspension of assistance to the current government;
 - Level of risk that funds will be diverted for other purposes (corruption/ fungibility), such as military ends;
 - Position of other donors concerning a Sector-Wide Approach (SWAp); and
 - Cross-sector issues, such as governance and human rights standards, that need to be addressed by various sectors and levels of society.
-
- Are there any risks that Sector Programme Support (sps) will undermine peace, for example, by fostering greater divisions in society?
 - What opportunities for preventing violent conflict and building peace could emerge from sps?
 - What forums exist for dialogue between the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ps?
 - What opportunities exist for donors to cooperate in jointly conducting conflict analysis and in promoting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regarding conflict-related issues in relation to sps?
 - How can donors support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

3) Project Level

Step 1. Identify Dividers and Sources of Tension Between People

- Analyse patterns in the tensions/dividers: Are most dividers the results of fighting or do they have a long history? What are the patterns and common features of the observed tensions/divisions;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Step 2. Identify Connectors and Factors that Connect People

- Analyse patterns in the connectors: Are most connectors linked to recent developments and are the results of fighting, or do they have a long history? What are the patterns and common features of the connectors;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

Step 3. Assess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Dividers and Connectors

- What impacts does the project have on the tensions/dividers and connectors?
 - How and why are the dividers and connectors affected? Does the project reduce or worsen tensions, support or undermine connectors?
 - Is there a need to redesign the project? If so, discuss the needed redesign.
-
- Step 4. Redesign the Project if Needed
-
- How could the project be redesigned to avoid having negative impacts?
 - How could the project be redesigned to maximize positive impacts?
-

4) Strategic Level

Analysing Structures

- What are the key sources of tension and the underlying structural causes that could lead to structural instability in the society (e.g., poverty, economic inequality, poor governance, lack of democracy, uncontrolled spread of small arm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carcity of natural resources)?
 - What structural factors can be regarded promoting peace (e.g., low levels of corruption, functional social safety nets, independent judiciary, and military forces under civil democratic control)?
 - What is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capacity to respond?
-

Analysing Actors

- Who and what are the key actors?
 - What are their interests?
 - What are their power bases and resources?
 - What are the roles of men and women in this conflict situation?
 - What are their specific needs, interests, and potential strengths?
 - Try to link actors and their interests in order to define ongoing and/or potential conflicts in which actors have incompatible interests. Try also to link actors and interests so as clearly to define the common ground where actors may have compatible interests.
 - Look at actors' positions and assess their incompatible interests in terms of greed and grievances.
 - Look at actors' expectations and assess possible expectation gaps.
 - Look at fear and insecurity as driving forces of various actors.
-

Analysing Conflict Dynamics

- What events, actions, and decisions can be identified as actual or potential trigger factors?
 - What consequences have these trigger factors had or will they have on structural causes and key actors?
 - What is/are the main mechanism(s) driving the conflict: for example, structural instability, struggles for power and influence, security dilemmas, or a combination of the above? What is/are the main mechanism(s) driving the conflict: for example, structural instability, struggles for power and influence, security dilemmas, or a combination of the above? See the Analytical Framework section.
-

Scenario Analysis

- What does a given scenario mean in a given context (e.g., a shift towards peace in a situation of rising tensions is very different from one in a situation of full-blown war)?
 - What events must take place for this scenario to be realised? Events should be outlined using clearly identifiable factors, including changes in the status quo when it comes to structural issues and actors' behaviour and attitudes.
 - What observable signs should appear if this particular scenario is to be realised?
 - What can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do to exert a positive influence over the course of events if a given scenario is realised? In connection with thi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historical opportunities and risks, so that a proactive stance can be adopted and suitable interventions planned and prepared beforehand.
 - Try to identify realistic future scenarios, looking at potential changes in the level and type of violence.
-

Strategies and options

- What structural processes need to be supported in the interest of greater structural stability?
 - How can projects/programmes support the roles of actors promoting peace and reduce the influence of those promoting violence?
 - What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could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identified conflict situation(s)?
 - How can one ensure that the proposed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ventions are being carried out in a conflict sensitive manner?
 - Is there a need for specific projects to address the identified conflict situation(s)? What interventions could be supported?
-

5. 국제인권도구

- 1948 –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UDHR)
- 1965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 1966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1966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1979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1984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 1986 –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DRTD)
- 1989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1990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 1993 –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DEVAW)
- 2000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1)
- 2006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2006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ICPEP)
- 2007 –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

6. UN의 SDGs와 인권 주요 논의 관련 자료

“Human Rights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Human Rights and the 2030 Agenda
- Human Rights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 Comments on the Draft Financing for Development Outcome Document
- Accountability and the Post-2015 Agenda
-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 Key OHCHR statements
- High Commissioner’s Speech: Inequalities Roundtable
- High Commissioner’s Speech: High-level Side-event on Inequalities
- Statement at the UN Summit Interactive Dialogue on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 High Commissioner’s Open Letter: Human rights and the post-2015 final draft outcome document
- High Commissioner’s Open Letter: Human rights in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agenda
- Human Rights and Statistics
- Keynote address on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Human Rights Council contribution to the 2016 High Level Political Forum (June 2016)

- Human rights treaty bodies contribution to the 2016 High Level Political Forum (May 2016)
- CEDAW contribution to the 2016 High Level Political Forum (May 2016)
- Summary table on the linkages between the SDGs and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Joint statement by Treaty Body Chairpersons on the Post-2015 Agenda
- Who Will Be Accountable?, OHCHR/CESR (2013)
- Human Rights Indicators, OHCHR (2012)
- OHCHR/UNEP info note on Universality

출처: <https://www.ohchr.org/EN/issues/MDG/Pages/The2030Agenda.aspx>

7. GIZ-독일연구소 공동연구자료 목록

- GIZ/DIMR (2009)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 GIZ/DIMR (2012) Annex to the ABC of Human Right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African Human Rights System.
- GIZ/DIMR (2012) Promising Practices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 Education – PACE: A rights-based vision among education officials in Guatemala.
- GIZ/DIMR (2013) Annex to the ABC of Human Right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 GIZ/DIMR (2013) Promising Practices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 Water and sanitation: Ensuring access for the urban poor in Kenya.
- GIZ/DIMR (2014) Annex to the ABC of Human Right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 GIZ/DIMR (2014) Promising practice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Adequate housing: Urban development planning in Brazil & participation, habitability and accessibility.
- GIZ/DIMR (2014) Promising practice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Education: Setting participation in motion for education in Peru.
- GIZ/DIMR (2014) Promising practice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Health: Patients’ rights charter in Cambodia.

- GIZ/DIMR (2014) Promising practice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Local governance: Accountable public services in Indonesia.
- GIZ/DIMR (2014) Promising Practices 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Economic development: Improving labour rights in the garment industry in Bangladesh.
- GIZ/DIMR (2014) The ABC of Human Right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GIZ/DIMR (2014)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8. 독일 GIZ의 인권개발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 목록

| Rights | Title of Programs/projects |
|---|---|
| Strengthen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i Lanka: Strengthening Democratic Structures in Local Government • Zambia: Human Rights as a Lever in Civil Society Lobbying • Guatemala: Local Development through Good Municipal Governance • Colombia: Access to Justice for All • Egypt: Overcoming Urban Poverty through Participation |
| Strengthening Social and Cultural Righ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bodia: A Charter for Patients' Rights • Malawi: Ensuring Basic Education for Early School Leavers • Kenya: Ensuring the Right to Water for the Poorest in the Cities • India: State Funded Health Care for the Poor • Liberia: Promoting Human Rights in the Country's Reconstruction • Sri Lanka: Human Rights Education for Schools • Kenya: Health for All without Discrimination |
| Strengthening Economic Righ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ibia: Land Reform Secures the Right to Food • Bangladesh: Labour Rights for Textile Workers • Colombia: Human Rights Training for Companies • MENA Region: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
| Strengthening the Rights of Disadvantaged Group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bodia: Overcoming Gender-Based Violence • Nicaragua: Art as a Means of Preventing Youth Violence • Togo: Strengthening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Philippines: Strengthening Indigenous Peoples' Rights to Land and Resources • Mauritania: Working with Imams to end Female Genital Mutilation • Bangladesh: Human Rights also Apply to Prisoners • Burkina Faso: Combating Child Labour and Child Trafficking • Pakistan: Integrating Afghan Refugees |
|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an-African Level: Supporting th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Afghanistan: Promoting Equal Rights with the Human Rights Commission • Kenya: Support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Peru: Strengthening the Ombuds Office to Support Resource Conflict Resolution |

출처: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examples from the field (2013)

9. 평화(Peace) 분류기준 및 정의서

| 분류 | 정의서 |
|-----|---|
| 평화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모든 형태의 폭력(violence) 감소 ■ 핵심: 폭력(violence) ■ 설명: 국내 또는 카뮤니티 내에서 아동, 소녀 및 여성, 난민, 토착민(소수자)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을 비롯한 일체의 폭력(violence) 발생을 근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활동 (“취약계층: 아동, 여성과 소녀, 인권옹호자, 토착민, 이민자, 국내실향민, 피난민, 장애인 등) ■ 세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녀 및 여성 대상] 배우자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조흔, 강제결혼, 강제동거, 강제결혼, 여성학살(여성성기질제술), 염산테러, 명예살인, 인신매매 등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 특정 상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아동 대상] 강제노동, 노예제도, 인신매매, 소년병 징집을 비롯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일체의 아동 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기타] 일체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폭력 등 커뮤니티 내 발생하는 일체의 폭력(violence)적 행위 근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대상 폭력 근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활동에는 취약계층(여성 및 소녀, 아동, 인권옹호자, 토착민, 이민자, 국내실향민, 피난민, 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태도, 규범 및 행동 변화; 법률 제정 및 법률서비스지원; 여성 및 소녀, 아동 대상 폭력 종식을 위한 법 제도 도입 강화 ◆ 제대군인의 사회재활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기술협력 (국제평화유지 활동 또는 소년병과 관련 있는 활동은 별개) ◆ 소년병 (예방 및 동원 해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병 동원 방지 및 소년병의 해산, 무장 해제, 사회재활류, 본국 송환, 재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원조와 정부 대상 기술협력 ◆ 인권 감시 및 교육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및 고문 피해자) (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은 별개) |

| 분류 | 정책 |
|-----|--|
| 평화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불법 거래 흐름 척결을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예방 기여 ■ 핵심: 불법 차금흐름, 불법취득 차산 환수, 조직범죄, 무기거래 ■ 설명: 불법 자금 거래 및 취득, 폭발물을 비롯한 무기 거래 등은 조직범죄를 양성하고,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바, 분쟁 발생에 기여하는 일체의 불법 거래 흐름을 근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세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자금흐름 감소 및 불법취득차산 환수 및 반환조치 강화 • 무기거래 감소, 폭발물(자로, 불발탄) 제거 •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지원 ◆ 소형 무기 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 생산시설의 민간 생산시설 전환, 소형무기(SAW)의 확산을 억제, 병지, 축소하기 위한 기술협력이 해당.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관련 있는 활동은 별개) ◆ 지역제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전쟁 후 잔여 폭발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 (지뢰, 잔여 폭발물 제거, 개발을 위한 대량 비축 무기 파괴 포함) (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지역제거 관련 활동은 별개); - 지역 위험 관련 교육과 인식 증진; 지역 피해자들의 사회복귀, 재합류 및 지원; 지역제거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지원 (활동 목적이 민간인을 위한 것이어야 함) ◆ 국제 불법 거래 및 조직적 부패 범죄 방지기구 및 제도 수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세탁 및 기타 조직적 부패 범죄와의 전쟁 및 방지를 위한 전문 조직, 기관 및 제도 수립 (예. 반부패위원회, 조직 범죄 및 불법 거래 모니터링 기구, 특별 수사지원 등) |
| 평화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의 효과적 예방 역량 강화 ■ 핵심: 폭력 및 분쟁 예방 활동 ■ 설명: 폭력(violence) 및 분쟁(conflict)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 평화유지 활동 ■ 세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유지를 위한 폭력 및 분쟁 예방 역량강화 • 평화유지군활동을 통한 국내외 분쟁(conflict), 테러 및 범죄 퇴치 ◆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 예방(P) |

| 분류 | 정책 |
|-------------|--|
| 평화유지군 활동(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유지, 분쟁 방지과 해결과 관련된 민간 활동에 대한 지원 (역량강화, 모니터링, 토론, 정보 교환 포함) - 유엔개발지원체제(UNDPA) 또는 EU유럽인보방유정책(ESDP)이 시행한 국제 민간평화임무의 양자 참여, 민간 평화 기금 또는 위원회에 제공한 지원 (예: 평화구축우원회, MDG 성과기금의 평화구축테마지원금). 지원의 형태는 자금 또는 장비•민간인•군병력 지원(예: 민간인 훈련 목적) ◆ UN 평화유지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전보장의사회 결의, 타 국제기구(UN, NATO, EU), 개발도상국의 지역 협의체 의해 요청된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참여 - UN평화유지군 지원활동 가능 범위: 인권 및 선거 모니터링; 해산된 군인들의 사회재활류; 국가의 기초 인프라 복원; 공무원 및 경찰 대상 재훈련과 모니터링; 치안 분야 개혁 및 기타 법률 관련 활동들; 세관 및 국경 관리 절차에 대한 교육; 가시경제적 재정적 안정화 정책에 대한 조언 및 교육; 무장한 피벌에 대한 해산 및 본국 송환, 무기 제거; 지역제거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강제시행은 ODA 비적격) - ODA에 적격한 평화유지 활동의 양자 참여 형태: 장비 또는 군병력, 관련 분야 인력(경찰)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인도주의적 원조사업(인력 또는 장비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 지원으로도 지원 가능 - 평화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 (UN 평화유지군 활동 예산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양자 ODA가 아니라 다자 ODA) <p>■ 목표: 치안 및 안전 강화를 통한 폭력을(violence) 및 갈등(conflict) 예방 환경 구축</p> <p>■ 핵심: 치안 (인전, 보안)</p> <p>■ 세부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비폭력 문학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습환경 제공 (학교 시설) • 안전한 교통체계 마련 및 접근성 강화 •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강화 ◆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법치 확립을 위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기술 협력 - 국방예산을 포함한 관련예산에 대한 투명한 회계시스템 및 민주적인 관리와 민간 감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 협력; - 국가안전보장체제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관련 활동은 별개) |
| 평화4 | <p>■ 목표: 이주민(국내 실형민 및 난민)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을 통한 사회 재통합 실현</p> <p>■ 핵심: 이주민 (국내 실형민, 난민)</p> <p>■ 설명: 이주민(국내 실형민 및 난민)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필요한 긴급 구호를 적절히 받으며, 지정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지원 활동</p> |
| 평화5 | <p>■ 목표: 이주민(국내 실형민 및 난민)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을 통한 사회 재통합 실현</p> <p>■ 핵심: 이주민 (국내 실형민, 난민)</p> <p>■ 설명: 이주민(국내 실형민 및 난민)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필요한 긴급 구호를 적절히 받으며, 지정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지원 활동</p> |

| 분류 | 정책 |
|----|---|
| | <p>■ 세부법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비자별적 노동권 보호 및 평등한 근로환경 구축 • 이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위한 이주정책 개선 • 이주민들의 주거지(번민가, 피난처) 개선 • 이주민(국내실업민 및 난민)을 위한 긴급구호(인도적지원) 제공 ■ 구호물자지원 및 서비스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처, 물, 위생, 보건 서비스; - 의약품 공급과 기타 식량 이외의 긴급구호품 (개도국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에 제공하는 음식과 보호는 별개) - 난민과 국내피난민의 재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식량원조(인도적지원)(P) - 개도국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에게 제공하는 무상 배급을 위한 식량원조 또는 특별 보안 급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호 조정/보호 및 안전 확보(인도적지원)(P) -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물류 및 의사소통 시스템 포함), 민간인과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안전, 행복, 존엄을 보호 및 증진(무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구호(인도적지원)(P) - 응급상황 기간 동안의 활동, 긴급상황이나 분쟁 이후 기존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한 단기 재건 활동(도로, 다리, 항구등의 복구, 물과 위생, 피난처, 보건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시설들의 복구); 긴급상황으로 인한 새로운 생계수단 개발 또는 과거 생계수단으로의 복귀를 돋는 사회 경제적 복원 지원활동(트리우마 상담과 치료, 고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지원(공여국 내)(P) |

10. 인권(Human Rights) 분류기준 및 정의서

| 분류 | 정의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동일한 임금 및 고용환경을 구축하여 경제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 ■ 핵심: 노동권, 경제권 ■ 설명: 노동 및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일체의 인권 강화 지원 활동 ■ 세부범위: 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권 <p>- ILO 기준에 맞는 평등한 노동권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임금, 고용)</p> <p>- 경제권, 노동권 관련 국제 인권 협약을 국내 법률로 승인</p> <p>- 이주민, 이동, 여성, 장애인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p> <p>-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중간 소득의 50% 이하 빈곤층 해소 지원</p> <p>- 이주민의 성별, 신분별 산업안전 강화 지원</p> <p>- 이주민의 성별, 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법에 기반하여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단체교섭권 및 결사의 자유 등)</p> <p>* ILO노동기준: 강제근로, 근로감독, 취업이주, 결사 및 단결권, 노동조항, 통등보수, 노동최저기준, 노동최저연령, 최저임금, 균등대우(고용차별), 고용정책, 인적자원, 산업안전, 가족부양근로자, 사회보장권, 장애인고용, 삼자협의, 소수자(토착민, 부족민, 여성, 이주민) 노동권, 근로조건, 직업소개소, 해사노동, 어선근로, 중소기업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권, 노동권 관련 인권 감시 및 교육(H) <p>- 전세계, 지역, 국가, 지방에 걸쳐 국제적인 협약 및 ILO 협약에 의해 정의된 시민들의 경제적 권리 및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전문 인권 기구 또는 인권 메카니즘을 지원하는 활동; 국제 인권 공약을 국내 법률로 승인; 보고 및 후속 조치; 노동권 및 경제권 관련 토론</p> <p>- 공공 대상의 노동권 및 경제 인권 교육에 인식 증진</p> <p>-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및 고문 피해자) (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은 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권, 노동권 관련 성평등 및 여권 신장 활동 기관 지원(H) <p>- 경제권, 노동권 관련 성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나 단체에 대한 지원</p> |

| 분류 | 정의/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비차별적인 접근성보장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권 및 포용성 강화 ■ 핵심: 사회권, 문학권, 교육, 정보 ■ 설명: 사회, 문화적 축면과 관련한 일체의 인권 강화 지원 체계 활동 ■ 세부범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권 <p>- 사회문화권 관련 국제 인권 공약을 국내법률로 승인 (경제권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인권 협약을 통 범주로 분류)</p> <p>- 국내 이주민(난민, 국내실향민) 지원 정책 마련 지원</p> <p>- 취약계층을 위한 토지제체 마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도농, 소득수준, 장애, 소수민(원주민), 난민 등을 포용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지원 - 기자, 언론인, 노동조합원, 인권옹호자의 안전 및 인권보장 체제 강화 - 기자, 언론인, 노동조합원,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p>- 대중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 마련 지원</p> <p>- 양성평등과 인권 교육, 글로벌시민의식 교육 SDGs 이해 교육 실시</p> <p>- 양성평등, 인권, 글로벌시민의식, SDGs 가 국내 교육(국가교육정책, 교육과정, 학생평가과정 등) 메커니즘 내 주류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권 관련 인권 감시 및 교육(H) <p>- 전세계, 지역, 국가, 지방에 걸쳐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정의된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전문 인권 기구 또는 인권 메커니즘)를 지원하는 활동; 국제 인권 공약을 국내 법률로 승인; 보고 및 후속 조치; 인권 관련 토론회</p> <p>- 인권 운동가 인권NGOs; 인권 변호와 운동; 공동 대상의 인권 교육에 인식 증진</p> <p>-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 (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및 고문 피해자) (영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은 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권 관련 성평등 및 여권 신장 활동 기관 지원(H) <p>- 사회문화권 관련 성평등 및 여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나 단체에 대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 유통(H) <p>- 공공의제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검열없는) 흐름을 지원하는 활동; 편집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 인쇄 및 방송 미디어의 정직함을 강화시키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서비스(H) <p>- 사회법률과 행정 서비스 수립 및 강화</p> |

| 분류 | 정의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 사회적 안전망과 기타 사회적인 사업계획 수립 - 노인, 고아, 장애인, 거리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 사회적인 출연에서의 구조적 개혁 - 비특정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소비자 보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DS사회적 영향원회(=) - 에이즈의 영향을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 (예:에이즈 보균자들을 위한 식량안보 및 고용확보등과 같은 사회적, 법적, 경제적 지원); - 에이즈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과 악자 그룹을 위한 지원; 에이즈 보균자들의 인권 |

11.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분류 기준 및 정의서

| 분류 | 정의서 |
|----------------------|--|
| 민주적 거버넌스1 세부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법치 촉진 및 평등한 시법집근성 제고 및 보장 ■ 핵심: 법치, 시법(제도), 평등, 접근성 ■ 설명: 시법집근성 강화 및 보장 등을 통하여 법치주의 확립을 지원하는 활동 ■ 갈등해결매커니즘 구축 및 실제 운영 강화 ■ 교도소 수감자 대상 최종 판결 완료 비율 강화 ◆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D) - 사법제도 및 정책, 행정 체계 구축, 경찰 치안 업무 및 서비스, 소방 및 구조 서비스, 사법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옴부즈만 제도, 이민정책, 수감제도 구축 |
| 민주적 거버넌스2 세부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감소 ■ 핵심: 뇌물, (부정) 부패, 비리, 불법자금 ■ 설명: 개인, 기업, 궁금기관 등을 포함하여 뇌물수수 감소 및 불법자금 봉쇄 등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활동 ■ 개인, 기업, 궁금기관 등 일체 부패 및 뇌물 의뢰 또는 수수 감소 지원 ■ 정치부패 및 행정부패 등 일체 부패 해소 지원 ◆ 부패방지기구 및 기관(D) - 부패, 뇌물, 돈세탁 및 기타 조직적 부패 범죄의 전쟁 및 방지를 위한 전문 조직, 기관 및 제도 수립 (예. 반부패위원회, 모니터링 기구, 특별 수사지원, 도덕 및 청렴 감시제도, 부패방지 관여 NGO 및 시민사회 단체) ◆ 공공재정관리(D) - 예산편성, 국가감사, 재무 및 원조 관리 |
| 민주적 거버넌스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체무성 있고 투명한 제도 구축 및 강화 ■ 핵심: 제도, 효과성, 체무성, 투명성, 공공서비스 |

| 분류 | 정의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정부 및 사회전반에 걸쳐 공공 분야 관리 시스템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효과성, 청무성, 투명성 있는 제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 활동 ■ 세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시스템 개선, 재정투명성 강화 지원 • 모든 제도의 효과적인 책임 운영 지원 ◆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분야 관리 시스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지원 (가시 경제, 기타 정책 관리, 조정, 계획 및 개선 포함); - 인적 지원 관리; 조직 개선 - 시민 서비스 개선 활동 - 전자 정부 구축 - 개발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원조 조정과 관련된 정부부처 지원; 비특정 분야의 기타 정부 부처 지원 (세부) 대외업무, 외교, 개도국의 해외운조 행정(심각협력, 남남협력 포함), 인사 일반, 중앙 서비스 조달, 기타 일반 공공서비스 조달, 국가모니터링 및 평가, 거시경제 정책, 기상 서비스, 국가표준 개발, 행정부, 공공재정관리, 예산편성) ◆ 공공재정관리(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국가감사, 재무 및 원조 자금 관리 ■ 목표: 공식 정치과정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및 포용성 제고 ■ 핵심: 포용, 참여, 정책, 의사결정, 공공기관 ■ 설명: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포용성 강화를 포함, 시민들의 정치과정에의 참여 제고를 위한 활동 ■ 세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국가, 지방 단위/ 입법, 사법, 행정부) 내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포용성 강화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포용성 강화 |
| 민주적 거버넌스 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외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및 민주주의 지원. 국민투표 또는 시민 발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수단. 구성원을 변호 및 대변하고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구 지원. 공론의장에서 시민의 활동을 돋는 지원. 다양한 수준의 시민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육 (기바넌스 문제를 다루는 활동에 국한) ◆ 선거(D) |

| 분류 | 정책의제 |
|--------------|--|
| 민주적 가버넌스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관리 기구 및 과정, 선거 침관, 유권자 교육 (평화유지활동 내 선거관련 활동은 별개) - 의회 및 지방정부에서의 여성 참여 비중 강화 - 여성 경영진 비중의 강화 ◆ 분권화 및 지방정부 지원(D) -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지방정부 행정 시스템 강화 <p>■ 목표: 국제기구 내 개도국의 회원가입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 강화</p> <p>■ 핵심: 국제기구, 개도국 기입, 참여, 국제기준</p> <p>■ 설명: 개도국의 국제기구 가입 및 참여 지원을 통해 국제기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 세부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내 개도국 회원 가입 지원 • 국제기구 내 개도국 참여 및 국제기준 이행 지원(국내 무역 기준 이행 지원 등) <p>◆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 금융 시장과 시스템 <p>* 동 분야는 향후 지원 확대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양자형태 보다는 다자적 형태 모색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p> |
| 민주적 가버넌스6 | <p>■ 목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Brien' 감소 및 퇴치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p> <p>■ 핵심:'Brien', 취약계층</p> <p>■ 설명: 정부 예산 책정 지원 포함'Brien'총, 취약계층의'Brien' 퇴치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 세부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rien',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예산 책정 지원 <p>◆ 사회법률과 행정(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사회 안전망과 기타 사회사업 계획; 노인, 고아, 장애인, 거리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혁; 비특정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소비자 보호 포함) |
| 민주적 가버넌스7 | <p>■ 목표: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 축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p> <p>■ 핵심: 양성평등, (비)차별, 여성, 소녀</p> |

| 분류 | 정책의사 |
|--------------|--|
| 민주적 가비넌스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양성평등 축진 및 차별 종식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 활동 ■ 세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및 비차별을 이행 및 모니터링, 차별 위헌 법적 체계 구축 지원 •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국기 예산 배분 ◆ 성평등 조직 및 제도 개선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차별 종식을 위한 노력, 태도, 규범 및 행동 변화, 법-제도 개정 지원 ◆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D) - 시법정책 및 계획, 행정 체계 구축, 사법시스템 구축 및 강화 ■ 목표: 공정한 세수회보를 위한 정책 및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조세 체제 강화 ■ 핵심: 조세, 세금, 세수 ■ 설명: 개도국이 국내 세원회보를 통해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수 확보 정책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 세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정수 체제 강화 지원 ◆ 국내재원조성(D) - 세금 징수, 조세정책 및 관련 행정 지원 |
| 민주적 가비넌스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개도국 내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이고 규칙을 균간으로 한 다자 무역기준 이행력 제고 ■ 핵심: 공평, 무역체제, 기준이행 ■ 설명: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기준 이행력을 제고하도록 제공하는 기술협력 ■ 세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무역 기준 이행 지원 ◆ 통상정책(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과 기업협회,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 - 기업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 민간 부문 기관 역량강화; 통상 정보 제공 - 무역 박람회등 민관 네트워킹 - 전자상거래; 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민간 부문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

| 분류 | 정책의사 |
|---------------|---|
| 민주적 거버넌스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출생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 핵심: 법적 지위, 출생신고 ■ 설명: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지원 활동 ■ 세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출생신고 마련 지원 •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시스템 지원 사업 ◆ 출생등록 및 법적지위 관련 법률과 행정(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등록 시스템 마련 및 법적지위 강화;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 출생등록 및 법적지원 보장 관련 사업계획; 출생신고 및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구조적 개혁 ◆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조사 업무; 인구동태 등록; 이주 데이터 지원 |

12. SDG16+ 해당 세부목표(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구축을 위한 세부목표) 종합본

| 순 서 | 구분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SDGs 세부목표 | |
|--------|---------------------------------|---|-----|---|---|-------|
| | | | | | | 해당 지표 |
| 1 | 교육 (평화 및 비폭력 문화 관련 교육 강화) | 교육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소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기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기능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 4.7 | 2030년까지 지속기능개발과 지속기능한 생활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글로벌시민의식 교육과 (ii) 지속기능개발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학생 평기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4.a.1 (a) 전기, (b) 수업 목적의 인터넷, (c) 수업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 기초 수수, (f) 성별로 분리되어있는 기초위생시설 및 (g) 기초손씻기 시설(WASH 지표정의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 | |
| 2 | 평화 (인전한 교육시설 구축) | 교육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인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 제공 | 4.a | 이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5.2.1 지난 12개월동안 파트너(배우자 및 데이트 상대 포함)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경험자 비중 (연령별, 폭력의 형태별) | 4.a.1 (a) 전기, (b) 수업 목적의 인터넷, (c) 수업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 기초 수수, (f) 성별로 분리되어있는 기초위생시설 및 (g) 기초손씻기 시설(WASH 지표정의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 | |
| 3 | 양성평등 (여성 및 소녀 대상 폭력 근절) |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5.2 |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중(연령별, 장소별) | 5.2.1 지난 12개월동안 파트너(배우자 및 데이트 상대 포함)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경험자 비중 (연령별, 폭력의 형태별) | |

| 순 서 | 구분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SDGs 세부목표 | 해당 지표 |
|--------|---------------------------------|--|------|---|---|-------|
| 4 | 양성평등 (아동, 결혼, 여성 헬레 근절) |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과 여성학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 5.3 | 강제노동 토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일자리 (아동, 노동, 소년병) |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여성의 비중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질제 받은 연령별 비중 | |
| 5 | 일자리 (강제노동, 현대적 노예제, 인신매매) |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 8.7 | 강제노동 토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 8.7.1 성별, 연령별 아동노동 아동의 수 및 비율 | |
| 6 | 일자리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인정적인 근로환경 증진 | 8.7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인정적인 근로환경 증진 | 8.8.1 성별, 이민신분별 차명 또는 비자명적 직업관련 부상 빈도비율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하여 (단체 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보장 증대 | |
| 7 | 불평등 (안전한 이주보장)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있고 안전하며 책임있는 이주 및 이동성 강화 | 10.7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있고 안전하며 책임있는 이주 및 이동성 강화 | 10.7.1 이민국에서의 연소득 중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고용비용 10.7.2 잘 관리되는 이민정책을 이행해온 국가의 수 | |
| 8 | 도시 (임전한 주거지 마련, 빈민가)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 11.1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 11.1.1 빈민가, 무허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 하는 도시인구 비율 | |
| 9 | | | | | | |

| 순 서 | 구분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SDGs 세부목표 | 해당 지표 |
|--------|---|-----------|---|---|--|--|
| 10 | 도시 (safe transport) | 11.2 |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 |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 11.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대중에 기방되어 있는 11.2.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추행의 피해자 비율 | 11.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기방되어 있는 11.2.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추행의 피해자 비율 |
| 11 | 도시 (safe public spaces) | 11.7 | 평화, 정의, 제도 (all forms of violence) |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시망률의 현저한 감소 | 16.1.1 인구 100,000명당 국제적 살인에 의한 희생자 비율(성별) 16.1.2. 인구 100,000명당 폭력적 분쟁에 의한 희생자 비율 (성별, 연령별)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한 인구 비율 16.1.4. 주거지 인근에서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16.1.1 인구 100,000명당 국제적 살인에 의한 희생자 비율(성별) 16.1.2. 인구 100,000명당 폭력적 분쟁에 의한 희생자 비율 (성별, 연령별)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한 인구 비율 16.1.4. 주거지 인근에서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 12 | 평화, 정의, 제도 (violence against children) | 16.1 | 평화, 정의, 제도 (all forms of violence) | 아동에 대한 학대, 차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16.2.1. 지난 몇 달간 보호자에 의해 신체적 차별이나 심리적 공격을 경험한 1~17세 아동의 비율 16.2.2. 인구 100,000명당 인신매매 희생자 비율(성별, 연령별, 차취 형태별) 16.2.3.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18~29세 남녀의 비율 | 16.2.1. 지난 몇 달간 보호자에 의해 신체적 차별이나 심리적 공격을 경험한 1~17세 아동의 비율 16.2.2. 인구 100,000명당 인신매매 희생자 비율(성별, 연령별, 차취 형태별) 16.2.3.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18~29세 남녀의 비율 |
| 13 | 평화, 정의, 제도 (arms flows) | 16.2 | 평화, 정의, 제도 (all forms of violence) | 2030년까지 불법자금, 무기 거래를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율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 16.4.1. 내부 및 외부의 불법적 자금 흐름의 총액 (현 미국들러 기준) 16.4.2. 국제적 기준과 법적 기구의 관리하에 추적이 가능한 소규모 무기 및 경무기의 비율 | 16.4.1. 내부 및 외부의 불법적 자금 흐름의 총액 (현 미국들러 기준) 16.4.2. 국제적 기준과 법적 기구의 관리하에 추적이 가능한 소규모 무기 및 경무기의 비율 |
| 14 | | 16.4 | | | | |

| 순 서 | 구분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SDGs 세부목표 |
|-----------------------|---|---|-------|---|---|
| | | 폭력, 정의, 제도 (violence prevention) | 16.a* |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예방 및 테러리즘·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 하여, 국제협력 등을 통한 관련 국가 기관을 강화 | 16.A.1. 파리 원칙에 의거한 독립적인 국가인권 기구 설립 |
| 15 | | 교육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4.5 |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극복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 4.5.1 패리티 지수(성별, 도농, 소득수준 및 장애, 원주민, 분쟁 영향 등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
| 16 민주적 거버 너스 | | 교육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 4.7 | 2030년까지 지속기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 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사·민의식, 문학적 다양성 및 문학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기능개발 촉진 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글로벌시민의식 교육과 (ii) 지속기능개발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 17 | 양성평등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 5.1 형태의 차별 종식 | |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 5.1.1 양성평등과 반차별을 증진하고 강제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
| 18 | 양성평등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gender equality) | 5.c | | |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중 |
| 19 | 일자리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 8.5 동일한 임금 달성 | |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원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 8.5.1 직업별,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시간당 소득 8.5.2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실업률 |

| 순 서 | 구분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SDGs 세부목표 | 해당 지표 |
|--------|--|-----------|---|--|-----------|-------|
| 20 | 일자리 (labor rights) | 8.8 |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인정적인 근로환경 증진 | 8.8.1 성별, 이민신분별 차명 또는 비치명적 직업관련 부상 빈도비율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제입법에 기반하여 (단체 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 | |
| 21 | 불평등 (equal opportunit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 10.3 |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근절, 이와 관련한 직접한 암昧, 정체 및 행동의 진흥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동안 개인적으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reporting) 인구의 비율 | | |
| 22 | 불평등 (policies for greater equality) | 10.4 | 특히 자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화대를 달성 | 10.4.1 GDP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 비중 | | |
| 23 | 평화, 정의, 제도 (rule of law and access to justice) | 16.3 |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법률을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갈등 해결 메커니즘에 보고된 폭력피해자 비율 16.3.2. 전체 교도소 수감자 중 미결 체류자 비율 | | |
| 24 | 평화, 정의, 제도 (illicit financial flows, stolen assets, organized crimes) | 16.4 | 2030년까지 불법자금, 무기 거래를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 16.4.1 내부 및 외부의 불법적 자금 흐름의 총액 (현 미국달러 기준) 16.4.2. 국제적 기준과 법적 기구의 관리하에 추적이 가능한 소규모 무기 및 경무기의 비율 | | |
| 25 | 평화, 정의, 제도 (corruption and bribery) | 16.5 |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청받은 경험 이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의 비율 16.5.2.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청받았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기업의 비율 | | |

| 순 서 | 구분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SDGs 세부목표 |
|--------|---|-----------|--|--|-----------|
| 26 | 평화, 정의, 제도 (legal identity) | 16.9 |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 | 모두에게 16.9.1. 출생신고가 완료된 5세 이하·아동 비율(연령별) | 해당 지표 |
| 27 | 평화, 정의, 제도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 16.b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 16.B.1. 지난 12개월간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금지된 차별 근거를 기반으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되는 인구 비율 | |
| 28 | 빈곤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poverty reduction) | 1.b | 빈곤 퇴치 행동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긴전환 정책 체계를 창출 | 1.b.1 여성,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세터에 배당비중 정부의 운영 및 자본출 비중 | |
| 29 | 양성평등 (Women'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 5.5 | 정치, 경제, 공자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보장 | 5.5.1. 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5.5.2 여성영진 비중 | |
| 30 | 인권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 10.2 |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을 강화 및 증진 | 10.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중간소득의 50%이하의 삶을 살리는 인구의 비율 | |
| 31 | 불평등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institution) | 10.5 | 글로벌 금융 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 10.5.1 금융전성성지수 | |
| 32 | 불평등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institution) | 10.6 |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경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의결권 비율 | |

| 순 서 | 구분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SDGs 세부목표 | 해당 지표 |
|--------|---|-----------------------------|-------|---|--|-------|
| 33 | | 불평등 (migration policies) | 10.7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질서있고 안전하며 책임있는 아주 및 이동성 강화 | 10.7.1. 이민국에서의 연소득 중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고용비용 10.7.2. 잘 관리되는 이민정책을 이행해온 국가의 수 | |
| 34 | 도시 (inclusive urbanization) | | 11.3 |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 및 친여성이 있고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 11.3.1. 인구성장을 대비 토지소모비율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 |
| 35 | 평화, 정의, 제도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 | | 16.6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투명 한 제도 개발 | 16.6.1. 부문별 승인된 예산에 근거한 정부의 지출 비율 16.6.2. 공공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낀 인구 비율 | |
| 36 | 평화, 정의, 제도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 | 16.7 | 모든 수준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 16.7.1. 국가적 분포와 비교하여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공공행정, 사법부) 내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직급 비율 16.7.2. 정책결과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성이 높다고 믿는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직급 비율) | |
| 37 | 평화, 정의, 제도 (Participation in global governance) | | 16.8 |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 16.8.1. 국제기구 내 개발도상국의 투표권과 회원 비율 | |
| 38 | 평화, 정의, 제도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 | 16.10 |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 | 16.10.1. 지난 12개월간 기자, 언론인, 노동조합원 및 인권옹호자에 대한 살인, 납치, 강제실종, 임의구금, 고문과 관련한 사건의 수 16.10.2. 대중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헌법적, 법률적 혹은 정책적 보장을 체택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 수 | |

| 순 서 | 구분 | SDGs 세부목표 | | | |
|--------|-------------------------------------|-----------|--|---|-------|
| | | 목표 (키워드)* | 번호 | 세부내용 | 해당 지표 |
| 39 | 파트너십 (tax collection) | 17.1 |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재원 동원 강화 | 17.1.1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수익 17.1.2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예산 비율 | |
| 40 | 파트너십 (Equitable trade System) | 17.10 |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 기구 하위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디자무역체제 증진 | 17.10.1 전세계 가중 관세평균 | |

연구정보 2018-08-160

SDG16달성을 위한 KOICA 이행방안

발 행 2018년 9월

발 행 인 이미경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정보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47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쇄 아트프린팅

I S B N 978-89-6469-496-1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